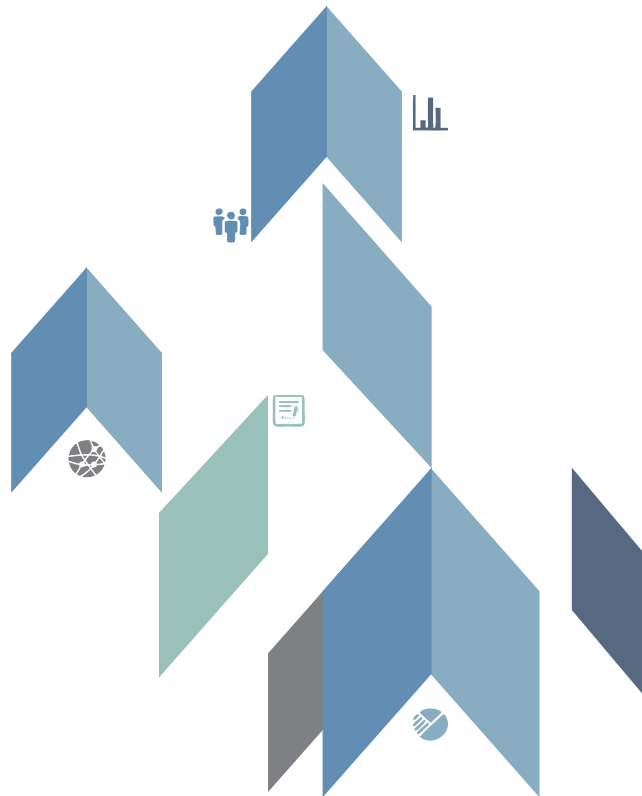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 행정조사 합리화 방안

Improving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System of Korea

한국행정연구원 원소연 외



이 보고서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된 연구과제 중 하나입니다.

이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행정조사 합리화 방안”

1. 협동연구총서 시리즈

협동연구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23-16-01	행정조사 합리화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
저자		원소연, 이종한, 이민호, 심우현, 김성부, 황덕연, 강문선, 김진영, 박상민, 상민정, 장민선, 나채준, 배건이, 최지연, 박성수, 유승하, 박선주, 장익현		
주관 연구기관	한국행정연구원	원소연 선임연구위원 (총괄책임자)	이종한 선임연구위원 이민호 선임연구위원 심우현 연구위원 김성부 부연구위원 황덕연 부연구위원	강문선 전문연구원 김진영 연구원 박상민 연구보조원 상민정 연구보조원
협력 연구기관	한국법제연구원	장민선 선임연구위원	나채준 연구위원 배건이 연구위원 최지연 연구위원	박성수 연구원 유승하 연구보조원



# 제 출 문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귀하

본 보고서를 “행정조사 합리화 방안”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3년 4월

한국행정연구원  
원장 최 상 한



## 국문요약

행정의 영역이 확대되고 활동형식이나 수단이 늘어남에 따라 행정기관은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는 행정조사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조사는 합리적 정책결정과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행위임에는 분명하지만, 다른 한편 피조사자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2007년 「행정조사기본법」 제정을 통해 행정조사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조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법률주의 원칙, 조사권 남용금지, 객관적 조사대상자 선정, 공동조사 및 중복조사 금지, 사전예방적 조사, 비밀누설금지 및 부당사용 금지, 정기조사 실시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러한 원칙과 절차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중앙행정기관이 운영하는 행정조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행정조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행정조사 원칙을 준수하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문헌연구를 수행하였는데, 행정조사에 대한 개념 및 유형, 절차 등 분석, 중복·유사조사에 대한 개념의 명확화 및 범위 설정을 위하여 국내·외의 연구논문, 보고서, 정부 발간물 등을 수집·분석하였다. 더불어 행정조사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31개 기관 874개 행정조사와 647개 실태조사를 전수 조사 및 분석하였다. 둘째, 행정조사에 대한 정확한 현황분석을 위하여 서면조사와 중앙행정기관 담당공무원과 인터뷰를 활용하였다. 현황분석을 위하여 1차 서면조사를 활용하였고,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제출한 서면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부처별로 담당 공무원 인터뷰를 통해 행정조사의 문제점 및 현황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셋째 행정조사에 대한 기업의 인식을 확인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에서는 문헌분석 및 행정조사 기본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행정조사의 방법, 목적, 주기, 유형 등 행정조사와 관련한 다양한 요소와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 등을 통해 기업의 인식을 분석하였다. 넷째, 행정조사의 합리적 개선방안 도출을 위하여 미국, 영국, 일본 등을 대상으로 해외사례를 검토하였다. 해외 사례연구는 주요국가에서 행정조사에 대한 개념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같이 행정조사에 대한 별도의 관리체계가 있는지 여부, 법이나 제도 등은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부처의 정책내용에 대한 전문가 및 행정조사에 대한 연구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조사의 필요성에 대한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행정조사의 개념, 유형과 방법, 원칙 등을 분석하였다. 행정조사기본법 제2조 제1항에서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

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자료 제출요구 및 출석·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행정조사기본법 제2조). 행정조사에 대한 기업의 불만은 행정조사에 순응하기 위하여 기업의 부담이 증가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기업의 부담을 초래하는 행정조사는 무조건 폐지되어야 하는 불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행정조사기본법에서 규율하는 행정조사의 목적은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는 행위인데, 이러한 조사는 결국 피조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정부의 정책은 기업을 포함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며, 기업이 요구하는 바를 적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현황, 환경의 변화, 수요자의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는 것은 필수적인 단계이기 때문이다. 다만 행정조사의 운영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기본원칙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행정조사는 이러한 원칙하에서 운영될 필요가 있다.

제3장에서는 중앙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행정조사의 현황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현재 운영되고 있는 행정조사는 31개 장·차관급 행정기관에서 총 874개의 행정조사를 운영하고 있다. 행정기관 내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행정조사의 숫자에 있어서는 편차가 매우 큰 편이었는데,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전체 행정기관의 45.2%에 해당하는 14개 기관에서는 10개 미만의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있었던 것에 반해, 국토부와 환경부 2곳이 전체 행정조사의 25.6%에 해당하는 224개의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있었다. 각 기관이 실시하는 행정조사 숫자를 가지고 순서를 정한 후, 행정조사 10개 미만 여부와 더불어 격차를 고려하여 31개 행정기관을 집단화(clustering) 하면 3개의 집단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제1집단은 31개 행정기관의 6.5%에 해당하는 2개의 기관으로 구성되며, 224개의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전체 행정조사의 25.6%를 차지한다. 제2집단은 31개 행정기관 중 48.4%를 차지하는 15개의 기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행정조사 중 67.2%인 587개의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제3집단의 14개 기관들은 각각 행정조사가 10개 미만이었다. 전체 차원에서 행정조사 평균은 기관당 28.2건이었지만, 세 집단으로 구분했을 경우에는 집단별 행정조사의 평균이 각각 112건, 39.1건, 4.5건으로 큰 차이가 있다.

제4장에서는 행정조사에 대한 이슈를 분석하였는데, 현재 행정조사 운영과정에서의 주요 이슈는 첫째는 행정조사의 필요성 여부이며, 둘째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원칙을 얼마나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이다. 이에 제4장에서는 현재 운영중인 874개의 행정조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유사·중복조사 여부,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 현황, 행정조사 불응에 대한 제재유형과 제재수준 등 행정조사의



원칙 준수여부를 분석하였다, 더불어 행정조사의 필요성을 검토를 위해 행정조사의 필요성에 대한 동의여부를 묻는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현재 운영중인 874건의 행정조사를 대상으로 유사·중복현황을 검토해본 결과, 조사대상자와 조사내용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사성이 높은 행정조사로 볼 수 있는 행정조사는 19건이 있었다. 행정조사기본법 제15조에서는 중복조사를 제한하고 있는데, '정기조사 또는 수시조사를 실시한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를 재조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동일한 조사대상자와 동일한 사안은 아니지만 조사내용이 매우 유사한 경우, 조사대상자가 다수 중복되는 행정조사 등은 조사대상자들이 중복조사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전체 행정조사의 근거법령과 조사내용을 전체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전체 행정조사중에서 중복되는 조사와 유사한 조사를 1차적으로 분류하고, 1차 분류된 유사한 행정조사에 대해서 담당자와의 개별 인터뷰를 통해서 조사대상자의 유사·중복성, 조사내용의 유사·중복성을 파악하였다.

행정조사의 유형중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유형으로 정책입안을 위한 실태조사가 있는데, 대부분 특정 분야의 기업 및 일반국민에게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 실태조사는 다른 행정조사들과 달리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각 설문조사의 내용을 비교하여야 실태조사간의 유사·중복성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행정조사중에서 실태조사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의 내용을 추가로 비교·분석하였다. 유사·중복성 검토를 위하여 통계청에 등록되어 있는 664개 실태조사를 대상으로 1차적으로 실태조사의 제목과 조사 분야를 검토하였고, 제목과 조사분야가 유사하여 설문조사의 내용을 심층적으로 비교·분석할 필요성이 있는 실태조사로서 94개를 선정하였다. 유사·중복성 검토결과 총 34개의 실태조사가 비교조사와 유사·중복 문항을 가지고 있었고, 유사·중복 문항의 비율이 10% 이상인 실태조사는 15개에 불과하였으며, 실태조사의 내용과 대상이 중복적이어서 통합조사가 필요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874건의 행정조사중에서 법적 근거가 미흡하거나 위임·위탁 규정이 미흡한 행정조사는 15건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본 조사에서 발굴한 사례가 전부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실제로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도 행정조사리스트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 발견이 어렵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실제로 행정조사에 대한 이번 전수조사과정에서 나타난 대표적인 문제점은 법적 근거를 두고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행정조사의 방법을 활용하는 행정조사임에도 등록하지 않아서 행정조사리스트에서 누락된 행정조사가 다수 발견되었다는 점이다. 현재 행정조사를 등록

하고 있긴 하지만, 행정규제와 달리 별도로 행정조사인지 여부를 심사하는 전담조직이 없기 때문에 행정조사의 등록은 각 행정기관이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행 시스템으로 인하여 행정조사의 경우 등록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누락된 행정조사가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조사 불응에 대한 제재수단의 유형과 제재수준에 대한 분석 결과, 행정조사로 등록된 총 874건의 행정조사 중 107건의 행정조사에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형벌을 규정하고 있었다. 이 중에서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과 관련된 행정조사, 중대한 경제적, 환경적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사로서 행정목적 실현에 어느 정도 협조를 강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형벌 부과가 허용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행정조사 위반행위에 대해 형벌이 부과되어 있다면 과태료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 검토결과 형벌에서 과태료로 완화가 필요한 행정조사 40건,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형벌 등의 형량을 감경할 필요가 있는 행정조사 9건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행정조사의 필요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행정조사란 합리적 정책결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지만,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조사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절차와 방법 등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반드시 필요한 행정조사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추진하고, 불필요한 행정조사는 폐지하는 것이 행정조사의 목적은 달성하면서 동시에 비용을 줄이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일 것이다. 문제는 반드시 필요한 행정조사와 불필요한 행정조사의 구분 기준인데, 불필요한 행정조사의 정의와 범위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이들을 구분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행정조사의 필요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서 2가지를 제시하였는데, 첫째는 행정조사의 목적에 따른 기준이며 둘째는 정책전문가에 의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행정조사의 목적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가능한데 첫째 법·규제 위반확인, 둘째 행정처분 전단계 사실확인, 셋째 정책입안을 위한 실태조사, 넷째 일반적 관리·감독 등이다. 이 중에서 법·규제 위반확인 및 행정처분 전단계로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는 국민이나 기업에 대한 침익적 행위를 처분하기 이전에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반드시 필요한 조사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조사행위가 피조사자인 국민과 기업에게 부담을 초래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사전 조사없이 잘못된 결정이 내려졌을 때 이를 되돌리기 위한 부담이 더 큰 것을 고려한다면 이는 조사로 인한 부담여부로 인해 불필요성을 판단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정책입안을 위한 실태조사 또는 일반적 관리·감독을 위한 조사 등은 내용에 대한 검토이후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874개 행정조사의 목적을 분류하여 1번과 2번 목적에 해당하는 행정조사는 필요성이 입증되었다고 보았으며, 검토결과 행정조사 874건 중에서 법·규제 위반확인을 위한 조사는 364건(41.6%), 행정처분 전단계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는 30건(3%)이었다. 이는 결국 전체 행정조사 중에서 약 45%에 달하는 394건은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행정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밖에 현재 운영중인 행정조사중에서 필요성에 비교적 동의하는 수준이 높은 조사와 낮은 조사를 분류해보고자, 874건의 행정조사중에서 20개 이상의 행정조사를 운영하고 있는 부처의 행정조사 698건을 대상으로 해당 조사의 필요성 정도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실시해보았다. 전문가 평가결과 698개 사무중에서 필요성이 높은 사무(7점이상)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485개(69.5%)가 필요한 행정조사로 분류되었다. 이 밖에 필요성이 적은 것으로 분류된 행정조사는 20건에 불과하였으며, 필요성 정도가 보통으로 나타난 행정조사는 193개(27.7%)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포 현상은 필요성 평가점수 평균값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전체 필요성평가 점수의 평균값은 7.4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대다수의 정책전문가들은 현행 행정조사가 필요한 행위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5장에서는 행정조사에 대한 기업의 인식을 분석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14개 주요 업종을 구분하여 각 업종별로 최소 50개 이상의 유의미한 응답 데이터가 수집될 수 있도록 표본을 구성하여, 전국 1,006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21.1%가 중복조사를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행정조사 중복 여부는 업종 간에도 큰 편차가 존재하는데 숙박시설업(33.8%), 정보통신업(32.5%) 및 수도·하수·폐기물처리업(31.3%) 기업들이 비교적 중복조사를 많이 경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행정조사 유형별 기업의 부담 수준은 출석·진술요구(7.64점), 현장조사(6.96점), 보고·자료제출 요구(6.60점), 자료 등의 영치(6.57점) 순으로 부담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행정조사의 주기나 빈도에 대한 부담은 '1년에 여러 번 정기조사(8.91점)'하거나 '사전계획 없는 수시조사(8.75점)'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행정조사의 목적과 필요성에 얼마나 공감하는지 살펴본 결과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사고·위험 발생 시 조사하기 위한 목적(6.48점)', '법·규제 위반사실 확인 목적(6.20점)', '행정처분 전단계로서 사실확인 목적(6.11점)'에 대한 동의수준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행정조사 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원칙의 준수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비교적 낮은 만족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행정조사의 사전통지(6.41점)', '행정조사의 목적 및 법적 근거 고지(6.38점)', '목적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조사(6.19점)’에 대한 만족수준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행정조사 개선안에 대한 동의 정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10점 만점 중 7.54~7.85 점), 가장 높은 동의 수준을 보인 대안과 가장 낮은 동의 수준을 보인 대안 간 차이가 0.31점에 불과하였다. 응답한 기업들은 모든 개선안에 대해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행정조사 요청횟수가 많거나 중복조사를 경험한 기업일수록 개선안에 동의하고 있으나, 기업들이 특별히 선호하는 대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6장에서는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 행정조사 운영현황을 분석하였다. 3개 국가 모두 우리나라처럼 단일 기본법에 의해 ‘행정조사’를 정의하거나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대부분 개별법령에서 우리나라의 행정조사 유형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연방행정기관의 보고 요구(reporting requirement)를 통한 정보수집(information collection), 현장출입검사(inspection), 증인 출석 및 문서 제출을 강제하는 행정적 소환장(subpoena) 발부의 형태로 행정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방행정기관의 정보수집에 따른 대중(the public)의 서류작성 부담을 줄이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행정절차법, 문서감축법, 프라이버시법 등 일반법에서 일반적으로 적용가능한 원칙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와 미국 모두 각 행정기관이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개별 법령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점에서 법적 근거는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경우도 교육, 돌봄, 식품 안전 등에서 개별법률로서 해당 관청의 행정조사 권한과 기능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영국의 행정조사분야의 개혁을 보면, 첫째 기존의 흩어져 있는 권한을 하나로 통합하고 중복적인 기능을 제거하는 경향이 있으며, 둘째 조사의 기간과 내용에 대한 유연성을 확보하는 경향이 보인다. 일본에서 행정조사는 행정법학계에서 학설상, 판례상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이 행정조사를 규율하는 일반법은 존재하지 않지만 행정조사의 개념과 유형과 절차 등이 확립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의 행정조사는 강제성 유무에 따라 임의조사, 간접강제조사와 강제조사로 나누어지는데, 이 중에서 처벌 규정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조사를 강제하는 간접강제조사가 우리나라 개별 법령에서 벌칙 규정을 수반하는 행정조사와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간접강제조사는 강제조사와 함께 반드시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고, 비례원칙,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조사목적에 반하지 않는 한 사전 통지 등 조사의 이유 및 계획을 공표하는 등 절차적인 원칙이 적용된다.

제7장에서는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행정조사 합리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내용적 측면과 운영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먼저 내용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은 새로운 행정조사의 도입과정에서 행정조사의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향후 불필요한 행정조사가 도입되는 것을 방지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행정조사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조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조사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유사·중복조사의 경우 통합·공동조사로 전환,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 보완, 행정조사 위반관련 과도한 제재 완화 등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운영적 측면의 개선방안으로서 행정조사 심의·조정기능 강화, 행정조사 관리전담조직 구축, 행정기관 공동 자료시스템 구축, 행정조사기본법 개정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키워드** : 행정조사, 행정부담, 중복조사

# Abstract

As public administration expands, the number of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is increasing to collect information necessary to determine policies or perform duties.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stipulates that the basic principles of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is to increase fairness, transparency, and efficiency of administration and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people. However, it is pointed out that these principles are not properly observed in reality.

Accordingly, this study aims to present reasonable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oper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by analyzing the types and operation behaviors of unreasonable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To achieve this research purpose, this study reviews four major topics: first,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second an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issue analysis, third an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by a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and fourth an overseas case survey.

Looking at the results of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874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are in operation at 31 administrative agencies, and 28.2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are conducted per administrative agency on average. In addition, among the total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there are strong similarities between 19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which shows that it is necessary to switch to integration and joint investigations in the future.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of legal grounds for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there are 15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with insufficient legal grounds or delegation and consignment regulations. Analyzing the types and levels of sanctions for non-compliance, the study shows that 107 out of 874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imposed punishment as sanctions, in which the level of 40 of these punishments need to be mitigated to minimum fines and 9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that need to be reduced. Meanwhile, to diagnose whether the current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is necessary, experts examined the necessity of 698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by ministries operating more than 20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As a result of the evaluation, 485 (69.5%) out of 698 affairs are found to be highly necessary, and 193 (27.7%) are found to be of moderate necessity.

The results of the survey on corporate perception of administrative surveys reveal that 21.1% of the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y have experienced duplicate surveys. The level of burden on the companies by the types of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is high in the order of attendance and statement request (7.64 points), field survey (6.96 points), report and data submission request (6.60 points), and data retention (6.57 points). Also, the respondents answered it is burdensome to conduct regular surveys (8.91 points) several times a year or occasional surveys without prior plans (8.75 points). By examining how much companies sympathize with the purpose and necessity of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y agreed at a low level, although the level of consent for "the purpose of investigating accidents and risks (6.48 points), "the purpose of confirming violations of laws and regulations (6.20 points), and "the purpose of confirming facts (6.11)" was relatively high.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level of consent to various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improvement plans, it is found that the improvement of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was generally necessary.

By synthesizing the above findings, this paper present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rationalization of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by dividing them into content and operational aspects. First of all, the introduction of unnecessary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should be prevented by reviewing the need for new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in the process of imposing them. In addition, to ease the burden on the public and ensure transparency in the investigation, improvement measures, such as converting to integrated and joint investigations, supplementing the legal basis of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and easing excessive sanctions related to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violations, are proposed. Finally, improvement measures such as strengthening the function of deliberation and coordination of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establishing an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management organization, establishing a joint data system for administrative agencies, and revising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are emphasized.

**Keywords** :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Administrative Burden, Duplicative Investigation

# 정책제안

## 1) 신설 행정조사에 대한 심의·조정기능 강화

### ○ 행정조사 관리번호 부여

-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행정조사를 신설하여 등록하려고 할 때에 행정조사 등록번호 부여

### ○ 행정조사 필요성 검토

- 불필요한 행정조사가 더 이상 신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해당 행정조사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행정조사인지를 평가하는 절차 마련 등 관리체계 구축

### ○ 행정조사 원칙 준수여부 등록

- 신설 행정조사에 대한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행정조사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제시하는 것 외에 신규 행정조사의 경우 행정조사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감독

## 2) 기존 운영중인 행정조사 개선방안

### ○ '심층점검 행정조사'에 대한 주기적 검토

- 모든 행정조사를 정책결정을 위해서 또는 직무 수행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인 '필수 행정조사'와 필요한 행정조사인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심층점검 행정조사'로 분류하고, 주기적 재검토

### ○ '필수 행정조사'의 원칙준수여부 주기적 검토

-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행정조사라고 할지라도 피조사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조사 기본법에서 제시하는 기본원칙들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가에 대한 검토 필요



### 3) 행정조사 운영적 측면의 개선방안

#### ○ 행정조사 관리 전담조직 구축

- 각 중앙행정기관에는 행정규제에 대한 자체심사위원회 및 적극행정위원회 등을 활용하여 소관 법령에 근거를 두고 신설되는 행정조사에 대해서도 심사를 수행하도록 권고

#### ○ 행정조사기본법 개정

- 신설되는 행정조사에 대한 심의·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기존 행정조사에 대한 주기적인 재검토를 위해서는 행정조사기본법에 이와 관련된 내용 추가

#### ○ 행정기관 공동 자료시스템 구축

- 각 중앙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 및 자료공유가 용이하도록 공동자료시스템 구축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1. 연구의 필요성 .....	3
2. 연구의 목적 .....	4
제2절 연구내용과 방법 .....	6
1. 연구내용 .....	6
2. 연구방법 .....	8

## 제2장 행정조사의 이론적 고찰

제1절 행정조사의 개념과 필요성 .....	13
1. 행정조사의 개념 .....	13
가. 행정법의 범위에서 행정조사의 개념 : 행정행위로서 행정조사 .....	13
나.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의하는 행정조사 .....	14
다. 행정조사와 행정규제 .....	16
2. 행정조사의 필요성 .....	17
제2절 행정조사의 유형과 원칙 .....	20
1. 행정조사의 판단기준 .....	20
가. 행정조사의 주체 .....	20
나. 행정조사의 목적 .....	21
다. 행정조사의 객체 .....	22
라. 행정조사의 적용범위 제외기준 .....	23

2. 행정조사의 유형과 방법 .....	25
가. 출석·진술 .....	25
나. 보고요구와 자료 제출의 요구 .....	25
다. 현장조사 .....	26
라. 시료채취 .....	26
3. 행정조사의 원칙 .....	27
가. 행정조사의 기본원칙 .....	27
나. 행정조사의 주기 .....	27
다. 조사대상의 선정 .....	28
라. 중복조사 제한(공동조사) .....	28

### 제3장 행정조사 운영현황

제1절 개요 .....	33
제2절 중앙행정기관 행정조사 일반현황 .....	35
1. 조사 목적 .....	35
2. 조사 방법 .....	37
3. 조사 시기 .....	38
4. 조사대상 유형 .....	40
5. 조사대상 기업 유형 .....	41
6. 조사대상 기업 업종 관련 특징 .....	43
7. 행정조사 시 자료요구 건수 .....	46
8. 행정조사 거부에 대한 제재 여부 및 내용 .....	49
제3절 행정조사의 특징 .....	53
1. 제1집단: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	53
2. 제2집단: 16개 기관 .....	59

가. 보건복지부 .....	59
나. 농림축산식품부 .....	60
다. 식품의약품안전처 .....	61
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62
마. 여성가족부 .....	63
바. 통계청 .....	64
사. 교육부 .....	65
아. 해양수산부 .....	66
자. 고용노동부 .....	67
차. 산업통상자원부 .....	68
카. 문화체육관광부 .....	69
파. 관세청 .....	70
타. 방송통신위원회 .....	71
하. 행정안전부 .....	72
거. 중소벤처기업부 .....	73
너. 국가보훈처 .....	74

## 제4장 행정조사 이슈분석

제1절 행정조사 이슈분석 개요 .....	77
제2절 유사·중복조사 분석 .....	78
1. 유사·중복조사의 기준 .....	78
2. 행정조사 유사·중복 분석 .....	79
가. 유사·중복조사 검토 개요 .....	79
나. 유사·중복조사 현황 .....	80
3. 실태조사 유사·중복 현황 .....	82
가. 유사·중복 검토 방법 .....	82
나. 분석 결과 .....	85

제3절 법적 근거 분석 .....	96
제4절 제재 수단과 수준 분석 .....	99
1. 행정조사에 대한 제재 일반론 .....	99
가. 행정조사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 .....	99
나. 행정조사에 대한 제재의 유형 개관 .....	100
다. 행정형벌과 과태료 부과 구분 기준 .....	101
2. 행정조사에 대한 제재 규정의 현황 분석 .....	104
가. 등록 행정조사에 대한 제재 규정 개관 .....	104
나. 제재 규정 현황 분석 .....	105
3. 행정조사 제재 규정의 정비 기준 .....	119
가. 정부의 경제형벌 비범죄화 방향 .....	119
나. 행정조사 제재 규정의 완화를 위한 정비 기준 .....	120
4. 과도한 제재(처벌규정) 정비 방안 .....	122
가. 정비 방향 .....	122
나. 구체적인 정비 방안 .....	123
다. 기타 제언 .....	132
제5절 행정조사 필요성 검토 .....	133
1. 행정조사 필요성 검토방법 .....	133
2. 행정조사 목적에 따른 검토 .....	134
3. 행정조사 중 행정규제 검토 .....	146
4. 행정조사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 평가 .....	159
5. 행정조사 필요성 검토결과 .....	162

**제5장 행정조사로 인한 기업부담 실태조사**

제1절 조사개요 ..... 177

    1. 조사 목적 및 대상 ..... 177

    2. 조사기업 일반현황 ..... 177

제2절 행정조사 유형별 행정부담 조사 ..... 182

    1. 행정조사 경험 ..... 182

        가. 행정조사 경험 여부 ..... 182

        나. 행정조사 요청 횟수 ..... 185

        다. 행정조사 중복 ..... 187

    2. 행정조사에 대한 인식 ..... 190

        가. 행정조사 유형별 부담 ..... 190

        나. 행정조사 주기·빈도별 부담 ..... 195

        다. 행정조사 목적의 동의 여부 ..... 201

        라. 행정조사 과정의 원칙준수 여부 ..... 207

제3절 행정부담 개선방안 조사 ..... 213

제4절 소결 ..... 220

## 제6장 주요국가의 행정조사

제1절 미국의 행정조사 제도 .....	225
1. 행정조사의 개념 .....	225
2. 행정조사의 유형 .....	226
가. 보고서(자료) 제출 요구(reporting requirements) .....	226
나. 현장(출입)검사(inspection) .....	227
다. 소환장(subpoena) 발부 .....	229
3. 행정조사 관련 법·제도 현황 .....	230
가.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PA) .....	231
나. 문서감축법(Paperwork Reduction Act: PRA) .....	231
다. 프라이버시법(Privacy Act) .....	237
라. 현장검사(inspection) 관련 법제도 및 판례 .....	237
4. 개별법 상 행정조사 사례 .....	238
가. 산업안전보건국(OSHA)의 기록 및 보고 요구(recording and reporting requirement)와 현장조사(inspection) .....	239
나. 의료기기 보고 규제(Medical Device Reporting Regulation) .....	242
5. 정책적 시사점 .....	244
제2절 영국의 행정조사 .....	246
1. 행정조사의 개념 .....	246
2. 행정조사의 유형 .....	247
가. 행정법상 규정에 따른 행정조사 유형 .....	247
나. 식품·교육·돌봄 영역에 있어서의 행정조사 .....	248
3. 행정조사 관련 법·제도 현황 .....	255
4. 행정조사 및 행정부담관리기관 .....	257
5. 영국 사례의 시사점 .....	258

제3절 일본의 행정조사 .....	259
1. 행정조사의 개요 .....	259
가. 행정조사의 개념 .....	259
나. 행정조사의 절차 .....	259
2. 행정조사의 유형 .....	260
가. 대상에 따른 구분 .....	260
나. 임의조사와 강제조사 .....	261
다. 조사수단에 따른 분류 .....	262
3. 개별 법령상의 행정조사 .....	262
4. 일본 사례의 시사점 .....	265

## 제7장 행정조사 합리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

제1절 종합분석 .....	269
1. 행정조사 이슈분석 .....	269
2. 행정조사 필요성 검토결과 .....	277
3. 행정조사 관련 기업인식 설문조사 결과 .....	279
4. 행정조사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 .....	281
제2절 신설 행정조사의 심의·조정기능 강화 .....	283
1. 행정조사 관리번호 부여 .....	283
2. 행정조사 필요성 검토 .....	284
3. 행정조사 원칙 준수여부 등록 .....	285
제3절 기존 행정조사 개선방안 .....	286
1. '심층점검 행정조사'에 대한 주기적 검토 .....	286
2. '필수 행정조사'의 기본원칙 준수여부 검토 .....	288



가. 유사·중복조사 검토 및 개선 .....	288
나. 법적 근거 검토 및 개선 .....	290
다. 제재수준 검토 및 개선 .....	291
<b>제4절 행정조사 운영적 측면의 개선방안 .....</b>	<b>293</b>
1. 행정조사 관리 전담조직 설립 .....	293
2. 행정조사기본법 개정 .....	294
3. 행정기관 공동 자료시스템 구축 .....	294
■ 참고문헌 .....	296
■ 부 록 .....	299

## 표 차례

〈표 3-1〉 행정조사 운영현황 .....	34
〈표 3-2〉 행정기관 및 조사목적 유형별 행정조사 건수와 비율 .....	36
〈표 3-3〉 행정기관 및 행정조사 방법 유형별 조사 수 및 비율 .....	37
〈표 3-4〉 행정기관 및 행정조사 시기별(수시/정기) 조사 수와 비율 .....	39
〈표 3-5〉 행정기관 및 조사대상 유형별 행정조사 수 및 비율 .....	40
〈표 3-6〉 행정기관 및 조사대상 기업 유형별 행정조사 수와 비율 .....	42
〈표 3-7〉 행정기관 및 조사대상 기업의 업종별 행정조사 수와 비율(1) .....	44
〈표 3-8〉 행정기관 및 조사대상 기업의 업종별 행정조사 수와 비율(2) .....	45
〈표 3-9〉 행정기관 및 자료요구 건수 관련 행정조사 수와 비율(1) .....	47
〈표 3-10〉 행정기관 및 자료요구 건수 관련 행정조사 수와 비율(2) .....	48
〈표 3-11〉 행정기관 및 거부에 대한 제재 여부 관련 행정조사 수와 비율 .....	50
〈표 3-12〉 행정기관 및 조사 거부에 대한 제재의 내용에 관한 행정조사 수와 비율 .....	51
〈표 3-13〉 국토부 행정조사의 근거법과 행정조사 현황 .....	54
〈표 3-14〉 환경부 행정조사의 근거법과 행정조사 현황 .....	55
〈표 3-15〉 국토부와 환경부의 조사목적 유형별 현황 .....	57
〈표 3-16〉 국토부와 환경부의 조사방법 유형별 현황 .....	57
〈표 3-17〉 국토부와 환경부 행정조사의 조사시기 유형별 현황 .....	58
〈표 3-18〉 국토부와 환경부의 행정조사 불참여시 제재의 여부 현황 .....	58
〈표 3-19〉 보건복지부 행정조사 주요 특징 .....	59
〈표 3-20〉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조사 주요 특징 .....	60
〈표 3-21〉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조사 주요 특징 .....	61
〈표 3-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조사 주요 특징 .....	62
〈표 3-23〉 여성가족부 행정조사 주요 특징 .....	63
〈표 3-24〉 통계청 행정조사 주요 특징 .....	64
〈표 3-25〉 교육부 행정조사 주요 특징 .....	65
〈표 3-26〉 해양수산부 행정조사 주요 특징 .....	66
〈표 3-27〉 고용노동부 행정조사 주요 특징 .....	67
〈표 3-28〉 산업부 행정조사 주요 특징 .....	68
〈표 3-29〉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조사 주요 특징 .....	69
〈표 3-30〉 관세청 행정조사 주요 특징 .....	70

〈표 3-31〉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조사 주요 특징	71
〈표 3-32〉 행정안전부 행정조사 주요 특징	72
〈표 3-33〉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조사 주요 특징	73
〈표 3-34〉 보훈처 행정조사 주요 특징	74
〈표 4-1〉 행정조사 유사·중복조사 현황	81
〈표 4-2〉 중복·유사조사 대상 실태조사	84
〈표 4-3〉 전체 실태조사에서의 유사중복 현황	86
〈표 4-4〉 실태조사 중복·유사 점검 결과	88
〈표 4-5〉 비교조사에서의 유사·중복 현황	91
〈표 4-6〉 비교조사 문항과 유사·중복된 본조사 문항수	92
〈표 4-7〉 본조사에서의 유사·중복 현황	94
〈표 4-8〉 유사·중복의 비율이 높은 사례	95
〈표 4-9〉 법령상 근거없는 행정조사 현황	97
〈표 4-10〉 위임·위탁근거 정비 필요 행정조사	97
〈표 4-11〉 행정조사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 제재 규정 현황	105
〈표 4-12〉 보고나 자료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 예시	115
〈표 4-13〉 출입검사 등 거부, 방해, 기피에 대한 제재 규정 예시	116
〈표 4-14〉 점검 또는 검사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 예시	118
〈표 4-15〉 경제형벌 비범죄화를 위한 개선 유형	119
〈표 4-16〉 비범죄화 필요성에 따른 과태료 완화 제안 행정조사(I)	124
〈표 4-17〉 비범죄화 필요성에 따른 과태료 완화 제안 행정조사(II)	127
〈표 4-18〉 위반행위 유형에 따른 과태료 완화 제안 행정조사	128
〈표 4-19〉 비례성의 원칙에 따른 형량 감경 제안 행정조사	130
〈표 4-20〉 제재 근거 규정 명확화 제안 행정조사	131
〈표 4-21〉 행정조사 목적별 현황	135
〈표 4-22〉 법·규제 위반확인 및 행정처분 전단계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 현황	135
〈표 4-23〉 행정조사와 행정규제로 중복 등록된 사무	147
〈표 4-24〉 필요성평가 대상 행정조사 부처별 현황	160
〈표 4-25〉 필요성 평가결과	161
〈표 4-26〉 행정조사 목적별 필요성 평가결과	161

## CONTENTS

〈표 4-27〉 심층점검대상 행정조사의 필요성 평가결과	163
〈표 5-1〉 행정조사 유형별 경험 여부 (업종별, %)	183
〈표 5-2〉 행정조사 유형별 경험 여부 (기업 특성별, %)	184
〈표 5-3〉 행정조사 요청 횟수 (업종별, %)	186
〈표 5-4〉 행정조사 요청 횟수 (기업 특성별, %)	187
〈표 5-5〉 행정조사 유형별 부담 정도 (업종별, %)	192
〈표 5-6〉 행정조사 유형별 부담 정도 (기업 특성별, %)	193
〈표 5-7〉 행정조사 유형별 부담 정도 (순위형 로짓 모형)	194
〈표 5-8〉 행정조사 주기·빈도별 부담 정도 (업종별, %)	198
〈표 5-9〉 행정조사 주기·빈도별 부담 정도 (기업 특성별, %)	199
〈표 5-10〉 행정조사 주기·빈도별 부담 정도 (순위형 로짓 모형)	200
〈표 5-11〉 행정조사 목적의 동의 정도 (업종별, %)	204
〈표 5-12〉 행정조사 목적의 동의 정도 (기업 특성별, %)	205
〈표 5-13〉 행정조사 목적의 동의 정도 (순위형 로짓 모형)	206
〈표 5-14〉 행정조사 과정의 원칙준수 정도 (업종별, %)	209
〈표 5-15〉 행정조사 과정의 원칙준수 정도 (기업 특성별, %)	210
〈표 5-16〉 행정조사 과정의 원칙준수 정도 (순위형 로짓 모형)	211
〈표 5-17〉 행정조사 개선방안 동의 수준 (업종별, %)	215
〈표 5-18〉 행정조사 개선방안 동의 수준 (기업 특성별, %)	216
〈표 5-19〉 행정조사 개선방안 동의 수준 (순위형 로짓 모형)	217
〈표 6-1〉 산업안전보건국의 업무상 상해 및 질병 기록 및 보고 규제에 대한 OMB 통제 번호	240
〈표 7-1〉 행정조사 유사·중복조사 현황	271
〈표 7-2〉 본조사에서의 유사·중복 현황	274

## 그림 차례

〈그림 4-1〉 실태조사 중복·유사 조사개요 .....	85
〈그림 5-1〉 업종별 응답 기업 분포 .....	178
〈그림 5-2〉 설립연도별 응답 기업 분포 .....	178
〈그림 5-3〉 기업형태별 응답 기업 분포 .....	179
〈그림 5-4〉 소재지별 응답 기업 분포 .....	179
〈그림 5-5〉 소재 권역별 응답 기업 분포 .....	180
〈그림 5-6〉 고용 규모별 응답 기업 분포 .....	180
〈그림 5-7〉 기업 규모별 응답 기업 분포 .....	181
〈그림 5-8〉 행정조사 유형별 경험 여부 (%) .....	182
〈그림 5-9〉 행정조사 요청 횟수 (연 평균, %) .....	185
〈그림 5-10〉 행정조사 중복 여부(%) .....	188
〈그림 5-11〉 행정조사 중복 여부 (업종별, %) .....	188
〈그림 5-12〉 행정조사 중복 여부 (설립연도별, %) .....	189
〈그림 5-13〉 행정조사 중복 여부 (고용 규모별, %) .....	189
〈그림 5-14〉 행정조사 중복 내용 (%) .....	190
〈그림 5-15〉 행정조사 유형별 부담 정도 (11점 척도) .....	191
〈그림 5-16〉 행정조사 부담 정도 : 출석·진술요구 유형 (11점 척도) .....	191
〈그림 5-17〉 행정조사 유형별 부담 정도 : 출석·진술요구 유형 (순위형 로짓 모형) .....	195
〈그림 5-18〉 행정조사 주기·빈도별 부담 정도 (11점 척도) .....	196
〈그림 5-19〉 행정조사 부담 정도 : 1년에 여러 번 정기조사 유형 (11점 척도) .....	196
〈그림 5-20〉 행정조사 부담 정도 : 수사조사 유형 (11점 척도) .....	197
〈그림 5-21〉 행정조사 주기·빈도별 부담 정도 : 주요 유형 비교 (순위형 로짓 모형) .....	201
〈그림 5-22〉 행정조사 목적의 동의 정도 (11점 척도) .....	202
〈그림 5-23〉 행정조사 목적의 동의 정도 : 사고·위험 발생 시 조사 유형 (11점 척도) .....	202
〈그림 5-24〉 행정조사 목적의 동의 정도 : 일반적인 관리감독의 목적 유형 (11점 척도) .....	203
〈그림 5-25〉 행정조사 목적의 동의 정도 : 주요 유형 비교 (순위형 로짓 모형) .....	207
〈그림 5-26〉 행정조사 과정의 원칙준수 정도 (11점 척도) .....	208
〈그림 5-27〉 행정조사 과정의 원칙준수 정도 : 행정조사의 사전통지 (11점 척도) .....	208
〈그림 5-28〉 행정조사 과정의 원칙준수 정도 : 조사대상자의 의견반영 (순위형 로짓 모형) .....	212
〈그림 5-29〉 행정조사 개선방안 동의 수준 (11점 척도) .....	213

## C O N T E N T S

〈그림 5-30〉 행정조사 개선방안 동의 수준 : 유사·동일 사안에 대한 중복조사 개선 (11점 척도) ……	214
〈그림 5-31〉 행정조사 개선방안 동의 수준 : 유사·동일 사안에 대한 중복조사 개선 (순위형 로짓 모형) …	218
〈그림 5-32〉 행정조사 관련 기타 의견 (%) ……	219
〈그림 6-1〉 OIRA의 정보수집심사(ICR) 현황 대쉬보드 ……	234
〈그림 6-2〉 연방 행정기관의 정보수집행위 인벤토리 - 노동부 예시 ……	235
〈그림 6-3〉 OIRA 심사기간 중 온라인 의견수렴 페이지 예시 ……	235
〈그림 6-4〉 OIRA 정보수집행위 심사(ICR) 현황 검색창 ……	236
〈그림 6-5〉 업무상 상해 및 질병 기록과 보고' 정보수집심사(ICR) 결과 ……	241
〈그림 6-6〉 FSA 행정조사 프로세스 ……	249
〈그림 6-7〉 CQC 조사 절차 요약 ……	254



# 서론







# 제1절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연구의 필요성

행정의 영역이 확대되고 활동형식이나 수단이 늘어남에 따라 행정기관은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민에게 보고나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타인의 주거나 영업소에 출입하는 방식으로 실시하는 행정조사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조사의 확대는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할 우려도 동시에 증가시키고 있다. 이에 2007년 「행정조사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행정조사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조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행정조사는 기업 등 국민에게 행정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지난 2020년 11월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업의 62%가 행정조사로 인한 부담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고, 중복조사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도 전체 기업의 약 7.2%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에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집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행정조사일지라도 국민·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행정조사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행정조사기본법에서는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조사의 기본원칙으로서 법률주의 원칙, 조사권 남용금지, 객관적 조사대상자 선정, 공동조사 및 중복조사 금지, 사전예방적 조사, 비밀누설금지 및 부당사용 금지, 정기조사 실시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상 기본원칙에도 불구하고 개별 법령에 근거한 행정조사에 대하여 이러한 원칙과 절차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예컨대 중앙행정기관에서 수행하는 행정조사 중에는 여전히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행정조사가 존재하고 있으며, 조사의 목적과 내용이 불명확하게 규정됨으로써 조사대상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사례 등도 존재하고 있다. 또한, 행정조사의 절차와 관련하여 개별 조사계획 수립 및 사전 통지, 조사대상자 의견제출 보장, 전문가 참여, 증표제시, 조사 결과 통지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조사 시 사전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조사대상자의 조사에 대한 이의제기나 결과 통보 등이 보장되지 않는 등 지나치게 ‘관 주도적’ 행정조사가 시행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행정조사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운영계획에 따라 매년 각 부처에서 실시하는 행정조사를 규제정보화시스템(RIS)에 등록하고 있으나, 행정조사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문제점도 제기된다. 등록된 행정조사에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행정조사’가 제외되어 있고, 일부 ‘법령에 근거한 행정조사’도 누락 된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현행 등록시스템은 행정조사운영계획에 따른 부처별 행정조사 내용만 등록하도록 되어있어, 개별 행정조사 세부내용 및 문제점(조사중복, 서류 과다 등), 행정조사로 인한 기업의 부담이나 비용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는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현행 부처별로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행정조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부처 간 중복·유사조사 여부를 비롯하여 부처 내 중복·유사조사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합리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더불어 중복·유사조사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기업에게 행정부담을 초래하는 행정조사를 파악하고, 불필요한 행정조사를 정비함으로써 국민·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위에서 제기한 현행 행정조사의 문제점과 기업의 부담경감에 대한 요구 등에 기인하여 각 중앙행정기관별로 수행하는 행정조사에 대한 전수 조사를 바탕으로, 중복·유사조사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불합리한 행정조사의 유형과 운영태태 등을 분석함으로써 합리적인 행정조사 운영 및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행정조사는 기본적으로 각 중앙행정기관별로 관련 법령에 근거를 두고 운영하는 시스템이며, 다른 중앙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행정조사와 유사·중복성을 검토하는 별도의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현재 중앙행정기관별로 운영하는 행정조사 중에는 내용상 유사한 조사가 중복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유사·중복조사 현황은 지난 2017년 행정조사 전수조사 이후 정확히 파악되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무엇보다 각 중앙행정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는 행정조사의 유사·중복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유사·중복조사의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행정조사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은 정부에 의한 각종 조사로 인해 행정부담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행정조사는 정부의 정책결정 및 직무수행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는 행위이므로, 조사대상자인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초래하는 모든 행정조사를 반드시 없애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해당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기업 및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사·중복조사를 찾아서 이를 개선하는 것 외에 기존의 행정조사 운영방식을 점검하고,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국민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인 행정조사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더불어 행정조사와 관련된 처벌규정을 재검토하여 과도한 처벌규정은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과도한 제재 완화방안을 통해 합리적인 행정조사 시스템 구축에 기여하고자 한다.

## 제2절

## 연구내용과 방법



## 1. 연구내용

합리적인 행정조사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첫째 행정조사에 대한 이론적 고찰 둘째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조사 이슈분석 셋째 행정조사에 대한 기업 의견 조사 넷째 해외사례 조사 등을 수행 등으로 구성된다.

먼저 행정조사에 대한 이론적 고찰에서는 행정조사 합리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체와 원칙을 확인하기 위하여 행정조사의 개념과 성격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 ‘행정조사’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포함한다. 행정조사기본법에서 행정조사는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자료 제출요구 및 출석·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조사의 개념은 다소 모호하여, 실제로 행정조사를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어렵다, 더욱이 행정조사를 행정처분에 수반되는 조사행위로 볼 것인지 또는 기업 및 국민에게 부담을 유발하는 조사행위로 제한할 것인지에 따라 행정조사의 판단기준은 물론 행정조사의 관리체계의 방향도 달라질 수 있다. 이에 행정행위로서 행정조사의 의미와 더불어 행정조사기본법이 등장한 배경을 고려하여 행정조사의 개념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합리적인 행정조사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두 번째 주요 연구내용은 31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운영 중인 행정조사에 대한 전수 조사와 행정조사에 수반되는 처벌조항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현행 행정조사 시스템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법령에 근거를 마련하고 중앙행정기관별로 운영하는 체계이다보니 서로 다른 중앙행정기관에서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행정조사간 유사·중복성을 걸러내는 별도의 장치가 미흡한 현실이다. 이에 지난 2017년 국무조정실에서 당시 행정조사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유사·중복조사를 1차적으로 정비하였으나, 상시적으로 이를 조정하는 시스템이 없다보니 현재 행정조사의 유사·중복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31개 장·차관급 행정기관에서 등록·운영하고 있는 총 858개 행정조사에 대하여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유사·중복조사 현황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더불어 각 행정조사의 대표적인 유형 중의 하나는 ‘실태조사’인데, 현재

중앙행정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실태조사는 총 647개에 이르고 있다. 이에 647개 조사 중에서 조사목적, 주요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유사·중복성이 의심되는 실태조사의 문항을 모두 검토하여 유사·중복 조사내용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 밖에 행정조사 거부 시 처벌규정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타 법과 비교하여 과도한 제재가 있는지를 검토함으로써 과도한 제재 완화방안을 위한 기초 현황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세 번째 주요 내용은 유사·중복 조사와 별개로 현재 정부에서 운영 중인 행정조사에 대한 기업의 인식을 조사함으로써 향후 합리적인 행정조사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지난 2017년 1차 전수 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앙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행정조사 간 유사·중복성이 매우 높은 것은 아니다.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행정조사는 기관의 주요 정책결정 및 직무집행을 위해 필요한 조사라고 볼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각 행정기관별 업무 범위는 원칙적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한 조사가 이루어질 확률이 높은 것은 아니다. 다만 국가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행정기관별로 일부 업무 범위의 중첩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렇게 중첩된 업무 범위에 대한 행정조사인 경우 일부 유사·중복성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기업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비단 유사·중복 조사의 문제만이 아니며, 불필요한 행정조사, 법적 근거가 미흡한 행정조사, 과도한 제재로 사실상 규제와 동일한 부담을 초래하는 행정조사 등 국민의 권익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에 기업 설문 조사를 통해 행정조사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더불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조사하고 이러한 인식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도출하는데 활용하고자 한다.

네 번째 주요 연구내용은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사례를 분석하는 것이다. 각 국가별 행정문화나 법·제도 등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행정조사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가 우리나라에 항상 좋은 모범사례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는 있으며,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사례를 검토하는 수준에서 미국, 영국, 일본의 행정조사 운영현황을 검토하고자 한다.

다섯 번째 주요연구내용은 앞선 연구를 통해 유사·중복조사 개선내용과 불합리한 행정조사를 발굴하여 개선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앞서 설명했듯이 행정조사는 정책결정을 위해서 또는 직무수행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조사하는 것이고, 이는 합리적인 정책결정 및 직무수행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볼 수 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편의에 따라 중복적인 조사가 수행되거나, 또는 과도한 행정조사가 이루어지는 사례, 불필요한 정보나 자료수집을 위한 행정조사가 이루어지는 사례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고 정비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효과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행정조사 개선에 따른 행정부담 경감과 기회비용의 절감에 따른 경제적 효과 등을 개

략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물론 행정조사 개선에 따른 경제적 효과의 규모가 경제적 투자나 경제적 지원 등을 통한 경제적 효과처럼 크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불필요한 행정부담 및 기회비용을 절감하는 경제적 효과는 직접적인 비용절감의 규모이며, 이러한 비용절감이 결국은 거시적인 경제적 파급효과의 근간을 이룬다는 점에서 수치로 나타나는 경제적 효과보다 보이지 않는 파급력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행정조사 합리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책적 제언은 크게 세 부분인데, 첫째는 유사·중복조사 개선방안이고 둘째는 행정조사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관리방안이며 마지막으로 행정조사로 인한 기업 및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연구방법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형태의 기존 문헌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행정조사에 대한 개념 및 유형, 절차 등 분석, 중복·유사조사에 대한 개념의 명확화 및 범위 설정을 위하여 국내·외의 연구논문, 보고서, 정부 발간물 등을 수집·분석하였다. 더불어 행정조사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31개 기관 874개 행정조사와 647개 실태조사를 전수 조사 및 분석하였다.

둘째, 행정조사에 대한 정확한 현황분석을 위하여 서면조사와 중앙행정기관 담당공무원과 인터뷰를 활용하였다. 현황분석을 위하여 1차 서면조사를 활용하였고,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제출한 서면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부처별로 담당 공무원 인터뷰를 통해 행정조사의 문제점 및 현황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셋째 행정조사에 대한 기업의 인식을 확인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에서는 문헌분석 및 행정조사 기본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행정조사의 방법, 목적, 주기, 유형 등 행정조사와 관련한 다양한 요소와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 등을 통해 기업의 인식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인식조사 결과는 향후 개선이 필요한 행정조사의 유형이나 운영방식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넷째, 행정조사의 합리적 개선방안 도출을 위하여 미국, 영국, 일본 등을 대상으로 해외사례를 검토하였다. 해외 사례연구는 주요국가에서 행정조사에 대한 개념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같이 행정조사에 대한 별도의 관리체계가 있는지 여부, 법이나 제도 등은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주요국가에서 행정조사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

는가에 대한 분석결과는 추후 우리나라의 개념 정립에도 활용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각 부처의 정책내용에 대한 전문가 및 행정조사에 대한 연구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추후 행정조사 합리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자 한다. 행정조사는 결국 각 중앙행정기관의 정책결정과 직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사이므로 제3의 기관에서 자의적으로 통·폐합을 진행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또한, 정책에 대한 전문성이 미흡한 경우 관련된 자료 및 정보 수집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있다는 한계도 있다. 결국, 행정조사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이 정책과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경우 오히려 정책의 합리성 및 효과성을 제한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행정의 효과성·효율성·공정성은 확보하면서 국민의 권익도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개선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

## 행정조사의 이론적 고찰





# 제1절

## 행정조사의 개념과 필요성



### 1. 행정조사의 개념

#### 가. 행정법의 범위에서 행정조사의 개념 : 행정행위로서 행정조사

행정조사의 개념과 성격을 파악하는 것은 결국 행정조사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 필요한 선행 작업이다. 행정조사의 성격과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행정조사의 범위와 유형, 그리고 행정조사의 관리시스템 등을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행정조사의 필요성은 합리적 정책결정과정에 사실관계파악과 이를 위한 정보수집의 관점에 기인하는데, 합리적 정책결정과 집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정보를 통해 사실관계의 파악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행정법 이론에서의 ‘행정조사’는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인식되었으나, 행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독립적인 행정작용의 일환으로 개념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최환용·장민선, 2016:25).

전통적인 행정법이론에 근거하여 행정조사의 개념을 살펴보면, 행정조사(行政調査)는 행정기관이 행정작용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나 자료 등을 얻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행정활동을 의미한다. 즉, 행정청이 행정작용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하는 권력적 조사작용을 말한다. 행정조사는 사전에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하는 행정작용이며, 직접 개인의 권리 관계에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장래의 행정작용을 위한 준비적·보조적 수단으로서의 사실행위로 볼 수 있다. 다만, 행정조사를 넓은 의미의 행정절차의 한 요소로 보는 견해가 있다.

결국, 행정조사를 행정상 의무이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사실적 관계로서 행정행위에 부수된 관계로 파악하게 되면, 행정행위 중에서 조사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가 ‘행정조사’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행정행위란 공무원이 행정권에 의한 행정 법규를 구체적으로 적용·집행하는 공법행위(公法行爲)이다. 법률의 집행, 시행령·규칙의 제정, 예산안의 편성 및 실시 등을 모두 포괄하는 매우 광범위한 개념이다. 더욱이 행정행위란 말은 학문상의 용어이며 실제상으로는 행정처분(行政處分)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실정법상으로는 허가(許可)·인가(認可)·특허·승인·금지·면제·인허(認許)

등 여러 가지 용어로 혼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범위는 실로 방대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행정조사’를 행정상 의무이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사실적 관계로서 행정행위에 부수된 관계로 파악하는 것은 행정법상 또는 실정법상 학문의 개념으로서 는 의의가 있을지 모르지만, 정부가 관리하여야 하는 ‘행정조사’의 범위로는 너무 광범위하므로 관리의 실익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행정조사’의 내용을 확정하고, 행정조사 시 지켜야 할 원칙을 정하는 등 관리체계를 확립하는 이유는 결국 행정조사로 인한 개인정보나 영업 정보, 국민의 자유권 등 보호해야 하는 법적 가치와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함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개별 행정법규에서 다양한 입법형식으로 존재하던 ‘행정조사’에 관한 일반적 규율을 행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그 결과 제정된 것이 「행정조사기본법」이기 때문이다.

다만 행정조사 기본법 제3조 제1항에서는 ‘행정조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행정조사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행정조사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동법의 적용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 나.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의하는 행정조사

행정조사기본법 제1조에서는 행정조사에 관한 기본원칙·행정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행정조사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행정기관이 정책결정이나 행정 목적을 위해서 관련되는 정보를 수집하는 작용이 아무런 한계나 절차적 통제 없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행정상 의무이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조사일지라도 조사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집행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함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행정조사기본법의 목적은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 개인정보 및 영업 정보 등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법한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동법은 행정조사의 기본원칙, 조사방법과 절차 등을 규율하고 있는 것이다.

제2조 제1항에서는 행정조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행정조사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데,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자료 제출요구 및 출석·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행정조사기본법 제2조).

이러한 행정조사의 개념은 실정법상 행정행위에 수반되는 조사를 모두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권력적 조사행위의 상당 부분은 이미 ‘행정규제’로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다는 점에서 행정조사기본법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행정행위는 공무원이 행정권에 의한 행정 법규를 구체적으로 적용·집행하는 공법행위(公法行爲)와 법률의 집행을 포함하여,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1998년 행정규제기본법의 제정 이후 법령의 제·개정 시 법령 심사과정에서 행정규제를 인식하고 등록하는 시스템을 갖추어 운영하고 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에서는 행정규제를 정의하고 있는데,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행정법상 행정행위의 다수는 ‘행정규제’에 해당하며, 이미 행정규제로 등록·관리되고 있다.

결국,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행정규제로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는 행정행위에 수반되는 행정 조사를 다시금 「행정조사기본법」을 통해 규율하는 실익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

첫 번째 이유는 행정조사기본법의 목적에서 밝히고 있듯이 행정조사에 관한 기본원칙·행정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경우에 따라서 행정조사는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기도 하고, 행정규제로서 행정규제기본법의 적용을 받기도 한다. 다만 행정규제기본법의 목적은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하는 것으로, 동법의 주요 내용은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원칙과 심사기준 및 절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법령의 내용 중에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에 해당하는 사무가 있는 경우, 정부에 의해 규제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를 따져보고, 만약 반드시 필요하다면 적절한 수단과 방법을 활용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이러한 행정규제에 대한 심사는 규제사무의 타당성, 효과성, 적절성 등을 평가함으로써 합리적인 규제정책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행정규제 중에서 조사가 수반되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 방법 등을 규율하고 있지는 않다. 이러한 관점에서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 ‘행정조사’가 ‘행정규제’에 포함되든 또는 행정처분에 수반되는 조사행위이든 상관없이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원칙을 제시하기 위한 기본법으로서 의의가 있다. 다만 행정규제에 해당되는 행정조사의 경우, 행정상 의무이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행정조사라는 점이 이미 행정규제 심사과정에서 검증된 조사로 분류되어야 한다. 더불어 반드시 필요한 행정조사일지라

도 조사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집행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하는 대전제는 동일하므로, 이러한 행정조사의 경우 조사의 원칙·방법·절차에 대한 점검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이유는 행정규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행정조사에 대한 관리의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다. 행정규제는 헌법상 자유권을 법률로써 제한하는 형식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강제하는 형식을 띠고 있다. 따라서 임의규정은 규제로 판단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행정규제의 개념과 범위를 정하고, 법령에 이러한 행정규제가 포함되었을 때 이러한 행정규제가 반드시 필요한지, 규제를 위한 절차와 수단은 적절한지 등을 법령심사과정에서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행정규제’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이기 때문이다. 헌법에서 규율하는 기본적 자유권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존재할 때 이러한 기본권 제한을 규율한 법령이 바로 ‘행정규제’로 관리되는 것이다. 다만, 임의규정인 경우 직접적인 자유권을 제한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규제로 보지 않지만, 실제로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효과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 방식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는 실제로 사문화된 조항도 다수 있으나, 행정규제의 관리체계에서는 벗어나면서도 실제 국민에게 부담을 초래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

#### 다. 행정조사와 행정규제

행정조사기본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행정조사의 개념을 적용하게 되면 대부분의 행정조사는 ‘행정규제’와 중첩될 가능성이 높다. “행정규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제1호). ‘행정조사’와 ‘행정규제’의 차이점은 첫째 행정규제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전반을 의미하며, 행정조사는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는 행위라는 점이다. 그러나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는 행위 중에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도 포함되는데, 대표적으로 보고와 자료 제출 등이다. 정책결정을 위해 또는 직무수행을 위해 협조요청으로서 보고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지만, 실제로 국가 행위를 위해 보고와 자료 제출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예컨대 인·허가 사무와 관련하여 허가받은 자는 주기적으로 자료보관 및 보고의무가 수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행정규제로서 보고 및 자료 제출 의무와 행정조사로서 보고 및 자료 제출 요구를 기술적으로 구분하기 어려우며, 현실적으로 행정조사로서의 보고 및 자료 제출 요구와 행정규제로서 보고 및 자료 제출 의무를 구분하여 관리할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이 밖에 다른 행정조사의 유형 중에도 행정규제사무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현장점검·출석·진술·시료채취 등도 임의조항이 아닌 경우 대부분 행정규제사무에 포함된다. 다만 행정규제의 개념은 행위의 유형과는 상관없이 직접적인 권리의 제한이나, 또는 의무의 부과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법령상 임의조항은 행정규제로 분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 행정조사는 권리의 제한이나 의무의 부과를 전제하지 않고 다양한 유형의 조사를 위한 활동을 의미한다고 정의함에 따라, 조사활동이 이루어지면 개념정의상 행정조사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행정조사기본법과 행정규제기본법은 각각 ‘행정조사’와 ‘행정규제’를 규율하는 서로 다른 법률이므로, 행정조사와 행정규제의 범위가 중첩된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은 없다. 다만, 행정조사기본법의 목적이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결국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한 행정행위에 대한 관리가 핵심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행정조사기본법의 목적은 행정규제기본법의 목적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sup>1)</sup>.

만약 불합리한 행정조사가 있고, 이러한 행정조사가 행정규제로 등록·관리되는 사무라면 해당 행위는 행정조사기본법과 행정규제기본법중에서 어느 법을 우선 적용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정조사의 개념과 적용범위를 규율할 때에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행정규제의 개념과 적용범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 2. 행정조사의 필요성

행정조사에 대한 기업의 불만은 행정조사에 순응하기 위하여 기업의 부담이 증가한다는 점이다. 이는 행정규제에 대한 불만과도 일맥상통하는데, 행정규제는 기업의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주범으로 항상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기업의 부담을 초래하는 행정규제와 행정조사는 무조건 폐지되어야 하는 불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행정조사기본법에서 규율하는 행정조사의 목적은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는 행위인데, 이러한 조사는 결국 피조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정부의 정책은 기업을 포함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며, 기업이 요구하는 바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현황, 환경의 변화, 수요자의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는 것은 필수적인 단계이다. 만약 당장 눈앞에 놓인 기업의 귀

1) 행정규제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참음과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행정조사를 무분별하게 폐지한다면, 장기적으로 오히려 국민과 기업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으며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이 아닌 단순히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정책이 결정된다면 정책의 효과성도 낮아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정책결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국민과 기업에게 꼭 필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은 합리적인 정책결정과정이다. 다만 우리가 경계하여야 하는 것은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핑계로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느라 기업과 국민의 불편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즉, 불필요한 정보와 자료 수집을 위한 행정조사 또는 이미 다른 부처에서 관련된 분야의 정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처간 협업 미흡으로 해당 피조사자인 국민과 기업에게 중복적으로 자료를 요청하는 조사행위는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키게 된다.

이를 종합해 보면 행정조사는 합리적 정책결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지만,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조사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절차와 방법 등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반드시 필요한 행정조사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추진하고, 불필요한 행정조사는 폐지하는 것이 행정조사의 목적은 달성하면서 동시에 비용을 줄이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일 것이다. 이를 위해 행정조사기본법에서는 행정조사를 수행할 때 지켜야할 기준과 원칙 등을 제시하고 있다.

문제는 반드시 필요한 행정조사와 불필요한 행정조사를 어떻게 걸러내는가이다. 이와 관련하여 첫번째로 검토해야 하는 것은 유사·중복조사를 찾아내어 폐지하거나 통합하는 것이다.

행정조사기본법 제15조에서는 중복조사를 제한하고 있는데, '정기조사 또는 수시조사를 실시한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를 재조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동일한 사안을 조사하는 것을 중복조사라고 볼 수 있는데, 동일한 중앙행정기관 내에서 중복조사를 금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제2항에서는 행정조사를 실시할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른 행정기관에서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서로 다른 행정기관에 의한 중복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동일한 행정기관내 및 서로 다른 행정기관에서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동일한 사안을 조사하는 사례는 드물것으로 예상되며, 실제 현황조사에서도 완전히 중복되는 조사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sup>2)</sup>. 반면 동일한 조사대상자와 동일한 사안은 아니지만 조사내용이 매우 유사한 경우, 조사대상자가 다수 중복되는 행정조사 등은 조사대상자들이 중복조사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으로 행정조사의 대상자는 불특정 다수인 경우도 있지만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사대상자가 여러 그룹에 속하는 경우 유사한 조사를 중복적으로 요청받을 수 있다. 예컨대 가정폭력, 성희롱, 성폭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의 내용은 가정폭력, 성희롱, 성폭

2) 제3장 행정조사 운영현황 참고



력 등으로 행정조사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중복조사로 보기는 어렵지만, 실제로 조사의 내용은 상당히 유사할 수 밖에 없는데 이러한 경우 공동조사나 조사를 통합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이 밖에 다른 중앙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이지만, 해당 부처에서는 갖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추가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행위, 부처간 업무영역이 유사하여 중복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등 명확하게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조사대상자 및 조사의 내용 등에서 상당한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통합조사, 공동조사 등을 우선 검토하도록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행정조사 합리화를 위한 두 번째 방법은 유사·중복조사와 별개로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행정조사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와 관리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불합리한 또는 불필요한 행정조사를 걸러내는 것이다.

그러나 필수적인 행정조사와 불필요한 행정조사를 구분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보니, 불필요한 행정조사를 구분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행정조사의 목적으로 필요성을 검토해볼 수 있는데, 현행 행정조사의 목적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되고 있는데, 첫째 법률 위반행위 확인조사, 둘째 국민 침익적 결정을 내리기 이전에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 셋째 정책입안을 위한 실태조사, 넷째 일반적인 관리감독을 위한 조사 등이다. 이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행정조사의 경우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행정조사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조사행위가 피조사자인 국민과 기업에게 부담을 초래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사전 조사없이 잘못된 결정이 내려졌을 때 이를 되돌리기 위한 부담이 더 큰 것을 고려한다면 이는 조사로 인한 부담여부로 인해 불필요성을 판단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세 번째와 네 번째 목적에 해당하는 행정조사의 경우 내용에 대한 검토이후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정책결정을 위한 실태조사나 일반적인 관리감독을 위한 행정조사의 경우 조사의 내용에 따라 행정조사의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으며, 이때 필수적인 행정조사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주관적인 판단에 근거할 수 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 행정조사의 범위와 유형에 따라 현행 행정조사에 연번을 부여하는 등 전반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조사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을 예방하고 동시에 현행 행정조사에 대한 필요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 제2절

## 행정조사의 유형과 원칙



## 1. 행정조사의 판단기준

행정조사를 행정행위의 범위에서 국가의 권력적 행위로서 정의할 것인가 아니면 기업의 행정 부담을 유발하는 조사행위로 볼 것인가에 따라 행정조사의 범위는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행정조사의 법적 성격과 별개로 「행정조사 기본법」 제2조 정의에 따라서 조사를 하는 주체, 조사의 목적, 조사의 객체를 중심으로 행정조사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법률 개념상 행정조사에 포함되지만, 행정조사기본법의 적용에서 제외하는 사항을 통해 행정조사의 범위를 검토하고자 한다.

## 가. 행정조사의 주체

「행정조사 기본법」 제2조 정의에 따르면 행정조사는 행정기관이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보고요구·자료제출요구 및 출석·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행정조사의 주체는 “행정기관”이 된다. 동조2호에서는 “행정기관”이란 법령 및 조례·규칙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는 기관과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기관의 정의는 「행정규제기본법」에서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법령 등 또는 조례·규칙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는 기관과 그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제2조 4호). 이상의 두 개 법률에서 정의하는 행정기관이란 행정권한을 가지는 기관과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를 포함한다. 행정권한을 지닌 행정기관에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므로 비교적 간략하지만, 행정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의 현황을 모두 파악하기는 어렵다. 다만 행정조사의 주체로서 행정기관이란 행정권한을 지닌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외에 법률을 통해 권한의 위임·위탁을 받은 법인·단체까지 포함될 수 있다.

현재 행정조사에 대한 판단기준으로서 ‘주체’에 대한 기준은 원칙적으로 중앙행정기관에 의해 집행되는 행정조사와 더불어 중앙행정기관의 위임·위탁을 받은 기관이 수행하는 행정조사가 포

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소관법령에서 제3의 법인·단체에게 권한의 위임·위탁을 규율하는 경우 이는 해당 행정조사가 포함된 법령의 소관부처에서 1차적인 관리책임을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관련하여 권한의 위임·위탁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다소 모호한데, 명확하게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특정 단체에게 위임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례가 존재한다. 공공기관중에 특정 업무수행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의 고유 업무로서 ‘행정조사’가 포함되었다면 이는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행정조사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의한 조사를 포함하고 있는데, 해당 조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본래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사이므로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행정조사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행정조사기본법」의 정의에 따르면 행정조사의 주체는 행정권한을 지닌 행정기관과 권한의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를 모두 행정기관으로 간주하며, 법률에 따른 업무범위에서 ‘행정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행정조사의 범위에 포함된다. 다만 행정조사의 주체를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그 밖에 권한을 위임받은 법인·단체로 구분하였을 때,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행정조사의 범위에 이러한 행정조사를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한 기준은 설정이 필요하다.

## 나. 행정조사의 목적

행정조사의 목적은 “정책결정을 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행정조사기본법 제2조제1호), 정책결정 또는 직무수행이라는 목적은 국가에서 행하는 행위라면 대부분 행정조사의 목적에 모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행정조사의 목적은 ‘행정조사’의 개념 정의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으로서의 의미보다는 정책결정 및 직무수행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정보나 자료가 아닌 부수적인 조사 또는 언젠가 필요할지도 모를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부수적인 행정조사를 제한하기 위한 규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행정조사기본법에서 규율한 행정조사의 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할 수 있으며, 이에 행정조사의 목적을 근거로 현실적으로 부수적인 행정조사를 제한하는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정책결정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가 아닌 행정조사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행정조사를 수행하는 각 중앙행정기관에게 보다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다. 행정조사의 객체

행정조사의 객체는 ‘조사대상자’(기본법 제2조제1호)이며,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조사대상자’는 “행정조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으로 정의하고 있고(행정조사기본법 제2조제4호), 일반적으로 자연인 또는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 모두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행정조사의 객체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행정조사의 주체인 ‘중앙정부·지자체 및 소속기관’,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및 개인’으로서 이들에 대한 조사는 원칙적으로 행정조사가 아니다.

행정조사의 객체에 대한 논의에서 쟁점사항은 공공기관에 대한 조사를 ‘행정조사’로 볼 것인가의 문제이다. 행정조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은 사실상 모든 법인·단체·기관·개인을 포함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행정조사의 주체를 제외한 모든 조사대상자가 행정조사의 객체가 된다. 이는 ‘행정규제’에 대한 판단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행정규제의 객체는 ‘국민’이며, 국민의 범위에는 자연인, 법인, 사단·재단이 모두 포함된다. 행정규제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이거나 또는 행정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개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행정조사의 객체 역시 행정규제의 객체의 범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 행정조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는 모든 조사대상자가 포함되며 행정조사의 주체가 되는 행정기관의 소속기관 또는 행정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개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조사인 경우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행정규제’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행정조사’보다 엄격하게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특히 행정규제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자유권을 법률로써 제한하는 내용이므로, 이러한 ‘행정규제’가 지닌 ‘강제력’을 고려하여 매우 엄격하게 행정규제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반면 ‘행정조사’는 직접적으로 조사대상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인 ‘행정규제’와는 구별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결정 및 직무수행을 위하여 수행하는 조사라는 점에서 ‘행정조사’의 주체를 제외한 모든 조사대상자를 ‘행정조사’의 객체로 구분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

만약 행정규제와 유사하게 법령에 포함된 행정조사를 등록하고 지속적인 관리·감독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면, 행정조사 관리체계의 목적에 따라 행정조사의 개념과 범위를 정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조사대상자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조사대상자에게 행정부담을 초래하는 행정조사의 유형과 내용을 중심으로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책결정 및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

루어지는 모든 조사를 ‘행정조사’로 정의하고 관리체계를 운영하는 실익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 라. 행정조사의 적용범위 제외기준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에서는 행정조사의 주체 및 객체, 목적 등에 부합하여 법률의 개념정의 상 행정조사에 해당하지만, 행정조사기본법의 적용에서 제외하는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적용범위) ① 행정조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행정조사를 한다는 사실이나 조사내용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국가안전보장·통일 및 외교에 관한 사항
2. 국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 가. 군사시설·군사기밀보호 또는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 나. 「병역법」·「예비군법」·「민방위기본법」·「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집·소집·동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의 정보에 관한 사항
4.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
5. 조세·형사·행형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6. 금융감독기관의 감독·검사·조사 및 감리에 관한 사항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법률위반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행정조사의 기본원칙), 제5조(행정조사의 근거) 및 제28조(정보통신수단을 통한 행정조사)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에 따르면, 성격상 행정조사에 포함되지만, 징집·소집·동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 조세·형사·행형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공정거래위원회의 법률위반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 등은 적용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의 적용제외 유형 외에도 행정조사의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한 행위 등이 있는데 첫째는 행정처분을 위한 조사행위이다. 대표적으로 허가·인가·면허·특허·확인·면제 등의 행정처분을 위해서 자료 제출 및 보고의무 등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행정처분을 완료하기 위한 자료 제출 및 보고 등은 행정조사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인증제도와 관련하여 재인증을 위한 자료 제출, 보고, 현장점검 등의 행위는 행정조사에서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증제도의 운영방식은 최초 인증 후 일정 기간의 주기적으로 재인증

이 필요한 제도로서, 이는 '인증'이라는 행정행위를 완료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필요한 조사이다. 따라서 조사대상자에게 행정부담을 초래하는 조사일지라도 국가의 행정작용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사항이므로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변경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셋째, 조사자의 수익 행위 신청과정에서 확인을 위해 수행하는 조사는 행정조사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교육비 지원 신청자의 적합 여부 조사 또는 여성 기업인 확인 등이 이에 해당한다. 수익 행위 신청과정에서 조사자가 해당 수익 행위 신청자로서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행위이며, 따라서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목적을 위해 자율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한 사항이라는 점에서 적용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

반면 행정조사의 범위에 포함 시켜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유형도 있는데, 첫째는 공정경쟁을 위한 조사행위이다.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제2항7호에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법률위반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은 행정조사기본법의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닌 타 부처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공정경쟁을 위한 조사를 수행하는 사례가 있다. 이렇게 모든 중앙행정기관에서 수행하는 공정경쟁을 위한 조사를 모두 행정조사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지 아니면 타 부처의 조사는 행정조사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관리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법적 근거가 미흡한 사후 모니터링 행위를 행정조사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행정조사는 국가에 의한 권력적 작용으로서의 의미와 조사대상자에게 행정부담을 초래하는 행위라는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물론 국가에 의한 모든 권력적 작용을 행정조사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며, 필수적인 권력적 작용이 아닌 정책결정 및 직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필수적인 조사 중에서 조사대상자에게 행정부담을 발생시키는 경우, 행정행위의 공정성·투명성·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대안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만약 비필수적인 조사에 해당하지만 조사대상자에게 행정부담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행정조사로 분류하여 관리할 실익이 없다고 볼 수도 있다.

조사대상자의 행정부담이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행정기관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후 모니터링, 시장조사 등은 현재로서는 행정조사로 관리할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점차 IT 기술의 발전으로 조사대상자의 직접적인 협조 없이도 사후적으로 시장 모니터링이 가능해지는 경우, 조사대상자의 직접적인 협조가 필요 없는 사후 모니터링에 대한 관리는 전혀 필요 없다고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 2. 행정조사의 유형과 방법

행정조사의 유형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조사기본법」 제2조 정의에 따르면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자료 제출요구 및 출석·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대표적인 행정조사의 유형으로 현장조사, 문서열람, 시료채취, 보고, 자료 제출, 출석 및 진술 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행정조사의 유형이 반드시 이러한 6가지 활동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원칙과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범위는 법적 정의에 기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 가. 출석·진술

「행정조사기본법」 제9조에서 출석·진술 요구 시 방법을 규율하고 있는데, 먼저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의 출석·진술을 요구할 때에는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하며, 출석요구서에는 일시와 장소, 출석요구의 취지, 출석하여 진술하여야 하는 내용, 제출자료, 제재와 관련한 근거 법령 및 조항을 포함한 출석거부 시 제재내용과 그 밖에 당해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행정조사기본법 제9조제1항). 출석요구서를 받은 조사대상자는 지정된 출석일시에 출석으로 인해 업무나 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 출석일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행정기관의 장은 출석일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동조 제2항). 또한,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조사목적 달성을 못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조사대상자의 출석은 1회로 종결하여야 한다(동조 제3항).

### 나. 보고요구와 자료 제출의 요구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내용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때에는 일시와 장소, 조사의 목적과 범위, 보고하여야 하는 내용, 보고거부에 대한 제재(근거법령 및 조항 포함)와 그 밖에 당해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한 보고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행정조사기본법 제10조제1항).

또한, 조사대상자에게 장부나 서류,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때에는 제출기간, 제출요청 사유, 제출서류, 제출서류의 반환 여부, 제출거부에 대한 제재(근거 법령 및 조항 포함)와 그 밖에 당해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자료 제출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행정조사기본법 제10조제2항)

## 다. 현장조사

조사원이 가택과 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현장출입조사서 또는 법령등에서 현장조사 시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문서를 조사대상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이러한 현장출입 조사서 또는 문서에는 조사목적, 조사기간과 장소, 조사원의 성명과 직위, 조사범위와 내용, 제출자료, 조사 거부에 대한 제재(근거 법령 및 조항 포함)와 그 밖에 당해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제1항).

현장조사를 하는 조사원은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보여야 하고, 현장조사는 원칙적으로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는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1조제3항). 그러나 이에 대한 예외규정을 제시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현장조사로 인해 조사대상자의 과도한 부담을 초래할 우려도 있다<sup>3)</sup>.

한편 조사원이 현장조사 중에 자료·서류·물건 등을 영치할 때에는 조사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을 입회시켜야 하고, 자료 영치로 인해 조사대상자의 생활이나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조사원은 자료 등을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사본을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치에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자료영치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동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

## 라. 시료채취

시료채취가 필요한 경우 해당 시료의 소유자 및 관리자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최소한도로 하여야 하고, 만약 시료채취로 조사대상자에게 손실을 입힌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행정조사기본법 제12조).

3)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현장조사)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는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사대상자(대리인 및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가 동의한 경우
2. 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의 업무시간에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3. 해가 뜬 후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증거인멸로 인하여 조사대상자의 법령등의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3. 행정조사의 원칙

#### 가. 행정조사의 기본원칙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에서는 행정조사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첫째 행정조사는 조사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안되고, 둘째 행정기관은 조사목적에 적합하도록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 행정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셋째 행정기관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는 공동조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행정조사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네 번째 원칙은 행정조사는 법령 등의 위반에 대한 처벌보다는 법령 등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고 다섯 번째 원칙은 다른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행정조사의 대상자 또는 행정조사의 내용을 공표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며 여섯 번째 원칙은 행정기관은 행정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다른 법률에 따라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래의 조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6가지 일반원칙은 행정조사를 수행할 때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기본적인 원칙으로서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다. 이 밖에 동 법에서는 행정조사의 주기, 조사대상의 선정, 중복조사의 제한 등을 행정조사 수행 시 지켜야 할 원칙으로서 제시하고 있다.

#### 나. 행정조사의 주기

행정조사기본법 제7조는 행정조사의 주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먼저 행정조사는 법령 등 또는 행정조사운영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즉, 계획하지 않은 불시의 조사는 기업 및 국민에게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연간 계획을 세워 조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정기적인 조사의 예외사항으로 수시조사가 가능한 5가지 경우를 제시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첫째, 법률에서 수시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둘째, 법령 등의 위반에 대하여 혐의가 있는 경우 셋째,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 등의 위반에 관한 혐의를 통보 또는 이첩받은 경우 넷째 법령 등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이며 마지막으로 행정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도 수시조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시조사가 가능한 사유 중에서 5번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이므로 제외하면 법에서는 수시조사가 가능한 4가지 경우를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중에서 2번째에서 4번째 사

항은 미리 계획을 세워서 정기조사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수시조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결국 수시조사가 필요한지를 법에서 미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행정 조사는 원칙적으로 정기조사로 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행정조사에 대해 조사대상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미리 대비함으로써 조사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 다. 조사대상의 선정

행정조사기본법 제8조는 조사대사의 선정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조사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조사의 목적, 법령준수의 실적, 자율적인 준수를 위한 노력, 규모와 업종 등을 고려하여 명백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행정조사의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조사대상자의 선정을 최대한 방지하고, 조사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명백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였다 하더라도 조사대상 선정기준을 조사대상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즉, 조사대상자가 어떠한 기준으로 조사대상자에 선정되었는지 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렇게 열람신청을 받은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조사대상 선정기준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열람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데, 행정기관이 당해 행정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조사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또는 내부고발자 등 제3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 라. 중복조사 제한(공동조사)

행정조사를 위한 또 다른 원칙으로서 공동조사와 중복조사의 제한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행정조사기본법 제14조와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먼저 행정조사는 원칙적으로 공동조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데, 반드시 공동조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써 첫째 당해 행정기관 내의 2 이상의 부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분야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둘째 서로 다른 행정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등 2가지 경우를 제시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조사기관으로부터 행정조사 사전통지를 받는 경우, 조사대상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공동조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고, 공동조사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 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행정조사운영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공동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무조정실장은 관계 부처의 장에게 공동조사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행정조사기본법 제14조)

이러한 공동조사의 원칙을 보완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동법 제15조에는 중복조사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정기조사 또는 수시조사를 실시한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를 재조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미 조사를 받은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는 재조사가 허용된다. 또한, 행정조사를 실시할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른 행정기관에서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가능한 유사한 내용의 중복조사를 제한하고 있다(행정조사기본법 제15조)





---

## 행정조사 운영현황





# 제1절

## 개요



조사 결과 현재 운영되고 있는 행정조사는 총 891개이나, 자료 수집 과정에서 담당 부처 및 행정조사의 기본 정보가 파악되지 않은 17개를 제외한 나머지 874개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하였다. 31개 장·차관급 행정기관들이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있었으므로, 하나의 행정기관당 평균 28.2개의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셈이었다. 31개 행정기관 중 장관급 행정기관은 총 18개로서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58.1%를 차지하고 있었다. 차관급 행정기관은 13개로서 41.9%였으며, 행정조사는 주로 장관급 행정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행정기관 내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행정조사의 숫자에 있어서는 편차가 매우 큰 편이었으며,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전체 행정기관의 45.2%에 해당하는 14개 기관에서는 10개 미만의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있었던 것에 반해, 국토부와 환경부 2곳이 전체 행정조사의 25.6%에 해당하는 224개의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있었다. 그다음으로 많은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곳은 농림축산식품부로서 63개였다. 123개의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국토부나 101개의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환경부에 비교하면 약 40여 개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었다. 국토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3개 행정기관의 행정조사가 전체 조사의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다(32.8%).

각 기관이 실시하는 행정조사 숫자를 가지고 순서를 정한 후, 행정조사 10개 미만 여부와 더불어 격차를 고려하여 31개 행정기관을 집단화(clustering) 하면 3개의 집단으로 나눌 수 있었다. 제1집단은 31개 행정기관의 6.5%에 해당하는 2개의 기관으로 구성되며, 224개의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전체 행정조사의 25.6%를 차지한다. 2개 기관 모두 장관급 기관이다. 제2집단은 31개 행정기관 중 48.4%를 차지하는 15개의 기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행정조사 중 67.2%인 587개의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장관급 행정기관이 12개, 차관급 기관이 3개로 장관급 행정기관이 다수였다. 제3집단은 14개의 기관들로 구성되어 있으나, 전체 행정조사의 7.2%인 63개의 조사를 실시하고 있었다. 14개 기관 중 10개가 차관급 기관이었으며, 장관급 기관은 4개에 불과하여 제2집단의 구성과 반대된다고 할 수 있다. 제3집단의 14개 기관들은 각각 행정조사가 10개 미만이었다. 전체 차원에서 행정조사 평균은 기관당 28.2건이었지만, 세 집단으로 구분했을 경우에는 집단별 행정조사의 평균이 각각 112건, 39.1건, 4.5건으로 큰 차이가 있다.

각 부처별 행정조사 건수와 집단에 대한 구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1〉 행정조사 운영현황

번호	기관명	기관 구분	행정조사 수(비율)	집단 구분	
1	국토부	장관급	123(14.1%)	1	
2	환경부	장관급	101(11.6%)		
3	복지부	장관급	64(7.3%)	2	
4	농식품부	장관급	63(7.2%)		
5	식약처	차관급	51(5.8%)		
6	과기부	장관급	44(5.0%)		
7	여가부	장관급	41(4.7%)		
8	통계청	차관급	41(4.7%)		
9	교육부	장관급	38(4.3%)		
10	해수부	장관급	37(4.2%)		
11	고용부	장관급	37(4.2%)		
12	산업부	장관급	35(4.0%)		
13	문체부	장관급	34(3.9%)		
14	관세청	차관급	30(3.4%)		
15	방통위	장관급	25(2.9%)		
16	행안부	장관급	24(2.7%)		
17	중기부	장관급	23(2.6%)		
18	보훈처	장관급	9(1.0%)		3
19	소방청	차관급	9(1.0%)		
20	질병청	차관급	8(0.9%)		
21	산림청	차관급	6(0.7%)		
22	기재부	장관급	5(0.6%)		
23	해경청	차관급	5(0.6%)		
24	원안위	차관급	5(0.6%)		
25	조달청	차관급	4(0.5%)		
26	문화재청	차관급	3(0.3%)		
27	특허청	차관급	3(0.3%)		
28	개보위	장관급	2(0.2%)		
29	기상청	차관급	2(0.2%)		
30	법무부	장관급	1(0.1%)		
31	농촌진흥청	차관급	1(0.1%)		

출처: 직접 작성



## 제2절

# 중앙행정기관 행정조사 일반현황



여기서는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고 있는 행정조사 858개의 주요 특징들을 크게 조사 방식과 대상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조사 방식과 관련해서는 조사목적, 조사방법, 조사 주기, 자료 요구 건수 및 조사 거부에 따른 제재에 대한 특징들을 조사하였다. 조사대상과 관련된 특징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의 유형, 기업의 구분 방식, 업종을 조사하였다. 중앙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향과 일반적인 특징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 특징이 강하게 드러나는 부처를 파악함으로써 각 행정기관이 행정조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가지는 특징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

### 1. 조사 목적

중앙행정기관 행정조사에 있어서 조사목적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① 법·규제 위반확인, ② 행정처분 전단계 사실확인, ③ 정책입안을 위한 실태조사, ④ 일반적 관리·감독을 위한 목적 등이다. 그 목적이 명확하지 않거나 관련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는 '기타' 항목으로 두었다. 중앙행정기관 전체 행정조사의 조사목적을 살펴보면, 4가지 목적 유형별 비율이 각기 달랐다. '법·규제 위반확인'의 목적에 따른 행정조사가 365개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의 41.8%를 차지하고 있었다. 다음으로는 '일반적 관리·감독'의 경우가 235개로 전체의 26.9%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정책입안을 위한 실태조사'의 경우도 235개로 26.9%에 해당했다. '행정처분 전단계 사실확인'의 경우에는 30개로 가장 드물었다. 비록 '법·규제 위반확인'의 목적에 해당하는 행정조사가 가장 많았지만, '정책입안을 위한 실태조사'와 '일반적 관리·감독'에 해당하는 조사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법·규제 위반확인'을 위한 행정조사를 가장 많이 실시하고 있는 기관은 환경부였으며, 그다음으로는 국토부와 농식품부였다. '일반적 관리·감독'과 관련해서는 국토부가 가장 많은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있었고, '정책입안을 위한 실태조사'의 경우에는 과기부, 문체부, 환경부, 국토부가 비슷한 수준이었다. '행정처분 전단계 사실확인'의 행정조사가 가장 적었으나, 여가부에서 가장 많이 실시하고 있었다는 것이 특징이다. 조사목적의 유형이 명확하지 않은 행정조사('기타' 유형)는 총 9개였으며, 그 중 절반은 국토부의 것이었다.

〈표 3-2〉 행정기관 및 조사목적 유형별 행정조사 건수와 비율

부처 \ 조사목적	① 법·규제 위반확인	② 행정처분 전단계 사실확인	③ 정책입안을 위한 실태조사	④ 일반적 관리·감독	기타
기재부	1 (20.0%)	0 (0.0%)	0 (0.0%)	4 (80.0%)	0
교육부	11 (28.9%)	0 (0.0%)	18 (47.4%)	9 (23.7%)	0
과기부	16 (36.4%)	0 (0.0%)	17 (38.6%)	11 (25.0%)	0
법무부	1 (100.0%)	0 (0.0%)	0 (0.0%)	0 (0.0%)	0
행안부	8 (33.3%)	3 (12.5%)	3 (12.5%)	10 (41.7%)	0
문체부	8 (23.5%)	1 (2.9%)	15 (44.1%)	10 (29.4%)	0
농식품부	44 (69.8%)	3 (4.8%)	7 (11.1%)	9 (14.3%)	0
산업부	10 (28.6%)	1 (2.9%)	13 (37.1%)	11 (31.4%)	0
복지부	25 (38.5%)	3 (4.6%)	12 (18.5%)	22 (33.8%)	3
환경부	61 (60.4%)	4 (4.0%)	15 (14.9%)	21 (20.8%)	0
고용부	13 (35.1%)	5 (13.5%)	12 (32.4%)	7 (18.9%)	0
여가부	8 (19.5%)	19 (46.3%)	0 (0.0%)	14 (34.1%)	0
국토부	48 (36.4%)	2 (1.5%)	15 (11.4%)	58 (43.9%)	9
해수부	17 (45.9%)	1 (2.7%)	4 (10.8%)	14 (37.8%)	1
중기부	1 (4.3%)	3 (13.0%)	15 (65.2%)	0 (0.0%)	4
보훈처	2 (22.2%)	1 (11.1%)	4 (44.4%)	2 (22.2%)	0
방통위	12 (48.0%)	1 (4.0%)	4 (16.0%)	7 (28.0%)	1
개보위	2 (100.0%)	0 (0.0%)	0 (0.0%)	0 (0.0%)	0
식약처	35 (68.6%)	0 (0.0%)	11 (21.6%)	5 (9.8%)	0
관세청	17 (56.7%)	0 (0.0%)	0 (0.0%)	13 (43.3%)	0
소방청	6 (66.7%)	0 (0.0%)	1 (11.1%)	2 (22.2%)	0
조달청	3 (75.0%)	0 (0.0%)	0 (0.0%)	1 (25.0%)	0
문화재청	1 (33.3%)	0 (0.0%)	1 (33.3%)	1 (33.3%)	0
농촌진흥청	0 (0.0%)	0 (0.0%)	1 (100.0%)	0 (0.0%)	0
산림청	3 (50.0%)	0 (0.0%)	1 (16.7%)	2 (33.3%)	0
특허청	1 (33.3%)	0 (0.0%)	2 (66.7%)	0 (0.0%)	0
질병청	4 (50.0%)	0 (0.0%)	3 (37.5%)	1 (12.5%)	0
기상청	1 (50.0%)	0 (0.0%)	1 (50.0%)	0 (0.0%)	0
해경청	3 (60.0%)	2 (40.0%)	0 (0.0%)	0 (0.0%)	0
원안위	3 (60.0%)	0 (0.0%)	1 (20.0%)	1 (20.0%)	0
통계청	0 (0.0%)	0 (0.0%)	40 (97.6%)	1 (2.4%)	0
합계	365 (41.8%)	30 (3.4%)	235 (26.9%)	235 (26.9%)	9

출처: 직접 작성

## 2. 조사 방법

행정조사를 수행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크게 6가지 유형이 있는데, ① 보고 ② 자료제출 ③ 출석·진술 ④ 현장조사 ⑤ 시료채취 등이며, 조사 방식의 유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⑥ 기타' 항목으로 두었다. 6가지 유형 중 실제 행정조사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은 유형 4(현장조사)로서 395개의 행정조사가 있었다(46%). 다음으로는 279개의 행정조사가 유형 2(자료제출)의 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었고(32%), 세 번째로 많은 유형 1(보고)의 방식은 114개의 조사가 있었다. 유형 2와 유형 1에 해당하는 행정조사의 수에 차이가 크므로, 858개 행정조사의 대부분은 유형 4와 유형 2의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할 수 있다. 나머지 유형 1, 3, 5, 6의 방식에 해당하는 행정조사는 165개로 유형 2의 경우보다 적었다. 국토부가 가장 많은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유형 4의 방식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기관은 환경부였다. 다음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통계청이 비슷한 규모로 유형 4의 방식을 활용하고 있었다. 조사 방식 유형 2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행정기관은 국토부였으며, 그다음으로 환경부가 있었다. 국토부는 69개의 행정조사를 유형 2의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는 반면에 환경부는 32개의 조사만이 그 방식을 활용하고 있어, 국토부가 유형 2의 방식을 활용한 행정조사를 상대적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3-3〉 행정기관 및 행정조사 방법 유형별 조사 수 및 비율

조사방법 부처	① 보고	② 자료제출	③출석·진술	④ 현장조사	⑤ 시료채취	⑥ 기타
기재부	1 (20.0%)	1 (20.0%)	0 (0.0%)	3 (60.0%)	0 (0.0%)	0 (0.0%)
교육부	6 (15.8%)	15 (39.5%)	0 (0.0%)	12 (31.6%)	0 (0.0%)	5 (13.2%)
과기부	4 (9.1%)	22 (50.0%)	0 (0.0%)	17 (38.6%)	0 (0.0%)	1 (2.3%)
법무부	0 (0.0%)	0 (0.0%)	0 (0.0%)	0 (0.0%)	0 (0.0%)	1 (100.0%)
행안부	0 (0.0%)	12 (50.0%)	0 (0.0%)	11 (45.8%)	0 (0.0%)	1 (4.2%)
문체부	7 (20.6%)	11 (32.4%)	0 (0.0%)	13 (38.2%)	0 (0.0%)	3 (8.8%)
농식품부	6 (9.5%)	13 (20.6%)	0 (0.0%)	41 (65.1%)	3 (4.8%)	0 (0.0%)
산업부	5 (14.3%)	19 (54.3%)	0 (0.0%)	7 (20.0%)	1 (2.9%)	3 (8.6%)
복지부	8 (11.4%)	18 (25.7%)	1 (1.4%)	31 (44.3%)	0 (0.0%)	12 (17.1%)
환경부	15 (14.9%)	31 (30.7%)	1 (1.0%)	51 (50.5%)	2 (2.0%)	1 (1.0%)
고용부	14 (37.8%)	11 (29.7%)	0 (0.0%)	11 (29.7%)	0 (0.0%)	1 (2.7%)
여가부	3 (7.3%)	3 (7.3%)	0 (0.0%)	32 (78.0%)	0 (0.0%)	3 (7.3%)
국토부	19 (15.4%)	67 (54.5%)	1 (0.8%)	32 (26.0%)	1 (0.8%)	3 (2.4%)
해수부	3 (8.1%)	9 (24.3%)	0 (0.0%)	21 (56.8%)	3 (8.1%)	1 (2.7%)
중기부	0 (0.0%)	2 (8.7%)	0 (0.0%)	16 (69.6%)	0 (0.0%)	5 (21.7%)

조사방법 부처	① 보고	② 자료제출	③출석·진술	④ 현장조사	⑤ 시료채취	⑥ 기타
보훈처	0 (0.0%)	3 (33.3%)	0 (0.0%)	5 (55.6%)	0 (0.0%)	1 (11.1%)
방통위	1 (4.0%)	19 (76.0%)	1 (4.0%)	4 (16.0%)	0 (0.0%)	0 (0.0%)
개보위	0 (0.0%)	2 (100.0%)	0 (0.0%)	0 (0.0%)	0 (0.0%)	0 (0.0%)
식약처	9 (17.6%)	7 (13.7%)	0 (0.0%)	32 (62.7%)	3 (5.9%)	0 (0.0%)
관세청	15 (48.4%)	9 (29.0%)	0 (0.0%)	7 (22.6%)	0 (0.0%)	0 (0.0%)
소방청	0 (0.0%)	2 (22.2%)	0 (0.0%)	7 (77.8%)	0 (0.0%)	0 (0.0%)
조달청	0 (0.0%)	0 (0.0%)	0 (0.0%)	3 (75.0%)	1 (25.0%)	0 (0.0%)
문화재청	0 (0.0%)	0 (0.0%)	0 (0.0%)	3 (100.0%)	0 (0.0%)	0 (0.0%)
농촌진흥청	0 (0.0%)	0 (0.0%)	0 (0.0%)	1 (100.0%)	0 (0.0%)	0 (0.0%)
산림청	1 (14.3%)	3 (42.9%)	0 (0.0%)	3 (42.9%)	0 (0.0%)	0 (0.0%)
특허청	0 (0.0%)	3 (100.0%)	0 (0.0%)	0 (0.0%)	0 (0.0%)	0 (0.0%)
질병청	3 (33.3%)	0 (0.0%)	0 (0.0%)	5 (55.6%)	0 (0.0%)	1 (11.1%)
기상청	0 (0.0%)	1 (50.0%)	0 (0.0%)	0 (0.0%)	0 (0.0%)	1 (50.0%)
해경청	0 (0.0%)	2 (40.0%)	0 (0.0%)	3 (60.0%)	0 (0.0%)	0 (0.0%)
원안위	0 (0.0%)	2 (40.0%)	0 (0.0%)	3 (60.0%)	0 (0.0%)	0 (0.0%)
통계청	0 (0.0%)	1 (2.4%)	0 (0.0%)	37 (90.2%)	0 (0.0%)	3 (7.3%)
합계	120 (13.6%)	288 (32.6%)	4 (0.5%)	411 (46.5%)	14 (1.6%)	46 (5.2%)

출처: 직접 작성

### 3. 조사 시기

행정조사는 크게 조사 기간이 불규칙한 수시조사와 특정 기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조사로 구분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두 가지 방법을 혼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874개 행정조사 중 57.9%에 해당하는 506개 행정조사는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으며, 39%인 341개는 수시로 실시되고 있었다. 그 두 가지가 섞여 있는 행정조사도 18개가 있었다. 정기적인 행정조사는 환경부가 가장 많이 실시하고 있었다. 국토부가 행정조사를 가장 많이 실시하고 있었지만, 정기조사를 실시하는 비율은 29.5%에 불과했다. 환경부 다음으로 정기조사를 많이 실시하는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44개)와 통계청(41개)이었고, 국토부는 그 다음으로 많은 36개였다. 수시조사는 국토부가 가장 많이 실시하고 있었다. 총 83개의 행정조사를 국토부는 수시조사의 방식으로 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많이 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39개) 및 환경부(39개)보다 2배 이상 많았다. 따라서 정기적인 조사에 있어서는 환경부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수시조사에 있어서는 국토부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표 3-4〉 행정기관 및 행정조사 시기별(수시/정기) 조사 수와 비율

부처	수시/정기		수시		수시 및 정기		정기	
	수시	정기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기재부	4		4	(80.0%)	0	(0.0%)	1	(20.0%)
교육부	7		7	(18.4%)	3	(7.9%)	28	(73.7%)
과기부	10		10	(22.7%)	0	(0.0%)	34	(77.3%)
법무부	1		1	(100.0%)	0	(0.0%)	0	(0.0%)
행안부	13		13	(54.2%)	1	(4.2%)	10	(41.7%)
문체부	15		15	(44.1%)	0	(0.0%)	19	(55.9%)
농식품부	39		39	(61.9%)	0	(0.0%)	24	(38.1%)
산업부	16		16	(45.7%)	0	(0.0%)	19	(54.3%)
복지부	19		19	(31.1%)	5	(8.2%)	37	(60.7%)
환경부	39		39	(38.6%)	3	(3.0%)	59	(58.4%)
고용부	18		18	(50.0%)	0	(0.0%)	18	(50.0%)
여가부	6		6	(14.6%)	1	(2.4%)	34	(82.9%)
국토부	83		83	(68.0%)	3	(2.5%)	36	(29.5%)
해수부	21		21	(56.8%)	1	(2.7%)	15	(40.5%)
중기부	2		2	(10.5%)	0	(0.0%)	17	(89.5%)
보훈처	2		2	(22.2%)	1	(11.1%)	6	(66.7%)
방통위	9		9	(36.0%)	0	(0.0%)	16	(64.0%)
개보위	1		1	(50.0%)	0	(0.0%)	1	(50.0%)
식약처	7		7	(13.7%)	0	(0.0%)	44	(86.3%)
관세청	9		9	(30.0%)	0	(0.0%)	21	(70.0%)
소방청	4		4	(44.4%)	0	(0.0%)	5	(55.6%)
조달청	2		2	(50.0%)	0	(0.0%)	2	(50.0%)
문화재청	0		0	(0.0%)	0	(0.0%)	3	(100.0%)
농촌진흥청	0		0	(0.0%)	0	(0.0%)	1	(100.0%)
산림청	3		3	(50.0%)	0	(0.0%)	3	(50.0%)
특허청	1		1	(33.3%)	0	(0.0%)	2	(66.7%)
질병청	5		5	(62.5%)	0	(0.0%)	3	(37.5%)
기상청	0		0	(0.0%)	0	(0.0%)	2	(100.0%)
해경청	5		5	(100.0%)	0	(0.0%)	0	(0.0%)
원안위	0		0	(0.0%)	0	(0.0%)	5	(100.0%)
통계청	0		0	(0.0%)	0	(0.0%)	41	(100.0%)
합계	341		341	(39.4%)	18	(2.1%)	506	(58.5%)

출처: 직접 작성

## 4. 조사대상 유형

행정조사를 받게 되는 대상자는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는데, ① 국민 ② 법인·단체 ③ 국민과 법인·단체 모두, ④기타가 그것들이다. 4가지 유형 중 가장 많은 행정조사를 받는 것은 ‘법인·단체’로서 874개 전체 행정조사 중 69.9%에 해당하는 611개가 있었다. 즉 전체 행정조사의 대부분은 법인·단체에 해당하는 대상자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다음으로 ‘국민과 법인·단체 모두’(137개, 15.7%)와 ‘국민’(107개, 12.2%)이었는데, ‘법인·단체’인 경우와는 큰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행정조사의 대상자는 ‘법인·단체’로 편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법인·단체’를 대상으로 가장 많은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국토부와 환경부였으나, 이는 국토부와 환경부가 행정조사를 다른 행정기관에 비해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으며, 실제로 국토부와 환경부가 실시하는 행정조사에서 법인·단체에 해당하는 경우는 각각 79.7%와 68.3%였다. 농촌진흥청이나 해경청, 기상청 등은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수가 적었지만, 오로지 ‘법인·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조사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보다 많은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과기부, 방통위, 관세청 등도 ‘법인·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비율이 국토부나 환경부보다 높았다. 한편 조사대상 유형이 불분명하거나 3가지 경우 외의 경우에는 ‘기타’로 구분하였는데, 그에 해당하는 행정조사는 총 19개(2.2%)였으며, 복지부(6개)와 중기부(4개)에서 가장 많았다.

〈표 3-5〉 행정기관 및 조사대상 유형별 행정조사 수 및 비율

부처 \ 조사대상 유형	① 국민	② 법인·단체	③ 모두	④기타
기재부	1 (20.0%)	3 (60.0%)	1 (20.0%)	0 (0%)
교육부	11 (28.9%)	22 (57.9%)	5 (13.2%)	0 (0%)
과기부	1 (2.3%)	39 (88.6%)	4 (9.1%)	0 (0.0%)
법무부	1 (100.0%)	0 (0.0%)	0 (0.0%)	0 (0.0%)
행안부	3 (12.5%)	12 (50.0%)	8 (33.3%)	1 (4.2%)
문체부	5 (14.7%)	24 (70.6%)	5 (14.7%)	0 (0.0%)
농식품부	0 (0.0%)	55 (87.3%)	7 (11.1%)	1 (1.6%)
산업부	0 (0.0%)	27 (77.1%)	7 (20.0%)	1 (2.9%)
복지부	13 (20.3%)	32 (50.0%)	13 (20.3%)	6 (9.4%)
환경부	7 (6.9%)	69 (68.3%)	24 (23.8%)	1 (1.0%)
고용부	1 (2.7%)	32 (86.5%)	4 (10.8%)	0 (0.0%)
여가부	21 (51.2%)	16 (39.0%)	4 (9.8%)	0 (0.0%)
국토부	9 (7.3%)	98 (79.7%)	16 (13.0%)	0 (0.0%)

부처 \ 조사대상 유형	① 국민	② 법인·단체	③ 모두	④기타
해수부	4 (10.8%)	20 (54.1%)	10 (27.0%)	3 (8.1%)
중기부	1 (4.3%)	17 (73.9%)	1 (4.3%)	4 (17.4%)
보훈처	3 (33.3%)	5 (55.6%)	0 (0.0%)	1 (11.1%)
방통위	1 (4.0%)	23 (92.0%)	1 (4.0%)	0 (0.0%)
개보위	0 (0.0%)	1 (50.0%)	1 (50.0%)	0 (0.0%)
식약처	0 (0.0%)	49 (96.1%)	2 (3.9%)	0 (0.0%)
관세청	0 (0.0%)	28 (93.3%)	2 (6.7%)	0 (0.0%)
소방청	3 (33.3%)	4 (44.4%)	2 (22.2%)	0 (0.0%)
조달청	0 (0.0%)	3 (75.0%)	0 (0.0%)	1 (25.0%)
문화재청	2 (66.7%)	0 (0.0%)	1 (33.3%)	0 (0.0%)
농촌진흥청	0 (0.0%)	1 (100.0%)	0 (0.0%)	0 (0.0%)
산림청	2 (33.3%)	4 (66.7%)	0 (0.0%)	0 (0.0%)
특허청	0 (0.0%)	2 (66.7%)	1 (33.3%)	0 (0.0%)
질병청	1 (12.5%)	6 (75.0%)	1 (12.5%)	0 (0.0%)
기상청	0 (0.0%)	2 (100.0%)	0 (0.0%)	0 (0.0%)
해경청	0 (0.0%)	5 (100.0%)	0 (0.0%)	0 (0.0%)
원안위	0 (0.0%)	4 (80.0%)	1 (20.0%)	0 (0.0%)
통계청	17 (41.5%)	8 (19.5%)	16 (39.0%)	0 (0.0%)
합계	107 (12.2%)	611 (69.9%)	137 (15.7%)	19 (2.2%)

출처: 직접 작성

## 5. 조사대상 기업 유형

행정조사 대상자인 기업들의 유형을 구분하면 6가지 유형(① 대기업, ②중소기업, ③소상공인, ④모든 유형, ⑤중소기업+소상공인, ⑥기타)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행정조사가 가장 많이 받는 기업 유형은 특정 유형으로 한정하지 않는 ‘모든 유형’으로서 전체의 49%에 해당하는 433개의 행정조사가 있었다. 다음으로 가장 많은 행정조사를 받은 기업 유형은 ‘기타’로서 총 299개의 행정조사가 있었다. 이 ‘기타’ 유형에는, 조사대상 기업의 유형을 특정하기 어렵거나 혹은 관련 정보 부족으로 인한 유형을 파악하기 어려운 행정조사를 의미한다. 기업의 유형이 워낙 다양하고 그 특성에 대한 정보가 행정조사 자료에 나타나 있지 않아, 행정조사 자료만으로 기업 유형을 유추하는 것은 불확실한 부분이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기타’유형의 행정조사가 많이 발견되는 기관은 국토부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복지부, 여가부, 교육부 등이 있었다. 환경부의 경우 국토부





기업 구분 부처	①대기업	②중소기업	③소상공인	④모든 유형	⑤중소기업+ 소상공인	⑥기타
방통위	2 (8.0%)	2 (8.0%)	0 (0.0%)	15 (60.0%)	0 (0.0%)	6 (24.0%)
개보위	0 (0.0%)	0 (0.0%)	0 (0.0%)	2 (100.0%)	0 (0.0%)	0 (0.0%)
식약처	0 (0.0%)	1 (2.0%)	0 (0.0%)	49 (96.1%)	0 (0.0%)	1 (2.0%)
관세청	6 (20.0%)	3 (10.0%)	1 (3.3%)	17 (56.7%)	1 (3.3%)	2 (6.7%)
소방청	0 (0.0%)	2 (22.2%)	0 (0.0%)	1 (11.1%)	1 (11.1%)	5 (55.6%)
조달청	0 (0.0%)	0 (0.0%)	0 (0.0%)	3 (75.0%)	0 (0.0%)	1 (25.0%)
문화재청	0 (0.0%)	0 (0.0%)	0 (0.0%)	3 (100.0%)	0 (0.0%)	0 (0.0%)
농촌진흥청	0 (0.0%)	0 (0.0%)	1 (100.0%)	0 (0.0%)	0 (0.0%)	0 (0.0%)
산림청	1 (12.5%)	1 (12.5%)	3 (37.5%)	3 (37.5%)	0 (0.0%)	0 (0.0%)
특허청	0 (0.0%)	0 (0.0%)	0 (0.0%)	3 (100.0%)	0 (0.0%)	0 (0.0%)
질병청	0 (0.0%)	0 (0.0%)	0 (0.0%)	3 (37.5%)	0 (0.0%)	5 (62.5%)
기상청	0 (0.0%)	0 (0.0%)	0 (0.0%)	2 (100.0%)	0 (0.0%)	0 (0.0%)
해경청	0 (0.0%)	0 (0.0%)	5 (100.0%)	0 (0.0%)	0 (0.0%)	0 (0.0%)
원안위	1 (20.0%)	0 (0.0%)	0 (0.0%)	3 (60.0%)	0 (0.0%)	1 (20.0%)
통계청	0 (0.0%)	0 (0.0%)	1 (2.4%)	16 (39.0%)	1 (2.4%)	23 (56.1%)
합계	29 (3.3%)	62 (7.1%)	33 (3.8%)	433 (49.4%)	20 (2.3%)	299 (34.1%)

출처: 직접 작성

## 6. 조사대상 기업 업종 관련 특징

조사대상 기업의 업종에 대해서도 23가지로 구분하고, 여기에 구분이 어려운 경우를 '기타' 항목으로 두고 정리를 하였다. 23가지 업종은 다음과 같다.

- |                           |                           |                       |
|---------------------------|---------------------------|-----------------------|
| ㉠농업, 임업 및 어업              | ㉡광업                       | ㉢제조업                  |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 ㉥건설업                  |
| ㉦도매 및 소매업                 | ㉧운수 및 창고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 ㉩정보통신업                    | ㉪금융 및 보험업                 | ㉫부동산업                 |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
| ㉯교육서비스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가구 내 고용활동, 자가소비 생산활동     | ㉴국제 및 외국기관            |
| ㉵모든 업종                    |                           |                       |

23가지 업종 중 ‘전 업종’을 대상으로 한 행정조사가 가장 많았다(232개). 그 다음으로는 ‘농업, 임업 및 어업’과 ‘제조업’ 업종이 각각 72개, 75개로 많았으나, 기타에 속한 경우도 85개여서, 기타에 속한 행정조사를 재분류할 경우에는 바뀔 가능성이 있었다. 232개의 행정조사가 이루어진,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는 한 행정조사는 주로 환경부(59개), 식약처(32개), 고용부(27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국토부는 다른 기관에 비해 실시하는 행정조사가 많았지만(127개)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한 행정조사는 18개, ‘기타’에 해당하는 경우도 18개로 비슷했으며, 무엇보다 ‘운수 및 창고업’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조사가 35개로 가장 많았다(27.6%).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수도 많지만,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59개)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므로(57.8%) 특정 업종으로의 편중이 매우 적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환경부, 식약처, 고용부의 경우에는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수도 상당했으나, 그 대부분이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특정 업종에의 편중은 발견되지 않았다.

반면에, 농식품부, 과기부, 복지부, 교육부에서는 특정 업종으로의 편중 현상이 발견되었다. 이들 기관은 사업의 대상자 또는 수혜자 등이 특정 업종에 종사하는 집단으로 집중되어 있어, 행정조사에 업무 특성이 투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표 3-7〉 행정기관 및 조사대상 기업의 업종별 행정조사 수와 비율(1)

부처	업종	업종											
		(a)	(b)	(c)	(d)	(e)	(f)	(g)	(h)	(i)	(j)	(k)	(l)
기재부		0	0	0	0	0	0	0	0	0	0	2	0
교육부		0	0	0	0	0	1	0	0	0	0	0	0
과기부		0	0	2	0	0	0	0	0	0	23	0	0
법무부		0	0	0	0	0	0	0	0	0	0	0	0
행안부		0	0	0	0	0	2	0	0	1	0	1	0
문체부		0	0	0	0	0	0	0	0	0	2	0	0
농식품부		41	1	9	0	0	0	5	2	0	0	0	0
산업부		0	3	6	2	0	1	1	0	0	0	0	0
복지부		0	0	3	0	0	0	2	0	1	0	0	0
환경부		2	1	11	0	14	2	2	0	0	0	0	0
고용부		0	0	1	0	0	1	0	0	0	0	0	0
여가부		0	0	0	0	0	0	0	0	3	0	0	0
국토부		0	3	8	0	0	9	0	35	0	1	5	18
해수부		11	0	2	0	0	1	2	9	0	0	1	0
중기부		0	0	3	0	0	0	4	0	0	0	0	0

부처	업종	(a)	(b)	(c)	(d)	(e)	(f)	(g)	(h)	(i)	(j)	(k)	(l)
		보훈처	0	0	1	0	0	0	0	0	0	0	0
방통위	0	0	0	0	0	0	0	0	0	0	23	0	0
개보위	0	0	0	0	0	0	0	0	0	0	0	0	0
식약처	0	0	9	0	0	0	3	0	0	0	0	0	0
관세청	0	0	9	0	0	0	5	7	0	4	0	0	0
소방청	0	0	1	0	0	0	0	0	0	0	0	0	1
조달청	0	0	3	0	0	0	0	0	0	0	0	0	0
문화재청	0	0		0	0	0	0	0	0	0	0	0	0
농촌진흥청	1	0	0	0	0	0	0	0	0	0	0	0	0
산림청	6	0	2	0	0	0	2	2	0	0	0	0	0
특허청	0	0	0	0	0	0	0	0	0	0	0	0	0
질병청	0	0	0	0	0	0	0	0	0	0	0	0	0
기상청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경청	0	0	0	0	0	0	0	0	0	0	0	0	0
원안위	0	2	0	2	0	0	1	0	0	0	0	0	0
통계청	11	0	5	0	0	2	3	1	0	0	0	0	0
합계	72	10	75	4	14	19	30	56	5	53	9	19	

출처: 직접 작성

\*상위 3개는 강조 표시

〈표 3-8〉 행정기관 및 조사대상 기업의 업종별 행정조사 수와 비율(2)

부처	업종	(m)	(n)	(o)	(p)	(q)	(r)	(s)	(t)	(u)	(v)	기타
		기재부	0	0	0	0	0	0	0	0	0	0
교육부	0	0	0	26	0	0	0	0	0	0	4	7
과기부	10	0	0	0	0	0	0	0	0	0	9	1
법무부	0	0	0	0	0	0	0	0	0	0	0	1
행안부	0	6	0	1	0	0	0	0	0	0	8	5
문체부	0	0	2	0	0	24	1	0	0	0	1	4
농식품부	2	0	1	0	0	1	0	0	0	0	1	0
산업부	2	0	0	1	0	0	1	0	0	0	18	0
복지부	0	0	0	0	37	0	2	0	0	0	10	12
환경부	6	1	1	1	1	0	1	0	0	0	59	0
고용부	1	0	1	1	1	0	3	0	0	0	27	1
여가부	0	0	1	2	8	0	3	0	0	0	4	20
국토부	8	3	2	1	0	0	9	0	0	0	18	7

부처	업종										
	㉓	㉔	㉕	㉖	㉗	㉘	㉙	㉚	㉛	㉜	기타
해수부	3	1	3	0	0	0	1	0	0	3	0
중기부	0	0	0	0	0	0	0	0	0	12	4
보훈처	0	0	0	1	0	0	0	0	0	3	4
방통위	0	0	0	0	0	0	0	0	0	2	0
개보위	0	0	0	0	0	0	0	0	0	2	0
식약처	5	0	0	2	1	0	0	0	0	32	0
관세청	1	0	0	0	0	0	1	0	0	3	0
소방청	1	1	1	0	0	0	0	0	0	1	3
조달청	0	0	0	0	0	0	0	0	0	0	1
문화재청	0	0	0	0	0	0	0	0	0	3	0
농촌진흥청	0	0	0	0	0	0	0	0	0	0	0
산림청	0	0	0	0	0	0	0	0	0	0	0
특허청	0	0	0	0	0	0	0	0	0	3	0
질병청	0	0	0	0	6	0	0	0	0	2	0
기상청	2	0	0	0	0	0	0	0	0	0	0
해경청	0	0	0	1	0	3	1	0	0	0	0
원안위	0	0	0	0	0	0	0	0	0	0	0
통계청	0	0	0	0	0	0	0	0	0	6	13
합계	41	12	12	37	54	28	23	0	0	232	85

출처: 직접 작성  
\*상위 3개는 강조 표시

## 7. 행정조사 시 자료요구 건수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조사대상자가 부담을 느끼는 원인의 하나는 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료요구다. 자료 요구가 많을수록 조사대상자가 느끼는 부담은 클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자료요구의 건수를 중심으로 실태를 정리하였다. 단위 자료의 양과 상관없이 자료 요구의 수를 기준으로 0건부터 7건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자료 요구 건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타’ 항목에 두었다. 그 결과 ‘기타’ 항목에 가장 많은 152개의 행정조사가 있어 보다 정확한 정보를 활용한 재분류의 필요성이 있었다.

가장 많은 자료 요구 건수는 1건이었다. 874개 행정조사 중 252개의 행정조사가 1건의 자료요구를 동반하고 있었는데, 행정기관 중에서는 국토부와 환경부가 가장 많았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수가 많기 때문으로 볼 수 있는데, 모든 항목에 있어서 국토부와 환경부의

행정조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의 수가 많은 만큼 요청하는 자료의 건수도 다양하다고 볼 수 있다. 자료 요구가 없는 행정조사는 152개로 전체의 17.4%에 불과했으므로, 대부분의 행정조사가 자료를 요구하고 있었다. 7건 이상의 자료를 요구하는 행정조사도 95개로서 전체의 10.9% 수준이었다. 5건이나 6건을 요구하는 경우가 각각 38개, 20개였던 것을 고려하면, 적어도 5건 이상의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는 전체 행정조사의 17.5%였다. 행정조사의 성격에 따라 자료 요구가 불가피한 경우도 있고, 그러한 자료요구의 과도한 부담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불분명하므로, 이 결과만으로 행정조사를 통한 자료요구의 부담 수준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자료요구가 없는 행정조사의 비율(16.2%)과 비슷한 수준으로 5건 이상의 자료요구가 수반되는 행정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7건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 중, 통계청이 31개로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여가부(9개)가 가장 많았다. 통계청은 실시하고 있는 행정조사의 85.3% 정도가 5건 이상의 자료를 요구하고 있었다.

〈표 3-9〉 행정기관 및 자료요구 건수 관련 행정조사 수와 비율(1)

부처 \ 건수	0	1	2	3	4
기재부	3 (60.0%)	1 (20.0%)	0 (0.0%)	0 (0.0%)	0 (0.0%)
교육부	0 (0.0%)	7 (18.4%)	1 (2.6%)	2 (5.3%)	1 (2.6%)
과기부	7 (15.9%)	26 (59.1%)	3 (6.8%)	4 (9.1%)	2 (4.5%)
법무부	0 (0.0%)	0 (0.0%)	0 (0.0%)	0 (0.0%)	0 (0.0%)
행안부	1 (4.2%)	13 (54.2%)	2 (8.3%)	1 (4.2%)	2 (8.3%)
문체부	3 (8.8%)	18 (52.9%)	1 (2.9%)	3 (8.8%)	1 (2.9%)
농식품부	0 (0.0%)	15 (23.8%)	11 (17.5%)	6 (9.5%)	4 (6.3%)
산업부	13 (36.1%)	14 (38.9%)	1 (2.8%)	2 (5.6%)	1 (2.8%)
복지부	16 (25.4%)	6 (9.5%)	3 (4.8%)	1 (1.6%)	2 (3.2%)
환경부	30 (29.7%)	27 (26.7%)	10 (9.9%)	11 (10.9%)	6 (5.9%)
고용부	3 (8.1%)	13 (35.1%)	1 (2.7%)	0 (0.0%)	4 (10.8%)
여가부	2 (4.9%)	2 (4.9%)	0 (0.0%)	0 (0.0%)	3 (7.3%)
국토부	21 (17.1%)	44 (35.8%)	15 (12.2%)	9 (7.3%)	6 (4.9%)
해수부	14 (37.8%)	7 (18.9%)	8 (21.6%)	2 (5.4%)	1 (2.7%)
중기부	6 (26.1%)	10 (43.5%)	2 (8.7%)	0 (0.0%)	0 (0.0%)
보훈처	1 (11.1%)	5 (55.6%)	0 (0.0%)	1 (11.1%)	1 (11.1%)
방통위	0 (0.0%)	1 (4.0%)	3 (12.0%)	3 (12.0%)	0 (0.0%)
개보위	0 (0.0%)	0 (0.0%)	0 (0.0%)	0 (0.0%)	0 (0.0%)
식약처	6 (11.8%)	19 (37.3%)	4 (7.8%)	4 (7.8%)	10 (19.6%)
관세청	8 (26.7%)	14 (46.7%)	2 (6.7%)	4 (13.3%)	0 (0.0%)

부처	건수	0	1	2	3	4
	소방청	1 (11.1%)	0 (0.0%)	0 (0.0%)	0 (0.0%)	0 (0.0%)
조달청	1 (25.0%)	0 (0.0%)	0 (0.0%)	0 (0.0%)	0 (0.0%)	0 (0.0%)
문화재청	0 (0.0%)	2 (66.7%)	0 (0.0%)	0 (0.0%)	0 (0.0%)	0 (0.0%)
농촌진흥청	0 (0.0%)	0 (0.0%)	1 (100.0%)	0 (0.0%)	0 (0.0%)	0 (0.0%)
산림청	0 (0.0%)	1 (16.7%)	3 (50.0%)	1 (16.7%)	1 (16.7%)	1 (16.7%)
특허청	0 (0.0%)	2 (66.7%)	0 (0.0%)	0 (0.0%)	0 (0.0%)	0 (0.0%)
질병청	3 (37.5%)	1 (12.5%)	1 (12.5%)	0 (0.0%)	0 (0.0%)	0 (0.0%)
기상청	1 (50.0%)	1 (50.0%)	0 (0.0%)	0 (0.0%)	0 (0.0%)	0 (0.0%)
해경청	1 (20.0%)	0 (0.0%)	0 (0.0%)	0 (0.0%)	0 (0.0%)	2 (40.0%)
원안위	0 (0.0%)	2 (40.0%)	0 (0.0%)	0 (0.0%)	0 (0.0%)	1 (20.0%)
통계청	1 (2.4%)	1 (2.4%)	1 (2.4%)	0 (0.0%)	0 (0.0%)	0 (0.0%)
합계	142 (16.2%)	252 (28.8%)	73 (8.4%)	54 (6.2%)	48 (5.5%)	

출처: 직접 작성

〈표 3-10〉 행정기관 및 자료요구 건수 관련 행정조사 수와 비율(2)

부처	건수	5	6	7건 이상	기타
	기재부	0 (0.0%)	0 (0.0%)	0 (0.0%)	0 (0.0%)
교육부	2 (5.3%)	1 (2.6%)	2 (5.3%)	22 (57.9%)	
과기부	1 (2.3%)	0 (0.0%)	1 (2.3%)	0 (0.0%)	
법무부	0 (0.0%)	0 (0.0%)	0 (0.0%)	1 (100.0%)	
행안부	0 (0.0%)	0 (0.0%)	0 (0.0%)	5 (20.8%)	
문체부	2 (5.9%)	1 (2.9%)	3 (8.8%)	2 (5.9%)	
농식품부	1 (1.6%)	1 (1.6%)	1 (1.6%)	24 (38.1%)	
산업부	0 (0.0%)	2 (5.6%)	1 (2.8%)	2 (5.6%)	
복지부	5 (7.9%)	2 (3.2%)	9 (14.3%)	19 (30.2%)	
환경부	4 (4.0%)	1 (1.0%)	0 (0.0%)	12 (11.9%)	
고용부	8 (21.6%)	1 (2.7%)	6 (16.2%)	1 (2.7%)	
여가부	2 (4.9%)	1 (2.4%)	9 (22.0%)	22 (53.7%)	
국토부	6 (4.9%)	2 (1.6%)	5 (4.1%)	15 (12.2%)	
해수부	1 (2.7%)	1 (2.7%)	3 (8.1%)	0 (0.0%)	
중기부	0 (0.0%)	1 (4.3%)	0 (0.0%)	4 (17.4%)	
보훈처	0 (0.0%)	1 (11.1%)	0 (0.0%)	0 (0.0%)	
방통위	1 (4.0%)	0 (0.0%)	3 (12.0%)	14 (56.0%)	
개보위	0 (0.0%)	0 (0.0%)	0 (0.0%)	2 (100.0%)	
식약처	0 (0.0%)	1 (2.0%)	6 (11.8%)	1 (2.0%)	

부처	건수	5	6	7건 이상	기타
	관세청		0 (0.0%)	0 (0.0%)	2 (6.7%)
소방청		1 (11.1%)	1 (11.1%)	6 (66.7%)	0 (0.0%)
조달청		0 (0.0%)	0 (0.0%)	2 (50.0%)	1 (25.0%)
문화재청		1 (33.3%)	0 (0.0%)	0 (0.0%)	0 (0.0%)
농촌진흥청		0 (0.0%)	0 (0.0%)	0 (0.0%)	0 (0.0%)
산림청		0 (0.0%)	0 (0.0%)	0 (0.0%)	0 (0.0%)
특허청		0 (0.0%)	0 (0.0%)	0 (0.0%)	1 (33.3%)
질병청		1 (12.5%)	0 (0.0%)	2 (25.0%)	0 (0.0%)
기상청		0 (0.0%)	0 (0.0%)	0 (0.0%)	0 (0.0%)
해경청		1 (20.0%)	0 (0.0%)	1 (20.0%)	0 (0.0%)
원안위		0 (0.0%)	0 (0.0%)	2 (40.0%)	0 (0.0%)
통계청		1 (2.4%)	3 (7.3%)	31 (75.6%)	3 (7.3%)
합계		38 (4.3%)	20 (2.3%)	95 (10.9%)	152 (17.4%)

출처: 직접 작성

## 8. 행정조사 거부에 대한 제재 여부 및 내용

행정조사를 거부한 경우에 대해 제재를 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874개 행정조사 중 제재를 할 수 있는 행정조사는 526개로 60.2%에 해당했다. 나머지 348개의 행정조사는 조사를 거부해도 제재를 할 수 없었으며, 그 비율은 39.8%였다. 특이한 점은 행정조사를 다른 기관들보다 많이 실시하고 있는 국토부와 환경부에 있어, 국토부는 전체 행정기관의 현황과 유사하게 제재를 하지 않는 경우가 약 39%, 제재하는 경우가 약 61%에 해당했지만, 환경부는 제재를 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것이다. 환경부의 경우 제재를 하지 않는 행정조사는 11개로 10.9%에 해당했고, 제재를 하는 행정조사는 90개로 약 89.1%였다. 따라서 환경부의 행정조사는 대부분 거부에 대한 제재하는 강제력이 있었다. 다른 특징은 식약처의 조사 대부분도 거부에 대한 제재가 있었다는 것이다. 식약처의 51개 행정조사 중 거부에 대한 제재를 하는 경우가 47개로 그 비율은 92.2%였다. 대부분의 조사가 거부에 대해 제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여가부의 경우에는 41개의 행정조사 중 38개는 거부에 대해서도 제재를 하고 있지 않아(92.7%), 식약처와 반대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거부에 대한 제재 내용은 크게 시정명령과 벌금으로 구분했으며, 벌금에 대해서도 그 규모에 따라서 '100만 원 이하', '500만 원 이하', '1000만 원 미만', '1000만 원 이상'으로 구분하

였고, 여기에 조건부로 벌금을 매기는 경우는 별도의 항목으로 두었다. 거부에 대한 행정제재를 하는 경우에 한해서, 시정명령만을 하는 행정조사는 108개로 15.7%였다. 식약처가 가장 많은 31개의 행정조사에서 시정명령을 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기관이 시정명령보다는 벌금을 통한 제재를 하고 있었는데, 벌금액과 관련해서는 '100만 원 초과 ~ 500만 원 이하'가 가장 많았다. 총 231개의 행정조사가 그러했으며 제재를 하고 있는 행정조사 중 33.5%를 차지하고 있었다. '100만 원 이하' 및 '500만 원 초과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행정조사의 수는 각각 125개(18.1%), 153개(22.2%)로 유사했다. 1,000만 원을 초과하는 다소 무거운 벌금을 매기는 행정조사는 46개(6.7%)에 불과했다.

특이한 점은 1,000만 원을 초과하는 무거운 벌금을 매기는 행정조사에 있어서, 행정조사의 수가 많은 국토부와 환경부를 제외하고 산업부와 방통위가 있었다는 것이다. 산업부의 행정조사 중 거부에 대해 제재하는 경우는 28개였는데, 그중 21.4%인 6개가 거부 시 1,000만 원이 넘는 벌금을 부과하고 있었으며, 방통위는 거부에 대한 제재를 하는 20개의 행정조사 중 9개의 행정조사(45.0%)가 1,000만 원이 넘는 벌금을 부과하고 있었다.

〈표 3-11〉 행정기관 및 거부에 대한 제재 여부 관련 행정조사 수와 비율

부처 \ 제재	제재 없음	제재 있음
기재부	3 (60.0%)	2 (40.0%)
교육부	33 (86.8%)	5 (13.2%)
과기부	23 (52.3%)	21 (47.7%)
법무부	1 (100.0%)	0 (0.0%)
행안부	13 (54.2%)	11 (45.8%)
문체부	24 (70.6%)	10 (29.4%)
농식품부	24 (38.1%)	39 (61.9%)
산업부	18 (51.4%)	17 (48.6%)
복지부	29 (45.3%)	35 (54.7%)
환경부	11 (10.9%)	90 (89.1%)
고용부	13 (35.1%)	24 (64.9%)
여가부	38 (92.7%)	3 (7.3%)
국토부	48 (39.0%)	75 (61.0%)
해수부	11 (29.7%)	26 (70.3%)
중기부	20 (87.0%)	3 (13.0%)
보훈처	7 (77.8%)	2 (22.2%)
방통위	7 (28.0%)	18 (72.0%)
개보위	2 (100.0%)	0 (0.0%)



부처	제재	제재 없음		제재 있음	
		수	비율	수	비율
식약처		4	(7.8%)	47	(92.2%)
관세청		1	(3.3%)	29	(96.7%)
소방청		2	(22.2%)	7	(77.8%)
조달청		2	(50.0%)	2	(50.0%)
문화재청		3	(100.0%)	0	(0.0%)
농촌진흥청		1	(100.0%)	0	(0.0%)
산림청		1	(16.7%)	5	(83.3%)
특허청		2	(66.7%)	1	(33.3%)
질병청		3	(37.5%)	5	(62.5%)
기상청		1	(50.0%)	1	(50.0%)
해경청		1	(20.0%)	4	(80.0%)
원안위		1	(20.0%)	4	(80.0%)
통계청		1	(2.4%)	40	(97.6%)
합계		348	(39.8%)	526	(60.2%)

출처: 직접 작성

〈표 3-12〉 행정기관 및 조사 거부에 대한 제재의 내용에 관한 행정조사 수와 비율

부처	제재 시정명령	제재 있음				
		벌금(과태료)(1회 기준)				
		100만 원 이하	500만 원 이하	1,000만 원 이하	1,000만 원 초과	조건부
기재부	0 (0.0%)	1 (50.0%)	0 (0.0%)	1 (50.0%)	0 (0.0%)	0 (0.0%)
교육부	3 (33.3%)	1 (11.1%)	4 (44.4%)	0 (0.0%)	0 (0.0%)	1 (11.1%)
과기부	11 (16.9%)	4 (6.2%)	15 (23.1%)	22 (33.8%)	1 (1.5%)	12 (18.5%)
법무부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행안부	2 (18.2%)	2 (18.2%)	4 (36.4%)	3 (27.3%)	0 (0.0%)	0 (0.0%)
문체부	0 (0.0%)	2 (15.4%)	4 (30.8%)	5 (38.5%)	1 (7.7%)	1 (7.7%)
농식품부	1 (1.7%)	11 (19.0%)	30 (51.7%)	10 (17.2%)	0 (0.0%)	6 (10.3%)
산업부	2 (7.1%)	3 (10.7%)	12 (42.9%)	2 (7.1%)	6 (21.4%)	3 (10.7%)
복지부	14 (35.0%)	3 (7.5%)	11 (27.5%)	8 (20.0%)	3 (7.5%)	1 (2.5%)
환경부	7 (6.3%)	26 (23.2%)	43 (38.4%)	32 (28.6%)	4 (3.6%)	0 (0.0%)
고용부	2 (8.0%)	1 (4.0%)	20 (80.0%)	2 (8.0%)	0 (0.0%)	0 (0.0%)
여가부	0 (0.0%)	0 (0.0%)	3 (100.0%)	0 (0.0%)	0 (0.0%)	0 (0.0%)
국토부	6 (6.3%)	8 (8.4%)	45 (47.4%)	26 (27.4%)	7 (7.4%)	3 (3.2%)
해수부	3 (10.3%)	4 (13.8%)	10 (34.5%)	12 (41.4%)	0 (0.0%)	0 (0.0%)
중기부	1 (33.3%)	0 (0.0%)	1 (33.3%)	1 (33.3%)	0 (0.0%)	0 (0.0%)

부처	제재 시정명령	제재 있음				
		벌금(과태료)(1회 기준)				
		100만 원 이하	500만 원 이하	1,000만 원 이하	1,000만 원 초과	조건부
보훈처	4 (66.7%)	0 (0.0%)	2 (33.3%)	0 (0.0%)	0 (0.0%)	0 (0.0%)
방통위	3 (15.0%)	0 (0.0%)	1 (5.0%)	7 (35.0%)	9 (45.0%)	0 (0.0%)
개보위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식약처	31 (44.3%)	11 (15.7%)	18 (25.7%)	4 (5.7%)	6 (8.6%)	0 (0.0%)
관세청	10 (31.3%)	5 (15.6%)	3 (9.4%)	10 (31.3%)	4 (12.5%)	0 (0.0%)
소방청	0 (0.0%)	0 (0.0%)	2 (28.6%)	4 (57.1%)	1 (14.3%)	0 (0.0%)
조달청	2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문화재청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농촌진흥청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산림청	0 (0.0%)	2 (40.0%)	2 (40.0%)	0 (0.0%)	1 (20.0%)	0 (0.0%)
특허청	0 (0.0%)	0 (0.0%)	0 (0.0%)	0 (0.0%)	1 (100.0%)	0 (0.0%)
질병청	4 (80.0%)	0 (0.0%)	0 (0.0%)	0 (0.0%)	1 (20.0%)	0 (0.0%)
기상청	0 (0.0%)	0 (0.0%)	1 (100.0%)	0 (0.0%)	0 (0.0%)	0 (0.0%)
해경청	2 (50.0%)	1 (25.0%)	0 (0.0%)	1 (25.0%)	0 (0.0%)	0 (0.0%)
원안위	0 (0.0%)	0 (0.0%)	0 (0.0%)	3 (75.0%)	1 (25.0%)	0 (0.0%)
통계청	0 (0.0%)	40 (100.0%)	0 (0.0%)	0 (0.0%)	0 (0.0%)	0 (0.0%)
합계	108 (15.7%)	125 (18.1%)	231 (33.5%)	153 (22.2%)	46 (6.7%)	27 (3.9%)

출처: 직접 작성

## 제3절

### 행정조사의 특징



여기서는 앞서 제시한 31개 중앙행정기관 중 제 1집단과 제 2집단이 실시하고 있는 행정조사에 대해 개별 기관별로 특징을 살펴보았다. 제1집단과 제2집단에 속한 17개 행정기관은 전체 행정조사 중 92.8%인 811개를 실시하고 있었다. 제 1집단은 제 2집단에 속한 행정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있었다. 그 17개 행정기관은 평균적으로 47.7개의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제 1집단에 속한 두 개의 행정 기관은 평균 112개의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뚜렷한 차이가 있다.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수가 10개 이상인 제 1집단과 제2집단의 행정기관들의 행정조사의 조사목적, 조사방법, 조사주기, 조사거부 시의 제재 여부에 대해 살펴보고, 제 1집단의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행정조사에 대해서는 근거법을 검토하여 조사의 내용에 대해 정리하였다.

#### 1. 제1집단: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국토부가 실시하고 있는 행정조사는 123개다. 각 행정조사의 근거법령(시행령 포함)을 통해 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종류가 43가지로 매우 다양한 편이다. 각 법률 당 2.86개의 행정조사가 이루어진 셈이다. 그중 가장 많은 조사가 이루어진 근거법은 9개의 행정조사가 이루어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다. 다음으로 많은 것이 7건의 행정조사가 이루어진 「교통안전법」, 「자동차관리법」이 있었다. 대체로 교통 및 운송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행정조사가 많았다.

환경부가 실시하고 있는 행정조사 101개의 근거법들을 살펴보면, 총 37가지 법이 관련되어 있었다. 각 법률당 2.73개의 행정조사가 이루어진 것이어서, 국토부의 경우와 유사했다. 「토양환경보전법」에 근거한 행정조사가 총 8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물환경보전법」(7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6개), 「환경오염시설법」(6개)에 의한 행정조사가 많았다.

행정조사의 근거법은 행정조사의 목적과 내용을 정의한다. 국토부와 환경부의 경우를 보면, 행정조사의 근거법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정 법률에의 쏠림 현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웠으나, 법률 간에도 행정조사의 수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다만 상대적으로 국토부의 경우에는 교통 및 운송 관련 법률에 근거한 행정조사가 많았다면, 환경부에서는 사업 대상별로 골고루 분포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 3-13〉 국토부 행정조사의 근거법과 행정조사 현황

	근거법	행정조사 수	비율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9	7.3%
2	자동차관리법	7	5.7%
3	교통안전법	7	5.7%
4	철도안전법	6	4.9%
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6	4.9%
6	건축법	5	4.1%
7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	5	4.1%
8	주택법	4	3.3%
9	건설산업기본법	4	3.3%
1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	4	3.3%
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	3.3%
1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3	2.4%
13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	3	2.4%
14	공공주택 특별법	3	2.4%
15	공인중개사법	3	2.4%
16	부동산투자회사법	3	2.4%
17	건설기술진흥법	3	2.4%
1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3	2.4%
19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3	2.4%
20	물류정책기본법	3	2.4%
21	골재채취법	3	2.4%
2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2	1.6%
23	건축물관리법	2	1.6%

	근거법	행정조사 수	비율
24	공동주택관리법	2	1.6%
25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2	1.6%
26	주택도시보증법	2	1.6%
27	택지개발촉진법	2	1.6%
28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	2	1.6%
29	건축사법	2	1.6%
30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2	1.6%
31	도시개발법	2	1.6%
3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1	0.8%
3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1	0.8%
34	공항시설법	1	0.8%
3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1	0.8%
3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1	0.8%
37	경관법	1	0.8%
38	건설기계관리법	1	0.8%
3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1	0.8%
40	도로법	1	0.8%
4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	1	0.8%
4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 법	1	0.8%
43	주차장법	1	0.8%

출처: 직접 작성

〈표 3-14〉 환경부 행정조사의 근거법과 행정조사 현황

	근거법	행정조사 수	비율
1	도양환경보전법	8	7.9%
2	물환경보전법	7	6.9%
3	환경오염시설법	6	5.9%
4	자원재활용법	6	5.9%
5	대기환경보전법	5	5.0%
6	폐기물관리법	5	5.0%
7	수도법	5	5.0%
8	화학물질관리법	4	4.0%
9	환경영향평가법	4	4.0%
10	석면안전관리법	4	4.0%
11	전자전자제품법	3	3.0%
1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3	3.0%

	근거법	행정조사 수	비율
13	하수도법	3	3.0%
14	자연공원법	3	3.0%
15	야생생물법	3	3.0%
16	환경보건법	2	2.0%
17	폐기물국가간이동법	2	2.0%
18	습지보전법	2	2.0%
19	약취방지법	2	2.0%
20	먹는물관리법	2	2.0%
21	건설폐기물법	2	2.0%
22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	2	2.0%
23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2	2.0%
24	지하수법	2	2.0%
25	생물다양성법	2	2.0%
26	대기법	1	1.0%
27	실내공기질 관리법	1	1.0%
28	빛공해방지법	1	1.0%
29	폐기물 관리법	1	1.0%
30	화학제품안전법	1	1.0%
31	녹색제품구매법	1	1.0%
32	실내공기질법	1	1.0%
3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법	1	1.0%
3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	1	1.0%
35	석면피해구제법	1	1.0%
36	실내공기질관리법	1	1.0%
37	소음·진동관리법	1	1.0%

출처: 직접 작성

상대적으로 행정조사가 많은 국토부와 환경부의 행정조사에 대해 조사목적, 조사방법, 조사 주기 및 조사 거부 시의 제재 여부를 중심으로 현황을 살펴보았다. 우선 조사목적에 있어서는 두 기관에서 뚜렷한 차이가 발견된다. 국토부의 경우 ‘일반적 관리 감독’의 조사목적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환경부에서는 ‘법·규제 위반 확인’을 위한 조사가 가장 많았다. 공통적으로 2번과 3번 유형의 조사목적에 의한 조사의 비중이 적은 편이었다. 다만, 환경부가 ‘법·규제 위반 확인’을 위한 행정조사가 60% 이상으로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 국토부의 경우에는 ‘일반적 관리 감독’과 더불어 ‘법·규제 위반 확인’을 위한 행정조사도 약 40%를 차지하고 있어, 두 가지 목적으로 분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3-15〉 국토부와 환경부의 조사목적 유형별 현황

국토부				환경부			
조사목적	빈도	비율	누적 비율	조사목적	빈도	비율	누적 비율
법·규제 위반 확인	48	39.0%	39.0%	법·규제 위반 확인	61	60.4%	60.4%
행정처분 전단계 사실확인	2	1.6%	40.7%	행정처분 전단계 사실확인	4	4.0%	64.4%
정책입안을 위한 실태조사	15	12.2%	52.8%	정책입안을 위한 실태조사	15	14.9%	79.2%
일반적 관리 감독	58	47.2%	100.0%	일반적 관리 감독	21	20.8%	100.0%
합계	123	100.0%		합계	101	100.0%	

출처: 직접 작성

행정조사의 방법에 있어서는 두 기관이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었다. ‘자료제출’과 ‘현장조사’ 방법에 집중되어 있는 형태이며, ‘보고’ 방법이 공통적으로 세 번째로 많이 활용되고 있었다. ‘출석, 진술’과 ‘기타’ 조사방법이 활용된 행정조사는 매우 적었다. 다만 국토부의 경우에는 ‘자료 제출’ 조사방법의 비중이 50% 이상이었고 ‘현장조사’ 방법을 활용한 조사의 두 배 이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었던 것에 반해, 환경부의 경우에는 ‘현장조사’ 유형의 조사방법이 ‘자료제출’ 조사방법 보다 많았다. 따라서 국토부의 행정조사는 주로 ‘자료제출’ 유형의 방법을 활용하는데 반해, 환경부의 경우에는 ‘현장조사’ 유형의 방법을 주로 활용한다고 볼 수 있다.

〈표 3-16〉 국토부와 환경부의 조사방법 유형별 현황

국토부				환경부			
조사방법	빈도	비율	누적 비율	조사방법	빈도	비율	누적 비율
보고	19	15.4%	15.4%	보고	15	14.9%	14.9%
자료제출	67	54.5%	69.9%	자료제출	31	30.7%	45.5%
출석, 진술	1	0.8%	70.7%	출석, 진술	1	1.0%	46.5%
현장조사	32	26.0%	96.7%	현장조사	51	50.5%	97.0%
시료채취	1	0.8%	97.6%	시료채취	2	2.0%	99.0%
기타	3	2.4%	100.0%	기타	1	1.0%	100.0%
합계	127	100.0%		합계	101	100.0%	

출처: 직접 작성

행정조사가 이루어지는 시기와 관련해서는 크게 수시와 정기조사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에 정기 및 수시조사를 모두 병행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살펴보았다. 국토부 행정조사 1건은 자료가 명확하지 않아 ‘기타’로 분류하였다. 국토부의 경우에는 수시조사가 약 67.5%로서 대부분의 조사

가 특정 시기를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조사목적 및 수요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반면 환경부의 경우에는 약 58.4%의 조사가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비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수시조사는 38.6% 정도로서 국토부의 양상과는 반대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를 병행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 대부분의 조사가 수시 또는 정기조사 중 하나의 방식을 따르고 있었다.

〈표 3-17〉 국토부와 환경부 행정조사의 조사시기 유형별 현황

국토부				환경부			
조사 시기	빈도	비율	누적 비율	조사 시기	빈도	비율	누적 비율
수시	83	67.5%	67.5%	수시	39	38.6%	97.0%
정기	36	29.3%	96.7%	정기	59	58.4%	58.4%
정기, 수시	3	2.4%	99.2%	정기, 수시	3	3.0%	100.0%
기타	1	0.8%	100.0%				
합계	123	100.0%		합계	101	100.0%	

출처: 직접 작성

행정조사 대상자가 조사에 협조 또는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 일부 행정조사에서는 근거법에 그러한 경우에 기관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제재를 명시해놓는 경우들이 있었다. 따라서 행정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대상자에게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두고 조사한 결과, 국토부는 제재가 가능한 경우가 약 61%로서 그렇지 않은 경우(약 39%)보다 더 많았다. 그 차이는 22%p 정도였다. 환경부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행정조사가 제재 권한을 동반하고 있었다. 약 89.1%의 조사가 제재를 할 수 있었던 반면에 제재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약 10.9%에 불과하여, 국토부에 비해 제재가 가능한 행정조사의 비율이 더 높았다. 환경부의 행정조사는 국토부의 조사보다 제재를 통해 참여를 강제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표 3-18〉 국토부와 환경부의 행정조사 불참여시 제재의 여부 현황

국토부				환경부			
제재	빈도	비율	누적 비율	제재	빈도	비율	누적 비율
없음	48	39.0%	39.0%	없음	11	10.9%	10.9%
있음	75	61.0%	100.0%	있음	90	89.1%	100.0%
합계	123	100.0%		합계	101	100.0%	

출처: 직접 작성



## 2. 제2집단: 16개 기관

행정조사가 최소 10개 이상 되는 17개 행정기관 중 제 1집단의 두 개 기관은 100개 이상의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있었다. 나머지 15개 기관이 실시하고 있는 행정조사는 23개부터 64개 사이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다. 여기서는 제 1집단의 두 개 기관에 대한 분석과 동일한 항목, 즉 행정조사의 조사목적, 조사방법, 조사시기, 제재 여부를 중심으로 현황을 정리하였다.

### 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총 64개의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있었다. 그중 37.5%인 24개가 ‘법·규제 위반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으며, ‘일반적 관리 감독’을 위한 조사도 34.4%로 유사한 수준이었다. 조사방법으로는 ‘현장조사’ 방법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었다(42.28%). 57.8%의 조사가 정기적으로 수행되고 있었으며, 수시로 이루어지는 조사는 31.3%였다. 또한 행정조사 거부 시 제재가 있는 경우가 54.7%였으나, 제재가 없는 경우도 45.3%여서 비율은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표 3-19〉 보건복지부 행정조사 주요 특징

조사목적	빈도	비율	누적 비율
법·규제 위반 확인	24	37.5%	37.5%
행정처분 전단계 사실확인	3	4.7%	42.2%
정책입안을 위한 실태조사	15	23.4%	65.6%
일반적 관리 감독	22	34.4%	100.0%
합계	64	100.0%	

조사방법	빈도	비율	누적 비율
보고	8	12.5%	12.5%
자료제출	19	29.7%	42.2%
출석, 진술	1	1.6%	43.8%
현장조사	27	42.2%	85.9%
기타	9	14.1%	100.0%
합계	64	100.0%	

조사시기	빈도	비율	누적 비율
정기	37	57.8%	57.8%
수시	20	31.3%	89.1%
수시, 정기	5	7.8%	96.9%
기타	2	3.1%	100.0%
합계	64	100.0%	

제재여부	빈도	비율	누적 비율
없음	29	45.3%	45.3%
있음	35	54.7%	100.0%
합계	64	100.0%	

출처: 직접 작성

## 나.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총 63개의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있었다. 그중 69.8%인 44개가 조사목적 '법·규제 위반 확인'을 위한 행정조사였다. 조사방법으로는 '현장조사' 방법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었으며(65.1%), '출석 및 진술'에 의한 방법으로 수행되는 경우는 없었다. 61.9%의 조사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정기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38.1%에 불과했다. 61.9%의 행정조사에는 거부 시 제재가 부과될 수 있었는데, 조사시기 유형에 따라 제재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표 3-20〉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조사 주요 특징

조사목적	빈도	비율	누적 비율	조사방법	빈도	비율	누적 비율
법·규제 위반 확인	44	69.8%	69.8%	보고	6	9.5%	9.5%
행정처분 전단계 사실확인	3	4.8%	74.6%	자료제출	13	20.6%	30.2%
정책입안을 위한 실태조사	7	11.1%	85.7%	현장조사	41	65.1%	95.2%
일반적 관리 감독	9	14.3%	100.0%	시료채취	3	4.8%	100.0%
합계	63	100.0%		합계	63	100.0%	

조사시기	빈도	비율	누적 비율	제재여부	빈도	비율	누적 비율
수시	39	61.9%	61.9%	없음	24	38.1%	38.1%
정기	24	38.1%	100.0%	있음	39	61.9%	100.0%
합계	63	100.0%		합계	63	100.0%	

출처: 직접 작성

### 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1개의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있었으며, 절반 이상(68.6%)인 35개의 행정 조사가 '법·규제 위반 확인'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정책입안을 위한 실태조사'가 11건이었으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의 행정조사는 주로 법·규제 위반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의 행정조사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조사 방법에 있어서는 '출석 및 진술'에 의한 방법으로 수행되는 행정조사는 없었으며, 대부분은 '현장조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다(62.7%). 그러한 행정조사는 대부분 정기적으로 수행되고 있었으며, 대부분의 경우 그러한 조사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 있었다(92.2%)

〈표 3-21〉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조사 주요 특징

조사목적	빈도	비율	누적 비율	조사방법	빈도	비율	누적 비율
법·규제 위반 확인	35	68.6%	68.6%	보고	9	17.6%	17.6%
정책입안을 위한 실태조사	11	21.6%	90.2%	자료제출	7	13.7%	31.4%
일반적 관리 감독	5	9.8%	100.0%	현장조사	32	62.7%	94.1%
합계	51	100.0%		시료채취	3	5.9%	100.0%
				합계	51	100.0%	

조사시기	빈도	비율	누적 비율	제재여부	빈도	비율	누적 비율
수시	7	13.7%	13.7%	없음	4	7.8%	7.8%
정기	44	86.3%	100.0%	있음	47	92.2%	100.0%
합계	51	100.0%		합계	51	100.00	

출처: 직접 작성

## 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경우에는 44개의 행정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조사목적과 관련해서는 ‘법·규제 위반 확인’ 및 ‘정책입안을 위한 실태조사’가 각각 16개, 17개로써 비슷했고, ‘일반적 관리감독’의 목적에 의한 조사도 11개가 있으므로, 특정 유형에 편중된다기보다는 3가지 유형의 행정조사 목적이 골고루 반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조사방법에 있어서도 ‘자료제출’과 ‘현장조사’ 두 가지 방법이 88.6%를 차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두 가지 방법이 주로 활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4개 중 34개의 조사가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한편 조사의 거부에 대한 제재는 절반 정도의 행정조사에서만 부과될 수 있었다.

〈표 3-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조사 주요 특징

조사목적	빈도	비율	누적 비율
법·규제 위반 확인	16	36.4%	36.4%
정책입안을 위한 실태조사	17	38.6%	75.0%
일반적 관리 감독	11	25.0%	100.0%
합계	44	100.0%	

조사방법	빈도	비율	누적 비율
보고	4	9.1%	9.1%
자료제출	22	50.0%	59.1%
현장조사	17	38.6%	97.7%
기타	1	2.3%	100.0%
합계	44	100.0%	

조사시기	빈도	비율	누적 비율
수시	10	22.7%	22.7%
정기	34	77.3%	100.00
합계	44	100.0%	

제재여부	빈도	비율	누적 비율
없음	22	50.00	50.00
있음	22	50.00	100.00
합계	44	100.0%	

출처: 직접 작성

## 마.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가 수행하고 있는 행정조사는 41개였다. ‘정책입안을 위한 실태조사’, ‘일반적 관리 감독’을 위한 행정조사가 각각 19개, 14개로서 두 가지 유형의 조사가 전체의 80.4%를 차지하고 있어, 여성가족부는 그 두 가지 목적 유형의 조사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조사방법에 있어서는 ‘현장조사’가 32개로 78.05%를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조사는 현장조사 방법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82.93%에 해당하는 34개 조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92.68%에 해당하는 38개 조사가 거부에 대한 제재를 하고 있지 않았다.

〈표 3-23〉 여성가족부 행정조사 주요 특징

조사목적	빈도	비율	누적 비율
법·규제 위반 확인	8	19.5%	19.5%
정책입안을 위한 실태조사	19	46.3%	65.8%
일반적 관리감독	14	34.1%	100.0%
합계	41	100.0%	

조사방법	빈도	비율	누적 비율
보고	3	7.3%	7.3%
자료제출	3	7.3%	14.6%
현장조사	32	78.0%	92.7%
기타	3	7.3%	100.0%
합계	41	100.0%	

조사시기	빈도	비율	누적 비율
수시	6	14.6%	14.6%
정기	34	82.9%	97.6%
수시, 정기	1	2.4%	100.0%
합계	41	100.0%	

제재여부	빈도	비율	누적 비율
없음	38	92.7%	92.7%
있음	3	7.3%	100.0%
합계	41	100.0%	

출처: 직접 작성

## 바. 통계청

통계자료의 조사, 축적, 관리, 분석 등에 특화되어 있는 기관인 통계청은 41개의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있었으며, 그중 40개의 행정조사가 '정책입안을 위한 실태조사' 목적에 따른 것이었다(97.6%). 특정한 목적에 특화되어 있을 만큼 조사방법 또한 '현장조사' 방법으로 집중되어 있었다(37건, 90.2%). 또한, 모든 조사가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었고, 40개의 조사는 대상자의 거부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 있었다.

〈표 3-24〉 통계청 행정조사 주요 특징

조사목적	빈도	비율	누적 비율
정책입안을 위한 실태조사	40	97.6%	97.6%
일반적 관리감독	1	2.4%	100.0%
합계	41	100.0%	

조사방법	빈도	비율	누적 비율
자료제출	1	2.5%	2.4%
현장조사	37	90.2%	92.7%
기타	3	7.3%	100.0%
합계	41	100.0%	

조사시기	빈도	비율	누적 비율
정기	41	100.0%	100.0%
합계	41	100.0%	

제재여부	빈도	비율	누적 비율
없음	1	2.4%	2.4%
있음	40	97.6%	100.0%
합계	41	100.0%	

출처: 직접 작성

## 사. 교육부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행정조사는 38개로서, 그중 18개가 '정책입안을 위한 실태조사'를 목적으로 수행되고 있었다(47.4%). '법·규제 위반 확인'을 위한 조사나 '일반적 관리감독'을 위한 조사도 각각 11개(28.9%), 9개(23.7%)로서, 주된 목적은 '정책입안을 위한 실태조사'이지만, 그 외의 다양한 목적을 위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조사방법에 있어서도 '자료제출'과 '현장조사'가 각각 15개(39.5%), 12개(31.6%)였으며, 그 외에 '보고'나 '기타'방식에 의해서도 5개 이상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반면에 조사의 대부분은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으며(28개, 73.7%), 조사 거부에 대해서는 제재를 부과하고 있지 않았다(24개, 82.7%).

〈표 3-25〉 교육부 행정조사 주요 특징

조사목적	빈도	비율	누적 비율	조사방법	빈도	비율	누적 비율
법·규제 위반 확인	11	28.9%	28.9%	보고	6	15.8%	15.8%
정책입안을 위한 실태조사	18	47.4%	76.3%	자료제출	15	39.5%	55.3%
일반적 관리감독	9	23.7%	100.0%	현장조사	12	31.6%	86.8%
합계	38	100.0%		기타	5	13.2%	100.0%
				합계	38	100.0%	

조사시기	빈도	비율	누적 비율	제재여부	빈도	비율	누적 비율
수시	7	18.4%	18.4%	없음	33	86.8%	86.8%
정기	28	73.7%	92.1%	있음	5	13.2%	100.0%
수시, 정기	3	7.9%	100.0%	합계	38	100.0%	
합계	38	100.0%					

출처: 직접 작성

## 아.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37개의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있었으며, 그 목적은 주로 ‘법·규제 위반 확인’과 ‘일반적 관리감독’을 위한 것이었다. ‘법·규제 위반확인’을 위한 행정조사는 17개로서 45.9%를 차지하고 있었고, ‘일반적 관리감독’을 위한 조사는 14개로 36.8%였다. 그 두 가지 목적 유형에 따른 행정조사가 전체의 83.7%를 차지하고 있었다. 조사방법에 있어서는 ‘현장조사’ 방법이 21개로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절반 이상의 조사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70.3%(26개)의 조사가 조사 거부자에 대해 제재를 부과할 수 있었다.

〈표 3-26〉 해양수산부 행정조사 주요 특징

조사목적	빈도	비율	누적 비율	조사방법	빈도	비율	누적 비율
법·규제 위반 확인	17	45.9%	45.9%	보고	3	8.1%	8.1%
행정처분 전단계 사실확인	1	2.7%	48.6%	자료제출	9	24.3%	32.4%
정책입안을 위한 실태조사	4	10.8%	59.5%	현장조사	21	56.8%	89.2%
일반적 관리감독	14	37.8%	97.3%	시료채취	3	8.1%	97.3%
기타	1	2.7%	100.0%	기타	1	2.7%	100.0%
합계	37	100.0%		합계	37	100.0%	

조사시기	빈도	비율	누적 비율	제재여부	빈도	비율	누적 비율
수시	21	56.8%	56.8%	없음	11	29.7%	29.7%
정기	15	40.5%	97.3%	있음	26	70.3%	100.0%
수시, 정기	1	2.7%	100.0%	합계	37	100.0%	
합계	37	100.0%					

출처: 직접 작성



## 자.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37개의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목적이 '법·규제 위반 확인'과 '정책입안을 위한 실태조사'인 경우가 67.5%였다. 기존 법 및 규제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행정조사가 13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 수집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정조사가 12개였다. 그 외의 '행정처분 전단계 사실확인' 및 '일반적 관리감독'을 위한 행정조사도 5개와 7개로서, 고용노동부의 행정조사는 그 목적 측면에 있어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조사방법에 있어서도 '보고', '자료제출', '현장조사'가 각각 14개, 11개, 11개로서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고 있었다. 조사방법에 있어서도 특정 방법에 편중되지 않고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었다. 조사 시기 역시 수시조사와 정기조사가 각각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다. 다만 조사 거부자에 대한 제재 여부에 있어서는 제재를 부과하는 경우가 24개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64.9%).

〈표 3-27〉 고용노동부 행정조사 주요 특징

조사목적	빈도	비율	누적 비율	조사방법	빈도	비율	누적 비율
법·규제 위반 확인	13	35.1%	35.1%	보고	14	37.8%	37.8%
행정처분 전단계 사실확인	5	13.5%	48.6%	자료제출	11	29.7%	67.5%
정책입안을 위한 실태조사	12	32.4%	81.1%	현장조사	11	29.7%	97.3%
일반적 관리감독	7	18.9%	100.0%	기타	1	2.7%	100.0%
합계	37	100.0%		합계	37	100.0%	

조사시기	빈도	비율	누적 비율	제재여부	빈도	비율	누적 비율
수시	18	48.6%	48.6%	없음	13	35.1%	35.1%
정기	18	48.6%	37.3%	있음	24	64.9%	100.0%
기타	1	2.7%	100.0%	합계	37	100.0%	
합계	37	100.0%					

주) 고용노동부의 행정조사 1건은 조사 시기가 명확하지 않아 제외하였음  
출처: 직접 작성

## 차.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주의 35개 행정조사는 그 조사목적에 있어서 ‘법·규제 위반 확인’, ‘정책입안을 위한 실태 조사’, ‘일반적 관리감독’이 대체로 유사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행정처분 전단계 사실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목적 유형에 대해 골고루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조사방법에 있어서는 ‘자료제출’ 방법이 19개로서 전체의 54.3%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현장조사’ 및 ‘보고’의 경우도 각각 7개와 5개로서 다양한 방법들이 활용되고 있었다. 수시조사는 16개로서 45.7%, 정기조사는 19개로서 54.3%를 차지하고 있어 수시와 정기조사의 비율이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조사 거부에 대한 제재 여부 역시 각각 절반에 가까운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표 3-28〉 산업부 행정조사 주요 특징

조사목적	빈도	비율	누적 비율	조사방법	빈도	비율	누적 비율
법·규제 위반 확인	10	28.6%	28.6%	보고	5	14.3%	14.3%
행정처분 전단계 사실확인	1	2.9%	31.4%	자료제출	19	54.3%	68.6%
정책입안을 위한 실태조사	13	37.1%	68.6%	현장조사	7	20.0%	88.6%
일반적 관리감독	11	31.4%	100.0%	시료채취	1	2.9%	91.4%
합계	35	100.0%		기타	3	8.6%	100.0%
				합계	35	100.0%	

조사시기	빈도	비율	누적 비율	제재여부	빈도	비율	누적 비율
수시	16	45.7%	45.7%	없음	18	51.43	51.43
정기	19	54.3%	100.0%	있음	17	48.57	100.00
합계	35	100.0%		합계	35	100.00	

출처: 직접 작성

### 카. 문화체육관광부

34개의 행정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그 조사목적에 있어 '정책입안을 위한 실태조사'가 가장 많았으나(15개, 44.1%), 그 다음으로는 '일반적 관리감독'을 위한 행정조사가 10개(29.4%)로 많았다. '법·규제 위반 확인'을 위한 행정조사도 8개(23.5%)가 있어, 문화체육관광부에 있어 행정조사의 목적은 다양하나, 주로 실태조사와 관리감독을 위한 조사에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조사방법에 있어서도 '자료제출'과 '현장조사'가 전체의 70.6%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보고'의 방식도 7개(20.6%)가 있어 조사방법도 비교적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행정조사 시기에 있어서도 정기 조사가 가장 많았으나, 수시로 진행되는 조사도 15개(44.1%)로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거부에 대한 제재 여부에 있어서는 제재를 부과하지 않는 조사가 24개로서 전체의 70.59%를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의 조사가 제재 없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표 3-29〉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조사 주요 특징

조사목적	빈도	비율	누적 비율	조사방법	빈도	비율	누적 비율
법·규제 위반 확인	8	23.5%	23.5%	보고	7	20.6%	20.6%
행정처분 전단계 사실확인	1	2.9%	26.5%	자료제출	11	32.4%	52.9%
정책입안을 위한 실태조사	15	44.1%	70.6%	현장조사	13	38.2%	91.2%
일반적 관리감독	10	29.4%	100.0%	기타	3	8.8%	100.0%
합계	34	100.0%		합계	34	100.0%	

조사시기	빈도	비율	누적 비율	제재여부	빈도	비율	누적 비율
수시	15	44.1%	44.1%	없음	24	70.6%	70.6%
정기	19	55.9%	100.0%	있음	10	29.4%	100.0%
합계	34	100.0%		합계	34	100.0%	

출처: 직접 작성

## 파. 관세청

관세청은 30개의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있었으며, 17개와 13개의 행정조사가 각각 '법·규제 위반 확인'과 '일반적 관리감독'을 위한 것이었다. 다른 유형의 목적에 대한 행정조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관세청의 행정조사는 두 가지 목적에 집중되어 있었다. 조사방법에 있어서는 '보고' 방식이 가장 많았으므로(15개, 50.0%), 주된 조사방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자료제출'과 '현장조사' 방식도 각각 9개(30.0%), 6개(20.0%)로 세 가지 방법이 병행되고 있었다. 조사 시기에 있어서는 전체의 70%에 해당하는 21개의 조사가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으며, 29개의 조사(96.7%)는 거부에 대한 제재를 부과할 수 있어, 대부분의 조사가 정기적으로 진행되면서도 강제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3-30〉 관세청 행정조사 주요 특징

조사목적	빈도	비율	누적 비율	조사방법	빈도	비율	누적 비율
법·규제 위반 확인	17	56.7%	56.7%	보고	15	50.0%	50.0%
일반적 관리감독	13	43.3%	100.0%	자료제출	9	30.0%	80.0%
합계	30	100.0%		현장조사	6	20.0%	100.0%
				합계	29	100.0%	

조사시기	빈도	비율	누적 비율	제재여부	빈도	비율	누적 비율
수시	9	30.0%	30.0%	없음	1	3.3%	3.3%
정기	21	70.0%	100.0%	있음	29	96.7%	100.0%
합계	30	100.0%		합계	30	100.0%	

출처: 직접 작성

## 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25개의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중 절반 정도가 ‘법·규제 위반 확인’의 목적으로 수행되고 있었으며(12개, 48.0%), 그 다음으로는 ‘일반적 관리감독’을 위한 행정조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다(7개, 28.0%). 조사 방식은 ‘자료제출’ 방식이 19개(76.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현장조사는 4개(16.0%)에 불과했다. 전체 행정조사 중 64.0%의 조사가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으며(16개), 또한 전체의 72.0%에 해당하는 18개의 조사에서 거부에 대한 제재를 하고 있었다.

〈표 3-31〉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조사 주요 특징

조사목적	빈도	비율	누적 비율	조사방법	빈도	비율	누적 비율
법·규제 위반 확인	12	48.0%	48.0%	보고	1	4.0%	4.0%
행정처분 전단계 사실확인	1	4.0%	52.0%	자료제출	19	76.0%	80.0%
정책입안을 위한 실태조사	4	16.0%	68.0%	출석, 진술	1	4.0%	84.0%
일반적 관리감독	7	28.0%	96.0%	현장조사	4	16.0%	100.0%
기타	1	4.0%	100.0%	합계	25	100.0%	
합계	25	100.0%		합계	34	100.0%	

조사시기	빈도	비율	누적 비율	제재여부	빈도	비율	누적 비율
수시	9	36.0%	36.0%	없음	7	28.0%	28.0%
정기	16	64.0%	100.0%	있음	18	72.0%	100.0%
합계	25	100.0%		합계	25	100.0%	

출처: 직접 작성

## 하.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행정조사는 총 24개로 그중 41.7%에 해당하는 10개의 조사가 '일반적 관리감독'을 위한 것이었다. '법·규제 위반 확인'을 위한 행정조사도 8개로서 33.3%를 차지하고 있어, 주로 그 두 가지 목적 유형에 따른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조사방법과 관련해서는 '자료제출' 방식과 '현장조사' 방식이 각각 12개와 11개로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었다. 조사 시기와 관련해서도 정기적인 조사와 수시조사가 각기 비슷한 규모였으나, 수시조사가 조금 더 많았다(54.2%). 조사 거부자에 대한 제재 여부와 관련해서도 제재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와 부과하는 경우가 각기 절반 정도가 되었으나, 제재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가 조금 더 많았다(54.17%).

〈표 3-32〉 행정안전부 행정조사 주요 특징

조사목적	빈도	비율	누적 비율
법·규제 위반 확인	8	33.3%	33.3%
행정처분 전단계 사실확인	3	12.5%	45.8%
정책입안을 위한 실태조사	3	12.5%	58.3%
일반적 관리감독	10	41.7%	100.0%
합계	24	100.0%	

조사방법	빈도	비율	누적 비율
자료제출	12	50.0%	50.0%
현장조사	11	45.8%	95.8%
기타	1	4.2%	100.0%
합계	24	100.0%	

조사시기	빈도	비율	누적 비율
수시	13	54.2%	54.2%
정기	10	41.7%	95.8%
수시, 정기	1	4.2%	100.0%
합계	24	100.0%	

제재여부	빈도	비율	누적 비율
없음	13	54.2%	54.2%
있음	11	45.8%	100.0%
합계	24	100.0%	

출처: 직접 작성

## 거. 중소벤처기업부

23개의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 65.2%인 15개의 행정조사가 '정책입안을 위한 실태조사'였으며, 나머지 목적 유형에 따른 행정조사 중 5개가 넘는 경우는 없었다. 다만 목적 유형이 불분명한 '기타'에 해당하는 행정조사가 4개 있었다. 조사 방식으로는 대부분이 '현장조사' 방식이었으며, 그 방식이 불분명한 '기타'의 경우가 5개 있었다(21.7%). 조사 시기와 관련해서도 정기적인 조사가 17개(73.9%)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시기가 불분명한 '기타'의 경우도 4개가 있었다.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에는 행정조사의 목적, 방법, 시기에 있어서는 주된 유형이 있지만, 그 유형이 불분명한 경우가 다소 있는 상황이다. 조사 거부에 대한 제재 여부와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조사가 제재가 없었다(20개, 87.0%).

〈표 3-33〉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조사 주요 특징

조사목적	빈도	비율	누적 비율	조사방법	빈도	비율	누적 비율
법·규제 위반 확인	1	4.3%	4.3%	자료제출	2	8.7%	8.7%
행정처분 전단계 사실확인	3	13.0%	17.4%	현장조사	16	69.6%	78.3%
정책입안을 위한 실태조사	15	65.2%	82.6%				
기타	4	17.4%	100.0%	기타	5	21.7%	100.0%
합계	23	100.0%		합계	23	100.0%	

조사시기	빈도	비율	누적 비율	제재여부	빈도	비율	누적 비율
수시	2	8.7%	8.7%	없음	20	87.0%	87.0%
정기	17	73.9%	82.6%	있음	3	13.0%	100.0%
기타	4	17.4%	100.0%	합계	23	100.0%	
합계	23	100.0%					

출처: 직접 작성

## 너. 국가보훈처

보훈처는 13개의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10개 이상의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기관 중 가장 적었다. 조사목적과 관련하여 유형 2와 유형 3이 각각 38.46%, 30.77%로 비슷했으며, 유형 2와 유형 3의 경우도 15% 수준이어서 다양한 목적에 의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조사방법에 있어서는 유형 2의 경우가 절반 이상이었으나(53.85%), 유형 4의 경우도 38.46%를 차지하고 있어 두 가지 방법이 주로 활용되고 있었다. 수시조사에 비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사가 많았으나, 특이하게도 수시와 정기조사를 병행하는 조사도 30.76%에 달하고 있었다. 거부자에 대한 제재 여부에 있어서는 제재가 없는 경우가 53.85%, 있는 경우가 46.15%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표 3-34〉 보훈처 행정조사 주요 특징

조사목적	빈도	비율	누적 비율
1	2	15.38	15.38
2	5	38.46	53.85
3	4	30.77	84.62
4	2	15.38	100.00
합계	13	100.00	

조사방법	빈도	비율	누적 비율
1	0	0	0
2	7	53.85	53.85
3	0	0	53.85
4	5	38.46	92.31
5	0	0	92.31
6	1	7.69	100.00
합계	13	100.00	

조사시기	빈도	비율	누적 비율
수시	3	23.08	23.08
정기	6	46.15	69.23
수시, 정기	4	30.76	100.00
합계	13	100.00	

제재여부	빈도	비율	누적 비율
없음	7	53.85	53.85
있음	6	46.15	100.00
합계	13	100.00	

출처: 직접 작성





---

## 행정조사 이슈분석





## 제1절

### 행정조사 이슈분석 개요



행정조사기본법에서는 행정조사 운영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며, 행정조사를 운영하는 각 중앙행정기관은 해당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31개 장·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운영중인 총 874개의 행정조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이러한 행정조사의 원칙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한 행정조사 운영상 주요 이슈는 유사·중복조사, 행정조사의 법적근거와 행정조사 제재수단과 제재수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행정조사의 원칙은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 수행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하더라도 피조사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효율적인 행정조사 제도 운영을 위해 준수하여야 할 원칙인데, 실제로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파악해보고자 함이다.

한편, 운영상의 이슈는 해당 행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운영상 지켜야 할 원칙들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것이지만, 운영중인 행정조사 전체가 모두 다 동일하게 필요한 행정조사라고 볼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운영중인 행정조사중에는 사문화된 행정조사로서 실효성이 거의 없는 행정조사나 또는 불필요한 행정조사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행정조사의 필요성 수준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행정조사의 목적과 행정규제 등록 여부 등으로 행정조사의 필요성 수준을 검토하고자 하며, 더불어 현재 운영중인 행정조사를 대상으로 필요성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파일럿 평가를 진행해보고자 한다. 행정조사 필요성에 대한 파일럿 평가는 20개 이상 행정조사를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조사를 대상으로 각 분야 정책전문가 조사를 통해 행정조사의 필요성 수준을 평가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물론 본 연구의 평가결과가 해당 행정조사의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결과로 간주할 수 없으며, 본 연구의 평가는 현행 행정조사중에서 상대적으로 필요성이 적은 행정조사로 분류되는 비율과 유형을 대략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목적임을 밝힌다.

## 제2절

## 유사·중복조사 분석



## 1. 유사·중복조사의 기준

행정조사기본법 제15조에서는 중복조사를 제한하고 있는데, ‘정기조사 또는 수시조사를 실시한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를 재조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동일한 사안을 조사하는 것을 중복조사라고 볼 수 있는데, 동일한 중앙행정기관 내에서 중복조사를 금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제2항에서는 행정조사를 실시할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른 행정기관에서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서로 다른 행정기관에 의한 중복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동일한 행정기관내 및 서로 다른 행정기관에서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동일한 사안을 조사하는 사례는 드물것으로 예상되며, 실제 현황조사에서도 완전히 중복되는 조사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sup>4)</sup>.

반면 동일한 조사대상자와 동일한 사안은 아니지만 조사내용이 매우 유사한 경우, 조사대상자가 다수 중복되는 행정조사 등은 조사대상자들이 중복조사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으로 행정조사의 대상자는 불특정 다수인 경우도 있지만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사대상자가 여러 그룹에 속하는 경우 유사한 조사를 중복적으로 요청받을 수 있다. 예컨대 가정폭력, 성희롱, 성폭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의 내용은 가정폭력, 성희롱, 성폭력 등으로 행정조사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중복조사로 보기는 어렵지만, 실제로 조사의 내용은 상당히 유사할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 밖에 다른 중앙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이지만, 해당 부처에서는 갖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추가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행위, 부처간 업무영역이 유사하여 중복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등 명확하게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조사대상자 및 조사의 내용 등에서 상당한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통합조사, 공동조사 등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행 행정조사기본법은 제14조와 제15조에서 공동조사의 원칙과 중복조사의 제한을 규정하고

4) 제3장 행정조사 운영현황 참고

있지만, 공동조사와 중복조사의 개념과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중복조사를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동일한 사안을 조사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경우, 복수의 조사대상자 중에서 일부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예컨대 방위산업체 직종의 취업실시기관과 국가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한 조사의 경우 조사대상자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나, 방위산업체 직종의 취업실시기관은 대다수 국가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실시기관과 중복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중복의 문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발굴하기가 어려운데 첫째는 이러한 실질적인 행정조사에서 중복여부는 행정조사의 내용만으로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조사대상자가 대다수 중복된다고 할 때 어느 정도 중복되어야 유사·중복조사로 볼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향후 유사·중복조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유사·중복조사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 2. 행정조사 유사·중복 분석

### 가. 유사·중복조사 검토 개요

본 연구에서는 874건의 행정조사를 대상으로 유사·중복현황을 검토해보았다. 전술한 바와같이 중복조사는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동일한 사안을 조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유사조사에 대해서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별도로 규율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현행 법령상으로 유사조사를 정의하고 분류할 객관적인 기준은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874건의 모든 행정조사를 대상으로 조사내용과 조사대상자를 모두 검토하고, 유사한 것으로 보여지는 행정조사의 경우 각 중앙행정기관 담당자들의 대면 인터뷰를 통해서 유사성을 검토해보았다.

우선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전체 행정조사의 근거법령과 조사내용을 전체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전체 행정조사중에서 중복되는 조사와 유사한 조사를 1차적으로 분류하고, 1차 분류된 유사한 행정조사에 대해서 담당자와의 개별 인터뷰를 통해서 조사대상자의 유사·중복성, 조사내용의 유사·중복성을 파악하였다.

각 행정조사의 내용에 개별 중앙행정기관 담당자와의 인터뷰 내용을 모두 검토하여 행정조사 간의 유사·중복성을 판단하였고, 개별 행정기관 담당자들과 공동조사 및 통합조사 등에 대해 의견을 조율하였다.

다만 행정조사간의 유사·중복성의 판단기준이 모호하여, 조사대상자와 조사내용이 완전하게 일치하는 중복조사가 아니면 어떤 행정조사들이 유사조사로 분류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해당 정책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는 한 판단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해당 행정조사 담당자는 행정조사의 유사성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으며, 각각의 행정조사는 목적에서 밝히듯이 반드시 필요한 조사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 검토한 유사·중복조사의 현황은 각각의 중앙행정기관에서 모두 다 동의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제3자의 관점에서 조사대상자 및 조사내용의 유사성이 높은 사례 현황이라는 점을 밝힌다. 향후 조사대상자의 관점에서 유사·중복조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본 조사결과를 토대로 유사·중복조사의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유사·중복조사에 대해서는 공동조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나. 유사·중복조사 현황

조사대상자와 조사내용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사성이 높은 행정조사로 볼 수 있는 행정조사는 19건이 있었다. 유사·중복조사로 볼 수 있는 행정조사로서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정폭력 실태조사, 성희롱 실태조사, 성폭력 실태조사 등은 각각 개별법에 근거하여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조사내용이 유사하고 불특정다수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통합하여 1건의 행정조사로 운영하는 것이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 밖에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실태조사의 경우, 매 3년마다 226개 시·군·구 단위에서 가족친화 시설환경 등 표준화된 행정조사 자료를 통한 실태조사로서 영역별 지자체 행정조사로 대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밖에 기업 및 공공기관의 가족친화 수준조사의 경우 매 3년마다 기업 및 공공기관 대상 가족친화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하는 조사를 실시하는 것인데, 가족친화 인증심사와 대상 및 조사 내용이 유사하며 인증심사 결과로 대체 가능하여 별도의 가족친화수준을 측정할 필요성이 적은 행정조사로 분석되었다.

해경청에서 운영하는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점검의 경우 수상구조사 사전 교육기관 지정을 위해 지방청에서 현장 실사 후 본청에 그 결과를 보고하고 본청은 지방청의 검토결과를 다시 서면심사를 거쳐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있었다. 다만 본청에서의 서면심사는 이중행정으로 행정비효율을 초래할 뿐이므로 수상구조사 자격관리에 관한 실질적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지방해양경찰청에 사전교육기관의 지정 및 관리권한을 위임하여 행정효율을 도모하고 지도감독을 내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이 밖에 각 부처 행정조사중에서 조사대상자 및 조사내용상 유사점이 많은 것으로 분류된 행정조사 목록은 다음과 같다.

〈표 4-1〉 행정조사 유사·중복조사 현황

번호	행정조사명	부처명	내용
1	전기통신 사업 금지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	방통위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제1항은 사실조사의 전제조건으로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으로 명시되어 있음 * 이에 따라 사실조사를 착수하기 전 위반행위 인정에 이르기까지 실태점검 등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유사조사를 통합하여 행정조사 실시 가능
2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제출	국토부	대중교통기본계획수립을 위하여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5년 단위로 제출하고있으나, 대중교통현황 조사로 통합 가능
3	고령자 고용현황 및 정년현황 제출	고용부	사업주*에게 매년 1월말까지 고령자 고용현황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미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 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므로 추가 제출 불필요
4	직접생산 확인 조사	중기부	중기부와 조달청이 각각 다른 기준으로 직접생산 위반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양 기관의 중복조사를 방지하기 위한 현장점검 개선 필요
5	여성폭력 실태조사	여가부	개별법에 따라 성희롱실태조사, 성폭력실태조사, 가정폭력실태조사, 여성폭력실태조사 각각 실시하고 있으나, 통합방안 필요
6	사행산업 현장확인 및 지도감독	문체부	체육진흥투표권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상 사행산업으로, 현장 확인 및 지도감독의 대상이나 지자체에서도 체육진흥투표권 판매 관련 위반행위를 조사하고 있어, 유사·중복조사에 해당
7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교원의 근무환경 실태조사	교육부	교육시설의 안전관리 현황과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근무환경 실태조사 시 교육시설통합정보망 구축을 통해 기초 정보(건물규모, 위치)는 공유하는 방식 필요
8	법규수행능력 평가를 통합법규 준수도평가와 통합	관세청	수출입물류업체는 통합법규준수도과 법규수행능력평가 등 유사한 두 가지의 평가를 각각 받고 있으나, 통합 가능
9	선박용품 등 재고조사, 항공기용품 등 재고조사	관세청	선박용품 공급업자와 항공기용품 공급업자에 대한 재고조사를 각각 시행하고 있으나, 동일업자가 선박용품 공급업과 항공기용품 공급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경우 관할 세관장이 통합하여 재고조사를 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10	중장기 제대군인 방위산업체 채용현황 실태조사	보훈처	제대군인 방위산업체 채용현황 실태조사의 조사대상인 방위산업체 직종의 취업실시기관은 국가보훈대상자 취업지원실시기관 실태조사 조사대상과 중복되고 조사내용이 유사하여 통합 필요
11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관련 보고 및 자료 제출	국토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및 융자금 행정조사 시 운수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대중교통법을 동시에 적용받고 있으나, 보조금 및 융자금 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하도록 개선 필요
1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부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재활용의무를 개별 이행하는 경우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 결과보고서' 제출을 통해 해당 제품 및 포장재에 대한 출고량을 확인 가능하므로 조사 통합
13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위해성평가	환경부	어린이용품에 함유된 환경유해인자가 어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하기 위해 환경유해인자 노출과 환경유해인자의 독성정보를 체계적으로 검토·평가하였으나,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위해성평가 조사 대상 용품군 및 물질 선정 시 산업부(국가기술표준원) 등 관계 부처 의견을 반영하여 자료 공동 활용 모색

번호	행정조사명	부처명	내용
14	가정폭력실태조사	여가부	개별적으로 실시되던 여성폭력관련 실태조사를 가구 조사 방식 통합 등 개선 필요
15	성희롱실태조사	여가부	
16	성폭력실태조사	여가부	
17	가족친화 사회환경 실태조사	여가부	매 3년마다 226개 시·군·구 단위에서 가족친화 시설환경 등 표준화된 행정조사 자료를 통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었으나, 자체 행정조사 활용으로 대체 가능
18	기업 및 공공기관의 가족친화 수준조사	여가부	가족친화 인증심사와 대상 및 조사 내용이 유사하며 인증심사 결과로 대체 가능한 동 조사 폐지
19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점검	해경청	수상구조사 사전 교육기관 지정을 위해 지방청에서 현장 실사 후 본청에 그 결과를 보고하고 본청은 지방청의 검토결과를 다시 서면심사를 거쳐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본청에서의 서면심사는 이중행정으로 행정비효율 초래하므로 폐지

### 3. 실태조사 유사·중복 현황

행정조사의 유형중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유형으로 정책입안을 위한 실태조사가 있는데, 대부분 특정 분야의 기업 및 일반국민에게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 실태조사는 다른 행정조사들과 달리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각 설문조사의 내용을 비교하여야 실태조사간의 유사·중복성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행정조사중에서 실태조사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의 내용을 추가로 비교·분석하였다.

#### 가. 유사·중복 검토 방법

실태조사에서의 중복 및 유사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가장 최선의 방안은 실태조사에 활용되는 문항을 다른 실태조사의 문항과 비교하여 중복 및 유사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다. 다소 효율성 측면에서의 약점은 있으나, 이러한 방법이 불가피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우선 두 가지 실태조사에서 문항이 유사한 정도 혹은 형태는 매우 다양할 수 있어, 논리적인 방법 또는 기계적인 방법으로는 그 판단이 매우 어려울 수 있다. 실태조사 문항은 일종의 텍스트로 볼 수 있는데, 두 가지 이상의 텍스트 비교를 통해 새로운 정보(중복 및 유사 여부)를 찾아내는 것은 일종의 텍스트마이닝(text mining)이라고 할 수 있다. 기계적인 텍스트 마이닝을 하기 위해서는 텍스트상의 언어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연어 처리가 필요하고, 일반적으로 자연어 처리에 있어서 키워드 검사나 유사어 감지는 난이도가 쉬운 편에 속하지만, 구문을 해석하거나 번역하고, 문서의 형태를 해석하여 맥락(context)를 파악하는 것은 난이도가 높다. 실태조사에서 활용되는 문항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중복 또는 유사성이 의심되더라도 그 표현 형태가 다양할 수 있어, 기계적인 텍스트마이닝으로는 난이도가 높다. 일차원적으로 주어진 문항의 문구의 유사성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문항의 의미 해석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실태조사를 포함한 대부분의 설문조사에 들어 있는 문항을 비교 분석하는데 있어서 그 문항이 가지는 중요성 또는 의의를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문항을 구성하는데 있어 모든 문항에 조사 주체 및 연구자의 의도와 목적이 동일한 수준으로 반영되지 않는다. 때로는 의도와 목적에 따라 동일한 문항이라도 배치 순서가 달라지기도 한다. 같은 내용을 묻는 문항도 문항지의 서론 또는 도입부에 배치하는 경우와 마지막 또는 결론 부분에 배치하는 경우가 각기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문항지의 마지막 부분에 응답자 또는 조사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그러한 정보가 조사자의 다른 의도나 목적에 의한 문항지에서는 도입부에 배치될 수도 있거나, 그러한 정보 수집이 해당 조사의 핵심 목적이어서 본문 부분에 배치될 수도 있다. 또한, 같거나 혹은 유사한 내용의 문항이더라도 해당 조사가 다루고 있는 분야가 무엇인가에 따라 서로 중복 및 유사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인 정보를 묻는 문항도 해당 조사 문항지에서의 위치, 해당 조사가 다루고 있는 분야, 조사의 목적 등에 따라 중요도가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응답자의 학력 정보의 수집은 일반적인 문항으로 인식되지만, 교육 분야의 조사에서 문항지의 본문 부분에 배치되어 있다면 그것을 일반적인 문항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문항의 내용을 직접 읽고 그 의미를 해석한 다음에 다른 실태조사에서의 문항과 비교하는 과정을 거쳐 중복 및 유사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유사·중복성 검토를 위하여 통계청에 등록되어 있는 664개 실태조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1차적으로 실태조사의 제목과 조사 분야를 검토하였고, 제목과 조사분야가 유사하여 설문조사의 내용을 심층적으로 비교·분석할 필요성이 있는 실태조사로서 94개를 선정하였다. 유사·중복성 검토를 위한 방법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실태조사를 '본조사'라고 명칭하고, 그 본조사와 비교를 할 '비교 조사'를 선정하였다. 비교 조사 대상을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본조사의 분야와 주체를 중심으로 고려하였다. 유사한 문항이라고 하더라도 분야가 다른 조사에서 활용된 경우에 중복 또는 유사성을 인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조사의 중복(예를 들어 A를 본조사로 하고 B를 비교조사로 선정하여 비교한 후, 다시 B를 본조사로 하고 A를 비교조사로 선정하여 비교하는 경우)을 피하면서 조사를 본조사와 비교조사 대상을 선정할 결과 총 45개의 실태조사를 본조사로 하고 각 본조사에 매칭하여 최소 1개에서 최대 6개의 실태조사가 비교조사로 선정되었다. 그 결과 문항의 중복 및 유사 여부 점검을 위해 82회의 비교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비교 작업에 투입된 본조사는 45개 조사 2,781개 문항이었으며, 비교조사에는 82개 조사 3,137개 문항이 활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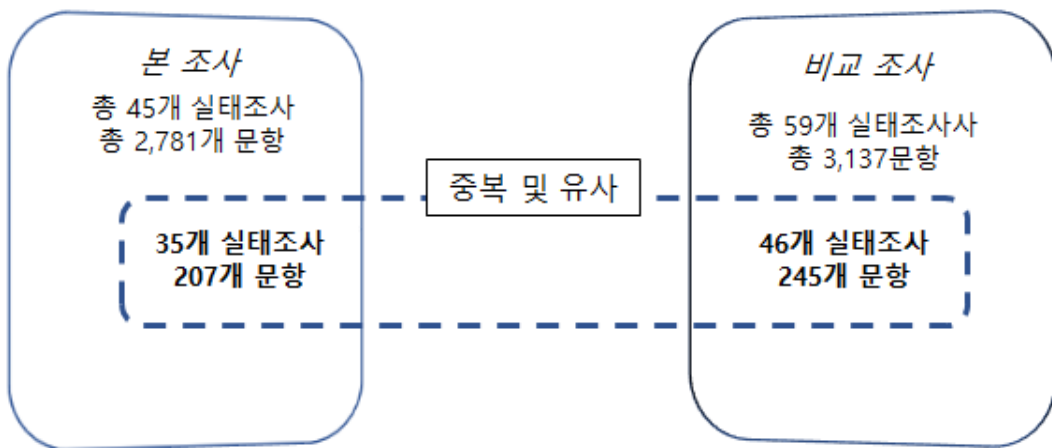
〈표 4-2〉 중복·유사조사 대상 실태조사

번호	실태조사명	번호	실태조사명	번호	실태조사명
1	FTA특혜무역활용통계	33	아동종합실태조사	65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	ICT실태조사	34	여성폭력실태조사	66	국가교통조사
3	ICT인력동향실태조사	35	완성공사원가통계	67	국민생활실태조사
4	가구에너지패널조사	36	이러닝산업실태조사	68	기업무역활동통계
5	가족실태조사	37	일가정양립실태조사	69	기업체노동비용조사
6	건물에너지사용량	38	임금결정현황조사	70	무역통계
7	건설공사계약통계	39	장애인생활체육조사	71	문화예술활동현황조사
8	건설업경영분석	40	전국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	72	방송통신광고비조사
9	건설업임금실태조사	41	전문건설업통계조사	73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10	건축허가및착공통계	42	전통시장·상점가및점포경영 실태조사	74	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
11	경제활동인구조사	43	종합건설업조사	75	사이버폭력실태조사
12	고령친화용품제조업 실태조사	44	주거실태조사	76	상가건물임대차실태조사
13	공연예술조사	45	주택보급률	77	생활시간조사
14	광고산업조사	46	주택이외의 거쳐 거쳐주거실태조사	78	신재생에너지보급실적조사
15	교통부문수송실적보고	47	주택이외의 거쳐주거실태조사	79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16	국내건설수주동향조사	48	주택이외의거쳐주거실태조사	80	에너지기술기업실태조사
17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49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	81	에너지총조사
18	국민여가활동조사	50	중소기업실태조사	82	여성기업실태조사
19	근로자휴가조사	51	중소기업정보화수준조사	83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20	대중교통현황조사	52	지역별 사업체노동력조사	84	장애인실태조사
21	무역경기확산지수	53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85	전국폐기물통계조사
22	발달장애인일과삶실태조사	54	콘텐츠산업조사	86	주택소유통계
23	보건복지부 아동종합실태조사	55	학교폭력실태조사	87	주택총조사
24	부동산시장소비자심리조사	56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88	지역별고용조사
25	비점오염원의화학물질 배출량조사	57	한부모가족실태조사	89	창업기업실태조사
26	사업체노동력조사	58	환경전문공사업수주실적현황	90	측량업체임금실태조사
27	사업체노동실태현황	59	1인창조기업실태조사	91	한국노동패널조사
28	상업용부동산임대동향조사	60	ICT전문인력수급실태조사	92	항노화제조산업실태조사
29	설비건설업통계조사	61	ICT중소기업실태조사	93	화학물질배출량조사

번호	실태조사명	번호	실태조사명	번호	실태조사명
30	소상공인실태조사	62	가족과출산조사	94	환경산업통계조사
31	수출산업경기전망조사	63	건설경기동향조사		
32	신재생에너지산업 실태조사	64	건설업조사		

출처: 직접 작성

〈그림 4-1〉 실태조사 중복·유사 조사개요



주) 실태조사 수에 있어서는 일부 중복됨

출처: 직접 작성

## 나. 분석 결과

분석 결과는 크게 4가지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우선 전체 실태조사 수준에서 중복 및 유사 문항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다음으로는 비교조사와 본조사를 중심으로 유사중복 현황을 파악하였다.

### 1) 전체 실태조사에서의 유사·중복 현황

여기서는 먼저 본조사와 비교조사를 구분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현황을 제시한 후, 본조사와 비교조사 각각의 현황을 제시하였다. 임의로 본조사와 비교조사를 구분한 것이므로, 구분 결과에 따라서 분석 결과가 상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본조사와 비교조사를 구분한 것이지만, 중복 및 유사 는 그 원인과 결과 또는 선후 관계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즉 여기서는 본조사와 비교조사로 구분하면서 본조사의 문항을 기준으로 비교조사 문항에서의 중복 및 유사 사례를 파악하기는 했지만, 본조사로 구분한 실태조사의 경우에도 실제로는 비교조사의 조사 문항을 참조하여 작성

된 것일 수 있다. 따라서 인과관계 및 선후 관계를 밝히기 어려운 경우, 전체 집단 및 샘플을 대상으로(본조사와 비교조사를 구분하지 않고) 중복 및 유사 문항의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전체 분석 대상 샘플은 94개 실태조사였지만, 그중 유사·중복이 있는 것은 62개였다. 여기서 '종합건설업조사'와 '건설업조사'는 동일한 것이고, '전문건설업조사'는 '건설업조사'와 동일한 조사양식을 활용하고 있어, '건설업조사'는 제외하였다. 사실상 동일한 조사라고 볼 수 있다.

62개 실태조사에서 활용되는 문항은 총 3,291개였으며, 그중 402개 문항이 상호 유사·중복되고 있어, 평균적으로는 실태조사당 전체 문항의 12.2%에서 유사·중복 문제가 있었다. 유사중복 문항이 가장 많은 실태조사는 '주거실태조사'로서 총 26개 문항에 다른 실태조사와 유사·중복되는 부분이 있었다. '주거실태조사'는 '주택이외의거처주거실태조사', '주택총조사', '주택소유통계'와 유사·중복 문항을 가지고 있었다. 점유형태, 주택유형, 주택 구조 등과 같은 주거실태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이 그 대상이어서, 주거 및 주택 관련 조사에서 불가피를 결과로도 볼 수 있다. '주거실태조사'는 비록 유사·중복 문항이 많기는 하지만, 전체 문항 자체가 78개로 많은 편이어서 해당 조사의 전체 문항 중에서 유사·중복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아니었다(33.3%). 그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ICT인력동향실태조사'로서 총 23개 문항 중 20개 문항이 다른 실태조사와 유사·중복되었다(87.0%). 'ICT전문인력수급실태조사'와 유사·중복이 발견되었는데, 'ICT인력동향실태조사'에서의 19개 문항은 'ICT전문인력수급실태조사'의 6개 문항과 유사한 부분이 있었고, 'ICT인력동향실태조사'에서 조사대상 기업의 주된 사업 내용을 묻는 문항은 'ICT전문인력수급실태조사'에서는 7개 문항으로 세분화되어 있었다.

〈표 4-3〉 전체 실태조사에서의 유사중복 현황

번호	조사명	총문항수	유사문항수	유사중복 비율
1	ICT인력동향실태조사	23	20	87.0%
2	향노화제조산업실태조사	11	7	63.6%
3	근로자휴가조사	8	4	50.0%
4	ICT실태조사	25	12	48.0%
5	건설업임금실태조사	42	20	47.6%
6	국내건설수주동향조사	17	8	47.1%
7	소상공인실태조사	37	16	43.2%
8	콘텐츠산업조사	31	12	38.7%
9	주거실태조사	78	26	33.3%
10	비점오염원의화학물질배출량조사	13	4	30.8%
11	건설경기동향조사	29	8	27.6%
12	무역경기확산지수	8	2	25.0%
13	수출산업경기전망조사	8	2	25.0%

번호	조사명	총문항수	유사문항수	유사중복 비율
14	전문건설업통계조사	28	7	25.0%
15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53	13	24.5%
16	고령친화용품제조업실태조사	29	7	24.1%
17	국가교통조사	17	4	23.5%
18	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	13	3	23.1%
19	사업체노동력조사	9	2	22.2%
20	경제활동인구조사	47	10	21.3%
21	주택이외의거처주거실태조사	57	12	21.1%
22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19	4	21.1%
23	에너지기술기업실태조사	26	5	19.2%
24	종합건설업조사	26	5	19.2%
25	ICT전문인력수급실태조사	74	13	17.6%
26	1인창조기업실태조사	64	11	17.2%
27	신재생에너지산업실태조사	42	7	16.7%
28	화학물질배출량조사	26	4	15.4%
29	창업기업실태조사	61	9	14.8%
30	주택이외의 거처 거처주거실태조사	57	8	14.0%
31	중소기업실태조사	72	10	13.9%
32	국민여가활동조사	64	8	12.5%
33	가구에너지패널조사	74	9	12.2%
34	문화예술활동현황조사	9	1	11.1%
35	기업체노동비용조사	34	3	8.8%
36	일가정양립실태조사	72	6	8.3%
37	전국폐기물통계조사	24	2	8.3%
38	중소기업정보화수준조사	38	3	7.9%
39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	51	4	7.8%
40	이러닝산업실태조사	133	10	7.5%
41	기업무역활동통계	54	4	7.4%
42	주택소유통계	41	3	7.3%
43	무역통계	55	4	7.3%
44	주택총조사	152	11	7.2%
45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58	4	6.9%
46	발달장애인일과삶실태조사	44	3	6.8%
47	전통시장·상점가및점포경영실태조사	45	3	6.7%
48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66	4	6.1%
49	에너지총조사	99	6	6.1%
50	ICT중소기업실태조사	59	3	5.1%

번호	조사명	총문항수	유사문항수	유사중복 비율
51	상가건물임대차실태조사	42	2	4.8%
52	보건복지부 아동종합실태조사	90	4	4.4%
53	환경전문공사업수주실적현황	71	3	4.2%
54	공연예술조사	24	1	4.2%
55	건설업경영분석	230	9	3.9%
56	생활시간조사	27	1	3.7%
57	주택이외의 거주주거실태조사	57	2	3.5%
58	여성기업실태조사	86	3	3.5%
59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118	4	3.4%
60	전국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	67	2	3.0%
61	대중교통현황조사	164	4	2.4%
62	환경산업통계조사	93	1	1.1%

출처: 직접 작성

한편 점검 결과 중복 및 유사 사례가 발견된 비교조사의 수는 총 46개였다. 중복 및 유사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비교조사로 활용된 59개의 조사 중 약 78%가 중복 및 유사 문항을 1개 이상 가지고 있었다. 본조사 45개 1,806개 문항 중 35개 조사에서의 총 207개 문항이 비교조사에서의 문항과 중복 및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문항 수로는 전체 문항에서 약 11.5%가 비교조사 문항과 중복 및 유사성이 있는 셈이다. 반면에 비교조사의 경우에는 2,272개 문항 중 약 10.8%가 중복 및 유사성이 있었다. 본조사에서의 중복 및 유사성이 발견된 문항 수와 비교조사에서의 중복 및 유사성이 발견된 문항 수가 다른 이유는, 본조사의 문항과 그 내용이나 의미가 동일하거나 혹은 매우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문구나 표현을 활용한 비교조사의 문항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즉 본조사에서의 문항과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형태의 문항이 비교조사에서는 일 대 일로 존재하는 경우 외에, 일 대 다수의 형태인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표 4-4〉 실태조사 중복·유사 점검 결과

본조사			비교조사		
조사명	문항수	유사중복 문항수	조사명	문항수	유사중복 문항수
사업체노동력조사	9	2	종합건설업조사	25	1
			건설업임금실태조사	42	4
			전문건설업통계조사	28	2
직종별사업체 노동력조사	19	2	종합건설업조사	26	2
			건설업임금실태조사	42	1
			전문건설업통계조사	28	2

본조사			비교조사		
조사명	문항수	유사중복 문항수	조사명	문항수	유사중복 문항수
기업체노동비용 조사	34	3	종합건설업조사	26	2
			건설업임금실태조사	42	4
			전문건설업통계조사	28	3
고용형태별근로 실태조사	53	13	경제활동인구조사	47	10
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 조사	13	3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18	2
일가정양립 실태조사	72	6	국민여가활동조사	64	4
			근로자휴가조사	8	2
ICT전문인력수급 실태조사	74	13	ICT인력동향실태조사	23	20
ICT중소기업 실태조사	59	3	중소기업정보화수준조사	38	3
무역통계	55	4	무역경기확산지수	8	2
기업무역활동통계	54	4	수출산업경기전망조사	8	2
국가교통조사	17	4	대중교통현황조사	164	4
주거실태조사	78	15	주택이외의거처주거실태조사	57	12
콘텐츠산업조사	31	12	이러닝산업실태조사	133	10
국민여가활동조사	64	3	근로자휴가조사	8	2
에너지총조사	99	6	가구에너지패널조사	74	9
전통시장·상점가및점포경 영실태조사	45	2	소상공인실태조사	37	2
여성기업실태조사	86	3	중소기업실태조사	72	3
중소기업실태조사	72	7	ICT실태조사	25	12
벤처기업정밀 실태조사	66	4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	51	4
상가건물임대차 실태조사	42	2	전통시장·상점가및점포경영실태조 사	45	1
1인창조기업 실태조사	64	11	소상공인실태조사	37	6
창업기업실태조사	61	9	소상공인실태조사	37	8
주택총조사	152	11	주거실태조사	78	9
			주택이외의 거처 거처주거실태조사	57	8
건설업조사	25	25	건설업경영분석	230	9
			건설업임금실태조사	42	11
			전문건설업통계조사	28	25
건설경기동향조사	29	8	국내건설수주동향조사	17	8
생활시간조사	27	1	국민여가활동조사	64	1
주택소유통계	41	3	주거실태조사	78	2
			주택이외의 거처주거실태조사	57	2
문화예술활동현황조사	9	1	공연예술조사	24	1

본조사			비교조사		
조사명	문항수	유사중복 문항수	조사명	문항수	유사중복 문항수
향노화제조산업 실태조사	11	7	고령친화용품제조업실태조사	29	7
에너지기술기업 실태조사	26	5	신재생에너지산업실태조사	42	7
장애인경제활동 실태조사	118	4	발달장애인일과삶실태조사	44	3
아동청소년인권 실태조사	58	4	보건복지부 아동종합실태조사	90	4
전국폐기물 통계조사	24	2	전국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	67	2
화학물질배출량 조사	26	4	비점오염원의화학물질배출량조사	13	4
환경산업통계조사	93	1	환경전문공사업수주실적현황	71	3
총 35개 조사 1,806개 문항 유사중복 207개 문항			총 46개 조사 2,272개 문항 유사중복 245개 문항		

주) '건설업조사'를 제외하지 않은 결과임.

출처: 직접 작성

## 2) 비교조사 중심의 유사·중복 현황

여기서는 비교조사 및 그 문항을 중심으로 중복 및 유사 문항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유사·중복 문항이 많은 실태조사가 무엇이며, 복수의 본조사와 문항의 유사·중복이 있는 경우, 해당 비교조사의 전체 문항 중에서 중복 및 유사 문항의 비율 등을 조사하여 정리하였다. 단, '건설업조사'의 경우 그 양식이 '전문건설업조사'와 동일하므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비교조사에서 유사·중복이 있는 실태조사는 46개이지만, 중복되는 실태조사를 제외하면 33개였다. 33개의 실태조사에서 활용하는 총 문항수는 1,787개이며, 그중 220개 문항이 유사·중복이었으므로, 12.3%의 비율이다.

가장 유사·중복 문항이 많은 실태조사는 '건설업임금실태조사'로서 총 20개 문항이 유사·중복이었다. 해당 실태조사의 총 문항 수가 42개이므로 유사·중복이 있는 문항의 비율은 47.6%였다.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ICT인력동향실태조사'였다. 총 23개 문항 중에 유사·중복이 되는 문항이 20개여서, 87.0%였다. 이와 관련된 설명은 이전 파트에서 제시하였다.



〈표 4-5〉 비교조사에서의 유사·중복 현황

번호	조사명	총 문항수	유사중복 문항수	유사·중복 비율
1	ICT인력동향실태조사	23	20	87.0%
2	근로자휴가조사	8	4	50.0%
3	ICT실태조사	25	12	48.0%
4	건설업임금실태조사	42	20	47.6%
5	국내건설수주동향조사	17	8	47.1%
6	소상공인실태조사	37	16	43.2%
7	비점오염원의화학물질배출량조사	13	4	30.8%
8	무역경기확산지수	8	2	25.0%
9	수출산업경기전망조사	8	2	25.0%
10	전문건설업통계조사	28	7	25.0%
11	고령친화용품제조업실태조사	29	7	24.1%
12	경제활동인구조사	47	10	21.3%
13	주택이외의거처주거실태조사	57	12	21.1%
14	종합건설업조사	26	5	19.2%
15	신재생에너지산업실태조사	42	7	16.7%
16	주거실태조사	78	11	14.1%
17	주택이외의 거처 거처주거실태조사	57	8	14.0%
18	가구에너지패널조사	74	9	12.2%
19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18	2	11.1%
20	중소기업정보화수준조사	38	3	7.9%
21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	51	4	7.8%
22	국민여가활동조사	64	5	7.8%
23	이러닝산업실태조사	133	10	7.5%
24	발달장애인일과삶실태조사	44	3	6.8%
25	보건복지부 아동종합실태조사	90	4	4.4%
26	환경전문공사업수주실적현황	71	3	4.2%
27	공연예술조사	24	1	4.2%
28	중소기업실태조사	72	3	4.2%
29	건설업경영분석	230	9	3.9%
30	주택이외의 거처주거실태조사	57	2	3.5%
31	전국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	67	2	3.0%
32	대중교통현황조사	164	4	2.4%
33	전통시장·상점가및점포경영실태조사	45	1	2.2%

출처: 직접 작성

일부 비교조사에서는 유사·중복이 되는 대상(본조사)이 하나 이상인 경우가 많다. 앞서 제시한 것처럼 하나의 본조사 문항의 유사·중복은 복수의 비교조사와 연결되어 있었다. 이는 하나의 문항을 여러 다른 조사에서 유사 및 중복해서 활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개의 경우 유사·중복이 있는 비교조사의 문항 수가 본조사 문항 수보다 많으므로, 유사·중복의 현황을 분해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 비교조사의 내용을 중심으로 유사중복되는 본조사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유사중복의 경우, 비교조사와 본조사가 일 대 일로 매칭되고 있으나, '건설업임금실태조사'의 경우에는 20개 문항이 각기 '건설업조사', '기업체노동비용조사', '사업체노동력조사',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의 일부 문항들과 유사·중복되었다. 20개 문항 중 가장 많은 11개가 '건설업조사'와 유사·중복되고 있어, '건설업임금실태조사'에서의 유사·중복이 주로 '건설업조사'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소상공인실태조사'의 16개 문항은 '1인창조기업실태조사', '전통시장 상점가 및 점포경영실태조사', '창업기업실태조사'와 유사·중복되었는데, '1인창조기업실태조사'와는 6개 문항이, '창업기업실태조사'와는 8개 문항이 유사·중복되어, 특정 조사로 편중되지는 않았다.

〈표 4-6〉 비교조사 문항과 유사·중복된 본조사 문항수

비교조사		본조사	
조사명	유사중복 문항수	조사명	유사중복 문항수
ICT실태조사	12	중소기업실태조사	12
ICT인력동향실태조사	20	ICT전문인력수급실태조사	20
가구에너지패널조사	9	에너지총조사	9
건설업경영분석	9	건설업조사	9
건설업임금실태조사	20	건설업조사	11
		기업체노동비용조사	4
		사업체노동력조사	4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1
경제활동인구조사	10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10
고령친화용품제조업실태조사	7	향노화제조산업실태조사	7
공연예술조사	1	문화예술활동현황조사	1
국내건설수주동향조사	8	건설경기동향조사	8
국민여가활동조사	5	생활시간조사	1
		일가정양립실태조사	4
근로자휴가조사	4	국민여가활동조사	2
		일가정양립실태조사	2
대중교통현황조사	4	국가교통조사	4

비교조사		본조사	
조사명	유사중복 문항수	조사명	유사중복 문항수
무역경기확산지수	2	무역통계	2
발달장애인일과삶실태조사	3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3
보건복지부 아동종합실태조사	4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4
비점오염원의화학물질배출량조사	4	화학물질배출량조사	4
소상공인실태조사	16	1인창조기업실태조사	6
		전통시장·상점가및점포경영실태조사	2
		창업기업실태조사	8
수출산업경기전망조사	2	기업무역활동통계	2
신재생에너지산업실태조사	7	에너지기술기업실태조사	7
이러닝산업실태조사	10	콘텐츠산업조사	10
전국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	2	전국폐기물통계조사	2
전문건설업통계조사	7	기업체노동비용조사	3
		사업체노동력조사	2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2
전통시장·상점가및점포경영실태조사	1	상가건물임대차실태조사	1
종합건설업조사	5	기업체노동비용조사	2
		사업체노동력조사	1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2
주거실태조사	11	주택소유통계	2
		주택총조사	9
주택이외의 거처 거처주거실태조사	8	주택총조사	8
주택이외의 거처주거실태조사	2	주택소유통계	2
주택이외의거처주거실태조사	12	주거실태조사	12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	4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4
중소기업실태조사	3	여성기업실태조사	3
중소기업정보화수준조사	3	ICT중소기업실태조사	3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2	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	2
환경전문공사업수주실적현황	3	환경산업통계조사	3

출처: 직접 작성

### 3) 본조사 중심의 유사·중복 현황

세 번째로는 본조사 및 그 문항을 중심으로 현황을 파악하였다. 비교조사의 경우와는 반대로 본조사의 문항이 복수의 비교조사에서의 문항과 유사·중복되어 있는 경우와 그 수준, 비교조사 문항과의 유사·중복이 많이 발견되는 본조사는 무엇이며, 문항의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본조

사의 전체 문항 중에서 유사·중복 문항의 비율이 높은 조사는 무엇인지에 대해 파악하였다.

본조사에서 유사·중복이 있는 조사는 총 35개이지만, '건설업조사'가 있어, 그것을 제외한 34개의 조사가 비교조사와 유사·중복 문항을 가지고 있었다. 유사·중복 문항이 가장 많은 본조사는 '주거실태조사'였으며, 그 조사와 유사·중복되는 조사는 '주택이외의거처주거실태조사'였다. 15개 문항이 유사·중복되었는데, 총 문항 수가 78개로서 비율은 19.2%였다. 유사·중복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항노화제조산업실태조사'로서 비교조사에서의 '고령친화용품제조업실태조사'와 7개의 문항이 유사·중복이었다. 총 문항 수가 11개였으므로, 유사·중복의 비율은 63.6%였다. 한편 대부분의 본조사는 비교조사의 일 대 일 형식으로 유사·중복이 있으나, 일부의 경우에는 복수의 비교조사와 유사·중복이 발생하고 있었다. '기업체노동비용조사', '사업체노동력조사' 등이 그러한데, 최대 3개의 비교조사와 유사·중복이 있었다. 다만 복수의 비교조사와 유사·중복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유사중복 문항 수와는 관련성은 없었다.

〈표 4-7〉 본조사에서의 유사·중복 현황

번호	행 레이블	문항수	유사·중복 문항수	유사·중복 비율	유사·중복 비교조사 수	유사·중복 비교조사 문항수(합계)
1	1인창조기업실태조사	64	11	17.2%	1	6
2	ICT전문인력수급실태조사	74	13	17.6%	1	20
3	ICT중소기업실태조사	59	3	5.1%	1	3
4	건설경기동향조사	29	8	27.6%	1	8
5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53	13	24.5%	1	10
6	국가교통조사	17	4	23.5%	1	4
7	국민여가활동조사	64	3	4.7%	1	2
8	기업무역활동통계	54	4	7.4%	1	2
9	기업체노동비용조사	34	3	8.8%	3	9
10	무역통계	55	4	7.3%	1	2
11	문화예술활동현황조사	9	1	11.1%	1	1
12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66	4	6.1%	1	4
13	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	13	3	23.1%	1	2
14	사업체노동력조사	9	2	22.2%	3	7
15	상가건물임대차실태조사	42	2	4.8%	1	1
16	생활시간조사	27	1	3.7%	1	1
17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58	4	6.9%	1	4
18	에너지기술기업실태조사	26	5	19.2%	1	7
19	에너지총조사	99	6	6.1%	1	9
20	여성기업실태조사	86	3	3.5%	1	3
21	일가정양립실태조사	72	6	8.3%	2	6

번호	행 레이블	문항수	유사·중복 문항수	유사·중복 비율	유사·중복 비교조사 수	유사·중복 비교조사 문항수(합계)
22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118	4	3.4%	1	3
23	전국폐기물통계조사	24	2	8.3%	1	2
24	전통시장·상점가및점포경영 실태조사	45	2	4.4%	1	2
25	주거실태조사	78	15	19.2%	1	12
26	주택소유통계	41	3	7.3%	2	4
27	주택총조사	152	11	7.2%	2	17
28	중소기업실태조사	72	7	9.7%	1	12
29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19	2	10.5%	3	5
30	창업기업실태조사	61	9	14.8%	1	8
31	콘텐츠산업조사	31	12	38.7%	1	10
32	항노화제조산업실태조사	11	7	63.6%	1	7
33	화학물질배출량조사	26	4	15.4%	1	4
34	환경산업통계조사	93	1	1.1%	1	3

출처: 직접 작성

〈표 4-8〉 유사·중복의 비율이 높은 사례

본조사		비교조사	
조사명	조사내용	조사명	조사내용
항노화제조 산업실태조사	다음은 기업체 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귀 기업체의 기본 현황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고령친화 용품제조업 실태조사	사업체 개요
	조직형태		조직형태
	다음은 항노화 의약품 품목별 생산여부 및 매출액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다음 각 품목의 생산여부 및 매출액을 아래에 제시된 지침에 따라 모두 말씀해주십시오.		먼저, 품목별로 취급여부를 기입한 후 전체 매출액/수출액 대비 해당 품목의 매출액/수출액을 백만원 단위로 기입해주시고, 주요 수출국, 수입국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사자 수		직군별 종사자 수 및 고령친화용품 분야 종사자 수
	귀 사의 고령친화용품분야 연구개발 인력의 연령별, 학력별 현황을 기입해 주십시오.		귀 사의 고령친화용품 분야 연구개발 이력의 연령별, 학력별 현황을 기입해주십시오.
	항노화 의약품 연구개발 현황		고령친화용품 연구개발 현황
	다음 중 귀 사 항노화 의약품 연구개발비의 투자 비중이 높은 순서대로 최대 3개까지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 귀 사 고령친화용품 연구개발비의 투자 비중이 높은 순서대로 최대 3개까지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직접 작성

## 제3절

## 법적 근거 분석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에서는 행정기관은 법령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행정조사의 실시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법령등에서 조사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여야 한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법령등에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이의 실시는 지방자치단체나 기타 공공기관 등을 통해 수행하는 경우에는 행정조사의 위임·위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전체 행정조사를 전수조사한 결과 법적 근거가 미흡하거나 위임·위탁 규정이 미흡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 그러나 본 조사에서 발굴한 사례가 전부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실제로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도 행정조사리스트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 발견이 어렵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실제로 행정조사에 대한 이번 전수조사과정에서 나타난 대표적인 문제점은 법적 근거를 두고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행정조사의 방법을 활용하는 행정조사임에도 등록하지 않아서 행정조사리스트에서 누락된 행정조사가 다수 발견되었다는 점이다. 현재 행정조사를 등록하고 있긴 하지만, 행정규제와 달리 별도로 행정조사인지 여부를 심사하는 전담조직이 없기 때문에 행정조사의 등록은 각 행정기관이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행 시스템으로 인하여 행정조사의 경우 등록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누락된 행정조사가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한계속에서 본 전수조사에서 발견된 법적 근거가 미흡한 행정조사와 위임·위탁 근거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행정조사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4-9〉 법령상 근거없는 행정조사 현황

번호	행정조사명	부처명	내용
1	어린이 안전사고 현장조사	행안부	어린이안전법에서 현장조사의 방법, 절차 등 규정을 시행령으로 위임하였으나 시행령에 해당 규정 미비
2	건설엔지니어링협회 지도·감독	국토부	국토교통부장관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도·감독 등 행정조사시 협회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우려가 있음.
3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국토부	근거법령 미비
4	요양기관 및의료급여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복지부	근거법령 미비

〈표 4-10〉 위임·위탁근거 정비 필요 행정조사

번호	행정조사명	부처명	내용
1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여가부	외부 전문기관 등 실태조사 수행 주체에 대한 명확한 위임 규정이 없음
2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여가부	외부 전문기관 등 실태조사 수행 주체에 대한 명확한 위임 규정이 없음
3	가족 실태조사	여가부	외부 전문기관 등 실태조사 수행 주체에 대한 명확한 위임 규정이 없음
4	의약품등·의약외품 생산 및 수출·수입실적	식약처	의약품, 의약외품 업체에서 생산·수입실적 등을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사단법인을 통해 보고하고 있으나, 법령상 위탁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5	수산종자생산업 실태조사	해수부	수산종자산업 실태조사 업무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위임하였으나, 실제로는 한국수산물자원공단에서 수행 중
6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고용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대한 위임·위탁 근거 규정 법령 미비
7	장애인 복지시설 실태조사	복지부	위임근거 없음
8	불법개설 의심 약국 행정조사	복지부	위임근거 없음
9	의료급여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복지부	위임근거 없음
10	요양기관 현지조사	복지부	위임근거 없음
11	종자산업 실태조사	농식품부	종자산업법에 따른 종자산업에 관한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는 같은 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국립종자원장이 위임받아 수행하고, 현장면담조사 등 일부 조사업무는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주어 실시

번호	행정조사명	부처명	내용
12	친환경적 산업구조 전환촉진을 위한 산업디자인 통계조사	산업부	산업디자인통계조사에 대한 위탁 근거 미비
13	문화산업 전문회사의 감독·검사	문체부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감독·검사*의 경우, 실제 조사는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수행하나 이에 대한 법령상 근거 부재
14	장사시설 등에 대한 보고 요구 및 출입검사	복지부	위임근거 없음
15	옥외광고업자 영업실태 조사	행안부	시군구에서 영업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조사 주기나 내용, 사전 통지 등에 대한 지침이 없음

다만,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 연구에서는 874건의 행정조사를 대상으로 유사·중복현황을 검토해보았다. 전술한 바와같이 중복조사는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동일한 사안을 조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유사조사에 대해서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별도로 규율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현행 법령상으로 유사조사를 정의하고 분류할 객관적인 기준은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874건의 모든 행정조사를 대상으로 조사내용과 조사대상자를 모두 검토하고, 유사한 것으로 보여지는 행정조사의 경우 각 중앙행정기관 담당자들의 대면 인터뷰를 통해서 유사성을 검토해보았다.



## 제4절

## 제재 수단과 수준 분석



## 1. 행정조사에 대한 제재 일반론

## 가. 행정조사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

행정조사는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이 어떠한 정책 결정을 하거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다른 행정행위나 법령 위반에 대한 처벌 등 제재를 가하게 되는 일종의 보조적 수단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행정목적 실현을 위해서 조사는 어느 정도 강제성을 띠게 되고 이러한 행정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불응한 경우에 일정한 제재(행정벌)를 가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행정조사는 조사 상대방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의 권리를 제한하게 되므로 행정조사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본래 행정벌은 행정법상 의무위반행위에 대해 일반 통치권에 기하여 일반 사인에게 과하는 제재로서, 처벌 내용을 기준으로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과태료)로 크게 구별된다. 행정벌이 과해지는 의무 위반은 행위의 성질 자체는 반윤리성, 반사회성을 띠지 않으나, 특정한 행정목적의 실현을 위해 국가의 제정법에 의한 명령, 금지를 위반했기 때문에 비로소 가벌성이 인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가벌성의 정도는 국민의 법감정과 사회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변할 수 있고, 비형벌화 정책이 강조되는 경우에는 형벌 조항이 과태료로 전환되고 이행강제금과 같은 전혀 다른 성질의 제재로 바뀔 수도 있다.<sup>5)</sup>

「행정조사기본법」에서는 행정조사의 유형을 현장조사, 문서열람, 시료채취, 보고요구, 자료 제출 요구, 출석·진술 요구, 등으로 제시(제2조제1호)하고 있으나,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령에서는 주로 보고 요구(명령), 자료 제출 요구(명령), 출입·검사, 질문, 수거, 점검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대부분의 행정조사는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조사의 근거와 절차 외에도 조사에 대한 거부 또는 방해행위 등에 대해서는 제재 규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5) 법제처(2022), 법령입안심사기준, 563쪽.

## 나. 행정조사에 대한 제재의 유형 개관

행정조사에 대한 제재는 행정조사기본법에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각 개별 법령에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제재 규정은 위반행위(구성요건)와 제재(형벌 또는 과태료) 부분으로 나누어볼 수 있으며, 그 유형은 매우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행정조사에 대한 위반행위는 행정조사의 유형에 따라 대략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분류해볼 수 있다.

첫째, 보고 의무나 보고 명령을 위반한 경우로서, 구체적으로는 일정한 사항에 대한 보고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보고 명령을 받은 경우에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둘째, 자료 제출 요구나 자료제출 명령을 위반한 경우로서, 일정한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받은 경우에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셋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나 질문, 수거 등을 방해하는 경우로서, 개별 법령에서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나 질문, 수거 등을 거부, 방해, 기피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다.

넷째, 점검이나 검사에 대해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로서, 주로 안전 관리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각종 점검이나 검사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음으로, 행정조사에 대한 제재 규정은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 형벌을 규정하는 경우로서, 벌칙 규정에서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부과하거나 이를 병과하는 것을 말한다. 형벌을 규정하는 것은 그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범죄와 같이 보는 것이므로 그 위반의 정도가 과태료에 비해 중요한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여야 할 것이다. 법령에 따라서는 위반행위 유형에 따라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부과하면서 동시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존재하기도 한다.

둘째, 형벌을 규정하지 않고, 과태료만 규정하는 것이다. 과태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정상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sup>6)</sup>로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에 의하면, 과태료의 부과대상인 ‘질서위반행위’는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포함)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질서위반행위는 법률이나 조례에 규정되는 행위라는 것 외에 구체적으로 질서위반행위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지 않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행정형벌처럼 행정 목적을 직접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라, 신고·등록·장부비치 의무 등을 태만히 하는 경우처럼 간접적으로 행정 목적의 달성에 장애를 미칠 위험성이 있는 정도의 단순한 의무

6) 강문수·김현희·나채준, 과태료 제도의 합리적인 정비를 위한 입법모델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7, 31면.

태만의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보편적이었으나, 행정목적은 직접 침해하는 것과 간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의 구별 기준이 모호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등록 취소, 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이다. 입법례를 살펴보면, 행정조사에 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 형벌을 부과하면서도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 개선명령, 시설 폐쇄 등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 형벌의 보충성 원칙에 따라 행정처분을 우선 부과하고, 그러한 행위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서 형벌을 부과해야 한다.

#### 다. 행정형벌과 과태료 부과 구분 기준

행정법상 의무 위반에 대해서 가해지는 행정벌은 크게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로 나누어지는데, 여기에서 행정형벌은 직접적으로 행정목적이나 사회법익을 침해하는 경우 부과되는 것이고, 행정법규의 위반이 비교적 경미하여 간접적으로 행정목적 달성에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는 정도의 단순한 의무태만에 대해서는 금전벌로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다.<sup>7)</sup> 그런데, 행정형벌을 부과하는 행위와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의 구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가변적인 측면이 있다. 대부분의 판례에서도 “어떤 행정법규 위반의 행위에 대해서 이를 단지 간접적으로 행정상의 질서에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음에 불과한 경우로 보아 행정질서 위반행위로 보아 과태료를 과할 것인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행정목적과 공익을 침해한 행위로 보아 행정형벌을 과할 것인지 기본적으로 입법권자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입법재량에 속하는 문제”<sup>8)</sup>로 파악하고 있어서 그 구별이 쉽지 않다.<sup>9)</sup>

이에 관해서 법제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sup>10)</sup>

7)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2022, 597면.

8) 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6헌바83, 김철용, 행정법, 고시계사, 2017, 36면.

9) 강문수·김현희·나채준, 앞의 보고서, 33면.

10)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2022, 598-599면.

###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의 과태료 부과 유형

행정 목적 달성에 지장이 적은 경미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지나친 형사처벌을 억제하여 다수 국민이 전과자가 되는 것을 막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 목적 달성에 지장이 적은 것으로 보이는 다음과 같은 유형의 의무위반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 ① (인허가 등) 특정 영업이나 행위에 필요한 행정청의 인허가, 승인, 지정, 등록 등에 관한 의무 위반행위
- ② (신고) 특정 영업이나 행위를 하기 위해 법령에 따라 행정청에 문서로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영업 개시신고, 변경신고, 승계신고, 휴·폐업신고, 행위신고)
- ③ (보고) 법령의 적용을 받는 개인, 법인이나 행정기관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단체 등이 특정한 사항의 보고의무나 자료제출 의무를 불이행하는 행위(특정 사실의 발생을 행정청에 통지, 통보, 신고할 의무 불이행, 법령에 따른 보고나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허가증·요금표 등 표지물의 게시 위반 등)
- ④ (행정상 명령) 행정청이 특정인에게 부과하는 일정한 법률상의 작위, 부작위 또는 수인(受忍) 의무 등을 불이행하는 행위(이행명령, 개선명령, 시정명령, 조치명령, 보완명령)
- ⑤ (조사)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정기관의 직원이 그 감독을 받는 사업장, 공장, 창고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를 조사하는 등을 기피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조사의 방해·기피·회피, 자료제출·설명·보고 명령(요구) 불응, 출석이나 진술·답변 요구 불응)
- ⑥ (계획) 업무수행을 위해 자체적으로 계획, 대책, 규정, 기준 등을 수립·작성하고 이를 보고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수립한 계획 등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
- ⑦ (유사명칭) 법률상 특정 자격을 갖춘 자가 아님에도 해당 자격명칭을 사용하거나 법률에 따라 설립 또는 구성된 특정 기관의 명칭을 그 기관 외의 자가 사용하는 행위
- ⑧ (교육) 법률상 일정한 교육을 이수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불이행하거나 관리자 등이 교육대상자에 대해 교육을 시키지 않거나 교육 참가를 허용하지 않는 행위(보수교육, 연수교육, 안전교육, 위생교육)
- ⑨ (강제보험) 의무보험에 가입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보험사고 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행위
- ⑩ (게시) 법령에 따른 자격이 있음을 나타내는 증명서나 요금 등의 정보를 영업소, 사업장 등에 게시하지 않는 행위
- ⑪ (보존) 법령에 따라 기록·보존되어야 할 사항을 작성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는 행위와 장부를 비치하거나 열람에 제공하지 않는 행위
- ⑫ (통지) 특정 사실을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통보, 설명할 의무를 위반하거나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외부에 공지·공시할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⑬ (인력배치) 업무상 특정 인력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해당 인력을 선임, 지정, 배치하지 않는 행위
- ⑭ (인증) 사용이나 판매를 위해 사전에 검정이나 인증을 받아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로서 그 대상의 특성에 따라 형식승인, 검정, 형식검정, 형식등록 등 다양한 명칭으로 표현됨
- ⑮ (검사) 안전 등을 위해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 시 받아야 하는 검사나 점검을 받지 않는 행위
- ⑯ (표시)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 수단에 법령에서 정한 특정사항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하는 행위
- ⑰ (토지출입) 행정청이나 사업시행자 등 권한 있는 자가 공사, 조사, 측량 등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것을 거부·방해·기피하는 행위나 공무원 등이 토지 출입 시에 지켜야 할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⑱ (기타) 준수사항 위반, 검직금지 등

위 유형에 속하더라도 다음 사항은 형사벌로 처벌하도록 한다.

- ① 단순한 행정질서 위반이라도 이와 관련성이 깊은 범죄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사항
- ② 행정질서 위반이 결과적으로 위생과 안전의 확보를 크게 저해하는 사항
- ③ 정부 역점 정책에 관련되는 사항
- ④ 제도의 목적 자체를 침해하는 사항(신고영업의 경우 영업신고 등)
- ⑤ 그 밖에 제도의 목적 달성을 위해 반드시 형벌로 처벌해야 할 사항 등

이에 따르면, 행정 목적 달성에 지장이 적은 경미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해서 행정형벌보다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그 대상으로 15개 유형을 제시한 것 중에 행정조사에 해당하는 ③보고, ⑤조사, ⑫검사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행정조사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국회의 입법 실무 지침이라고 할 수 있는 「법제이론과 실제」에서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sup>11)</sup>

#### 국회 「법제이론과 실제」의 과태료 부과 유형

행정목적 달성에 대한 침해가 경미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지나친 형사처벌을 방지하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래 유형의 의무위반행위는 과태료의 처분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① 신고의무 위반(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 신고·허가 또는 등록사항 변경/ 사업 등의 양도·양수·승계)
- ② 장부(서류)의 작성·비치·보존의무 위반
- ③ 허가증·등록증·면허증 등의 갱신 또는 반납 불이행
- ④ 허가증·요금표 등 표지물의 게시의무 위반
- ⑤ 자료·물건제출, 보고·출석·답변 등의 거부 또는 거짓 이행
- ⑥ 검사·조사 또는 출입검사 등의 거부·방해 또는 기피
- ⑦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
- ⑧ 공공기관, 그 밖의 특수법인 등의 등기 또는 공고 불이행, 규정·명령·지시위반
- ⑨ 검업·검영 또는 검직 금지의무 위반
- ⑩ 조사·측량 등을 위한 토지 등의 출입·사용의 거부·방해
- ⑪ 사용료·수수료 등의 요금면탈과 승인된 요금 외의 요금 수수
- ⑫ 그 밖에 경미하거나 수시로 과해지는 행정질서유지를 위한 의무 또는 명령의 위반

〈출처 : 국회사무처(2019), 법제이론과 실제, 624면〉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볼 때, 행정조사에 해당하는 보고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불이행, 거짓 보고나 자료제출, 출입·검사, 질문 등의 거부, 방해, 기피 등에 대해서는 모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단순한 행정질서 위반이라 할지라도 그것과 관련성이 깊은 범 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나, 행정질서 위반이 위생이나 안전의 확보를 크게 저해하는 것인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행정조사에 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하에서 등록 행정조사에 대한 제재 규정을 전수조사함으로써 행정조사 위반행위의 유형과 그에 대한 제재 유형을 분석함으로써 그 기준을 도출해볼 수 있을 것이다.

11) 국회사무처, 법제이론과 실제, 2019, 624면.

## 2. 행정조사에 대한 제재 규정의 현황 분석

### 가. 등록 행정조사에 대한 제재 규정 개관

현재 중앙행정기관(부, 처, 청) 소관의 행정조사로 등록된 총 874건의 근거 법령을 전수 조사한 결과, 법령별로 다양한 유형의 위반행위와 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행정조사에 대한 위반행위는 보고나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 거짓으로 보고를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나 조사를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며, 그에 대한 제재 규정은 형벌, 형벌+과태료, 과태료, 행정처분, 형벌+행정처분, 과태료+행정처분 등으로 유형화해볼 수 있다. 하나의 법령에서 위반행위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형벌과 과태료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거나, 다양한 위반행위 유형을 하나로 묶어 형벌 또는 과태료의 동일한 제재를 규정한 경우도 있었다. 예컨대, 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면서도,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한 경우(「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원가 및 경영상황에 대한 보고 및 검사)가 있었고, 보고나 자료 제출 명령을 위반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한 경우(「양곡관리법」 제27조의 양곡 표시 실태조사)도 있었다. 이러한 행정벌 외에도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경우도 다수 존재하였고,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 행정벌(형벌과 과태료)과 행정처분을 함께 규정하는 경우도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총 874건의 행정조사 중에 위반시 행정처분이나 행정벌을 부과하는 것이 60% 이상에 해당하였고, 그 중에서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조사는 총 847건 중 107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12)</sup> 여기에는 형벌만 규정한 경우도 있지만, 형벌과 과태료를 함께 규정하거나, 행정처분을 규정한 경우도 포함되어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정조사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형벌을 부과할 수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러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형벌을 과태료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형벌을 규정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도 형량을 감경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도 동종 또는 유사한 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조사하여 그 금액을 합리화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선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행정조사 규정을 분석함으로써 정비 방안을 모색해보도록 하겠다.

12) 2022. 1. 기준 국무조정실에서 제공받은 행정조사 현황 전수조사표를 근거로 분석한 것이며, 전체 조사 수의 변동에 따라 형벌 제재 규정의 수도 변동이 가능함을 미리 밝혀둔다.

## 나. 제재 규정 현황 분석

행정조사로 등록된 총 874건의 행정조사 중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형벌을 규정한 107건의 조사에 대한 위반행위 유형별 제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11〉 행정조사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 제재 규정 현황

번호	소관 부처	조사명	위반행위별 제재
1	기재부	원가 및 경영상황에 대한 보고 및 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li> <li>•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을 보고한 경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li> </ul>
2	과기부	전파법 위반 관련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 시험 또는 현장 출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li> <li>• 자료 또는 기자재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li> </ul>
3	행안부	재해영향평가등의 혐의내용 이행여부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입, 조사를 방해, 기피한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li> </ul>
4	행안부	유선 및 도선 안전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사나 점검을 거부, 기피, 방해한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li> </ul>
5	농식품부	가축전염병 역학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경우, 거짓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 제출하는 경우, 고의로 사실 누락·은폐하는 경우 : 3백만원 이하의 벌금</li> </ul>
6	농식품부	수출입식물방제업체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사나 수거를 거부, 방해, 기피한 경우 : 영업 등록 취소 또는 1년 이내 기간 영업 정지 &amp;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li> </ul>
7	농식품부	양곡표시 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나 자료제출 명령 위반하거나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li> </ul>
8	산업부	광해방지사업 시설 등에 대한 보고 및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나 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li> </ul>
9	산업부	특정물질 관리 등에 관한 보고 및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 5백만원 이하 벌금</li> <li>• 검사나 수거를 거부, 방해, 기피한 자 :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li> </ul>
10	복지부	요양기관 현지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짓 보고, 거짓 서류 제출, 검사 또는 질문 거부방해기피 : 업무정지 부과</li> <li>• 보고나 서류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나 거짓 서류제출, 검사나 질문 거부, 방해, 기피한 경우 1천만원 이하 벌금</li> </ul>
11	복지부	의료급여 지급대상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나 서류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나 거짓 서류 제출, 질문, 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경우 : 업무정지</li> <li>• 정당한 사유없이 보고나 서류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나 거짓 서류 제출, 질문, 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경우 : 1천만원 이하의 벌금</li> </ul>

번호	소관 부처	조사명	위반행위별 제재
12	복지부	제약사·의료기기사 등의 의료인 등에 대한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출보고서와 관련 장부 및 근거 자료의 제출 요구를 따르지 않은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li> </ul>
13	복지부	불법개설 의심 의료기관 행정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33조제2항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li> </ul>
14	복지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현지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당한 이유없이 보고나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나 자료제출을 한 경우, 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 수거를 거부, 방해, 기피한 경우 : 개선명령, 시설장 교체 등 행정처분</li> <li>정당한 이유없이 보고나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나 자료제출을 한 경우, 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 수거를 거부, 방해, 기피한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li> </ul>
15	복지부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료제출 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제출하거나, 질문이나 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 또는 거짓 답변한 경우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정지 6개월 부과 등</li> <li>자료제출 거부 또는 질문검사 거부, 방해, 기피하는 경우 응할 때까지 급여비용 지급 보류도 가능(제38조)</li> </ul>
16	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나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 거짓 자료제출한 경우, 검사나 조사, 질문을 거부, 방해, 기피한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li> <li>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한 경우, 조사, 검사, 질문을 거부, 방해, 기피한 경우 ; 시설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등 행정처분 부과</li> </ul>
17	복지부	장애인거주시설 지도·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나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 거짓 자료제출한 경우, 검사나 조사, 질문을 거부, 방해, 기피한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li> <li>정당한 사유없이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한 경우, 조사, 검사, 질문을 거부, 방해, 기피한 경우 ; 시설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등 행정처분 부과</li> </ul>
18	복지부	불법개설 의심 약국 행정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류 제출 요구 불응 또는 출입, 검사, 질문, 수거를 거부, 방해, 기피한 경우 : 등록 취소</li> <li>관계공무원의 조사, 검사, 질문, 수거를 거부, 방해, 기피한 경우 : 2백만원 이하의 벌금</li> </ul>
19	환경부	통합관리사업장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입, 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경우 : 5백만원 이하의 벌금</li> <li>보고나 자료제출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거짓 자료 제출한 경우 : 7백만원 이하의 과태료</li> </ul>
20	환경부	통합허가대행업자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입, 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경우 : 5백만원 이하의 벌금</li> <li>보고나 자료제출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거짓 자료 제출한 경우 : 7백만원 이하의 과태료</li> </ul>



번호	소관 부처	조사명	위반행위별 제재
21	환경부	측정대행업 불공정 계약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li> </ul>
22	환경부	대기배출시설 지도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경우 :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li> <li>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자료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한 경우 :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li> </ul>
23	환경부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보고 및 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경우 :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li> <li>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자료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한 경우 :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li> </ul>
24	환경부	도로제작·판매업자 기준 준수여부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경우 :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li> <li>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자료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한 경우 :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li> </ul>
25	환경부	악취배출시설 지도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계 공무원의 출입, 채취, 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경우 : 3백만원 이하의 벌금</li> <li>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li> </ul>
26	환경부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지도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경우 :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li> <li>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자료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한 경우 :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li> </ul>
27	환경부	자동차연료 첨가제 또는 촉매제 환경품질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li> </ul>
28	환경부	먹는샘물 제조업체 및 수입판매업체 지도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고, 출입검사 수거 또는 열람 방해, 거부, 기피한 경우 : 등록 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li> <li>출입, 검사, 수거를 거부, 방해, 기피한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li> <li>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li> </ul>
29	환경부	조치, 중지명령의 이행완료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치명령이나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li> </ul>
30	환경부	토양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 실적 보고, 지도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li> <li>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li> </ul>
31	환경부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사업장 지도·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경우: 5백만원 이하의 벌금</li> <li>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 자료제출 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 제출한 경우 :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li> </ul>

번호	소관 부처	조사명	위반행위별 제재
32	환경부	폐수배출시설 지도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경우(폐수무방류 배출시설 설치운영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li> <li>•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 자료제출 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제출한 경우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li> </ul>
33	환경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 지도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li> <li>•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 자료제출 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 제출한 경우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li> </ul>
34	환경부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li> <li>•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 자료제출 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 제출한 경우 :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li> </ul>
35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거부하거나, 출입 조사를 방해, 기피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li> </ul>
36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업자 관리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이나 보고, 조사를 거부한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li> </ul>
37	환경부	폐기물관련 사업자 지도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출입, 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li> </ul>
38	환경부	수입 및 수출폐기물에 대한 관리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입, 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li> <li>• 보고나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나 거짓 자료제출을 한 경우 :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li> </ul>
39	환경부	생활폐기물 수입운반업자 안전기준 준수여부 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li> </ul>
40	환경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제조수입업자에 대한 보고 및 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가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li> <li>• 거짓의 보고나 거짓 자료제출을 한 경우, 출입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li> </ul>
41	환경부	폐자동차 재활용 관리감독(결과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활용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li> <li>• 거짓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li> </ul>
42	환경부	전기전자제품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li> <li>• 거짓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li> </ul>
43	국토부	건축물관리 보고 및 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li> <li>• 보고나 검사 명령을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li> </ul>

번호	소관 부처	조사명	위반행위별 제재
44	국토부	설계도서(감리보고서 등)의 제출여부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li> <li>기간을 정하여 명한 서류 제출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li> </ul>
45	국토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결과보고서를 통보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li> <li>결과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다른 결과보고서를 복제하거나, 결과보고서 또는 그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li> </ul>
46	국토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하도급 제한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료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li> </ul>
47	국토부	유지관리업자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현황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고나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li> </ul>
48	국토부	성능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li> <li>cf. 거짓으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li> </ul>
49	국토부	유지관리 결과보고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li> <li>cf. 거짓으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제17조제2항 및 제3항 준용)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li> </ul>
50	국토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실태점검을 위한 자료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 제출한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li> </ul>
51	국토부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의 타당성평가대행 업무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나 자료제출, 조사를 거부한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li> </ul>
52	국토부	공항·비행장시설출입·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검사나 출입을 거부, 방해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기피한 경우 : 5백만원 이하의 벌금</li> </ul>
53	해수부	국적선 범위반 여부 특별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별점검 결과 운행정지명령 등 부과에 따르지 않은 경우 : 1천만원 이하의 벌금</li> </ul>
54	해수부	선박소유자 등 보고·자료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거짓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였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무원의 출입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 1천만원 이하의 벌금</li> <li>정당한 이유 없이 보고나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li> <li>보고, 자료제출 명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형식승인의 취소 또는 승인 효력 정지(제19조 등)</li> </ul>
55	해수부	어업감독공무원 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부, 서류, 물건의 검사에 따르지 않는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li> <li>질문에 답변을 기피하거나 거짓 진술하거나, 측량 검사와 장애물의 이전 제거를 거부, 방해한 경우 :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li> </ul>

번호	소관 부처	조사명	위반행위별 제재
56	해수부	유류오염 손해배상보장계약관련 서류제출 및 출입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서류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 서류 제출한 경우, 검사나 확인을 거부, 방해, 기피한 경우 : 5백만원 이하의 벌금</li> </ul>
57	해수부	항만협회 감독을 위한 보고 및 자료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짓으로 보고 또는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li> <li>•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나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자, 질문에 대한 진술 거부한 자 : 2백만원 이하 과태료</li> </ul>
58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GMP조사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2조 위반하여 GMP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영업정지, 품목 제조 정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li> </ul>
59	식약처	공중보건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이나 진술을 거부한 경우 : 제조, 수입, 판매 업무 정지 등</li> <li>• 자료제출 요구나 진술 요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 2백만원 이하의 벌금</li> </ul>
60	식약처	마약류 제조 원료물질취급자 지도·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 수거를 거부, 방해, 기피한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li> </ul>
61	식약처	마약류 취급자 지도·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당한 이유 없이 출입, 검사, 수거를 거부, 방해, 기피한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마약취급자)/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향정신성의약품)</li> </ul>
62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수거검사 및 표시기재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당한 이유 없이 출입, 검사, 수거를 거부, 방해, 기피한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마약취급자)/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향정신성의약품)</li> </ul>
63	식약처	수입식품 등 관련업소 지도·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사, 출입, 수거를 거부, 방해, 기피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li> </ul>
64	식약처	식품 등 관련업소 지도·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입, 검사, 수거를 거부, 방해, 기피한 경우 : 영업정지 부과</li> <li>• 출입, 검사, 수거를 거부, 방해, 기피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li> </ul>
65	식약처	동물실험시설 등 지도·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경우,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한 경우 : 2백만원 이하의 벌금</li> </ul>
66	식약처	의약품 제조 및 수입업체 지도·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계 공무원의 검사, 질문, 수거 등을 거부, 방해, 기피한 경우 : 2백만원 이하의 벌금</li> </ul>
67	식약처	의약품 제조 및 수입업체 지도·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계 공무원의 검사, 질문, 수거 등을 거부, 방해, 기피한 경우 : 2백만원 이하의 벌금</li> </ul>
68	식약처	신약 등 의약품 재심사 신청서의 신뢰성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계 공무원의 검사, 질문, 수거 등을 거부, 방해, 기피한 경우 : 2백만원 이하의 벌금</li> </ul>
69	식약처	비임상시험기관 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계 공무원의 검사, 질문, 수거 등을 거부, 방해, 기피한 경우 : 2백만원 이하의 벌금</li> </ul>

번호	소관 부처	조사명	위반행위별 제재
70	식약처	임상시험실시기관 실태조사	• 관계 공무원의 검사, 질문, 수거 등을 거부, 방해, 기피한 경우 : 2백만원 이하의 벌금
71	식약처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 실태조사	• 관계 공무원의 검사, 질문, 수거 등을 거부, 방해, 기피한 경우 : 2백만원 이하의 벌금
72	식약처	생물의약품 제조업체 지도·점검	• 관계 공무원의 검사, 질문, 수거 등을 거부, 방해, 기피한 경우 : 2백만원 이하의 벌금
73	식약처	한약재 제조 및 수입업체 출입검사	• 관계 공무원의 검사, 질문, 수거 등을 거부, 방해, 기피한 경우 : 2백만원 이하의 벌금
74	식약처	한약(생약) 제제 제조 및 수입업체 출입검사	• 관계 공무원의 검사, 질문, 수거 등을 거부, 방해, 기피한 경우 : 2백만원 이하의 벌금
75	식약처	위생용품 등 관련 업소 지도·점검	• 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 수거를 거부, 방해, 기피한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6	식약처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기록관리 지도·점검	• 기록을 작성, 보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 보존, 제출한 경우, 자료제출 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경우 : 해당품목 판매정지 1개월 • 제30조제1항, 제2항을 위반하여 기록을 작성·보존·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보존·제출한 경우, 자료제출 등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 5백만원 이하의 벌금
77	식약처	의료기기 부작용 보고	•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작용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기록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 업무정지 • 제3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보고하지 않은 경우) : 5백만원 이하의 벌금
78	식약처	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상황 보고	• 경고 또는 해당 임상시험업무 정지, 지정취소 • 임상시험결과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발급한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5백만원 이하의 벌금
79	식약처	의료기기 비임상시험기관 실태조사	• 비임상시험성적서를 거짓으로 작성, 발급한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80	식약처	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관 실태조사	• 경고 또는 해당 임상시험업무 정지, 지정취소 • 제32조제1항(보고나 검사) 위반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입·수거·폐쇄 또는 그 밖의 처분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5백만원 이하의 벌금
81	식약처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수입업체 지도·점검	• 제39조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질문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업무정지 • 관계 공무원의 조사, 검사, 질문, 수거를 거부, 방해, 기피한 경우 : 2백만원 이하의 벌금
82	식약처	인체세포동 관리업 및 세포처리시설 지도점검	• 제39조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질문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업무정지 • 관계 공무원의 조사, 검사, 질문, 수거를 거부, 방해, 기피한 경우 : 2백만원 이하의 벌금

번호	소관 부처	조사명	위반행위별 제재
83	식약처	화장품 관련 업체 출입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계 공무원의 검사, 수거를 거부, 방해, 기피한 경우 : 2백만원 이하의 벌금</li> <li>• 보고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은 자 :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li> </ul>
84	관세청	수출입물류업체 법규수행능력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류의 제출· 보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경우 : 1천만원 이하의 벌금</li> <li>• 세관장 또는 세관공무원의 조치(검사, 봉쇄)를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 : 1천만원 이하의 벌금</li> </ul>
85	관세청	선박용품 등 재고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부 또는 자료 제시 요구, 제출 요구를 거부한 경우 : 1천만원 이하의 벌금</li> </ul>
86	관세청	항공기용품 등 재고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류의 제출· 보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경우 : 1천만원 이하의 벌금</li> <li>• 세관장 또는 세관공무원의 조치(검사, 봉쇄)를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 : 1천만원 이하의 벌금</li> </ul>
87	관세청	자유 무역지역 입주업체 재고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한 경우 : 2천만원 이하의 벌금</li> </ul>
88	관세청	특송업체 자체시설 현장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관장 또는 세관공무원의 조치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 1천만원 이하의 벌금</li> </ul>
89	관세청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 적정성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류의 제출· 보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경우 : 1천만원 이하의 벌금</li> <li>• 세관장 또는 세관공무원의 조치(검사, 봉쇄)를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 : 1천만원 이하의 벌금</li> </ul>
90	관세청	물수품 등 위탁판매물품 관리상황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천만원 이하의 벌금</li> </ul>
91	관세청	관세사회 운영현황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천만원 이하의 벌금</li> </ul>
92	관세청	세울불균형 감면물품의 제조(수리)공장 지정 등 확인 및 운영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류의 제출· 보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경우 : 1천만원 이하의 벌금</li> <li>• 세관장 또는 세관공무원의 조치(검사, 봉쇄)를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 : 1천만원 이하의 벌금</li> </ul>
93	관세청	선급법인 및 컨테이너 지정 검사기관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천만원 이하의 벌금</li> </ul>
94	관세청	유통이력 신고의무자에 대한 유통이력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관장 또는 세관공무원의 조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세관공무원의 장부 또는 자료의 제시요구 또는 제출요구를 거부한 경우 : 1천만원 이하의 벌금</li> </ul>
95	소방청	소방특별조사 ⇨ 화재안전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재안전조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 방해, 기피한 경우 : 3백만원 이하의 벌금</li> </ul>

번호	소관 부처	조사명	위반행위별 제재
96	소방청	탱크안전성능시험자에 대한 출입검사	•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 관계공무원의 출입, 조사, 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경우 : 15백만원 이하의 벌금
97	소방청	위험물시설 및 저장취급기준 등 확인을 위한 출입검사	• 보고나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 자료제출을 한 자,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98	소방청	특정, 준특정 옥외탱크저장소에 대한 정밀정기검사	•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99	소방청	특정, 준특정 옥외탱크저장소에 대한 중간정기검사	•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00	소방청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 실태점검	• 제2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점검 업무를 거부, 방해, 기피한 경우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26조를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공무원의 출입, 조사업무를 거부, 방해, 기피한 경우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01	산림청	목재제품의 규격 품질표시 조사 검사	• 규격·품질표시 검사를 위한 수거, 조사, 검사 또는 열람을 거부, 방해, 기피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02	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역학조사	• 정당한 사유없이 역학조사를 거부, 방해, 회피한 경우 : 5백만원 이하의 벌금
103	질병청	감염병 역학조사	•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 방해, 회피하거나, 거짓 진술 또는 거짓 자료 제출하는 경우, 고의로 사실 누락, 은폐하는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04	해경청	연안체험활동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 안전점검을 위한 공무원의 출입을 거부, 방해, 기피한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05	원안위	방사능방재 정기검사	• 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06	원안위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	•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병과
107	원안위	발전용 및 연구용 원자로 등에 대한 검사	•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병과

행정조사 위반행위에 대해 형벌을 규정한 것으로 확인된 총 107건 중에서 행정조사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으로 볼 수 없는 4건<sup>13)</sup>을 제외하고 103건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상의 행정조사에 대한 위반행위 유형별로 나누어보면 다음과 같다.

#### 1) 보고나 자료 제출 의무 위반행위

위반행위의 유형은 ①보고나 자료 제출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보고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 ③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 상세하게 구분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징역 또는 벌금형을 규정한 경우, 벌금형을 규정한 경우, 과태료를 규정한 경우가 모두 존재하고, 일부 입법례에서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하고,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경우와 함께 징역 또는 벌금형을 부과한 경우<sup>14)</sup>가 있었다.

107개 중에서 보고나 자료제출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는 65건으로서 제재 내용은 과태료만 규정한 경우(100만원 이하~700만원 이하 과태료), 벌금형만 규정한 경우(300만원 이하의 벌금~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징역 또는 벌금형을 규정한 경우(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로 나타났다. 65건 중 과태료만 규정한 것이 18건(27.7%)으로서, 나머지 47건(72.3%)은 형벌과 과태료를 함께 규정하거나, 형벌을 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나 자료제출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 규정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13) 4건(생활폐기물 수입운반업자 안전기준 준수여부 실태조사, 조치, 중지명령의 이행완료 보고, 국적선 범위반 여부 특별점검, 건강기능식품 GMP 조사평가)에 대해서는 행정조사 자체에 대한 위반행위(보고나 자료제출 위반, 출입검사 등의 거부, 방해, 기피)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고, 행정조사를 통해서 확인하고자 한 본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인 것으로 최종 확인하여 뒤에서 관련 규정의 정비를 제안하였다.

14) 환경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제조수입업자에 대한 보고 및 검사



〈표 4-12〉 보고나 자료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 예시

조사명	근거법률	위반시 제재	비고
전파법 위반 관련 조사	전파법 제71조의2 제2항	<p><b>제86조(벌칙)</b>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제24조제4항 및 제5항(제58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7조의2제5항 및 제71조의2제1항 및 제2항(제47조의3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측정·조사·시험 또는 현장 출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p> <p><b>제90조(과태료)</b>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5의5. 제58조의6제1항 및 제71조의2제2항(제47조의3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 또는 기자재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p>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내용 이행여부 조사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의4 제2항	<p><b>제77조(벌칙)</b>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제6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입·조사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p>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양곡표시 실태조사	양곡관리법 제27조제1항	<p><b>제34조(벌칙)</b>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8.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을 위반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p>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광해방지사업 시설 등에 대한 보고 및 조사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9조	<p><b>제47조(벌칙)</b>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3.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p>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통합관리사업장 점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p><b>제43조(벌칙)</b>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2.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p> <p><b>제47조(과태료)</b>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7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p>	7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조사명	근거법률	위반시 제재	비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실태점검을 위한 자료요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9조제4항	<b>제65조(벌칙)</b>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59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험물시설 및 저장취급기준 등 확인을 위한 출입검사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2조	<b>제35조(벌칙)</b>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제22조제1항(제22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2)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 질문, 수거 등 방해 행위

두 번째 위반행위의 유형은 ①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 열람, 수거를 거부, 방해, 기피하는 경우, ②관계 공무원의 질문을 거부하거나 거짓 답변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총 85건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①징역 또는 벌금형을 규정한 경우(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②벌금형만 규정한 경우(2백만원 이하의 벌금~2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과태료를 규정한 경우 모두 존재하나, 과태료를 규정한 것은 이 위반행위 외에 다른 행위를 모두 과태료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2건)에 해당되었다. 따라서 2건을 제외한 나머지 제재 규정들은 모두 형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일부 조사는 즉, 1)의 보고나 자료 제출 의무 위반행위를 과태료로 규정한 반면, 2)의 출입·수거 등 방해행위에 대해 형벌로 규정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 질문, 수거 등의 방해 행위에 대해서 1)의 보고나 자료 제출 의무 위반행위에 비해 중한 형으로 처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 질문, 수거 등을 거부, 방해, 기피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표 4-13〉 출입검사 등 거부, 방해, 기피에 대한 제재 규정 예시

조사명	근거법률	위반시 제재	비고
유선 및 도선 안전점검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6조	<b>제40조(벌칙)</b>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26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안전점검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사명	근거법률	위반시 제재	비고
요양기관 현지조사	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제2항	<b>제116조(벌칙)</b> 제97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검사나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연료 첨가제 또는 촉매제 환경품질 사후관리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제5항	<b>제89조(벌칙)</b>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 제74조제5항에 따른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폐기물관련 사업자 지도점검	폐기물관리법 제39조	<b>제66조(벌칙)</b>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8. 제3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19. 제39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실태조사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21조	<b>제34조(벌칙)</b> 제21조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 또는 의견 진술 요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0만원 이하의 벌금
수입식품 등 관련업소 지도·점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5조	<b>제43조(벌칙)</b>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6. 제21조제1항 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출입·수거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유 무역지역 입주업체 재고조사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b>제60조(벌칙)</b>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한 자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목재제품의 규격 품질표시 조사 검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	<b>제45조(벌칙)</b>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규격·품질검사를 위한 수거·조사·검사 또는 열람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감염병 역학조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b>제79조(벌칙)</b>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제3항 <sup>15)</sup> 을 위반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5)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역학조사) ③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

3) 점검 등 거부나 방해 행위

세 번째 위반행위의 유형은 안전 확보를 위한 점검이나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2)에서 살펴본 출입·검사는 관계 공무원이 영업장이나 일정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나 서류 등을 검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반해, 여기에서의 검사는 안전확인을 위한 성능검사 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점검이나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는 총 4건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들 규정에 대해서는 모두 형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점검이나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의 제재 규정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표 4-14〉 점검 또는 검사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 예시

조사명	근거법률	위반시 제재	비고
특정, 준특정 옥외탱크 저장소에 대한 정밀정기검사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	<b>제35조(벌칙)</b>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정해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	원자력안전법 제16조	<b>제117조(벌칙)</b>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3. 제16조제1항(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2조제1항(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37조제1항·제47조제1항·제56조제1항·제65조제1항·제75조제1항·제77조제1항·제77조의3제1항 또는 제80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받아야 할 사항을 검사받지 아니하거나 제9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의 진술을 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병과

### 3. 행정조사 제재 규정의 정비 기준

#### 가. 정부의 경제형벌 비범죄화 방향

정부는 2022. 8. 민간중심 역동 경제 실현을 위한 경제형벌 합리화를 목표로 경제 형벌 규정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sup>16)</sup> 이에 따르면, 국민의 생명·안전 등 중요 법익과 관련성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비범죄화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충성·비례성 등 원칙에 의거하여 합리화할 예정이라고 한다.<sup>17)</sup> 발표된 경제형벌의 비범죄화 방향은 다음의 네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sup>18)</sup>

〈표 4-15〉 경제형벌 비범죄화를 위한 개선 유형

① (비범죄화 : 형벌폐지)	기존 행정제재로 충분히 입법 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 해당 형벌 폐지
② (비범죄화 : 과태료 전환)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인 경우 질서위반 행위로 보아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
③ (합리화 : 선 행정제재-후 형벌전환)	형벌 존치가 불가피하더라도 행정제재를 우선 부과하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 형벌 부과
④ (합리화 : 형벌 형량조정)	처벌이 과도하거나 책임 정도에 비례하지 않는 불합리한 형량 조정하여 합리화

출처 : 법무부(2022), “민간중심 역동경제 실현을 위한 경제형벌 합리화” - 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계획 및 1차 개선 과제 발표 -, 2022. 8. 26. 보도자료 2면)

이러한 정비 방향은 행정조사에 대한 제재 규정의 합리화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위계나 폭행 등 불법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행정조사에 대한 거부, 불이행 행위에 대해서는 징역이나 벌금형 등 형벌을 폐지하고 과태료 등으로 전환하거나, 형벌이 필요한 경우에도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행정처분 등 행정제재를 우선 적용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형벌을 부과하도록 하거나, 비례성 원칙에 따라 행위에 비해 과도한 처벌 규정을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

16) “민간중심 역동경제 실현을 위한 경제형벌 합리화” - 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계획 및 1차 개선 과제 발표 -, 법무부 2022. 8. 26. 보도자료 1면.

17) 앞의 보도자료, 1면.

18) 앞의 보도자료, 2면.

## 나. 행정조사 제재 규정의 완화를 위한 정비 기준

위의 경제형벌의 정비방향을 참고하여, 행정조사에 대한 제재 규정의 완화를 위한 정비 기준은 다음과 같이 설정해볼 수 있을 것이다.

### 1) 1단계 : 행정조사 제재 규정 중 형벌 규정의 비범죄화 필요성 판단

#### ① 국민의 생명·안전 또는 중대한 경제적·환경적 위해 발생과 관계 없는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해서 비범죄화 필요 : 조사의 목적, 위반행위 유형 고려

일반적으로 행정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관계공무원의 조사, 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나, 일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형벌을 부과하는 것도 가능하다. 따라서, 형벌이 부과될 수 있는 행정조사의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주로 국민의 생명이나 건강, 안전과 관련된 분야에서 생명, 건강,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요인을 차단, 방지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행정조사에 대해서는 이에 불응하거나 거부, 방해, 기피하는 경우에는 형벌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중대한 경제적 손실, 환경적 위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조사에 대해서도 형벌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는 행정조사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조사의 목적을 우선 고려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도 가능하면 단순한 보고나 자료제출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입법례에 따라서는 보고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보고나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를 다른 위반행위와 별도로 분리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도 있는 반면에,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 등 방해행위와 함께 징역 또는 벌금형을 규정한 것도 있어서 이러한 규정들은 정비가 필요하다.

#### ② 위반행위에 위계, 폭행 등 불법행위가 포함된 경우에 형벌 부과 가능

행정조사 위반행위 중에서 단순히 보고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와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것, 그리고 관계 공무원의 현장조사, 출입·검사나 수거 등을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하는 행위는 가벌성의 정도가 각각 다를 수 있다. 특히, 관계 공무원의 현장조사, 출입·검사나 수거 등은 조사대상자에게 1차적으로 보고나 자료제출을 요구한 이후에 2차적인 조사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벌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많은 입법례가 그러한 출입·검사 등을 거부, 방해, 기피하는 경우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이 중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형벌을 부과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보고나 자료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서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제출을 하는 것도 위계를 통한 조사 업무 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단순한 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불응에 비해서 가벌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대다

수의 입법례에서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 제출을 한 경우를 구분하지 않고 함께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것을 별도로 구분할 실익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107개의 행정조사 중에서 보고나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와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자료 제출한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한 입법례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제조 수입업자에 대한 보고 및 검사 규정과 항만협회 감독을 위한 보고 및 자료제출 총 2건이다. 만일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거짓 보고를 한 경우나 거짓 자료제출을 한 경우에는 단순한 보고나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과태료의 금액을 더 높게 설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질문에 대한 답변(진술)을 거부하는 것은 진술거부권의 행사로도 볼 수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 2) 2단계 : 형벌 규정을 존치할 경우 선 행정처분의 활용 및 형량 감경 필요성 검토

### ①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행정처분을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행정조사 위반행위에 대해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부과 여부 확인

전술한 바와 같이 형벌을 부과할 때에는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 등 행정제재가 있다면 그것을 우선 활용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형벌을 부과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행정조사 위반행위에 대해서 형벌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업무 정지, 등록 취소,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여 행정 제재를 우선 적용해야 할 것이다.

### ②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위반행위에 비해 처벌이 과도한지, 책임에 비례하는지 여부 확인 : 유사한 행위에 대한 형벌 규정 비교 검토

다음으로, 형벌을 부과할 때에는 비례성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위반행위에 비해 처벌이 비례성을 가지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위반행위에 비해 과도한 형벌은 감경해야 할 것이다. 우선, 행정조사를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보다 행정조사 자체에 대한 위반행위를 더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은 맞지 않다. 다음으로 해당 법률 및 다른 법률에서의 동종, 유사한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의 형량 또는 과태료 금액을 비교하여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경하도록 한다.

## 4. 과도한 제재(처벌규정) 정비 방안

### 가. 정비 방향

총 874건의 등록 행정조사의 근거 및 제재 규정을 전수조사한 결과, 위반행위의 유형은 보고나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거짓 보고나 거짓 자료제출을 한 경우,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 수거, 질문 등을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안전 확보 등을 위한) 점검이나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등으로 나누어볼 수 있었고, 이에 대해서는 형벌(징역 또는 벌금), 과태료, 행정처분 등이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행정조사는 원칙적으로 행정기관이 정책 결정이나 다른 행정행위를 하기 위한 정보 수집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보조적 수단이지만, 행정목적의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강제성을 수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위반행위에 대해 처벌 규정을 두어서 행정조사에의 협력을 강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행정조사에 대한 제재는 행정형벌보다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조사의 성격상 적절하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 현재 형벌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입법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 보이나, 행정조사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예외적으로 형벌을 부과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형벌의 부과가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기준을 되도록 마련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행정조사를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법령 위반 행위 또는 동종·유사한 위반행위에 비해 형량이 과도하지 않도록 정비해야 할 것이다.

그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현재 행정조사 위반행위에 대해서 형벌을 부과하고 있는 총 107건의 행정조사에 대해 1) 형벌을 과태료로 완화할 필요성이 있는 조사, 2) 형벌 부과하는 경우에도 형량 감경이 필요한 조사, 3) 그밖에 제재 규정의 정비가 필요한 조사로 나누어 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 여기에서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정조사, 중대한 경제상의 손해나 환경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들은 위반시 형벌을 유지하도록 하면서도 필요한 경우 형량을 감경하도록 하였다. 또한, 형벌을 부과하고 있는 경우에도 행정조사 위반행위 중에 보고나 자료제출 위반의 경우와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 등을 거부, 방해, 기피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적어도 전자의 경우에는 과태료로 완화하는 방안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 나. 구체적인 정비 방안

일반적으로 행정조사에 해당하는 보고나 자료제출 요구(명령) 위반, 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나 질문에 대한 거부·방해·기피, 안전점검이나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원칙이나(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일정한 경우에는 형벌의 부과가 허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예컨대 행정조사의 목적이 다른 범죄의 예방을 위해서, 또는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거나 중대한 경제상, 환경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예외적으로 형벌의 부과가 허용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되도록 경미한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가 적절할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형벌의 부과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은 경우에는 형벌 규정을 과태료로 완화하고, 형벌 부과가 필요하더라도 보다 경미한 위반행위(보고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로 완화하고, 형벌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다른 유사한 행위에 대한 제재수단 등을 고려하여 비례성 원칙에 따라 형량 또는 과태료 금액을 감경하고, 그밖에 행정조사 위반에 대한 제재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규정들은 관련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거나 제재를 폐지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 1) 비범죄화 필요성에 따라 형벌을 과태료로 완화

행정조사의 목적이 범죄 예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거나,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과 직결된 것이거나, 중대한 경제상,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일 경우 형벌 부과가 허용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관리, 감독의 차원에서 행정조사는 형벌이 아니라 과태료 부과가 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우선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과 직접 관련되지 않고 일반적인 업무의 관리 감독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조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조사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다면 이를 비범죄화가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과태료로 완화하도록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해당 또는 관련 법률 내의 다른 유사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수단을 고려하여 현행 형벌 규정을 과태료로 완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함께 포함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행정조사는 23건으로서 다음과 같다.

〈표 4-16〉 비범죄화 필요성에 따른 과태료 완화 제안 행정조사(I)

번호	조사명(법률명)	제안 이유	제안 내용
1	양곡표시 실태조사 (양곡관리법 제27조)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안으로서, 감독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보고나 자료제출 명령, 출입 조사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비범죄화 바람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과태료로 완화
2	광해방지사업 시설 등에 대한 보고 및 조사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9조)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안으로서, 감독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보고나 자료제출 명령, 출입 조사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비범죄화 바람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과태료로 완화
3	특정물질 관리 등에 관한 보고 및 조사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25조)	위법성 수준이 더 높은 검사나 수거를 거부, 방해, 기피하는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비추어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에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로 전환 필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과태료로 완화
4	요양기관 현지조사 (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제2항)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안으로서, 감독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보고나 자료제출 명령, 출입 조사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비범죄화 바람직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는 1년의 업무정지가 부과되고 있으므로 행정처분 활용 가능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과태료로 완화
5	의료급여 지급대상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의료급여법 제32조제2항)	상동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과태료로 완화
6	제약사·의료기기사 등의 의료인 등에 대한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실태조사(약사법 제47조의2)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안으로서, 감독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자료제출 요구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비범죄화 바람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과태료로 완화
7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현지조사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사회복지사업 운영자에 대한 지도·감독의 일환으로 자료제출, 검사나 질문을 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어서, 이러한 조사에 대한 거부나 방해행위는 비범죄화가 바람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과태료로 완화
8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안으로서, 감독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보고나 자료제출 명령, 출입 조사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비범죄화 바람직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가 부과되고 있으므로 행정처분 활용 가능하고, 제38조에서 급여비용 지급 보류와 같은 비형벌 제재도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과태료로 완화

번호	조사명(법률명)	제안 이유	제안 내용
9	장애인복지시설 실태조사 (장애인복지법 제61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자에 대한 지도·감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행정조사로서 자료제출, 검사나 질문을 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어서, 이러한 조사에 대한 거부나 방해행위는 비범죄화가 바람직 다만, 해당 조항에 조사의 목적으로 "시설이용자의 인권실태 등을 지도·감독"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인권침해의 예방, 방지 차원에서 어느 정도 조사에 대한 강제성이 요구될 경우에는 보고나 자료제출 거부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로 완화하는 방안도 고려 가능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과태료로 완화
10	장애인거주시설 지도·점검 (장애인복지법 제61조)	상동	상동
11	측정대행업자 불공정 계약여부 확인(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7항)	측정대행업자가 일정한 경우 불공정 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어서 이를 통해 불공정 계약이 발생하였을 때 형벌로 처벌하는 것은 몰라도, 사전 단계인 자료제출 의무 위반에 대해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을 과도하므로 과태료 완화 필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과태료로 완화
12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 지도점검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되지 않고, 행정기관의 지도·감독권한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행정조사에 대해서는 비범죄화 바람직하므로, 출입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에도 과태료로 전환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과태료로 완화
13	폐자동차 재활용 관리감독(결과보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7조)	다른 입법례와 비교하면 거짓 보고나 거짓 자료제출을 보고나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와 달리 징역이나 벌금형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므로, 거짓 보고서 제출을 과태료로 완화하되, 미제출의 경우보다 과태료 금액을 높게 설정	(거짓 결과보고서 제출한 경우)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과태료로 완화
14	전기전자제품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 보고(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5조)	상동	상동
15	설계도서(감리보고서 등)의 제출여부 점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서류 미제출의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기한을 정한 서류제출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징역이나 벌금형을 부과한 것은 과도하고, 행정상 명령 불응시에도 과태료 부가가 바람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과태료로 완화
1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실태점검을 위한 자료요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9조)	실태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도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고 있는바, 그 보다 위법성이 낮은 제59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한 경우는 과태료로 완화 바람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과태료로 완화

번호	조사명(법률명)	제안 이유	제안 내용
17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의 타당성평가대행 업무조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 법률 제28조)	타당성평가대행업무에 대한 보고 및 조사는 업무 감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인 바, 과태료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과태료로 완화
18	항만협회 감독을 위한 보고 및 자료 제출 (항만법 제102조제5항)	국민의 생명, 안전, 중대한 경제적, 환경적 위해와 직접 관련없는 조사이므로 비범죄화가 바람직하고, 항만협회에 대한 감독의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함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과태료로 완화
19	동물실험시설 등 지도·감독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6조)	동물실험시설, 실험동물공급자 등에 대한 지도·감독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현장조사나 자료제출 요구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하거나 자료제출에 응하지 않은 경우 및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대해서도 비범죄화가 가능	2백만원 이하의 벌금 → 과태료로 완화
20	화장품 관련 업체 출입검사 (화장품법 제18조)	일반적인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인 경우에는 비범죄가 바람직	2백만원 이하의 벌금 → 과태료로 완화
21	선급법인 및 컨테이너 지정 검사기관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보고(국제도로 면세통과 증거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컨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	선급법인, 컨테이너 지정 검사기관의 업무 등에 관한 보고로서, 승인·검사업무 준수여부 확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생명, 안전, 중대한 경제적, 환경적 위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조사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위반행위는 비범죄화 바람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과태료로 완화
22	유통이력 신고의무자에 대한 유통이력 조사(관세법 제240조의3)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유통이력 신고의무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영업 관계의 장부나 서류를 열람 조사하는 것으로서, 제240조의2에 따라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어서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하는 행위에 대한 형벌이 과도하므로 과태료로 완화 필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과태료로 완화
23	목재제품의 규격 품질표시 조사 검사(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	국민의 생명, 안전, 중대한 경제적, 환경적 위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조사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위반행위는 비범죄화 바람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과태료로 완화

한편, 환경 분야 법률에서는 하나의 규정에 근거를 둔 여러개의 행정조사가 확인되는데,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에 근거하여 대기배출시설 지도점검,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보고 및 검사, 도로 제작·판매업자 기준 준수여부 조사,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점검 등이 도출되고, 「물환경보전법」 제68조에 따르면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사업장 지도점검, 폐수배출시설 지도점검,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등이 도출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39조도 마찬가지이다. 이 두 규정 모두 각 법률상의 기준 또는 의무 준수 여부 확인 또는 업무 적정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해당 조문의 적용을 받는 다양한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보고 자료제출 명령이나 출입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서, 이와 같이 행정조사의 목적과 대상을 통합적으로 규정하다보니 대상별로 조사의 목적이 다른 조사들에 대해서도 위반행위를 동일한 형으로 처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법이나 규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행정조사와 업무의 적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행정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하는 행위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비례성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조항에 근거를 둔 행정조사 중에서도 업무의 적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행정조사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대상별로 과태료로 완화하도록 제안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행정조사는 총 6건이다.

〈표 4-17〉 비범죄화 필요성에 따른 과태료 완화 제안 행정조사(II)

번호	조사명(법률명)	제안 이유	제안 내용
1	대기배출시설 지도점검(대기환경보전 법 제82조)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제1항 각 호에 행정조사의 대상이 종합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각 호마다 행정조사를 거부한 경우 그 위법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대상에 따라 지도·감독사항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 인증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자, 이론자동차정기검사 업무를 대행하는 자,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자 등)	(대상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과태료로 완화
2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보고 및 검사(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	상동	상동
3	도로제작·판매업자 기준 준수여부 조사(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	상동	상동
4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지도점검(대기환경보전 법 제82조)	상동	상동
5	자동차연료 첨가제 또는 촉매제 환경품질 사후관리(대기환경보전 법 제82조)	상동	상동
6	폐기물관련 사업자 지도점검(폐기물관리법 제39조)	폐기물관리법 제39조제1항 각 호에 행정조사의 대상이 종합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각 호마다 행정조사를 거부한 경우 그 위법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대상에 따라 지도·감독사항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교육기관,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 한국폐기물협회 등)	(대상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과태료로 완화

2) 위반행위 유형에 따라 과태료로 완화

형벌 부과가 필요한 사안이라도, 행정조사의 유형에 따라 보다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 행정조사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위반보다는 출입검사나 질문을 거부, 방해, 기피하는 행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점을 고려할 때, 형벌 부과가 필요한 사안이라도 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되도록 과태료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아래와 같이 총 11건에 대해서 제안 이유와 내용을 정리하였다.

〈표 4-18〉 위반행위 유형에 따른 과태료 완화 제안 행정조사

번호	조사명(법률명)	제안 이유	제안 내용
1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내용 이행여부 조사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의4)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안이긴 하나, 관련된 행위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사업시행자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조치명령을 내린 것에 불응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비하여 과도한 제재로서 형량 감경하거나 일부 과태료 완화하는 것이 적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과태료로 완화
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 조사 (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제2항, 제49조제2항)	출입조사를 거부·방해하는 행위의 위법성이 상대적으로 크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한 경우와 출입 조사를 방해, 기피한 경우를 분리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로 완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과태료로 완화
3	환경영향평가업자 관리감독 (환경영향평가법 제60조)	상동	상동
4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제조수입업자에 대한 보고 및 검사(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7조)	보고나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와 거짓의 보고나 거짓 자료제출을 한 경우를 나누어 전자는 과태료를 부과하면 서, 후자는 출입검사의 거부, 방해, 기피와 함께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맞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수의 입법례에서 보고나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와 거짓의 보고나 거짓 자료제출을 한 경우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거짓 보고나 자료제출을 한 경우는 보고나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더 중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면, 더 높은 과태료 금액을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li> </ul>	(거짓 보고나 거짓 자료제출에 대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과태료
5	건축물관리 보고 및 검사(건축물관리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	건축물관리법 제52조제15호(징역·벌금)와 제52조제3항 제4호(과태료)에서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 행정조사 위반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어떤 경우에 형벌 또는 과태료를 받는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으므로, 형벌 부과 하는 경우와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유형을 명확히 구분 할 필요가 있음. 예컨대, 출입검사는 2차적으로 이루어진	형벌 부과 사유와 과태료 사유를 구분

번호	조사명(법률명)	제안 이유	제안 내용
		다는 점에서 보고나 자료제출 명령 위반은 과태료 부과하고, 출입검사 거부, 방해, 기피에 대해서는 형벌을 부과하거나, 형벌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면 모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고려	
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하도급 제한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요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6항)	안전 관련 사안으로서, 자료 요구에 대한 거부 등에 대해 처벌 필요성 인정되나, 다른 입법례를 고려할 때 자료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는 과태료로 완화하는 방안 검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과태료로 완화
7	유지관리업자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현황 제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안전 관련 사안이나, 보고나 자료제출 거부에 단순히 보고나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것이 포함된다면 징역 또는 벌금 형만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보고나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에 과태료로 완화하는 방안 검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과태료로 완화
8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 등(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안전 관련 사안으로서, 자료 요구에 대한 거부 등에 대해 처벌 필요성 인정되나, 다른 입법례를 고려할 때 자료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는 과태료로 완화하는 방안 검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과태료로 완화
9	선박소유자 등 보고·자료제출(선박안전법 제85조 및 제89조제2항)	선박소유자 등에 대한 보고 및 검사는 지도, 감독이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사로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벌 부가가 가능함. 다만, 거짓 보고나 거짓 자료제출을 하는 경우에도 공무원의 출입 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하는 경우와 같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므로, 거짓의 보고나 거짓 자료제출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로 완화하되, 보고나 자료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보다 높은 과태료 금액을 설정할 필요	(거짓 보고나 거짓 자료제출에 대한)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과태료 완화
10	유류오염 손해배상보증계약 관련 서류제출 및 출입검사(유류오염손해 배상보증법 제55조)	이 조사를 통해 확인하고자 하는 제20조, 제26조, 제50조 위반에 대해서는 제65조에 의하면 모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그러한 관계서류의 제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적어도 관계 서류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과태료로 완화
11	위험물시설 및 저장취급기준 등 확인을 위한 출입검사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	안전 관련되는 사안이지만, 보고나 자료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완화 방안 검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과태료로 완화

3) 비례성의 원칙에 따른 형량 감경

형벌 부과가 필요한 사안이라도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형량 감경이 필요한 경우를 제시하였다. 예컨대, 행정조사를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보다 행정조사에 대한 거부, 방해, 기피 등의 행위를 중하게 처벌하는 것을 적절하지 않고, 위법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행위에 동일한 형량을 규정하는 것은 비례 원칙 위반의 소지가 있다. 또한, 과태료 부과 사안이라도 관련 규정의 검토를 통해 과태료 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를 함께 제시하였다. 아래와 같이 총 9건의 행정조사에 대해 제안 이유와 내용을 제시하였다.

〈표 4-19〉 비례성의 원칙에 따른 형량 감경 제안 행정조사

번호	조사명(법률명)	제안 이유	제안 내용
1	유선 및 도선 안전점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6조)	안전 관련 사안이므로 현행처럼 형벌 유지 필요가 있겠으나, 해당 법 제26조의 검사 및 안전점검을 거부, 기피, 방해하는 행위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를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은 비례성 원칙에 맞지 않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형량 감경
2	통합관리 사업자점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다수의 환경 법제에서 출입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하는 경우와 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불응, 거짓 보고나 자료제출한 경우를 나누어 전자는 형벌, 후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보고나 자료제출 의무 위반과 출입검사 거부, 방해, 기피를 나누어 제재를 차등화한 것은 적절하나, 다른 법률의 제재수준을 고려(100~500만원 이하 과태료)할 때, 과태료 금액이 다소 높으므로 감액을 고려할 필요	7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 형량 감경
3	통합허가 대행영업자 점검	상동	상동
4	자동차연료 첨가제 또는 촉매제 환경품질 사후관리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으나, 첨가제나 촉매제가 품질기준에 위반되었을 때는 몰라도 이를 위한 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하는 것을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도함 또한, 동법 제82조제1항에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74조에 따른 검사의 적정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오염물질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고, 제82조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에 비추어 현재의 형량은 과도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감경할 필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형량 감경
5	성능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반해, 거짓으로 결과보고서 작성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고, 안점점검과 성능평가 실시는 그 법적 의미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자와 거짓으로 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자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형량 감경 고려	2년 이하 징역·벌금 → 양형 감경



번호	조사명(법률명)	제안 이유	제안 내용
6	유지관리 결과보고서 제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1조)	법 제17조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나, 법 제39조에 따른 유지관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바, 안전점검과 유지관리 실시는 그 법적 의미가 다르다고 할 것임. 그런데 거짓으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자와 거짓으로 유지관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자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	2년 이하 징역·벌금 → 양형 감경
7	수입식품 등 관련 업소 지도·점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5조)	입식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행위는 시설기준 위반, 표시기준 위반, 준수사항 위반, 시정명령 등 위반이므로 지도점검을 위한 출입검사 등을 거부, 방해, 기피한 것은 다른 사항보다 위법성이 낮아 형량을 감경하는 것을 고려	3년 이하 징역·벌금 → 형량 감경
8	식품 등 관련업소 지도·점검 (식품위생법 제22조)	식품위생법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행위는 시설기준 위반, 표시기준 위반, 준수사항 위반, 시정명령 등 위반이므로 지도점검을 위한 출입검사 등을 거부, 방해, 기피한 것은 다른 사항보다 위법성이 낮아 형량을 감경하는 것을 고려	3년 이하 징역·벌금 → 형량 감경
9	자유 무역지역 입주업체 재고조사(자유무역 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관세법의 유사조항에 비추어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과도함,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감경 바람직하고, 정부에서는 관세법의 벌칙 규정 중 일부에 대해 과태료 완화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 조사에 대한 제재 규정도 과태료 완화 고려	2천만원 이하 벌금 → 양형 감경

#### 4) 제재 근거 규정의 명확화

행정조사 제재 부과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제재의 필요성에 따라 제재를 부과하지 않거나 제재 규정의 신설을 아래와 같이 총 5건을 제안하였다.

〈표 4-20〉 제재 근거 규정 명확화 제안 행정조사

번호	조사명(법률명)	제안 이유	제안 내용
1	조치, 중지명령의 이행완료 보고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2)	토양환경보전법상 조치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해당 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하지 않았을 때 처벌 규정은 존재하는 반면에, 이행 완료 보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처벌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행 완료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 등에 대한 제재 규정(과태료)을 별도로 마련하거나, 제재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제재 규정 신설 또는 제재 규정 폐지

번호	조사명(법률명)	제안 이유	제안 내용
2	생활폐기물 수입운반업자 안전기준 준수여부 실태조사 (폐기물관리법)	생활폐기물 수입운반업자가 안전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로서, 이 조사를 통해 안전기준 미준수가 확인된 경우 형벌 부과할 수 있어도,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형벌을 부과할 수는 없으므로, 안전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실태조사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과태료)을 별도로 마련하거나, 제재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제재 규정의 신설 또는 제재 규정 폐지
3	국적선 범위반 여부 특별점검 (선박안전법 제69조제2항, 제3항)	국적선의 범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특별점검에 관한 것으로서, 현재 특별점검을 통해 확인된 범위반 사항에 대해 운행정지명령 등을 부과한 것에 대해 따르지 않은 경우에 처벌 조항은 존재하나, 특별점검에 대한 거부, 방해, 기피 등 조사 자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은 현재 없으므로, 특별점검의 거부나 방해, 기피에 대한 제재 규정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	제재 규정 신설
4	건강기능식품 GMP 조사평가 (건강기능식품법)	건강기능식품을 대상으로 GMP 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평가하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 GMP 기준 미준수가 확인된 경우 형벌 부과는 허용되어도 조사에 대한 거부, 방해, 기피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형벌을 부과할 수 없으므로, GMP 조사평가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과태료)을 별도로 마련하거나, 제재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	제재 규정의 신설 또는 제재 규정 폐지
5	관세사회 운영현황 점검 (관세사법)	관세사회 운영현황 점검을 위해 관세청장은 보고나 자료제출 명령,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입검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조사에 불응하거나 거부, 방해, 기피하는 행위에 대해서 관세사법에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음. 현재 관세법 제 267조제4항 제6호와 제7호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관세사회 감독을 위한 조사와 위반시 제재에 대해서는 관세사법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적절함	제재 규정 신설

## 다. 기타 제언

행정조사 관련 규정을 검토하면서, 행정조사 위반행위에 대해 형벌과 과태료 외에도 다양한 행정처분 규정들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업무 정지, 시정명령, 지정 취소 등 다양한 행정처분이 규정되어 있는데, 형벌의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되도록 이러한 행정처분을 우선 활용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행정처분도 영업자의 영업 수행에는 상당한 타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조사에 대한 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행정적 제재를 발굴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예컨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제7항에서는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 61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이에 응할 때까지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행정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다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제도 도입이 가능한 법률에서는 행정벌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활용해볼 수 있을 것이다.

## 제5절

# 행정조사 필요성 검토



### 1. 행정조사 필요성 검토방법

행정조사는 합리적 정책결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지만,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조사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절차와 방법 등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반드시 필요한 행정조사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추진하고, 불필요한 행정조사는 폐지하는 것이 행정조사의 목적은 달성하면서 동시에 비용을 줄이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일 것이다. 이를 위해 행정조사기본법에서는 행정조사를 수행할 때 지켜야할 기준과 원칙 등을 제시하고 있다.

문제는 반드시 필요한 행정조사와 불필요한 행정조사를 구분하는 방법인데, 첫째는 유사·중복 조사를 찾아내어 폐지하거나 통합하는 방안일 것이다. 이에 앞의 절에서 현행 행정조사를 대상으로 유사·중복조사를 검토해보았으나 실제로 유사·중복조사의 비율이 높지 않았다. 그러나 행정조사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유사·중복조사가 아니라면 무조건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는 이의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유사·중복조사는 아니지만 해당 행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행정조사인지 여부와 필요한 행정조사인 경우 조사대상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규율하는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단락에서는 행정조사 합리화를 위하여 유사·중복조사여부와 별도로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행정조사의 필요성 정도와 행정조사기본법에서 규정하는 행정조사의 원칙인 법적 근거 명확화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서 각 부처에서 운영중인 행정조사의 경우 크게 4가지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대다수인데, 행정조사의 목적 네가지는 첫째 법·규제 위반확인, 둘째 행정처분 전단계 사실확인, 셋째 정책입안을 위한 실태조사, 넷째 일반적 관리·감독 등이다. 이 중에서 법·규제 위반확인 및 행정처분 전단계로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는 국민이나 기업에 대한 침익적 행위를 처분하기 이전에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반드시 필요한 조사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조사행위가 피조사자인 국민과 기업에게 부담을 초래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사전 조사없이 잘못된 결정이 내려졌을때 이를 되돌리기 위한 부담이 더 큰 것을 고려한다면 이는 조사로 인한 부담여부으로 인해 불필요성을 판단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정책입안을 위한 실태조사 또는 일반적 관리·감독을 위한 조사 등은 내용에 대한 검토이후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때 필수적인 행정조사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정성적 판단에 근거할 수 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 부처에서 운영중인 행정조사의 목적을 통해 필요성평가를 수행하고자 한다. 이에 법·규제 위반확인 및 행정처분 전단계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의 비율이 어느정도인지 파악하고 현행 행정조사중에서 반드시 필요한 행정조사의 비율을 검토하고자 한다.

두 번째는 행정조사중에는 ‘행정규제’로 등록된 사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행정규제 관리와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 행정조사 관리가 별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행정조사기본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행정조사의 개념은 행정규제기본법상 행정규제와 유사한 측면이 많아서 중첩될 가능성이 높는데, 행정규제는 행정조사보다 엄격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규제로 관리되고 있는 행정조사에 대해서는 중복적인 관리체계를 운영하기 보다는 행정규제 관리체제로 운영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 행정조사중에서 행정규제의 비율을 검토하고, 해당 행정조사는 향후 주기적인 검토와 관리가 필요한 행정조사 목록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조사의 필요성을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행정조사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한데, 그 사전작업으로서 현재 20개 이상의 행정조사를 운영하고 있는 부처의 행정조사를 대상으로 해당 조사의 필요성 정도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수행하였다.

물론 해당 행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를 소수의 전문가 평가결과로 결정할 수는 없지만, 현재 운영중인 행정조사의 필요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본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찾고자 한다.

## 2. 행정조사 목적에 따른 검토

현재 등록된 행정조사 874건 중에서 법·규제 위반확인을 위한 조사는 364건(41.6%), 행정처분 전단계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는 30건(3%)이다. 이는 결국 전체 행정조사중에서 약 45%에 달하는 394건은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행정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법·규제 위반확인 및 행정처분 전단계 사실확인을 위한 행정조사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4-21〉 행정조사 목적별 현황

행정조사 목적	행정조사 개수
법·규제 위반확인	364
행정처분 전단계 사실확인	30
정책입안을 위한 실태조사	235
일반적 관리·감독	236
기타	9
합계	874

〈표 4-22〉 법·규제 위반확인 및 행정처분 전단계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 현황

번호	부처명	행정조사명	행정조사목적
1	기재부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검사	1번
2	교육부	선행교육·출제 점검	1번
3	교육부	대학별 고사 선행교육·출제점검	1번
4	교육부	교육환경평가서 승인내용 이행사항 확인	1번
5	교육부	교육환경보호구역 점검	1번
6	교육부	사립학교 교직원의 연금급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각종 보고·조사	1번
7	교육부	사이버대학 교사, 교원, 조직, 수익용재산 보유현황 보고	1번
8	교육부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등 준수사항 이행여부 점검	1번
9	교육부	학교급식 위생안전점검	1번
10	교육부	학술지원 사업비에 대한 조사	1번
11	교육부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지도점검	1번
12	교육부	평가인정 학습과정 재평가를 위한 조사	1번
13	과기부	무선국 검사	1번
14	과기부	무선국통신보안사항 준수확인 및 교육지도 점검	1번
15	과기부	방송구역 전계강도 실측자료 제출	1번
16	과기부	무선국의 전자파 강도 측정결과 보고	1번
17	과기부	전자파 적합성 여부 측정 또는 조사	1번
18	과기부	전파법 위반 관련 조사	1번
19	과기부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자료 제출	1번
20	과기부	기간통신사업자 주식소유 현황	1번
21	과기부	회신설비 미보유사업자의 선불통화권 발행현황조사	1번
22	과기부	기술기준 적합 설치 운영 여부 조사	1번
23	과기부	방송통신설비 설치 검사	1번
24	과기부	유선방송국 설비검사	1번
25	과기부	방송편성비율 법규위반 조사	1번
26	과기부	연구실사고 조사의 실시	1번

번호	부처명	행정조사명	행정조사목적
27	과기부	연구산업진흥법 신고·지정 요건 위반 여부 등 조사	1번
28	과기부	표준음량기준 준수여부 조사	1번
29	법무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조사	1번
30	행안부	승강기 유지관리기술자의 경력등 신고 내용에 대한 확인	2번
31	행안부	승강기 제조·수입·관리·검사 실태 및 현황조사	1번
32	행안부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승강기 운행에 대한 실태조사	1번
33	행안부	옥외광고업자 영업실태 조사	1번
34	행안부	국가기록물 지정·해제 및 보존·관리를 위한 기록물 조사	2번
35	행안부	기부금품의 모집 또는 접수행위의 위법성 검사	1번
36	행안부	온천 허위·과장 광고 등 관리실태 점검	1번
37	행안부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에 따른 사실조사	2번
38	행안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 이행여부 조사	1번
39	행안부	의연금품 모집현황 검사	1번
40	행안부	유선 및 도선 안전점검	1번
41	문체부	방송영상독립제작사임금체불조사	1번
42	문체부	게임물유통및이용실태조사	1번
43	문체부	게임물유통질서확립등조사	1번
44	문체부	게임물등급분류및사후관리관련자료조사	1번
45	문체부	음반등의유통질서확립및지원조사	1번
46	문체부	전통사찰지정관련현지조사	2번
47	문체부	공연자또는공연장운영자등의감독·검사	1번
48	문체부	선수, 체육지도자등징계관련정보자료제출	1번
49	문체부	체육진흥투표권판매관련위반행위조사	1번
50	농식품부	가축전염병 역학조사	1번
51	농식품부	불합격 수입축산물 검역물의 처리 검토자료 제출	1번
52	농식품부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조사	1번
53	농식품부	농산물우수관리 인증기관 조사	1번
54	농식품부	농산물우수관리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 조사	1번
55	농식품부	농산물이력추적표시 조사	1번
56	농식품부	농산물 표준규격품의 사후관리	1번
57	농식품부	지리적표시품 사후관리 조사	1번
58	농식품부	농산물 등 안전성조사	1번
59	농식품부	정부 매입 농산물 점검	1번
60	농식품부	수출입식물방제업체 점검	1번
61	농식품부	농업법인 실태조사	1번
62	농식품부	공익직불제(기본직불) 이행점검 조사	1번
63	농식품부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 이행점검 조사	1번

번호	부처명	행정조사명	행정조사목적
64	농식품부	경관보전직불제 이행점검 조사	1번
65	농식품부	논활용(논이모작) 직불제 이행점검 조사	1번
66	농식품부	농지상시조사	1번
67	농식품부	농지이용실태조사	1번
68	농식품부	동물용의약품 제조시설·기구 등 제조소 시설기준 조사	2번
69	농식품부	사료검사	1번
70	농식품부	식물검역대상물품 저장소 검역	1번
71	농식품부	검역을 받지 않은 식물검역대상물품 목록 제출	1번
72	농식품부	해외채종 수출용 종자 관리상황 입력	1번
73	농식품부	수출입목재 열처리업체 점검	1번
74	농식품부	우수식품인증표시 조사	1번
75	농식품부	동물용의약품 재심사를 위한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	2번
76	농식품부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 재평가 실시에 따른 자료 제출	2번
77	농식품부	양곡표시 실태조사	1번
78	농식품부	원산지표시실태조사	1번
79	농식품부	수입농산물등의 유통이력조사	1번
80	농식품부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 생물체(LMO) 사후관리 검사	1번
81	농식품부	인삼류 자체검사업체 조사	1번
82	농식품부	소싸움경기시행자 보고/실태조사	1번
83	농식품부	술 품질인증 표시 조사	1번
84	농식품부	농업용 면세유류 사후관리 조사	1번
85	농식품부	종자유통업체 점검	1번
86	농식품부	분쟁대상 종자 및 묘 자료 제출	1번
87	농식품부	차 품질 등의 표시조사	1번
88	농식품부	쇠고기 및 돼지고기 이력제 판매단계 조사	1번
89	농식품부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사업자 조사	1번
90	농식품부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기관 조사	1번
91	농식품부	친환경인증품 및 인증사업자 조사	1번
92	농식품부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기관 조사	1번
93	농식품부	유기농업자재 공시제품 및 공시사업자 조사	1번
94	농식품부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사후관리 조사	1번
95	농식품부	한국마사회 보고/검사	1번
96	농식품부	재사용 화학 표시 조사	1번
97	산업부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사후 관리	1번
98	산업부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1번
99	산업부	광해방지사업 시설 등에 관한 보고 및 조사	1번
100	산업부	무역에 관한 제반사항 조사 및 보고	1번

번호	부처명	행정조사명	행정조사목적
101	산업부	무역조정지원기업 이행실적조사	2번
102	산업부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보고 및 조사	1번
103	산업부	특정물질 관리 등에 관한 보고 및 조사	1번
104	산업부	전기안전관리업무 실태조사	1번
105	산업부	냉난방온도 유지관리 여부 점검	1번
106	산업부	검사대상기기 사고 원인 경위 조사	1번
107	산업부	외국인투자 허가·신고 사항 위배 여부 조사	1번
108	복지부	장사시설 등에 대한 보고 요구 및 출입검사	1번
109	복지부	묘지의 일제조사	1번
110	복지부	요양기관의 선별급여 실시에 대한 관리	1번
111	복지부	보험급여의 제한대상 여부 확인	2번
112	복지부	국민건강보험 사업장 지도점검	1번
113	복지부	요양기관 현지조사	1번
114	복지부	치료재료 실거래가 조사	1번
115	복지부	의약품 제조업자 등의 금지행위 등 조사	1번
116	복지부	자활기업 사업보고	1번
117	복지부	의료급여 지급대상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1번
118	복지부	장기 등 기증·적출·이식 관련 자료 제출	1번
119	복지부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이행에 관한 실태조사	1번
120	복지부	어린이집 지도점검	1번
121	복지부	어린이집 정보의 공시	1번
122	복지부	혈액관리 업무검사	1번
123	복지부	불법개설 의심 의료기관 행정조사	1번
124	복지부	사회복지시설의 안전점검 결과보고	1번
125	복지부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관리 점검	1번
126	복지부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1번
127	복지부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2번
128	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실태조사	1번
129	복지부	국민연금 수급자 확인조사	1번
130	복지부	입원적합성 조사	1번
131	복지부	공중위생업의 위생관리 의무 이행사항 보고 및 검사	1번
132	복지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조사	1번
133	복지부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행정조사	1번, 2번
134	복지부	불법개설 의심 약국 행정조사	1번
135	환경부	환경전문공사 등록관리 점검	1번
136	환경부	녹색제품 판매장소 설치 및 운영자료 보고	1번
137	환경부	통합관리사업장 점검	1번



번호	부처명	행정조사명	행정조사목적
138	환경부	통합관리사업장 오염도 측정	1번
139	환경부	통합허가대행업자 점검	1번
140	환경부	측정대행업 관리감독	1번
141	환경부	측정기기 검사·교정용품 검정대행자 관리감독	1번
142	환경부	환경표지인증 등 사후관리	1번
143	환경부	대기배출시설 지도점검	1번
144	환경부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보고 및 검사	1번
145	환경부	도로 제작판매업자 기준 준수여부 조사	1번
146	환경부	악취배출시설 지도 점검	1번
147	환경부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지도 점검	1번
148	환경부	자동차연료 첨가제 또는 촉매제 환경품질 사후관리	1번
149	환경부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 및 보급실적 보고	1번
150	환경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수거 등 조치	1번
151	환경부	토양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 실적 보고, 지도점검	1번
152	환경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지도 점검	1번
153	환경부	토양오염 발생 토지 또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소유, 점유, 운영자에 대한 실적보고 및 지도점검	1번
154	환경부	조치, 중지명령의 이행완료 보고	1번
155	환경부	지하수 관련업체 등록요건 및 법령위반 등에 관한 자료 제출	1번
156	환경부	지하수 오염방지 조치사항 등에 관한 자료 제출	1번
157	환경부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사업장 지도·점검	1번
158	환경부	폐수배출시설 지도점검	1번
159	환경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 지도점검	2번
160	환경부	오염부하량 할당시설 등에 대한 지도점검	1번
161	환경부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2번
162	환경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 관리감독	1번
163	환경부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 점검	1번
164	환경부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지도 점검	1번
165	환경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점검	1번
166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조사	1번
167	환경부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보고	1번
168	환경부	자연공원 점용사업자의 행위허가, 시설관리 등에 관한 출입조사	2번
169	환경부	자연공원 내 점용 사업자의 불법여부 및 행정대집행 이행실태 조사	2번
170	환경부	생태계교란 생물에 대한 수입등의 허가를 받은 자의 보고 및 검사	1번
171	환경부	서식지의 보전기관의 운영관리,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획, 허가, 신고 등의 관리	1번
172	환경부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을 받은 자의 보고 및 검사	1번
173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획, 채취, 보관, 수출, 수입 등 관리	1번

번호	부처명	행정조사명	행정조사목적
174	환경부	습지보호지역의 보전관리 및 훼손, 소유거래이용 조사	1번
175	환경부	폐기물관련 사업자 지도점검	1번
176	환경부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	1번
177	환경부	수입 및 수출폐기물에 대한 관리감독	1번
178	환경부	폐기물 수출입 실적 등 보고	1번
179	환경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 안전기준 준수여부 실태조사	1번
180	환경부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1번
181	환경부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 결과보고서 제출	1번
182	환경부	재활용 의무이행 계획사항 점검	1번
183	환경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제조수입업자에 대한 보고 및 검사	1번
184	환경부	폐자동차 재활용 관리감독(결과보고)	1번
185	환경부	전기전자제품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 보고	1번
186	환경부	재활용제품 유해성기준 준수여부 조사	1번
187	환경부	재활용 환경성 평가기관 점검	1번
188	환경부	건설폐기물 관련 사업자 지도점검	1번
189	환경부	포장의 재질방법 등에 관한 기준 준수여부 확인 자료제출 및 보고	1번
190	환경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련 시설 관리감독	1번
191	환경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관리감독	1번
192	환경부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및 결과보고	1번
193	환경부	실내 공기질 관리 보고 및 검사	1번
194	환경부	신축공동주택 공기질 측정 결과 보고	1번
195	환경부	석면안전관리 관련 보고 및 검사	1번
196	환경부	소음진동배출시설 등 지도점검 및 검사보고	1번
197	환경부	빛공해방지를 위한 조명기구 등 조사	1번
198	환경부	어린이용품 유해성 관리	1번
199	환경부	어린이활동공간 조사 및 보고	1번
200	고용부	외국인고용사업장 지도점검	1번
201	고용부	사용자, 외국인근로자, 단체 등에 대한 보고 및 조사	1번
202	고용부	고용관리 및 고용조정지원제도 위반 여부 조사	1번
203	고용부	피보험자 등 자격 확인, 부정수급조사 등 보고, 서류 제출	1번
204	고용부	사업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조사	1번
205	고용부	직업소개사업자, 직업정보제공 사업자, 근로자공급사업자 지도 점검	1번
206	고용부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 등에 대한 보고 및 현장 조사	1번
207	고용부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및 대여 알선 조사	2번
208	고용부	일학습병행 지도점검	1번
209	고용부	개업노무사, 노무법인 보고, 자료 제출 및 검사	1번
210	고용부	공인노무사회 지도,감독	1번

번호	부처명	행정조사명	행정조사목적
211	고용부	업무상 재해 판단 및 보험급여 결정을 위한 사업주, 근로자,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	2번
212	고용부	업무상 재해 판단 및 보험급여 결정을 위한 사업주, 근로자, 보험사무대행기관 조사	2번
213	고용부	산재보험 미가입 재해 조사	2번
214	고용부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적정 진료 등을 위한 진료비 현지조사	1번
215	고용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지도 및 감독	1번
216	고용부	채용절차 관련 보고 및 조사	1번
217	고용부	취업지원 신청에 따른 확인·조사	2번
218	여가부	청소년유해매체 등 보고	1번
219	여가부	청소년유해매체 등 검사 및 조사	1번
220	여가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조사	1번
221	여가부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등에 관한 조사	1번
222	여가부	아이돌봄지원대상자의 재산 등에 관한 조사	1번
223	여가부	국제결혼중개업 지도 점검	1번
224	여가부	지자체 성매매 방지 지도 점검	1번
225	여가부	성범죄 경력자 점검 확인	1번
226	국토부	산업단지개발사업 검사	1번
227	국토부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 관련 검사	1번
228	국토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개발행위허가보고 검사	1번
229	국토부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 관리를 위한 조사	1번
230	국토부	위반건축물 단속에 관련된 현장조사	1번
231	국토부	건축물관련 보고와 검사 등	1번
232	국토부	건축물관리 보고 및 검사	1번
233	국토부	건축사무소 운영실태조사	1번
234	국토부	주택건설사업 완료 후 사용적합여부에 대한 검사 (제목수정필요)	1번
235	국토부	거주의무 실태조사	1번
236	국토부	주택도시기금 재수탁기관 조사	1번
237	국토부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감독	1번
238	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허가·신고·등록 한 자에 대한 보고·검사 등	1번
239	국토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조사	2번
240	국토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단체(협회)에 대한 감독	1번
241	국토부	정비사업 현장조사	1번
242	국토부	공공주택사업자 등 부동산 투기여부 조사	1번
243	국토부	공공주택의 거주 실태조사 등	1번
244	국토부	공공주택사업자 감독, 조사 및 보고의무	1번

번호	부처명	행정조사명	행정조사목적
245	국토부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1번
246	국토부	부동산투기등거래 동향의 파악을 위한 중개사무소 자료 제출 명령	1번
247	국토부	공인중개사협회와 그 지부 및 지회에 대한 감독관청의 지도·감독명령	1번
248	국토부	부동산투자회사 등 감독, 조사 및 보고 의무	1번
249	국토부	감정평가법인의 재무제표 제출	1번
250	국토부	감정평가업자 및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	1번
251	국토부	부동산개발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1번
252	국토부	부동산개발업자의 위반 행위조사	1번
253	국토부	건설업자의 실태조사	1번
254	국토부	건설기계 제작결함 조사	1번
255	국토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이행 점검	1번
256	국토부	설계도서(감리보고서 등)의 제출여부 점검	1번
257	국토부	긴급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1번
258	국토부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의 실적관리	1번
259	국토부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평가에 필요한 자료 요구	1번
260	국토부	유지관리업자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현황 제출	1번
261	국토부	성능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1번
262	국토부	유지관리 결과보고서 제출	1번
263	국토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실태 점검을 위한 자료요구	1번
264	국토부	교통안전점검관련 자료 제출	1번
265	국토부	교통안전진단 평가를 위한 관련 자료 제출	1번
266	국토부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 기록 관리	1번
267	국토부	화물차 재정 지원 및 지원금 사용에 대한 감독·조사	2번
268	국토부	화물운송 실적자료 제출	1번
269	국토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소유자, 사용자)에 대한 보고와 검사	1번
270	국토부	자동차 및 부품 결함 기술분석을 위한 자료 제출	1번
271	국토부	성능시험대행자의 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	1번
272	국토부	신규제작자동차의 실내공기질 관리	1번
273	국토부	제한차량의 도로 운행제한 위반여부 확인	1번
274	국토부	적성검사기관·교육훈련기관의 업무수행 또는 지정기준 부합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	1번
275	국토부	철도종사자의 관리의무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	1번
276	해수부	공유수면 관리실태 조사	1번
277	해수부	국제항해선박소유자 보고자료 제출	1번
278	해수부	수산물품질인증 표시에 대한 사후관리	1번
279	해수부	유해물질 검사 등 수산물 안전성 조사	1번

번호	부처명	행정조사명	행정조사목적
280	해수부	무인도서 이의신청 현장조사	2번
281	해수부	국적선 범위반 여부 특별점검	1번
282	해수부	선박소유자등 보고·자료제출	1번
283	해수부	선박투자회사 및 선박운용회사에 대한 감독·검사	1번
284	해수부	선원 권익보호를 위한 선원근로감독	1번
285	해수부	유통이력수입수산물물의 사후관리(신규)	1번
286	해수부	어업감독공무원 검사(신규)	1번
287	해수부	수산조정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자료제출(신규)	1번
288	해수부	수산물 원산지의 표시 등 조사	1번
289	해수부	항로표지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자료 제출	1번
290	해수부	검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충족 여부 확인	1번
291	해수부	항만시설장비 검사대행기관 확인 점검	1번
292	해수부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사항 점검 (신규)	1번
293	해수부	수산종자 유통조사(신규)	1번
294	중기부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	1번
295	중기부	직접생산확인 조사	2번
296	중기부	여성기업 확인 현장조사	2번
297	중기부	기술침해 행정조사	2번
298	보훈처	국가보훈대상자 사립대수업료 보조금 부정수급방지를 위한 취학실태조사	2번
299	보훈처	중장기 제대군인 방위산업체 채용현황 실태조사	1번
300	보훈처	보훈단체 수익사업 실태조사	1번
301	방통위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여부 조사	1번
302	방통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 관련 자료 제출	1번
303	방통위	신문 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을 위한 자료 제출	1번
304	방통위	방송실시 결과 제출	1번
305	방통위	보편적 시청권 보장 관련 금지행위 위반 여부 조사	1번
306	방통위	방송광고판매대행자 등에 관한 법률 금지행위 위반여부 조사	1번
307	방통위	긴급구조 및 경보발출 관련자료 제공내역 보고	1번
308	방통위	위치정보법 위반 관련 자료제출 및 현장검사	1번
309	방통위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전송 관련 자료 제출	2번
310	방통위	정보통신방법 관련 자료제출 및 현장검사	1번
311	방통위	전기통신사업 금지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1번
312	방통위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여부 조사	1번
313	방통위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1번
314	개보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관련 자료제출 및 현장 검사	1번
315	개보위	고유식별정보 안전조치 관리실태 점검	1번
316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GMP 조사 평가	1번

번호	부처명	행정조사명	행정조사목적
317	식약처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실태조사	1번
318	식약처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긴급생산·수입명령 및 유통개선조치 결과 보고	1번
319	식약처	GMO 표시대상 농산물의 표시 실태조사	1번
320	식약처	마약류 제조 원료물질취급자 지도·점검	1번
321	식약처	마약류 취급자 지도·점검	1번
322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수거검사 및 표시기재 점검	1번
323	식약처	수입식품 등 관련업소 지도·점검	1번
324	식약처	식품 등 관련업소 지도·점검	1번
325	식약처	유통 농·수산물 유통길목 수거·검사	1번
326	식약처	식품 HACCP 조사·평가	1번
327	식약처	시험·검사기관 지도점검	1번
328	식약처	동물실험시설 등 지도·감독	1번
329	식약처	의약품 제조 및 수입업체 지도·점검	1번
330	식약처	의약품 제조 및 수입업체 지도 점검	1번
331	식약처	신약 등 의약품 재심사 신청서의 신뢰성 조사	1번
332	식약처	임상시험실시기관 실태조사	1번
333	식약처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 실태조사	1번
334	식약처	생물의약품 제조업체 지도 점검	1번
335	식약처	한약재 제조 및 수입업체 출입검사	1번
336	식약처	한약(생약)제제 제조 및 수입업체 출입검사	1번
337	식약처	위생용품 등 관련 업소 지도·점검	1번
338	식약처	부적합 의료기기 회수·폐기 보고	1번
339	식약처	유통 의료기기의 품질관리를 위한 수거·검사	1번
340	식약처	의료기기법령 준수 확인을 위한 제조·수입업체 출입검사	1번
341	식약처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기록관리 지도·점검	1번
342	식약처	의료기기 기술문서 심사기관 지도·감독	1번
343	식약처	의료기기 비임상시험기관 실태조사	1번
344	식약처	의료기기 임상시험실시기관 실태조사	1번
345	식약처	인체조직은행 지도·점검	1번
346	식약처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수입업체 지도 점검	1번
347	식약처	인체세포등 관리업 및 세포처리시설 지도 점검	1번
348	식약처	축산물 관련업소 지도·점검	1번
349	식약처	축산물 HACCP(해썹) 기준 및 운용 적정성 검증	1번
350	식약처	화장품 관련 업체 출입검사	1번
351	관세청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운영현황 점검	1번
352	관세청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기준 점검	1번
353	관세청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수출입관리현황 변동사항 보고	1번

번호	부처명	행정조사명	행정조사목적
354	관세청	선박용품 등 재고조사	1번
355	관세청	항공기용품 등 재고조사	1번
356	관세청	보세공장 특허변경사항 보고	1번
357	관세청	제주 지정면세점 재고조사	1번
358	관세청	보세판매장 재고 조사	1번
359	관세청	구매대행업자에 대한 세관장의 업무감독	1번
360	관세청	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한 세관장의 업무감독	1번
361	관세청	특허보세구역 운영상황 점검	1번
362	관세청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 적정성 심사	1번
363	관세청	선급법인 및 컨테이너 지정 검사기관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 점검	1번
364	관세청	사후관리 운영 현황 점검	1번
365	관세청	유통이력 신고의무자에 대한 유통이력 조사	1번
366	관세청	원산지증명서 발급 현지 확인	1번
367	관세청	원산지인증수출자 사후관리	1번
368	소방청	소방대상물에 대한 화재안전조사	1번
369	소방청	탱크안전성능시험자에 대한 출입검사	1번
370	소방청	위험물시설 및 저장취급기준 등 확인을 위한 출입검사	1번
371	소방청	특정·준특정 옥외탱크저장소에 대한 정밀정기검사	1번
372	소방청	특정·준특정 옥외탱크저장소에 대한 중간정기검사	1번
373	소방청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 실태점검	1번
374	조달청	조달물자 품질점검	1번
375	조달청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1번
376	조달청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1번
377	문화재청	문화재 수리현황의 검사	1번
378	산림청	목재제품의 규격 품질표시 조사 검사	1번
379	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역학조사	1번
380	산림청	소나무류 취급업체 조사	1번
381	특허청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현장조사 및 시료채취	1번
382	질병청	생명윤리법 관련기관 현장점검 (배아생성의료기관, 배아연구기관)	1번
383	질병청	생명윤리법 관련기관 현장점검 (유전자검사기관-의료)	1번
384	질병청	생명윤리법 관련기관 현장점검 (유전자검사기관-비의료)	1번
385	질병청	생명윤리법 관련기관 현장점검 (유전자치료기관-의료)	1번
386	기상청	기상사업자 지도·검사	1번
387	해경청	수상레저활동 안전확보를 위한 사업자 자료제출 요구	2번

번호	부처명	행정조사명	행정조사목적
388	해경청	인명구조요원 자격 교육기관 지도점검	2번
389	해경청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점검	1번
390	해경청	수상레저시설 안전점검	1번
391	해경청	연안체험활동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1번
392	원안위	방사능방재 정기검사	1번
393	원안위	특정핵물질 계량관리 검사	1번
394	원안위	발전용 및 연구용 원자로 등에 대한 검사	1번

### 3. 행정조사 중 행정규제 검토

현재 등록된 행정조사 874건 중에서 ‘행정규제’로도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는 행정조사는 총 443개(50.6%)로 전체 행정조사중에서 절반 이상이 행정규제로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조사기본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행정조사의 개념은 ‘행정규제’와 중첩될 가능성이 높다. “행정규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제1호)인데, 행정조사의 방법인 보고, 자료제출, 현장점검·출석·진술·시료채취 등은 대부분 행정규제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차이점은 행정규제는 강제규정인 반면 행정조사는 임의조항임에도 해당된다는 점이다. 결국 행정조사로 등록된 조사행위중에서 강제규정인 경우 이미 ‘행정규제’로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행정조사와 달리 행정규제의 경우 법령안의 제·개정과정에서 해당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 적정성 등에 대한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친다. 이는 행정규제의 경우 환경의 변화로 개정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규제의 타당성은 입증된 것이라는 점이다. 예컨대 자료제출에 대한 행정조사가 이미 행정규제로 등록되어 있다면, 해당 자료제출의 목적이 법규제 위반 확인인지 또는 일반적인 관리감독의 목적인지와 상관없이 해당 자료제출의 필요성은 1차적으로 인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관점에서 행정규제로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는 행정조사의 경우, 별다른 심사과정을 거치지 않고 등록된 다른 행정조사와 달리 필요성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가 전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현재 등록된 행정조사중에서 행정규제로 이미 등록된 행정조사사무는 법적 근거 마련시 해당 사무의 타당성 및 적정성에 대한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친 사무이며, 동시에 행정규제로서 기존규제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되고 있는 사무로 분류된다. 따라서 향후 행정조사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시 주기적으로 필요성을 검토해야하는 행정조사 목록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표 4-23〉 행정조사와 행정규제로 중복 등록된 사무

번호	부처명	행정조사명	비고
1	기재부	수입인지 공급·판매 기관 관리 실태조사	
2	기재부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검사	
3	교육부	선행교육·출제 점검	
4	교육부	대학별 고사 선행교육·출제점검	
5	교육부	법학전문대학원 평가	
6	교육부	사립학교 교직원의 연금급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각종 보고·조사	
7	교육부	사이버대학 교사, 교원, 조직, 수익용재산 보유현황 보고	
8	교육부	계약학과등 보고·통계자료 제출·검사	
9	교육부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	
10	교육부	진로교육 현황조사	
11	교육부	평생교육시설 지도·점검	
12	교육부	평생교육이용권 관련 행정조사	
13	교육부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등 준수사항 이행여부 점검	
14	교육부	학교급식 위생안전점검	
15	교육부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결과 보고	
16	교육부	학교폭력 실태조사	
17	교육부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사 지도점검	
18	교육부	평가인정 학습과정 재평가를 위한 조사	
19	과기부	무선국 검사	
20	과기부	무선국통신보안사항 준수확인 및 교육지도 점검	
21	과기부	방송구역 전계강도 실측자료 제출	
22	과기부	무선국의 전자파 강도 측정결과 보고	
23	과기부	전자파 적합성 여부 측정 또는 조사	
24	과기부	전파법 위반 관련 조사	
25	과기부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자료 제출	
26	과기부	기간통신사업자 주식소유 현황	
27	과기부	보편적 의무 제공 현황 제출	
28	과기부	화신설비 미보유사업자의 선불통화권 발행현황조사	
29	과기부	전기통신 이용실적(매출액) 및 이용자(가입자) 보고	
30	과기부	전기통신설비에 관한 검사 보고	
31	과기부	전기통신시설 현황 보고	
32	과기부	통신자료 제공 현황	
33	과기부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보고 및 검증	
34	과기부	기술기준 적합 설치 운영 여부 조사	
35	과기부	유선방송국 설비검사	
36	과기부	방송편성비율 법규위반 조사	

번호	부처명	행정조사명	비고
37	과기부	사이버분야 침해사고 원인 조사	
38	과기부	연구실사고 조사의 실시	
39	과기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	
40	과기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실태 조사	
41	과기부	비파괴검사 실태조사	
42	과기부	표준음량기준 준수여부 조사	
43	행안부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 구축에 필요한 자료 조사	
44	행안부	승강기 유지관리기술자의 경력등 신고 내용에 대한 확인	
45	행안부	어린이놀이시설 중대사고 조사	
46	행안부	옥외광고업자 영업실태 조사	
47	행안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 이행여부 조사	
48	행안부	방재관리대책대행자 실태 점검	
49	행안부	지진가속도계측기 관리실태 점검	
50	행안부	보험가입실적 및 보험금지급현황	
51	문체부	문화산업전문회사의감독검사	
52	문체부	게임과몰입중독예방조치	
53	문체부	게임물등급분류및사후관리관련자료조사	
54	문체부	음반등의유통질서확립및지원조사	
55	문체부	전통사찰지정관련현지조사	
56	문체부	사행산업현장확인지도감독	
57	문체부	관광진흥시책수립등관련보고검사	
58	문체부	유원시설업자사고보고의무및사고조사	
59	문체부	공연장안전검사등결과확인·평가관련자료조사	
60	문체부	체육단체등의업무보고·검사	
61	문체부	경주사업자대상명령·처분및검사	
62	농식품부	가축의 질병진단 등 병성감정 실적자료 제출	
63	농식품부	가축전염병 역학조사	
64	농식품부	불합격 수입축산물 검역물의 처리 검토자료 제출	
65	농식품부	원유 및 유제품 수급상황 자료 제출	
66	농식품부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조사	
67	농식품부	농산물우수관리 인증기관 조사	
68	농식품부	농산물우수관리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 조사	
69	농식품부	농산물이력추적표시 조사	
70	농식품부	농산물 표준규격품의 사후관리	
71	농식품부	농산물 등 안전성조사	
72	농식품부	농산물 성분 및 유해물질 검정기관에 지도·감독	
73	농식품부	정부 매입 농산물 점검	

번호	부처명	행정조사명	비고
74	농식품부	수출입식물방제업체 점검	
75	농식품부	농업법인 실태조사	
76	농식품부	사료검사	
77	농식품부	동물병원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 계획 및 결과보고	
78	농식품부	식물검역대상물품 저장소 검역	
79	농식품부	검역을 받지 않은 식물검역대상물품 목록 제출	
80	농식품부	해외채종 수출용 종자 관리상황 입력	
81	농식품부	수출입목재 열처리업체 점검	
82	농식품부	우수식품인증표시 조사	
83	농식품부	동물용의약품 재심사를 위한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	
84	농식품부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 재평가 실시에 따른 자료 제출	
85	농식품부	동물용의약품 생산, 수출입 및 판매 실적 보고 자료 제출	
86	농식품부	양곡표시 실태조사	
87	농식품부	원산지표시실태조사	
88	농식품부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 생물체(LMO) 사후관리 검사	
89	농식품부	인삼류 자체검사업체 조사	
90	농식품부	소싸움경기시행자 보고/실태조사	
91	농식품부	술 품질인증 표시 조사	
92	농식품부	종자유통업체 점검	
93	농식품부	차 품질 등의 표시조사	
94	농식품부	집유 및 원유검사 실적 보고자료 제출	
95	농식품부	쇠고기 및 돼지고기 이력제 판매단계 조사	
96	농식품부	친환경 인증품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 판매실적 제출	
97	농식품부	친환경인증품 및 인증사업자 조사	
98	농식품부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기관 조사	
99	농식품부	유기농업자재 공시품 생산·수입 또는 판매실적 제출	
100	농식품부	유기농업자재 공시결과 제출 및 사후관리결과 등록	
101	농식품부	유기농업자재 공시제품 및 공시사업자 조사	
102	산업부	에너지총조사	
103	산업부	이러닝(전자학습)산업 실태조사	
104	산업부	로봇산업 실태조사	
105	산업부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106	산업부	석유판매업자 등의 거래·수급 상황 보고	
107	산업부	광해방지사업 시설 등에 관한 보고 및 조사	
108	산업부	무역조정지원기업 이행실적조사	
109	산업부	보고 및 검사	
110	산업부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보고 및 조사	

번호	부처명	행정조사명	비고
111	산업부	특정물질 관리 등에 관한 보고 및 조사	
112	산업부	보고·서류의 제출 등	
113	산업부	해외자원개발사업 보고 및 검사	
114	산업부	지도 및 감독	
115	산업부	에너지진단업무 자료제출 요구	
116	산업부	검사대상기기 사고 원인 경위 조사	
117	산업부	외국인투자 허가·신고 사항 위배 여부 조사	
118	복지부	장사시설 등에 대한 보고 요구 및 출입검사	
119	복지부	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	
120	복지부	요양기관 현지조사	
121	복지부	치료재료 실거래가 조사	
122	복지부	의약품 제조업자 등의 금지행위 등 조사	
123	복지부	의료급여 지급대상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124	복지부	장기 등 기증·적출·이식 관련 자료 제출	
125	복지부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이행에 관한 실태조사	
126	복지부	어린이집 평가	
127	복지부	어린이집 정보의 공시	
128	복지부	특정수혈부작용 조사 신고	
129	복지부	혈액관리 업무검사	
130	복지부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	
131	복지부	부적격혈액 처리현황 조사	
132	복지부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보고 및 검사	
133	복지부	사회복지시설의 안전점검 결과보고	
134	복지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현지조사	
135	복지부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136	복지부	장애인식개선교육 의무이행 실태조사	
137	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실태조사	
138	복지부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적 및 장애인학대 현황	
139	복지부	장애인거주시설 지도·감독	
140	복지부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 관련 정보 확인	
141	복지부	정신건강증진시설 운영 현황 조사	
142	복지부	공중위생업의 위생관리 의무 이행사항 보고 및 검사	
143	복지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조사	
144	복지부	제약사·의료기사 등의 의료인 등에 대한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145	복지부	불법개설 의식 약국 행정조사	
146	복지부	아동종합실태조사	

번호	부처명	행정조사명	비고
147	복지부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실태조사	
148	환경부	환경전문공사 등록관리 점검	
149	환경부	녹색제품 판매장소 설치 및 운영자료 보고	
150	환경부	녹색환경지원센터 점검	
151	환경부	환경표지인증 등 사후관리	
152	환경부	대기배출시설 지도점검	
153	환경부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보고 및 검사	
154	환경부	도로 제작판매업자 기준 준수여부 조사	
155	환경부	약취배출시설 지도 점검	
156	환경부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지도 점검	
157	환경부	자동차연료 첨가제 또는 촉매제 환경품질 사후관리	
158	환경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검사기관 점검	
159	환경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수거 등 조치	
160	환경부	먹는샘물 제조업체 및 수입판매업체 지도점검	
161	환경부	샘물등의 수위, 수량, 수질 등 측정결과	
162	환경부	토양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 실적 보고, 지도점검	
163	환경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지도 점검	
164	환경부	토양오염 발생 토지 또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소유, 점유, 운영자에 대한 실적보고 및 지도점검	
165	환경부	조치, 중지명령의 이행완료 보고	
166	환경부	지하수 관련업체 등록요건 및 법령위반 등에 관한 자료 제출	
167	환경부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사업장 지도·점검	
168	환경부	폐수배출시설 지도점검	폐수배출시설 지도점검
169	환경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 지도점검	
170	환경부	오염부하량 할당시설 등에 대한 지도점검	
171	환경부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172	환경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 관리감독	
173	환경부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 점검	
174	환경부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지도 점검	
175	환경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점검	
176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조사	
177	환경부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보고	
178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업자 관리 감독	
179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대행실적 보고	
180	환경부	자연공원 점용사업자의 행위허가, 시설관리 등에 관한 출입조사	
181	환경부	자연공원 내 점용 사업자의 불법여부 및 행정대집행 이행실태 조사	
182	환경부	자연공원의 조사측량 및 공원사업 시행을 위한 출입조사	

번호	부처명	행정조사명	비고
183	환경부	생태계교란 생물에 대한 수입등의 허가를 받은 자의 보고 및 검사	
184	환경부	서식지외 보전기관의 운영관리,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획, 허가, 신고 등의 관리	
185	환경부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을 받은 자의 보고 및 검사	
186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획, 채취, 보관, 수출, 수입 등 관리	
187	환경부	습지보호지역의 보전관리 및 훼손, 소유거래이용 조사	
188	환경부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출고 실적 제출	
189	환경부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	
190	환경부	수입 및 수출폐기물에 대한 관리감독	
191	환경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 안전기준 준수여부 실태조사	
192	환경부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193	환경부	지정부산물 배출사업자 재활용계획 수립보고	
194	환경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제조수입업자에 대한 보고 및 검사	
195	환경부	폐자동차 재활용 관리감독(결과보고)	
196	환경부	전기전자제품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 보고	
197	환경부	건설폐기물 관련 사업자 지도점검	
198	환경부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	
199	환경부	폐기물 분석 전문기관 시험, 분석 보고	
200	환경부	포장의 재질방법 등에 관한 기준 준수여부 확인 자료제출 및 보고	
201	환경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주변지역 영향보고	
202	환경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련 시설 관리감독	
203	환경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관리감독	
204	환경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연간실적 보고	
205	환경부	화학물질 통계조사	
206	환경부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및 결과보고	
207	환경부	실내 공기질 관리 보고 및 검사	
208	환경부	신축공동주택 공기질 측정 결과 보고	
209	환경부	석면안전관리 관련 보고 및 검사	
210	환경부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제출	
211	환경부	석면피해 피인정자 진료 보고	
212	환경부	소음진동배출시설 등 지도점검 및 검사보고	
213	환경부	빛공해방지를 위한 조명기구 등 조사	
214	환경부	어린이활동공간 조사 및 보고	
215	고용부	외국인고용사업장 지도점검	
216	고용부	고용관리 및 고용조정지원제도 위반 여부 조사	
217	고용부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퇴직공제사업주 및 피공제자에 대한 보고·서류제출	
218	고용부	사업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조사	

번호	부처명	행정조사명	비고
219	고용부	직업소개사업자, 직업정보제공 사업자, 근로자공급사업자 지도 점검	
220	고용부	고령자 고용현황 및 정년현황 제출	
221	고용부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관련 자료 제출	
222	고용부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제출	
223	고용부	장애인 고용사업장 보고와 검사	
224	고용부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제출	
225	고용부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등에 대한 지도점검	
226	고용부	개업노무사, 노무법인 보고, 자료 제출 및 검사	
227	고용부	공인노무사회 지도, 감독	
228	고용부	업무상 재해 판단 및 보험급여 결정을 위한 사업주, 근로자,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	
229	고용부	업무상 재해 판단 및 보험급여 결정을 위한 사업주, 근로자, 보험사무대행기관 조사	
230	고용부	산재보험 미가입 재해 조사	
231	고용부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적정 진료 등을 위한 진료비 현지조사	
232	고용부	가사서비스 실태조사	
233	고용부	대량 고용변동의 신고	
234	여가부	청소년수련시설 종합안전위생점검	
235	여가부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평가	
236	여가부	청소년유해매체 등 보고	
237	여가부	청소년유해매체 등 검사 및 조사	
238	여가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평가	
239	여가부	청소년복지시설 종합 평가	
240	여가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평가	
241	여가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조사	
242	여가부	국민다문화 수용성 조사	
243	여가부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244	여가부	국제결혼중개업 지도 점검	
245	여가부	결혼중개업 보고 및 검사	
246	여가부	성폭력피해자지원기관 평가	
247	여가부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현장점검	
248	여가부	성범죄 경력자 점검 확인	
249	여가부	성희롱 방지조치 및 폭력예방교육 점검	
250	국토부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 관련 검사	
251	국토부	도시개발사업 시행 관련 보고 및 검사	
252	국토부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시행 관련 보고 및 검사	
253	국토부	특정원인복지시설치자에게 자료 제출요구	
254	국토부	건축행정 전산자료의 이용실태에 관한 현지조사	

번호	부처명	행정조사명	비고
255	국토부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 관리를 위한 조사	
256	국토부	위반건축물 단속에 관련된 현장조사	
257	국토부	건축사사무소 운영실태조사	
258	국토부	주택건설사업 완료 후 사용적합여부에 대한 검사	
259	국토부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기준미달시권고사항에대한조치결과제출	
260	국토부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감독	
261	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허가·신고·등록 한 자에 대한 보고·검사 등	
262	국토부	재정비축진사업 관련 자료 제출 요구	
263	국토부	재정비축진사업 총괄사업관리자의 자료 요구	
264	국토부	부동산투기등거래 동향의 파악을 위한 중개사무소 자료 제출 명령	
265	국토부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보고서 작성·비치 의무	
266	국토부	부동산투자회사 등 감독, 조사 및 보고 의무	
267	국토부	부동산투자회사의 보고서 제출	
268	국토부	감정평가법인의 재무제표 제출	
269	국토부	감정평가업자 및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	
270	국토부	부동산개발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271	국토부	부동산개발업자의 위반 행위조사	
272	국토부	부동산개발업 협회의 감독	
273	국토부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현황 보고 및 조사	
274	국토부	일반측량 기록 및 성과 사본의 제출	
275	국토부	측량업자의 측량업 등록기준 미달 인정시 보고 및 조사	
276	국토부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한 자료 제출	
277	국토부	건설업자의 실태조사	
278	국토부	건설관련공제조합에 대한 조사 및 검사	
279	국토부	건설기계 제작결합 조사	
280	국토부	골재채취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281	국토부	골재채취현황보고	
282	국토부	건설기술용역업자 지도·감독	
283	국토부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에 대한 지도감독	
284	국토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이행 점검	
285	국토부	설계도서(감리보고서 등)의 제출여부 점검	
286	국토부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의 실적관리	
287	국토부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평가에 필요한 자료 요구	
288	국토부	유지관리업자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현황 제출	
289	국토부	성능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290	국토부	물류현황조사에 필요한 자료	
291	국토부	교통안전점검관련 자료 제출	



번호	부처명	행정조사명	비고
292	국토부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 제출	
293	국토부	여객자동차운수사업관련 보고 및 자료 제출	
294	국토부	주차장 및 검사장 관련 보고 및 검사	
295	국토부	기업물류비실태조사	
296	국토부	국가물류기본계획 수립·변경자료 요청	
297	국토부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변경자료 요청	
298	국토부	복합물류터미널 건설현황 검사	
299	국토부	물류창고 운영현황	
300	국토부	물류창고 개발현황	
301	국토부	물류단지 관리현황	
302	국토부	화물차 재정 지원 및 지원금 사용에 대한 감독·조사	
303	국토부	화물운송 실적자료 제출	
304	국토부	자동차 사고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	
305	국토부	자동차 및 부품 결합 기술분석을 위한 자료 제출	
306	국토부	성능시험대행자의 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	
307	국토부	신규제작자동차의 실내공기질 관리	
308	국토부	내압용기의 자료 제공 등	
309	국토부	자동차관리업무에 관한 보고와 검사	
310	국토부	제한차량의 도로 운행제한 위반여부 확인	
311	국토부	위험물을 운송하는 철도운영자의 안전조치 적정성 확인	
312	국토부	철도사고등보고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313	국토부	철도안전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	
314	국토부	적성검사기관·교육훈련기관의 업무수행 또는 지정기준 부합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	
315	국토부	철도종사자의 관리의무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	
316	국토부	열차운행의 일시중지 적정성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317	해수부	공유수면 관리실태 조사	
318	해수부	공유수면매립 관련 보고 및 검사	
319	해수부	정부 매입 수산물 점검	
320	해수부	수산물품질인증 표시에 대한 사후관리	
321	해수부	선박소유자등 보고·자료제출	
322	해수부	선주상호보험조합 감독을 위한 서류제출 요청	
323	해수부	선박투자회사 및 선박운용회사에 대한 감독·검사	
324	해수부	선박평형수 관련 보고 및 자료 제출	
325	해수부	병성감정 결과의 조치 자료 제출	
326	해수부	어업감독공무원 검사(신규)	
327	해수부	품종보호권의 실시보고(신규)	
328	해수부	수산물 원산지의 표시 등 조사	

번호	부처명	행정조사명	비고
329	해수부	유류오염 손해배상보장계약관련 서류 제출 및 출입검사	
330	해수부	항로표지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자료 제출	
331	해수부	검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충족 여부 확인	
332	해수부	항만협회 감독을 위한 보고 및 자료 제출	
333	해수부	항만시설장비 검사대행기관 확인 점검	
334	해수부	선박·사업장에 대한 인증심사 대행기관 실적 보고	
335	해수부	해사안전관리를 위한 사업장 지도·감독	
336	중기부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	
337	중기부	직접생산확인 조사	
338	중기부	여성기업 확인 현장조사	
339	중기부	벤처기업확인 점검	
340	보훈처	국가보훈대상자 사립대수업료 보조금 부정수급방지를 위한 취학실태조사	
341	보훈처	국가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실시기관 실태조사	
342	보훈처	중장기 제대군인 방위산업체 채용현황 실태조사	
343	보훈처	보훈단체 수익사업 실태조사	
344	방통위	방송통신 재난관리 기본계획 제출	
345	방통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346	방통위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제출	
347	방통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 관련 자료 제출	
348	방통위	방송실시 결과 제출	
349	방통위	긴급구조 및 경보발송 관련자료 제공내역 보고	
350	방통위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전송 관련 자료 제출	
351	방통위	정보통신망법 관련 자료제출 및 현장검사	
352	방통위	전기통신사업 금지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353	방통위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354	방통위	단말기유통법 관련 자료제출 및 보관	
355	개보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관련 자료제출 및 현장 검사	
356	개보위	고유식별정보 안전조치 관리실태 점검	
357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생산실적 보고	
358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GMP 조사 평가	
359	식약처	마약류 제조 원료물질취급자 지도·점검	
360	식약처	마약류 취급자 지도·점검	
361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수거검사 및 표시기재 점검	
362	식약처	수입식품 등 관련업소 지도·점검	
363	식약처	식품 등 관련업소 지도·점검	
364	식약처	유통 농·수산물 유통길목 수거·검사	
365	식약처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보고	

번호	부처명	행정조사명	비고
366	식약처	식품 HACCP 조사·평가	
367	식약처	시험·검사 교육기관 교육계획 및 결과 보고	
368	식약처	시험·검사기관 검사실적 보고	
369	식약처	동물실험시설 등 지도·감독	
370	식약처	의약품(한약재 포함) 생산 및 수출·수입실적 보고	
371	식약처	의약품 생산 및 수출·수입실적 보고	
372	식약처	의약품 제조 및 수입업체 지도·점검	
373	식약처	의약품 제조 및 수입업체 지도 점검	
374	식약처	신약 등 의약품 재심사 신청서의 신뢰성 조사	
375	식약처	비임상시험기관 실태조사	
376	식약처	임상시험실시기관 실태조사	
377	식약처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 실태조사	
378	식약처	임상시험 교육실시결과 보고	
379	식약처	생물의약품 제조업체 지도 점검	
380	식약처	한약재 제조 및 수입업체 출입검사	
381	식약처	한약(생약)제제 제조 및 수입업체 출입검사	
382	식약처	부적합 의료기기 회수·폐기 보고	
383	식약처	유통 의료기기의 품질관리를 위한 수거·검사	
384	식약처	의료기기법령 준수 확인을 위한 제조·수입업체 출입검사	
385	식약처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기록관리 지도·점검	
386	식약처	의료기기 기술문서 심사기관 지도·감독	
387	식약처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수입·수리 실적 보고	
388	식약처	의료기기 부작용 보고	
389	식약처	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상황 보고	
390	식약처	의료기기 비임상시험기관 실태조사	
391	식약처	의료기기 임상시험실시기관 실태조사	
392	식약처	인체조직은행 지도·점검	
393	식약처	축산물 가공품 등의 생산실적 보고	
394	식약처	축산물 관련업소 지도·점검	
395	식약처	축산물 HACCP(해썹) 기준 및 운용 적정성 검증	
396	식약처	화장품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	
397	식약처	화장품 관련 업체 출입검사	
398	관세청	전자문서증계사업자 운영현황 점검	
399	관세청	전자문서증계사업자 사업현황 보고	
400	관세청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 업무현황 보고	
401	관세청	선박용품 등 재고조사	
402	관세청	항공기용품 등 재고조사	

번호	부처명	행정조사명	비고
403	관세청	보세공장 재고 조사	
404	관세청	보세화물 재고보고·조사	
405	관세청	제주 지정면세점 재고조사	
406	관세청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 재고조사	
407	관세청	보세판매장 재고 조사	
408	관세청	특송업체 자체시설 현장점검	
409	관세청	구매대행업자에 대한 세관장의 업무감독	
410	관세청	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한 세관장의 업무감독	
411	관세청	보세운송업자 정기점검	
412	관세청	특허보세구역 운영상황 점검	
413	관세청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 적정성 심사	
414	관세청	서울불균형 감면물품의 제조(수리)공장 지정등 확인 및 운영점검	
415	관세청	원산지인증수출자 변경신고	
416	관세청	원산지인증수출자 사후관리	
417	소방청	탱크안전성능시험자에 대한 출입검사	
418	소방청	위험물시설 및 저장취급기준 등 확인을 위한 출입검사	
419	소방청	특정·준특정 옥외탱크저장소에 대한 정밀정기검사	
420	소방청	특정·준특정 옥외탱크저장소에 대한 중간정기검사	
421	소방청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 실태점검	
422	조달청	조달물자 품질점검	
423	조달청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424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위한 물품 제조요건 확인	
425	문화재청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정기조사	
426	문화재청	국가무형문화재 전승현황 정기조사	
427	산림청	양묘사업 실태조사	
428	산림청	종묘생산업 현황조사	
429	산림청	목재제품의 규격 품질표시 조사 검사	
430	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역학조사	
431	산림청	소나무류 취급업체 조사	
432	질병청	감염병 역학조사	
433	질병청	생명윤리법 관련기관 현장점검 (배아생성의료기관, 배아연구기관)	
434	질병청	생명윤리법 관련기관 현장점검 (유전자검사기관-의료)	
435	질병청	생명윤리법 관련기관 현장점검 (유전자검사기관-비의료)	
436	질병청	생명윤리법 관련기관 현장점검 (유전자치료기관-의료)	

번호	부처명	행정조사명	비고
437	기상청	기상사업자 지도·검사	
438	해경청	수상레저활동 안전확보를 위한 사업자 자료제출 요구	
439	해경청	인명구조요원 자격 교육기관 지도점검	
440	해경청	수상레저시설 안전점검	
441	원안위	방사능방재 정기검사	
442	원안위	특정핵물질 계량관리 검사	
443	원안위	발전용 및 연구용 원자로 등에 대한 검사	

#### 4. 행정조사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 평가

앞선 행정조사의 목적에 따른 분류 및 행정규제 등록사무에 대한 검토 외에 현재 등록된 행정조사의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수행하였다. 현재 행정조사로 운영되고 있는 사무는 총 874건인데, 874건의 행정조사가 모두 불필요하고, 폐지해도 되는 사무라고 볼 수는 없다. 이 중에는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정조사 합리화 방안은 불필요한 행정조사를 통합·폐지하고, 나아가 주기적인 심층검토가 필요한 행정조사를 구분하여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첫 번째 단계는 현행 행정조사중에서 필요성에 대한 심층검토가 필요한 사무를 선별하는 것이다. 주기적인 심층검토가 필요한 사무의 기준은 다양하게 제시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첫째 조사목적상 정책결정을 위한 실태조사이거나 또는 일반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조사하는 사무, 둘째 행정규제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조사사무 셋째 전문가 심사결과에 따라 조사의 필요성이 높지 않은 사무 등을 기준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행정조사를 20개 이상 운영중인 부처의 행정조사 사무를 대상으로 전문가 평가를 실시하였다. 각 부처의 정책에 대한 전문성이 높은 전문가 25인을 선정하여 각 부처의 행정조사에 대한 필요성에 대하여 0점에서 10점까지 점수를 부여하도록 조사하였다.

다만 각 부처별 정책전문가를 선정하여 평가 pool을 마련하기에 시간적 한계가 있어 본 연구에서는 국무조정실에서 운영하는 규제혁신추진단의 각 부처 담당자를 중심으로 전문가 평가 pool을 구성하였으며, 규제혁신추진단에 해당 분야 전문가가 없는 경우 추가로 해당 부처 정책과제 등을 다수 수행한 정책전문가를 추가로 선정하였다. 전문가 pool의 한계로 인하여 10개미만 행정조사를 운영하는 부처의 행정조사는 제외하였고, 20개 이상 운영하는 17개 부처중에서 행정조사의 내용이 주로 법·규제 위반확인 등에 집중되어 있는 관세청, 다른 부처의 행정조사 결과를 활용하는 통계청은 제외하였다. 또한 유사·중복조사 다수를 폐지·통합한 성과가 있는 여성가족부를 제외한 14개 부처의 행정조사 698건에 대하여 전문가 평가를 실시하였다.

〈표 4-24〉 필요성평가 대상 행정조사 부처별 현황

부처명	행정조사 개수
국토부	123
환경부	101
복지부	63
농식품부	63
식약처	51
과기부	44
교육부	38
고용부	37
해수부	37
산업부	35
문체부	34
방통위	25
행안부	24
중기부	23
합계	698

행정조사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 평가결과 698개 사무중에서 필요성이 높은 사무(7점이상)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485개(69.5%)가 필요한 행정조사로 분류되었다. 이 밖에 필요성이 적은 것으로 분류된 행정조사는 20건에 불과하였으며, 필요성 정도가 보통으로 나타난 행정조사는 193개(27.7%)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포 현황은 필요성 평가점수 평균값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전체 필요성평가 점수의 평균값은 7.4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대다수의 정책전문가들은 현행 행정조사가 필요한 행위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25〉 필요성 평가결과

번호	부처별	0점-3.9점	4점-6.9점	7점-10점
1	교육부	0	5	33
2	과기부	5	27	12
3	행안부	0	7	17
4	문체부	0	11	23
5	농식품부	3	16	44
6	산업부	0	0	35
7	복지부	0	11	52
8	환경부	3	42	56
9	고용부	0	13	24
10	국토부	2	23	98
11	해수부	4	10	23
12	중기부	0	6	17
13	방통위	2	7	16
14	식약처	1	15	35
합계		20	193	485

전문가평가 대상 698개 행정조사의 필요성 결과를 각각의 행정조사 목적과 비교해 보았때 필수적인 행정조사로 분류되는 법·규제 위반확인 및 행정처분 전단계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중에서 전문가들이 비교적 필요성이 낮다고 본 행정조사의 경우 7건이었고, 그 외에는 대부분 필요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다만 심층점검 대상 행정조사로 분류할 수 있는 정책입안을 위한 실태조사 및 일반적 관리·감독을 위한 조사에서도 필요성이 비교적 낮다고 응답한 비율은 총 13개 행정조사에 불과하여 전반적으로 정책전문가들은 행정조사가 필요한 행위로 인식하고 있다고 유추 할 수 있다. 행정조사 목적별 필요성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26〉 행정조사 목적별 필요성 평가결과

행정조사 목적	0점-3.9점	4점-6.9점	7점-10점
법·규제 위반확인(1번)	7	79	223
행정처분 전단계 사실확인(2번)	0	4	23
정책입안을 위한 실태조사(3번)	4	53	104
일반적 관리·감독(4번)	9	55	129
기타	0	2	7
합계	20	193	486

## 5. 행정조사 필요성 검토결과

이상의 행정조사 필요성 검토결과 향후 행정조사의 필요성 및 적정성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한 행정조사사무는 행정조사의 목적, 행정규제 유무를 기준으로 분류하고, 이렇게 심층검토 대상 행정조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검토해본 결과, 전체 행정조사 874건중에서 행정조사의 목적상 정책입안을 위한 실태조사 또는 일반적인 관리·감독의 목적인 행정

조사 471건이며, 그 중에서 행정규제 관리체계에 포함된 규제사무를 제외하면 432건이 기본적으로 심층점검이 필요한 행정조사로 볼 수 있다. 행정규제로 등록된 행정조사의 대다수는 행정조사의 목적이 법·규제 위반 확인 및 행정처분 전단계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로 볼 수 있다. 물론 현재 각 부처에서 표기한 행정조사의 목적이 실제 목적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소관부처에서는 법규제위반확인이라고 표기했지만, 실제로는 일반적인 관리·감독을 위한 행정조사에 더욱 가까운 사무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앞서 행정조사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 평가결과 부처에서 법·규제 위반확인을 위한 조사로 표기했으나, 전문가들은 행정조사의 필요성이 낮다고 표기한 사무도 7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행정조사의 목적에 따라서 심층점검 대상을 분류하기 위해서는 현행 행정조사에 대하여 목적이 제대로 표기되었는지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검토 결과 법·규제위반 확인 또는 행정처분 전단계 사실확인을 위한 행정조사는 심층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행정규제로 등록된 행정조사 사무의 경우 이미 행정규제로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조사로 재검토를 하는 것은 행정의 비효율성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보다 엄격한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규제시스템에서 관리하도록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행정규제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행정조사 목록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무는 행정규제이면서 동시에 행정조사이지만, 행정조사 사무로서 주기적으로 필요성을 검토하는 심층점검대상에서만 제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행정규제로 등록되어 있는 사무의 경우 최초 등록시에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행정조사에서 별도로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하더라도 존치의 필요성이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결국 행정조사의 목적과 행정규제 유무를 통해 심층점검 대상을 확정하고, 심층점검 대상 행정조사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IT기술을 활용하여 직접 조사외에 부처간의 협업을 통해 자료를 획득할 수 있는 경우 행정조사의 폐지를 고려할 수 있으며, 공동조사·조사의 통합 등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주기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조사대상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행정조사의 목적이 정책입안을 위한 실태조사 또는 일반적 관리감독을 위한 조사사무 중에서 행정규제 사무를 제외한 심층점검 대상은 432건이며, 각 대상에 대한 전문가 필요성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27〉 심층점검대상 행정조사의 필요성 평가결과

번호	부처명	행정조사명	필요성평가
1	기재부	귀속재산 관리조사	
2	기재부	투융자집합투자기구 등에 관한 감독·검사	
3	기재부	업연초생산협동조합 감독을 위한 검사	
4	교육부	교육활동 침해행위 등에 대한 실태조사	8
5	교육부	교원의 근무환경 실태조사	9
6	교육부	교육기본 통계조사	10
7	교육부	소방시설 실태조사	8
8	교육부	학교시설 안전점검 결과보고	8
9	교육부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관련 통계	7
10	교육부	교육환경평가서 승인내용 이행사항 확인	7
11	교육부	교육환경보호구역 점검	6
12	교육부	원격교육 통계조사	6
13	교육부	대학 산학협력활동 실태조사	8
14	교육부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7
15	교육부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	7
16	교육부	특수교육 실태조사	7
17	교육부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실태조사	10
18	교육부	직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 실태조사	8
19	교육부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실태조사	9
20	교육부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소득재산 조사	8
21	교육부	학자금 대출 장기 미상환자 조사	8
22	교육부	평생교육 통계조사	9
23	교육부	학교안전사고 예방 실태조사	8
24	교육부	학술실태조사	8
25	교육부	학술지원 사업비에 대한 조사	8
26	과기부	주파수 이용현황 조사	6.5
27	과기부	지정시험기관 점검	6.5
28	과기부	위성운용계획의 제출	5
29	과기부	전기통신역무 품질평가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5
30	과기부	방송통신설비 설치 검사	5
31	과기부	영업보고서 제출 및 검증 또는 사실확인에 필요한 자료	7.5

번호	부처명	행정조사명	필요성평가
32	과기부	사물인터넷산업 실태조사	5
33	과기부	정보화 통계조사	6.5
34	과기부	서신송달업자 현황 조사	4.5
35	과기부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	9
36	과기부	국가연구시설장비 운영관리 실태조사	8
37	과기부	우주산업 실태조사	6
38	과기부	원자력산업 실태조사	6
39	과기부	과학관 운영 실태조사	3.5
40	과기부	과학기술유공자 실태조사	2
41	과기부	고성능컴퓨팅 실태조사	4
42	과기부	나노기술 연구개발활동 조사	3.5
43	과기부	생명연구자원 현황조사	4.5
44	과기부	기후기술 산업통계	2
45	과기부	연구산업진흥법 신고·지정 요건 위반 여부 등 조사	2.5
46	법무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조사	
47	행안부	승강기 제조·수입·관리·검사 실태 및 현황조사	7
48	행안부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승강기 운행에 대한 실태조사	7
49	행안부	어린이 안전사고 실태조사 및 현장조사	8
50	행안부	전국 공중화장실 실태조사	7
51	행안부	주요 기록정보 자료 등의 수집	7
52	행안부	국가기록물 지정·해제 및 보존·관리를 위한 기록물 조사	7
53	행안부	기부금품의 모집 또는 접수행위의 위법성 검사	8
54	행안부	주민등록 신고사항에 대한 사실조사	7
55	행안부	온천 허위·과장 광고 등 관리실태 점검	6
56	행안부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에 따른 사실조사	7
57	행안부	안전교육기관 운영현황 조사	6
58	행안부	의연금품 모집현황 검사	8
59	행안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의 조사	6
60	행안부	유선 및 도선 안전점검	7
61	행안부	기업의 여론조사 등	6
62	행안부	어린이놀이시설 지도감독	8
63	문체부	콘텐츠산업통계실태조사	8
64	문체부	방송영상독립제작사실태조사	7
65	문체부	방송영상독립제작사임금체불조사	6
66	문체부	게임산업실태조사	8
67	문체부	게임물유통및이용실태조사	6
68	문체부	게임물유통질서확립등조사	8

번호	부처명	행정조사명	필요성평가
69	문체부	게임물관련사업자실태조사	8
70	문체부	음악산업관련조사	8
71	문체부	대중문화예술산업실태조사	8
72	문체부	사행산업관련통계조사	7
73	문체부	사행산업이용실태조사	7
74	문체부	관광통계조사	9
75	문체부	공연장내중대한사고보고의무등	9
76	문체부	공연자또는공연장운영자등의감독·검사	5
77	문체부	미디어시장조사	5
78	문체부	국민의언어의식조사	7
79	문체부	어문규범영향평가	6
80	문체부	스포츠산업조사	6
81	문체부	선수, 체육지도자등징계관한정보자료제출	7
82	문체부	체육진흥투표권판매관련위반행위조사	8
83	문체부	광고산업실태조사	8
84	문체부	근로자휴가조사	7
85	문체부	국민여가활동조사	7
86	농식품부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자료 제출	6.5
87	농식품부	지리적표시품 사후관리 조사	6.5
88	농식품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확인조사	3
89	농식품부	공익직불제(기본직불) 이행점검 조사	8.5
90	농식품부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 이행점검 조사	8.5
91	농식품부	경관보전직불제 이행점검 조사	8.5
92	농식품부	논활용(논이모작) 직불제 이행점검 조사	8.5
93	농식품부	농지상시조사	5
94	농식품부	농지이용실태조사	6.5
95	농식품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및 동물실험실태 자료 제출	7.5
96	농식품부	동물보호·복지 실태조사에 관한 자료 제출	7.5
97	농식품부	동물용의약품 제조시설·기구 등 제조소 시설기준 조사	8
98	농식품부	수입농산물등의 유통이력조사	9
99	농식품부	농업용 면세유류 사후관리 조사	9
100	농식품부	종자산업 실태조사	7.5
101	농식품부	분쟁대상 종자 및 묘 자료 제출	10
102	농식품부	차산업 실태조사	6.5
103	농식품부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사업자 조사	9
104	농식품부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기관 조사	10
105	농식품부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조사	7.5

번호	부처명	행정조사명	필요성평가
106	농식품부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사후관리 조사	9
107	농식품부	한국마사회 보고/검사	10
108	농식품부	재사용 화환 표시 조사	1.5
109	산업부	소재부품장비산업 동향조사	10
110	산업부	친환경적 산업구조 전환 촉진을 위한산업디자인통계조사	9
111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보급실적 조사	10
112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설비·연료산업 조사	10
113	산업부	산업환경통계조사	9
114	산업부	액화석유가스 거래상황 기록 제출	9
115	산업부	엔지니어링산업 실태조사	8
116	산업부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사후 관리	9
117	산업부	전기공사업 실태조사	8
118	산업부	광융합기술 진흥 전담기관 보고 및 검사	8
119	산업부	무역에 관한 제반사항 조사 및 보고	8
120	산업부	계량 산업 실태조사	8
121	산업부	경제자유구역청장,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보고 및 검사	8
122	산업부	전기안전관리업무 실태조사	9
123	산업부	프랜차이즈 실태조사	8
124	산업부	수소산업 실태조사	9
125	산업부	냉난방온도 유지관리 여부 점검	9
126	산업부	외국인투자기업 고용 실태조사	9
127	산업부	외국인투자에 관한 통계 자료의 수집·작성	8
128	복지부	묘지의 일제조사	8
129	복지부	요양기관의 선별급여 실시에 대한 관리	7.5
130	복지부	보험급여의 제한대상 여부 확인	8.5
131	복지부	국민건강보험 사업장 지도점검	8.5
132	복지부	요양급여비용 심사 등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8.5
133	복지부	노인실태조사	9
134	복지부	자활기업 사업보고	7.5
135	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자격 조사	8.5
136	복지부	국민생활실태조사	8.5
137	복지부	타법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 조사	8.5
138	복지부	장기 등 기증·적출·이식 관련 자료 제출	8.5
139	복지부	보육실태조사	8
140	복지부	표준보육비용 조사	6
141	복지부	어린이집 지도점검	9

번호	부처명	행정조사명	필요성평가
142	복지부	혈액수급정보 제출	8.5
143	복지부	불법개설 의심 의료기관 행정조사	9
144	복지부	비급여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등	8
145	복지부	주민의 복지욕구 조사	7
146	복지부	장기요양 실태조사	8.5
147	복지부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관리 점검	7
148	복지부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7.5
149	복지부	장애인 실태조사	9
150	복지부	공중보건 의사 보수 등 조사	6.5
151	복지부	공중보건 의사 배치의 적정성 평가	6
152	복지부	보건진료소 운영현황	6.5
153	복지부	국민연금 사업장 및 가입자 적정 관리실태 확인	8.5
154	복지부	국민연금 수급자 확인조사	8.5
155	복지부	입원적합성 조사	7.5
156	복지부	보건 의료 관련 계획 수립 협조요청	7.5
157	복지부	의료서비스 경험조사	5.5
158	복지부	보건 의료 실태조사	7.5
159	복지부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행정조사	8
160	복지부	노숙인 등 실태 통계조사	6
161	복지부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7
162	환경부	통합관리사업장 점검	9
163	환경부	통합관리사업장 연간실적 보고	4.5
164	환경부	통합관리사업장 오염도 측정	9
165	환경부	통합관리사업장 실태조사	9
166	환경부	통합허가대행업자 실적 보고	4
167	환경부	통합허가대행업자 점검	8
168	환경부	측정대행업 관리감독	5
169	환경부	측정기기 검사·교정용품 검정대행자 관리감독	6
170	환경부	악취실태조사	7.5
171	환경부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 및 보급실적 보고	7.5
172	환경부	수도시설 운영, 관리 업무 위탁에 따른 자료제출	6
173	환경부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	7.5
174	환경부	수도시설의 시설기준, 수질기준 등 준수 여부 검사	6
175	환경부	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 등 조사	5
176	환경부	토양오염도의 상시측정	6.5
177	환경부	토양오염 실태조사	6.5
178	환경부	우려기준 초과 지역에 대한 토양정밀조사	9

번호	부처명	행정조사명	필요성평가
179	환경부	지하수 오염방지 조치사항 등에 관한 자료 제출	8.5
180	환경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	7
181	환경부	전국 오염원조사	5.5
182	환경부	야생동물질병 발생 역학조사	6.5
183	환경부	습지조사	6.5
184	환경부	폐기물관련 사업자 지도점검	7.5
185	환경부	폐기물 수출입 실적 등 보고	5.5
186	환경부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 결과보고서 제출	8
187	환경부	재활용 의무이행 계획사항 점검	6.5
188	환경부	재활용 관련 보고	6
189	환경부	재활용제품 유해성기준 준수여부 조사	7.5
190	환경부	재활용 환경성 평가기관 점검	6
191	환경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5.5
192	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제조수입 실적 보고	7
193	환경부	석면 실태조사	8
194	환경부	슬레이트 시설물에 대한 석면조사	8.5
195	환경부	어린이용품 유해성 관리	8.5
196	고용부	사용자, 외국인근로자, 단체 등에 대한 보고 및 조사	6
197	고용부	피보험자 등 자격 확인, 부정수급조사 등 보고, 서류 제출	7
198	고용부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 등에 대한 보고 및 현장 조사	6
199	고용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8
200	고용부	장애인 고용 및 산업재해 현황 실태조사	6
201	고용부	숙련기술인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5
202	고용부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및 대여 알선 조사	7
203	고용부	일학습병행 지도점검	5
204	고용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점검	6
205	고용부	임금결정현황 조사	7
206	고용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지도 및 감독	7
207	고용부	채용절차 관련 보고 및 조사	6
208	고용부	취업지원 신청에 따른 확인·조사	7
209	고용부	사업체노동력조사	8
210	고용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8
211	고용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8
212	고용부	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	6
213	고용부	기업체노동비용조사	7
214	여가부	양성평등실태조사	
215	여가부	성희롱실태조사	

번호	부처명	행정조사명	필요성평가
216	여가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217	여가부	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및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보고·검사	
218	여가부	청소년 종합 실태조사	
219	여가부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실태조사	
220	여가부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221	여가부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 실태조사	
222	여가부	가족실태조사	
223	여가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조사	
224	여가부	기업 및 공공기관의 가족친화 수준조사	
225	여가부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226	여가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감독 및 안전 점검	
227	여가부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등에 관한 조사	
228	여가부	아이돌보미만족도조사	
229	여가부	아이돌봄 중앙지원센터 등 보고 검사	
230	여가부	아이돌봄지원대상자의 재산 등에 관한 조사	
231	여가부	결혼중개업 실태조사	
232	여가부	여성폭력실태조사	
233	여가부	성폭력실태조사	
234	여가부	성매매실태조사	
235	여가부	지자체 성매매 방지 지도 점검	
236	여가부	가정폭력실태조사	
237	여가부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평가	
238	여가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실태조사	
239	국토부	산업단지개발사업 검사	8.5
240	국토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개발행위허가보고 검사	7.5
241	국토부	건축물관련 보고와 검사 등	6.5
242	국토부	조정을 위한 조사 및 의견 청취	7.5
243	국토부	건축물관리 실태조사	6.5
244	국토부	건축물관리 보고 및 검사	6.5
245	국토부	대한건축사협회 운영실태조사	8.5
246	국토부	경관사업 재정지원 및 감독	5.5
247	국토부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및 검사	9
248	국토부	거주의무 실태조사	7.5
249	국토부	분양보증 이행방법 조사	10
250	국토부	주택도시기금 재수탁기관 조사	8
251	국토부	x	5.5
252	국토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단체(협회)에 대한 감독	5.5

번호	부처명	행정조사명	필요성평가
253	국토부	정비사업 시행주체 등에 대한 조사	10
254	국토부	정비사업 현장조사	7.5
255	국토부	공공주택사업자 등 부동산 투기여부 조사	9
256	국토부	공공주택의 거주 실태조사 등	7
257	국토부	공공주택사업자 감독, 조사 및 보고의무	7
258	국토부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7
259	국토부	공인중개사협회와 그 지부 및 지회에 대한 감독관청의 지도·감독명령	8.5
260	국토부	부동산서비스 산업실태조사	6
261	국토부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심사 대행기관 지도감독	3.5
262	국토부	택지개발지구 토지에의 출입 등	9.5
263	국토부	기본측량이나 수로조사에 관한 자료의 제출	9
264	국토부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자료 조사	7
265	국토부	골재협회 보고	7.5
266	국토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지도·감독	5
267	국토부	긴급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9
268	국토부	유지관리 결과보고서 제출	9
269	국토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실태 점검을 위한 자료요구	9.5
270	국토부	국가교통조사	10
271	국토부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의타당성평가대행업무조사	9
272	국토부	교통안전진단 평가를 위한 관련 자료 제출	8.5
273	국토부	교통안전진단기관지도·감독	8.5
274	국토부	교통사고 관련 자료 등의 보관·관리	8.5
275	국토부	자동차운행기록장치 운영실태조사	9.5
276	국토부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6
277	국토부	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 제출	8.5
278	국토부	대중교통현황조사	8.5
279	국토부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7
280	국토부	대중교통운영자의 보조금, 용자금 사용에 대한 검사	8.5
281	국토부	대중교통운영자의 장부·서류 등에 관한 조사	8.5
282	국토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교통안전정보공시에 필요한 점검	4.5
283	국토부	자동차여객 운수사업자에 대한 보고와 검사	8
284	국토부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8
285	국토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검사	8
286	국토부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 기록 관리	8.5
287	국토부	화물차 공제조합 관련 보고서 제출	8.5
288	국토부	화물차 협회 및 연합회 업무감독	8.5



번호	부처명	행정조사명	필요성평가
289	국토부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교육현황 관리	8.5
290	국토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소유자, 사용자)에 대한 보고와 검사	8.5
291	국토부	자동차검사 및 관리업무를 위한 자료제출	5
292	국토부	공항·비행장시설출입·검사	9.5
293	국토부	공항소음 대책사업에 관한 사항 보고 및 검사	7
294	국토부	복합환승센터개발 및 관리에 관한 업무검사 등	6
295	해수부	국제항해선박소유자 보고자료 제출	10
296	해수부	수출용수산물 생산가공 시설에 대한 현지조사	5
297	해수부	유해물질 검사 등 수산물 안전성 조사	10
298	해수부	무인도서 이의신청 현장조사	5
299	해수부	무인도서 점검	10
300	해수부	국적선 범위반 여부 특별점검	10
301	해수부	선원 권익보호를 위한 선원근로감독	10
302	해수부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의 사후관리(신규)	8
303	해수부	수산생물 검역시행장 변경 자료 제출	5
304	해수부	수산생물질병 예찰(신규)	8
305	해수부	연근해어업의 조업상황 등 자료제출	10
306	해수부	수산조정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자료제출(신규)	3
307	해수부	자율관리어업 실태조사	5
308	해수부	항만배후단지 종합계획의 수립·변경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	5
309	해수부	항만개발사업의 허가내용 확인을 위한 항만개발사업 시행자 및 항만시설운영자 점검	8
310	해수부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사항 점검 (신규)	8
311	해수부	수산종자 유통조사(신규)	8
312	해수부	수산종자생산업 실태조사(신규)	8
313	중기부	소모성자재납품업 실태조사	5
314	중기부	벤처기업정밀 실태조사	10
315	중기부	전통시장·상점가 및 점포경영 실태조사	10
316	중기부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7
317	중기부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	10
318	중기부	중소기업기술 통계조사	10
319	중기부	여성기업 실태조사	7
320	중기부	상가건물임대차 실태조사	10
321	중기부	소상공인 실태조사	10
322	중기부	중소기업 실태조사	10
323	중기부	창업기업 실태조사	9

번호	부처명	행정조사명	필요성평가
324	중기부	기술침해 행정조사	10
325	중기부	중소기업 정보화 수준조사	7
326	중기부	기업가정신 실태조사	5
327	중기부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5
328	중기부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조사	5
329	중기부	대기업상생협력조사	7
330	중기부	장애인기업 지도점검	7
331	중기부	벤처기업확인 점검	5
332	중기부	수위탁거래조사	10
333	보훈처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334	보훈처	독립유공자 산재묘소 실태조사	
335	보훈처	제대군인 맞춤형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336	보훈처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실태조사	
337	보훈처	현충시설 실태조사	
338	방통위	방송통신사업자의 통계 등 자료 제출 요구	8.5
339	방통위	KBS 당해연도 운영계획 제출	8
340	방통위	KBS 전년도 결산서 제출	9
341	방통위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자료 제출	8
342	방통위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여부 조사	7.5
343	방통위	신문 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을 위한 자료 제출	4.5
344	방통위	보편적 시청권 보장 관련 금지행위 위반 여부 조사	7.5
345	방통위	방송광고판매대행자 등에 관한 법률 금지행위 위반여부 조사	5
346	방통위	한국교육방송공사 예산 보고	9
347	방통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서 제출	9
348	방통위	위치정보법 위반 관련 자료제출 및 현장검사	8
349	방통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7
350	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 재정사건 출석요구 및 의견청취 등	7
351	방통위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여부 조사	7
352	식약처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실태조사	8.5
353	식약처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긴급생산·수입명령 및 유통개선조치 결과 보고	8
354	식약처	GMO 표시대상 농산물의 표시 실태조사	7
355	식약처	시험·검사기관 지도점검	9
356	식약처	임상시험 실시상황 보고	9
357	식약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급식소 지도점검	7.5
358	식약처	위생용품 생산실적 보고	5.5
359	식약처	위생용품 등 관련 업소 지도·점검	6.5

번호	부처명	행정조사명	필요성평가
360	식약처	첨단바이오향약품 제조·수입업체 지도 점검	7
361	식약처	인체세포등 관리업 및 세포처리시설 지도 점검	8.5
362	관세청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기준 점검	
363	관세청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수출입관리현황 변동사항 보고	
364	관세청	수출입물류업체 법규수행능력 점검	
365	관세청	보세공장 특허변경사항 보고	
366	관세청	종합보세사업장 재고조사	
367	관세청	물수품 등 위탁판매물품 관리상황 점검	
368	관세청	관세사회 운영현황 점검	
369	관세청	선급법인 및 컨테이너 지정 검사기관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 점검	
370	관세청	사후관리 운영 현황 점검	
371	관세청	유통이력 신고의무자에 대한 유통이력 조사	
372	관세청	원산지증명서 발급 현지 확인	
373	소방청	소방대상물에 대한 화재안전조사	
374	소방청	자체점검 표본조사	
375	소방청	소방장비실태조사	
376	소방청	인증기관 적합성 조사	
377	조달청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378	문화재청	문화재 수리현황의 검사	
379	농촌진흥청	농작물 생육조사 및 병해충조사	
380	산림청	임산물생산조사	
381	특허청	지식재산 활동조사	
382	특허청	특허실시 현황 보고	
383	특허청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현장조사 및 시료채취	
384	질병청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실태조사	
385	질병청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실태조사	
386	질병청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실태조사	
387	기상청	기상산업 실태조사	
388	해경청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점검	
389	해경청	연안체험활동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390	원안위	원자력안전 실태조사	
391	원안위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실태 조사 및 분석	
392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393	통계청	기업활동조사	
394	통계청	건설업조사	
395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396	통계청	서비스업조사	

번호	부처명	행정조사명	필요성평가
397	통계청	운수업조사	
398	통계청	건설경기동향조사	
399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400	통계청	기계수주동향조사	
401	통계청	온라인쇼핑동향조사	
402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403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404	통계청	사회조사	
405	통계청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406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출생,사망,혼인,이혼)	
407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408	통계청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409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410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411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412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413	통계청	양곡소비량조사	
414	통계청	어가경제조사	
415	통계청	가축동향조사	
416	통계청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조사	
417	통계청	농축산물생산비조사	
418	통계청	어류양식동향조사	
419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420	통계청	산지쌀값조사	
421	통계청	농업면적조사	
422	통계청	농작물생산조사	
423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424	통계청	경제총조사	
425	통계청	프렌차이즈조사	
426	통계청	소상공인실태조사	
427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428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429	통계청	인구총조사	
430	통계청	주택총조사	
431	통계청	통계인력및예산조사	
432	통계청	북한벼재배면적조사	



---

## 행정조사로 인한 기업부담 실태조사





# 제1절

## 조사개요



### 1. 조사 목적 및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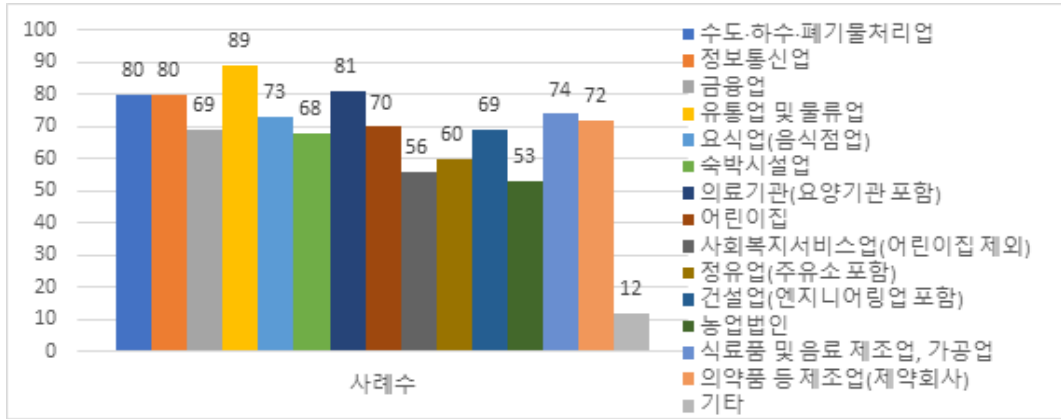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행정조사로 인한 기업부담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행정조사 방안을 도출하는 취지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정부의 각종 행정조사는 법률에 근거하여 최대한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시민에게 큰 행정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조사에서는 행정조사 유형별 문제점과 기업의 부담을 파악함으로써 행정조사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조사 대상을 행정조사 요청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기업체로 한정하였다.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 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자료제출요구 및 출석·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을 의미하는데(행정조사기본법 제2조), 본 조사에서는 중앙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요청을 모두 고려하였다. 또한, 14개 주요 업종을 구분하여 각 업종별로 최소 50개 이상의 유의미한 응답 데이터가 수집될 수 있도록 표본을 구성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전국 1,006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 2. 조사기업 일반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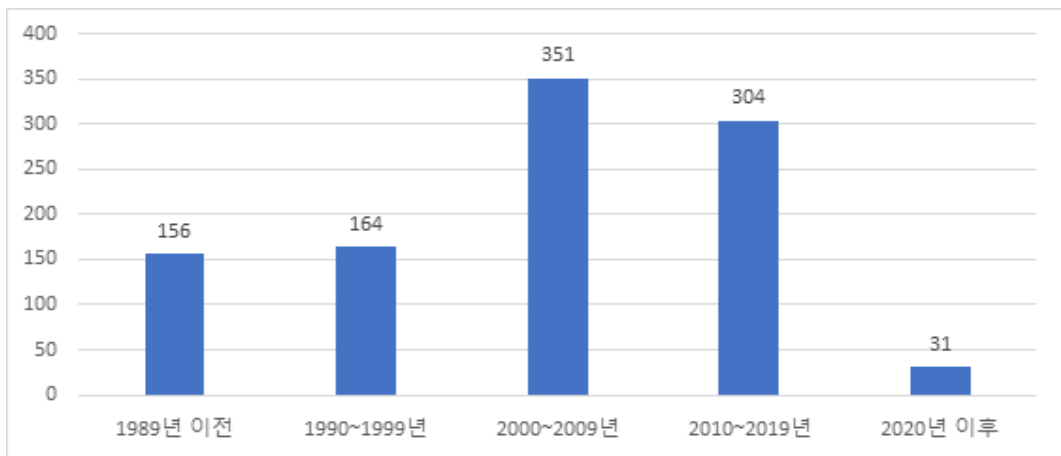
본 조사에서 확인한 조사 기업들의 주요 정보로는 업종, 설립연도, 기업 형태, 소재지 및 고용 규모(상시 근로자 수)가 있는데 다음과 같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먼저, 앞서 언급했듯이 본 연구 대상으로 선정된 14개 주요 업종(기타 제외) 모두 최소 50개 기업체 이상의 표본을 확보하는 등 대체로 고른 업종별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유통업 및 물류업(8.8%), 의료기관(8.1%), 수도·하수·폐기물처리업(8.0%), 정보통신업(8.0%) 순으로 응답 기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1〉 업종별 응답 기업 분포



설립연도별 응답 기업 분표를 살펴보면, 가장 오래된 기업은 1885년에 설립된 반면 2023년에 설립된 신생기업도 응답하는 등 매우 젊은 기업에서부터 오랜 경영의 전통이 있는 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업들을 조사에 포함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설립연도 기준 10년 단위로 기업들의 분표를 살펴보면 응답한 기업들 중 2000년대에 설립된 기업이 351개(34.9%)로 가장 많았으며, 2010년대에 설립된 기업이 304개(30.2%)로 그 뒤를 이었다. 1989년 이전에 설립된 기업(156개)과 1990년대에 설립된 기업(164개) 수는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2020년 이후에 설립된 신생기업은 31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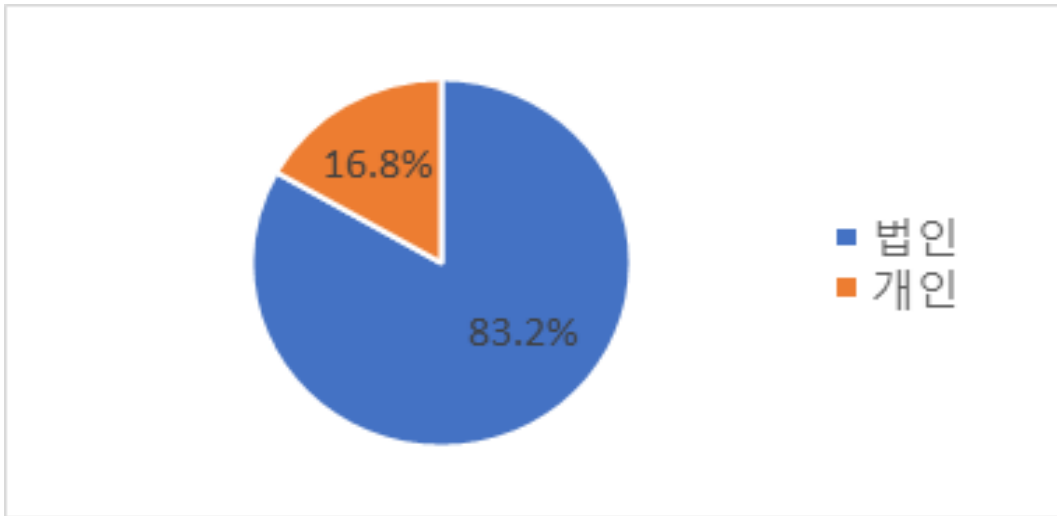
〈그림 5-2〉 설립연도별 응답 기업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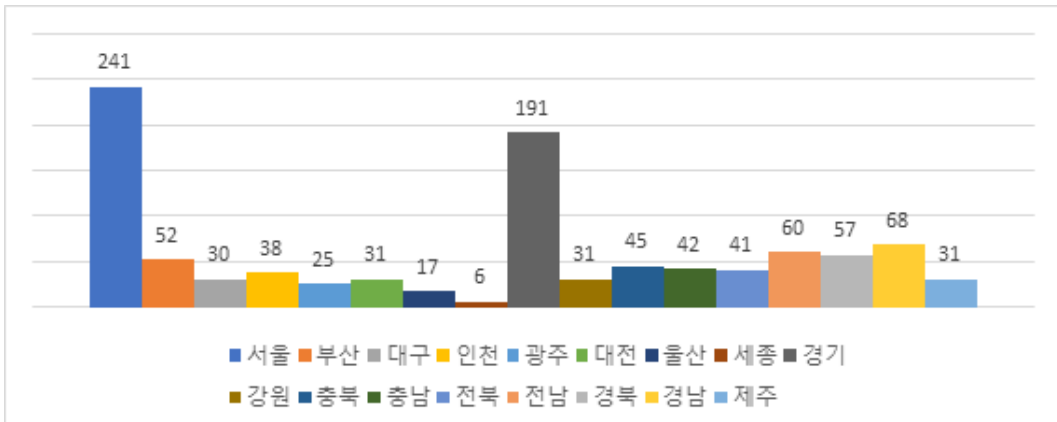
기업 형태는 법인이 837개로 전체 조사표본의 대다수인 83.2%를 차지한 반면, 개인 응답 비율은 16.8%(169개)로 나타났다. 개인 응답자는 일부 업종에서 많이 발견되었는데, 의료기관(요양기관 포함) 65개, 어린이집 36개, 요식업(음식점업) 30개 및 식료품 및 음료 제조·가공업 12개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3〉 기업형태별 응답 기업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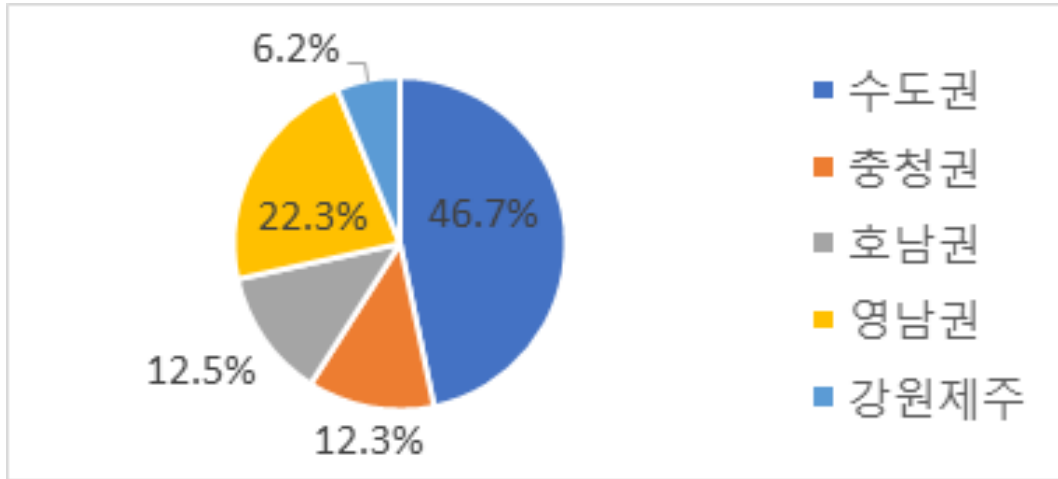
다음으로 소재지별 응답 기업분포를 살펴보면 서울 241개(24.0%), 경기 191개(19.0%), 경남 68개(6.8%), 전남 60개(6.0%) 순으로 응답기업이 많았다.

〈그림 5-4〉 소재지별 응답 기업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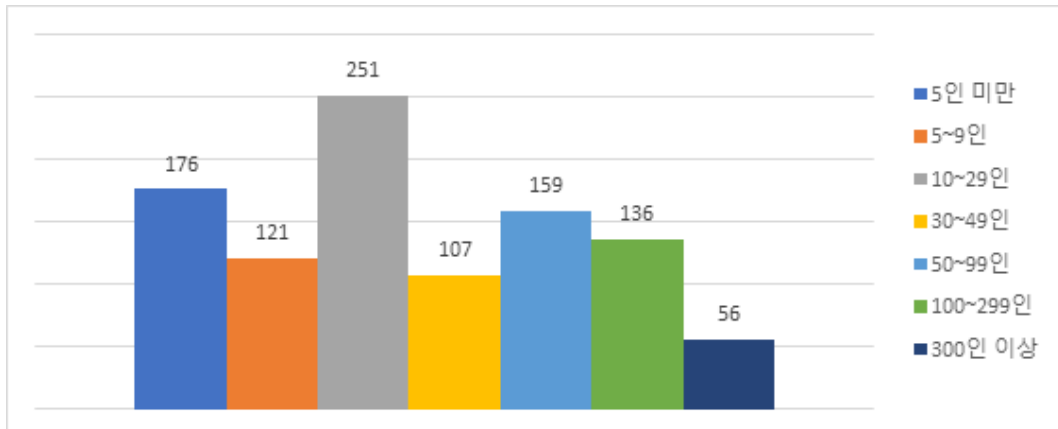
이를 권역별로 재분류한 결과 수도권이 470개(46.7%), 영남권이 224개(22.3%)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충청권(124개)과 호남권(126개)이 비슷한 수준으로 지역별 안배가 골고루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5-5〉 소재 권역별 응답 기업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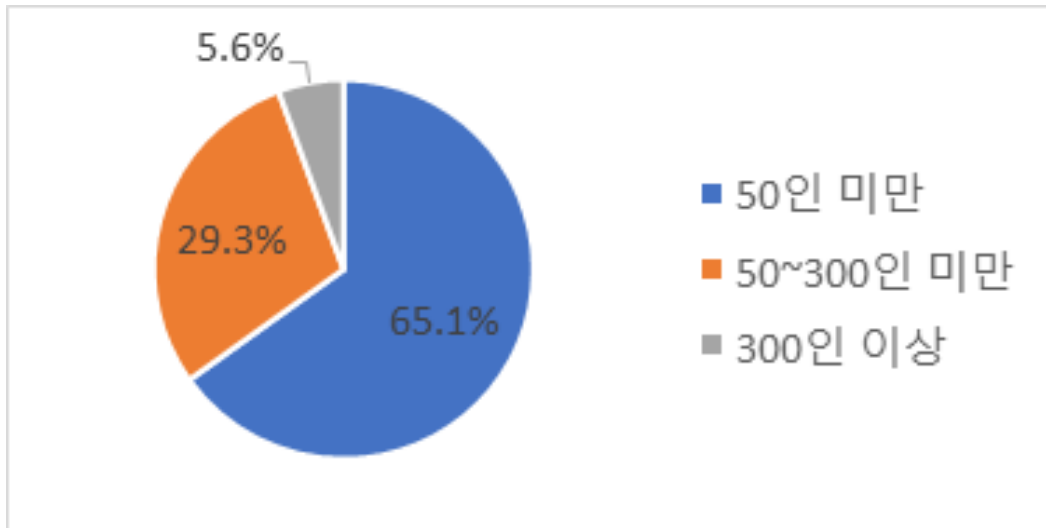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고용 규모별 기업 분포를 살펴보면,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10~29인 규모(251개) 및 5인 미만 규모(176개)의 중소기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50~99인 규모(159개) 및 100~299인 규모(136개)의 중견기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시 근로자를 300인 이상 고용하는 56개 대기업도 조사에 포함된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5-6〉 고용 규모별 응답 기업 분포



조사기업들을 상시 근로자 기준으로 50인 미만, 50~300인 미만 및 300인 이상 규모로 구분할 경우 50인 미만 규모의 기업이 655개(65.1%)로 가장 많았으며, 50~300인 미만 규모의 중견기업들도 295개(29.3%)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7〉 기업 규모별 응답 기업 분포



1,006개 조사기업의 응답자 개인의 특성을 살펴보면 여성이 599명(59.5%)으로 남성(407명, 40.5%)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응답한 개인들의 직급은 사원/대리(452명, 44.9%) 및 과장급(224명, 22.3%)이 가장 많았으며, 차장/부장급(148명, 14.7%) 또는 대표이사(135명, 13.4%)가 응답한 사례도 많았는데 이는 다양한 업종 및 기업 규모를 포함하는 조사를 수행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마찬가지로 응답자의 연령도 30대 334명(33.2%), 40대 280명(27.8%), 50대 190명(18.9%), 20대 134명(13.3%), 60대 이상 68명(6.8%) 순으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 제2절

## 행정조사 유형별 행정부담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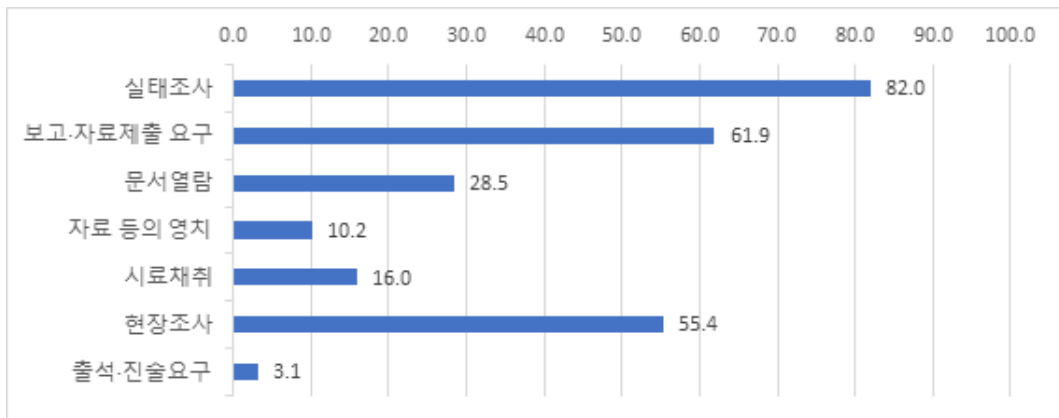
## 1. 행정조사 경험

먼저 기업들의 행정조사 경험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특히 기업들이 받았던 행정조사 요청 유형, 행정조사 요청 빈도(연평균 요청 횟수), 중복요청 여부 및 중복요청 내용들을 차례대로 살펴보았다.

## 가. 행정조사 경험 여부

모든 조사 기업은 정부 및 공공기관의 행정조사 요청을 받아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유형 경험 여부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행정조사의 유형은 실태조사, 보고·자료제출 요구, 문서열람, 자료 등의 영치, 시료채취, 현장조사, 출석·진술요구 등 7개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그림 5-8〉 행정조사 유형별 경험 여부 (%)



각 기업의 설문 응답자들은 정부(지자체 포함)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던 행정조사의 유형을 모두 선택하였는데, 이중 실태조사(82.0%), 보고·자료제출 요구(61.9%) 및 현장조사(55.4%)는 응답기업의 과반 이상이 경험할 정도로 높게 나타나고 네 기업 중 한 기업이 문서열람

(28.5%) 요청을 받았던 반면, 시료채취(16.0%), 자료 등의 영치(10.2%) 및 출석·진술요구(3.1%) 요청을 받은 기업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7가지 행정조사 유형 중 기업들이 가장 많이 경험했다고 응답한 4개 유형(실태조사, 보고·자료 제출 요구, 문서열람, 현장조사)을 중심으로 업종별로 살펴보았는데, 대부분의 경우 업종과 무관하게 실태조사, 보고·자료제출, 현장조사, 문서열람 순서로 경험 여부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다만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경향도 확인되는데, 요식업(음식점업), 어린이집 및 정유업(주유소 포함)은 현장조사 경험 비율이 보고·자료제출 경험 비율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대표적이다. 그 외에도 사회복지서비스업(어린이집 제외)은 보고·자료제출 경험 비율이 실태조사 비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식료품 및 음료 제조업, 가공업 응답자들은 현장조사 경험 비율과 보고·자료제출 경험 비율이 비슷하게 높게 나타난다는 점 또한 확인되었다.

〈표 5-1〉 행정조사 유형별 경험 여부 (업종별, %)

	업종	사례수	실태조사	보고·자료제출	문서열람	현장조사
1	수도·하수·폐기물처리업	(80)	77.5	58.8	26.3	62.5
2	정보통신업	(80)	85.0	41.3	21.3	31.3
3	금융업	(69)	76.8	73.9	30.4	36.2
4	유통업 및 물류업	(89)	78.7	67.4	21.3	41.6
5	요식업(음식점업)	(73)	83.6	35.6	26.0	67.1
6	숙박시설업	(68)	83.8	44.1	13.2	30.9
7	의료기관(요양기관 포함)	(81)	84.0	77.8	39.5	72.8
8	어린이집	(70)	85.7	68.6	60.0	85.7
9	사회복지서비스업(어린이집 제외)	(56)	82.1	89.3	50.0	62.5
10	정유업(주유소 포함)	(60)	50.0	51.7	18.3	83.3
11	건설업(엔지니어링업 포함)	(69)	85.5	55.1	17.4	39.1
12	농업법인	(53)	90.6	62.3	26.4	56.6
13	식료품 및 음료 제조업, 가공업	(74)	83.8	68.9	33.8	70.3
14	의약품 등 제조업(제약회사)	(72)	95.8	80.6	22.2	48.6
15	기타	(12)	100.0	33.3	8.3	16.7
	전체	(1,006)	82.0	61.9	28.5	55.4

실태조사 경험 비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의약품 등 제조업(95.8%)과 농업법인(90.6%)인 반면, 정유업(주유소 포함)이 50.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보고·자료제출 경험 비율의 경우, 사회복지서비스업(89.3%)과 의약품 등 제조업(80.6%)이 가장 많이 경험한 반면, 요식업(35.6%)과 정보통신업(41.3%)이 가장 적게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조사는 어린이집(85.7%)과 정유업

(83.3%)이 높은 비율로 경험한 반면, 숙박시설업(30.9%)과 정보통신업(31.3%)이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문서열람 유형은 어린이집(60.0%)과 사회복지서비스업(50.0%)이 가장 높은 경험 비율을 보였으며 숙박시설업(13.2%)과 건설업(17.4%) 중에는 경험한 기업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 행정조사 유형별 경험 여부 (기업 특성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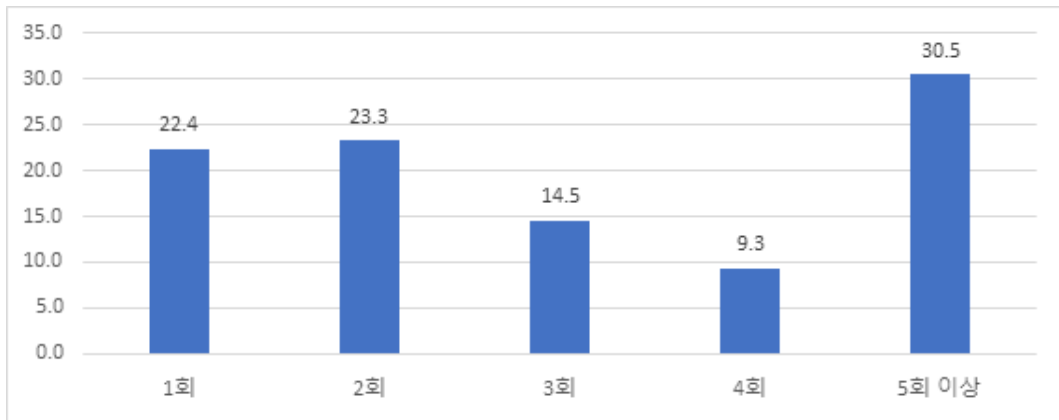
구분	항목	사례수	실태조사	보고·자료제출	문서열람	현장조사
설립연도	1989년 이전	(156)	84.0	65.4	26.9	49.4
	1990~1999년	(164)	81.1	62.8	29.3	56.7
	2000~2009년	(351)	82.9	62.1	30.5	60.1
	2010~2019년	(304)	80.3	59.5	26.0	51.3
	2020년 이후	(31)	83.9	61.3	35.5	64.5
기업 형태	법인	(837)	82.1	62.4	26.8	51.6
	개인	(169)	81.7	59.8	37.3	74.0
소재지	수도권	(470)	81.9	60.9	27.2	52.3
	충청권	(124)	81.5	55.6	32.3	58.9
	호남권	(126)	82.5	66.7	30.2	59.5
	영남권	(224)	80.4	67.0	27.7	58.0
	강원제주	(62)	88.7	54.8	30.6	53.2
고용 규모	50인 미만	(655)	79.8	59.2	28.7	57.9
	50~300인 미만	(295)	85.8	67.8	27.8	52.5
	300인 이상	(56)	87.5	62.5	30.4	41.1
	전체	(1,006)	82.0	61.9	28.5	55.4

기업 특성별로 행정조사 유형별 경험 여부를 살펴본 결과 대체로 기업 특성과 무관하게 실태조사, 보고·자료제출, 현장조사, 문서열람 순서로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설립연도에 따른 차이는 거의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기업형태가 개인인 경우, 충청권 및 강원제주에 소재한 기업들, 그리고 고용 규모가 50인 미만인 중소기업의 경우 현장조사 경험 비율이 보고·자료제출 요청 경험 비율보다 높거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 나. 행정조사 요청 횟수

다음으로는 조사기업들이 얼마나 많은 행정조사 요청을 받았는지 살펴보았다. 기업 응답자에게 정부(지자체 포함)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평균적으로 연간 몇 번의 행정조사 요청을 받았는지 물어본 결과 연간 5회 이상 요청을 받는다는 답변이 30.5%로 가장 많았으며, 2회(23.3%), 1회(22.4%), 3회(14.5%), 4회(9.3%)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9〉 행정조사 요청 횟수 (연 평균, %)



업종별로 연간 행정조사 요청받은 횟수를 살펴본 결과 과반 이상의 업종에서 5회 이상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가장 많았으며(32.1~48.2%) 특히 사회복지서비스업(48.2%), 숙박시설업(38.2%), 정보통신업(37.5%), 금융업(36.2%) 순으로 행정조사 요청 횟수가 5회 이상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대조적으로 요식업(60.2%), 건설업(63.7%), 농업법인(54.7%) 등 일부 업종은 연간 행정조사 요청 횟수가 1-2회에 불과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과반을 넘어서, 업종 간 행정조사 요청 빈도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5-3〉 행정조사 요청 횟수 (업종별, %)

	업종	표본수	1회	2회	3회	4회	5회 이상
1	수도·하수·폐기물처리업	(80)	23.8	26.3	11.3	11.3	27.5
2	정보통신업	(80)	23.8	16.3	16.3	6.3	37.5
3	금융업	(69)	21.7	20.3	13.0	8.7	36.2
4	유통업 및 물류업	(89)	23.6	22.5	10.1	10.1	33.7
5	요식업(음식점업)	(73)	30.1	30.1	13.7	4.1	21.9
6	숙박시설업	(68)	13.2	16.2	19.1	13.2	38.2
7	의료기관(요양기관 포함)	(81)	23.5	21.0	16.0	7.4	32.1
8	어린이집	(70)	30.0	21.4	14.3	7.1	27.1
9	사회복지서비스업(어린이집 제외)	(56)	12.5	19.6	12.5	7.1	48.2
10	정유업(주유소 포함)	(60)	18.3	23.3	20.0	5.0	33.3
11	건설업(엔지니어링업 포함)	(69)	42.0	21.7	11.6	7.2	17.4
12	농업법인	(53)	15.1	39.6	13.2	9.4	22.6
13	식료품 및 음료 제조업, 가공업	(74)	14.9	17.6	20.3	14.9	32.4
14	의약품 등 제조업(제약회사)	(72)	18.1	34.7	12.5	16.7	18.1
15	기타	(12)	8.3	16.7	16.7	16.7	41.7
	전체	(1,006)	22.4	23.3	14.5	9.3	30.5

기업 특성별로 행정조사 요청 횟수를 살펴본 결과 대체로 기업 특성과 무관하게 연평균 5회 이상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업형태가 개인인 경우, 강원·제주에 소재한 기업 또는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의 경우 연평균 행정조사 요청받은 횟수가 1-2회라고 응답한 비율이 50.3-53.2%를 차지하는 등 비교적 행정조사 요청 횟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 행정조사 요청 횟수 (기업 특성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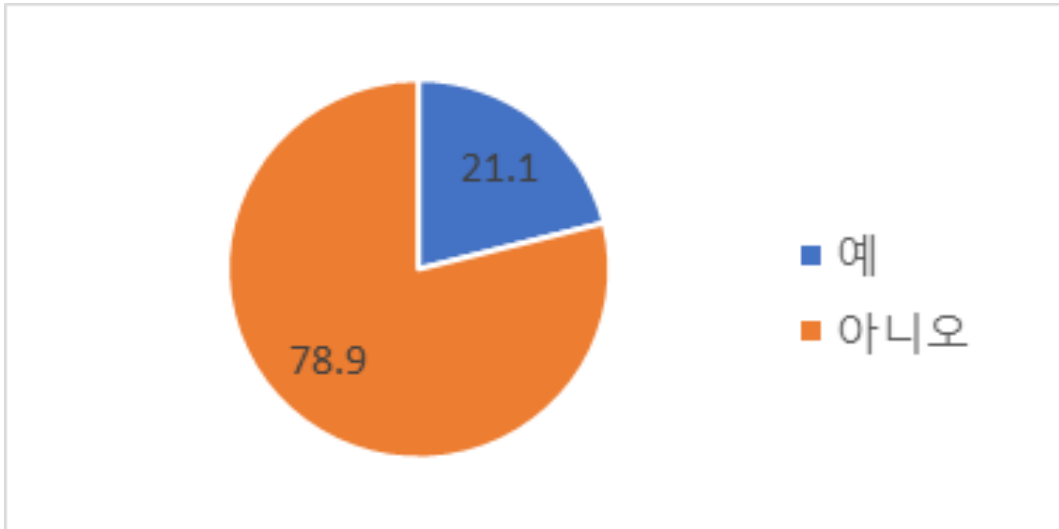
구분	항목	사례수	1회	2회	3회	4회	5회 이상
설립연도	1989년 이전	(156)	18.6	21.8	13.5	10.3	35.9
	1990~1999년	(164)	19.5	23.8	12.8	14.0	29.9
	2000~2009년	(351)	23.9	21.4	15.7	10.5	28.5
	2010~2019년	(304)	24.0	26.3	13.8	5.6	30.3
	2020년 이후	(31)	22.6	19.4	22.6	3.2	32.3
기업 형태	법인	(837)	20.9	23.8	14.7	9.6	31.1
	개인	(169)	29.6	20.7	13.6	8.3	27.8
소재지	수도권	(470)	26.2	21.7	13.6	8.9	29.6
	충청권	(124)	18.5	27.4	10.5	9.7	33.9
	호남권	(126)	19.0	21.4	18.3	11.9	29.4
	영남권	(224)	18.3	23.2	18.3	8.5	31.7
	강원제주	(62)	22.6	30.6	8.1	9.7	29.0
고용 규모	50인 미만	(655)	26.7	24.1	13.9	8.7	26.6
	50~300인 미만	(295)	15.3	21.4	16.3	10.8	36.3
	300인 이상	(56)	8.9	23.2	12.5	8.9	46.4
	전체	(1,006)	22.4	23.3	14.5	9.3	30.5

#### 다. 행정조사 중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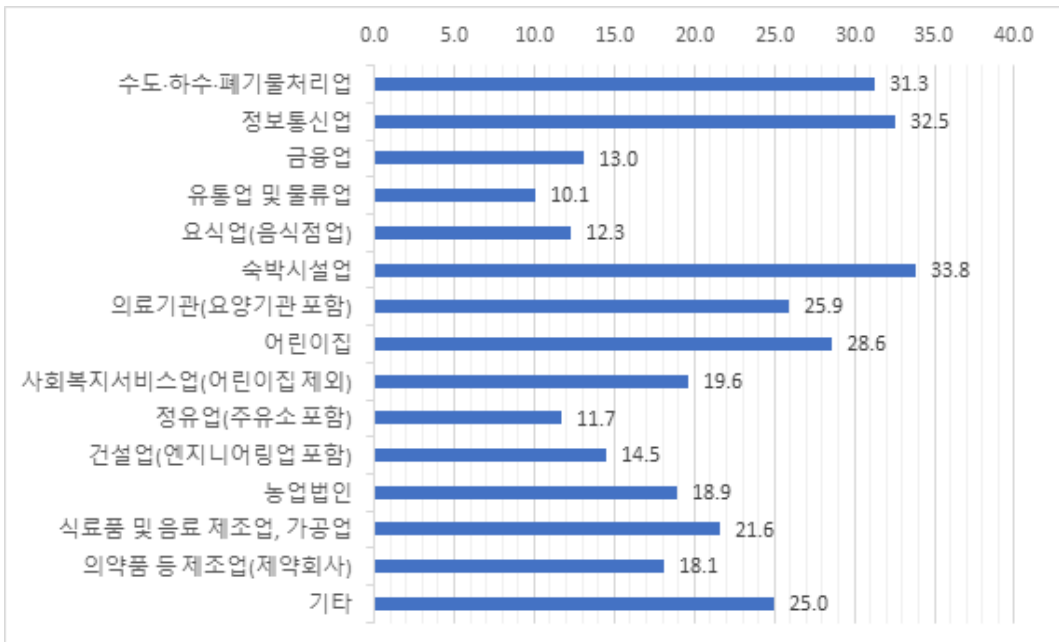
다음으로는 기업들이 요청받은 행정조사 중에서 중복되는 내용이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설문 응답자에게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요청받은 행정조사 중에서 동일한 내용을 중복적으로 조사한 사례가 있었는지 물어보았다. 이들 기업 중 21.1%가 중복되는 행정조사를 요청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연평균 행정조사 요청 횟수가 증가할수록 행정조사 중복을 경험하는 경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서, 연평균 5회 이상 요청받은 응답자의 34.53%가 중복조사를 경험한 반면 연평균 행정조사 요청횟수가 1회나 2회인 응답자는 각각 4.89%와 16.67%만이 중복조사를 경험했다고 응답하였다.

행정조사 중복 여부는 업종 간에도 큰 편차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숙박시설업(33.8%), 정보통신업(32.5%), 수도·하수·폐기물처리업(31.3%)의 응답자들은 열에 셋이 중복조사를 경험한 반면 유통업 및 물류업(10.1%), 정유업(11.7%), 요식업(12.3%) 등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은 열에 하나 정도만 중복조사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10〉 행정조사 중복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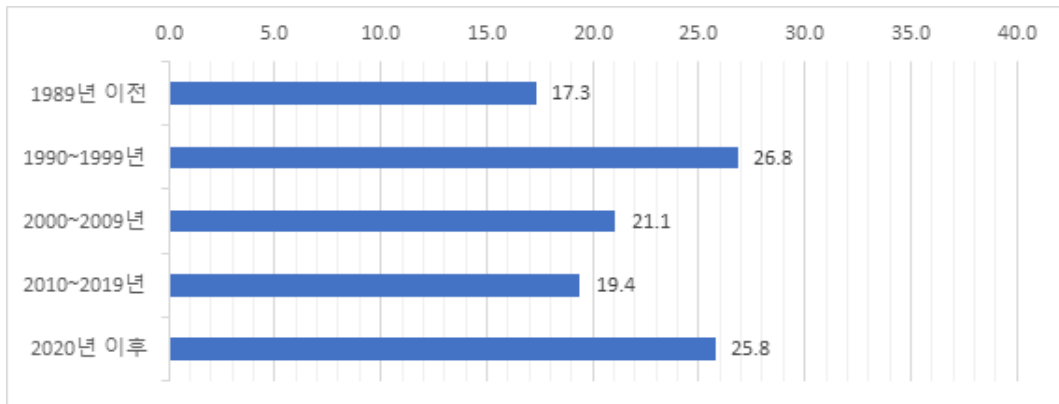


〈그림 5-11〉 행정조사 중복 여부 (업종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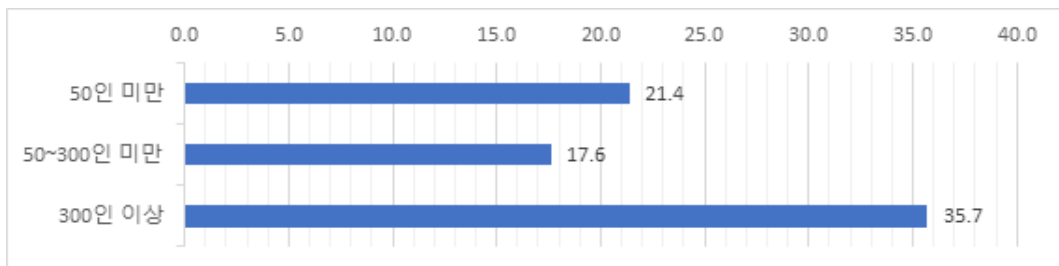
행정조사 중복 여부는 기업의 설립연도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도 했는데, 특별한 패턴이 확인되지는 않았다. 또한 행정조사 중복 여부는 기업 형태와 무관하게 법인(21.1%) 및 개인(20.7%)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중복조사를 경험한 기업의 비율이 영남권이 19.2%로 가장 낮고 충청권이 23.4%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 지역별로도 별다른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그림 5-12〉 행정조사 중복 여부 (설립연도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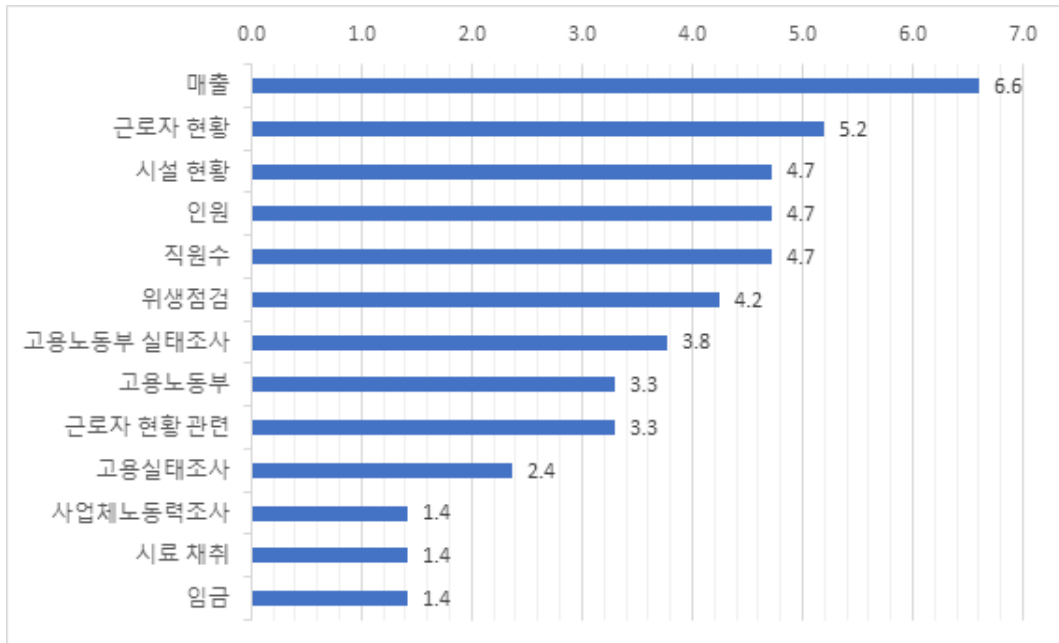
다만 고용 규모에 따라서는 큰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특히 3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 중복되는 행정조사를 경험했다는 응답 비율이 35.7%를 차지하였다.

〈그림 5-13〉 행정조사 중복 여부 (고용 규모별, %)



추가적으로 중복조사 요청을 경험한 212명을 대상으로 중복조사의 내용을 물어본 결과 고용/인력에 대한 중복조사를 지적하는 답변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아래 그림은 응답자들의 중복·유사 답변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키워드 중심으로 나열한 것으로 3명 이상(1.4%) 내용이 겹치는 답변만을 포함하고 있는데, “근로자”, “고용”, “노동”, “직원수”, “인원” 등을 지적한 답변들이 13개 주요 의견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5-14〉 행정조사 중복 내용 (%)



## 2. 행정조사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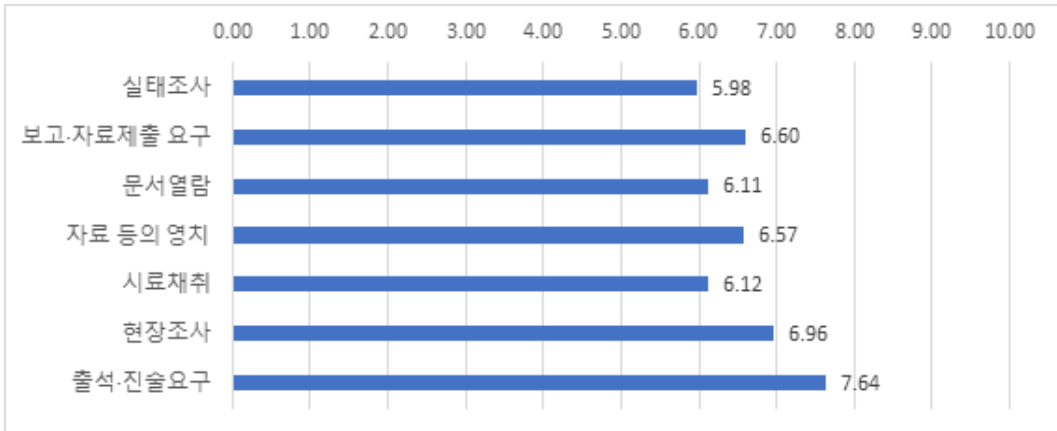
다음으로 기업들의 행정조사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았다. 특히 기업들이 받았던 행정조사가 유형별로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행정조사 주기나 빈도에 따라 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기업은 행정조사의 목적에 얼마나 동의하는지, 그리고 행정조사 과정에서 관련 원칙이 적절하게 준수되었다고 평가하는지 차례대로 살펴보았다.

### 가. 행정조사 유형별 부담

먼저 기업들이 행정조사 유형별로 느끼는 부담의 정도는 어느 수준인지 살펴보았다. 설문 응답자에게 7가지 행정조사 유형을 제시하고 각 유형에 관한 부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11점 척도(0점 = 전혀 부담없음, 5점 = 보통, 10점 = 매우 부담)로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7가지 유형 모두 5점을 초과하여 부담이라는 의견이 부담없다는 의견보다 많았으며, 대체로 약간 부담되는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출석·진술요구 유형이 평균 7.64점으로 7가지 유형 중 가장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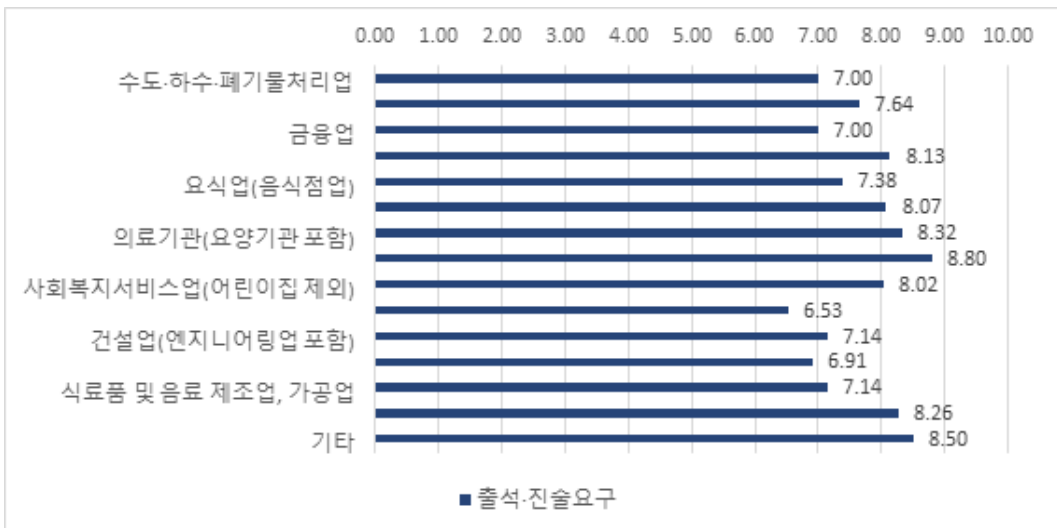
담 수준이 높게 평가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현장조사(6.96점), 보고·자료제출 요구(6.60점), 자료 등의 영치(6.57점) 순으로 부담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5-15〉 행정조사 유형별 부담 정도 (11점 척도)



위에서 언급한 부담수준이 높은 네 유형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출석·진술요구 유형이 업종 불문하고 공통적으로 가장 부담되는 유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16〉 행정조사 부담 정도 : 출석·진술요구 유형 (11점 척도)



그 다음으로 대다수 업종의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는 유형은 현장조사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유업과 농업법인의 경우 예외적으로 현장조사에 대한 부담 수준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별 업종별로 살펴볼 때 보고·자료제출 유형과 자료 등의 영치 유형도 모두 평균 5점을 초과하여 대체로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5-5〉 행정조사 유형별 부담 정도 (업종별, %)

	업종	사례수	보고·자료 제출 요구	자료 등의 영치	현장조사	출석·진술 요구
1	수도·하수·폐기물처리업	(80)	6.25	6.09	6.29	7.00
2	정보통신업	(80)	7.04	6.99	7.46	7.64
3	금융업	(69)	5.30	5.32	6.17	7.00
4	유통업 및 물류업	(89)	6.99	6.83	7.65	8.13
5	요식업(음식점업)	(73)	6.30	6.00	6.32	7.38
6	숙박시설업	(68)	7.12	7.44	7.65	8.07
7	의료기관(요양기관 포함)	(81)	6.79	6.72	7.53	8.32
8	어린이집	(70)	6.81	7.54	7.80	8.80
9	사회복지서비스업(어린이집 제외)	(56)	6.88	7.48	7.45	8.02
10	정유업(주유소 포함)	(60)	5.07	5.08	4.33	6.53
11	건설업(엔지니어링업 포함)	(69)	6.57	6.52	6.61	7.14
12	농업법인	(53)	6.30	6.25	5.98	6.91
13	식품 및 음료 제조업, 가공업	(74)	6.93	5.80	7.14	7.14
14	의약품 등 제조업(제약회사)	(72)	7.36	7.46	8.01	8.26
15	기타	(12)	7.83	8.25	8.58	8.50
	전체	(1,006)	6.60	6.57	6.96	7.64

설립연도, 기업 형태, 소재 지역, 고용 규모 등 기업 특성별로 행정조사 유형별 부담 수준을 살펴본 결과 기업 특성과 무관하게 공통적으로 출석·진술요구 유형, 현장조사 유형 순으로 가장 부담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보고·자료제출 유형과 자료 등의 영치 유형도 대체로 6점을 초과하는 약간 부담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6〉 행정조사 유형별 부담 정도 (기업 특성별, %)

구분	항목	사례수	보고·자료제출 요구	자료 등의 영치	현장조사	출석·진술 요구
설립연도	1989년 이전	(156)	6.02	5.91	6.41	7.03
	1990~1999년	(164)	6.83	6.90	7.25	7.91
	2000~2009년	(351)	6.86	6.85	7.33	7.86
	2010~2019년	(304)	6.51	6.43	6.70	7.54
	2020년 이후	(31)	6.13	6.32	6.48	7.58
기업 형태	법인	(837)	6.57	6.55	6.93	7.56
	개인	(169)	6.73	6.66	7.11	7.99
소재지	수도권	(470)	6.72	6.79	7.11	7.83
	충청권	(124)	6.74	6.65	7.01	7.48
	호남권	(126)	6.91	6.85	7.33	7.94
	영남권	(224)	6.20	6.04	6.59	7.26
	강원제주	(62)	6.15	6.05	6.29	7.23
고용 규모	50인 미만	(655)	6.36	6.41	6.67	7.56
	50~300인 미만	(295)	6.95	6.79	7.39	7.67
	300인 이상	(56)	7.54	7.23	8.05	8.36
	전체	(1,006)	6.60	6.57	6.96	7.64

순위형 로짓(ordered logit) 모형을 적용하여 기업 특성 및 개인(응답자) 특성을 통제할 경우, 실태조사 경험여부가 유형별 행정조사 부담 정도와 대체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보고·자료제출 경험 여부 및 현장조사 경험 여부는 유형별 행정조사 부담 정도와 대체로 유의미한 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각 유형별 행정조사 경험 여부와 해당 유형의 행정조사 부담 간 일관된 관계를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또한 연간 요청받은 행정조사 횟수가 많을수록 유형별 행정조사 부담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복조사를 경험한 경우에도 행정조사 부담 정도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 5-7〉 행정조사 유형별 부담 정도 (순위형 로짓 모형)

유형별 부담정도	실태조사	보고·자료 제출 요구	문서열람	자료 등의 영치	시료채취	현장조사	출석·진술 요구
[경험1] 실태조사	0.0343 (0.1586)	0.3951** (0.1554)	0.1853 (0.1531)	0.2982* (0.1555)	0.4218*** (0.1559)	0.2542 (0.1560)	0.2106 (0.1647)
[경험2] 보고·자료 제출	-0.0793 (0.1356)	-0.4616*** (0.1362)	-0.3085** (0.1358)	-0.2370* (0.1365)	-0.2869** (0.1366)	-0.0933 (0.1386)	-0.1711 (0.1432)
[경험3] 문서열람	0.2538* (0.1518)	0.0523 (0.1523)	-0.1421 (0.1505)	0.1014 (0.1520)	0.0394 (0.1499)	-0.1358 (0.1525)	0.1085 (0.1614)
[경험4] 자료 등의 영치	-0.0994 (0.2044)	0.1110 (0.2091)	0.1222 (0.2056)	-0.0906 (0.2051)	0.1187 (0.2119)	0.1140 (0.2094)	-0.3158 (0.2251)
[경험5] 시료채취	0.4643** (0.2023)	0.2638 (0.2027)	0.3853* (0.2028)	0.1229 (0.2048)	-0.1397 (0.2047)	-0.1397 (0.2030)	-0.0896 (0.2121)
[경험6] 현장조사	-0.1698 (0.1313)	-0.3005** (0.1317)	-0.2400* (0.1306)	-0.3579*** (0.1330)	-0.2206* (0.1324)	-0.3827*** (0.1352)	-0.0646 (0.1403)
[경험7] 출석·진술 요구	-0.0837 (0.3374)	0.1010 (0.3392)	-0.2413 (0.3511)	-0.0041 (0.3499)	-0.3538 (0.3497)	0.2972 (0.3489)	0.2558 (0.3798)
행정조사 요청횟수	0.1214*** (0.0416)	0.0739* (0.0411)	0.0502 (0.0408)	0.0658 (0.0415)	0.0973** (0.0416)	0.1077** (0.0419)	0.0812* (0.0438)
중복조사 경험여부	0.7896*** (0.1520)	0.6703*** (0.1492)	0.4445*** (0.1522)	0.3032** (0.1517)	0.2960* (0.1524)	0.6158*** (0.1560)	0.1611 (0.16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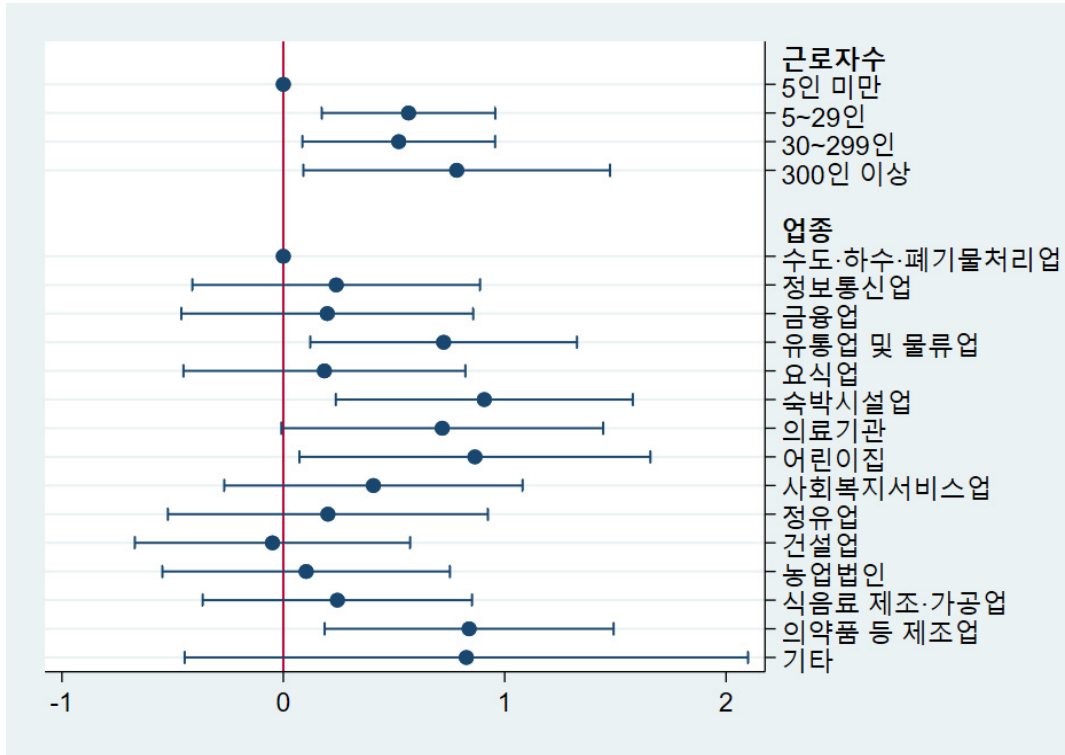
\*\*\* p&lt;0.01, \*\* p&lt;0.05, \* p&lt;0.1

주: 순위형 로짓 모형 적용 (N=1,006). 표준오차는 괄호 안에 표기. 행정조사 경험(유형별 행정조사 경험 여부, 행정조사 연간 요청횟수, 중복조사 경험 여부) 결과는 표에 제시. 기업 특성(기업 연령, 기업 형태, 기업 규모, 업종) 및 응답자 특성(성별, 직급, 연령)을 통제하였음(표 미제시).

기업 특성과 행정조사 유형별 부담 정도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기업 연령은 부담 정도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기업규모가 5인 미만인 영세 기업 외에는 모두 비슷한 수준의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아래 그림 참고). 또한 업종 간에도 차이가 존재하였는데, 수도·하수·폐기물 처리업(취급, 처리, 수집, 운반 포함)에 비해서 유통업 및 물류업, 숙박시설업, 어린이집, 의약품 등 제조업(제약회사) 업종의 기업들이 더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17〉 행정조사 유형별 부담 정도 : 출석·진술요구 유형 (순위형 로짓 모형)



#### 나. 행정조사 주기·빈도별 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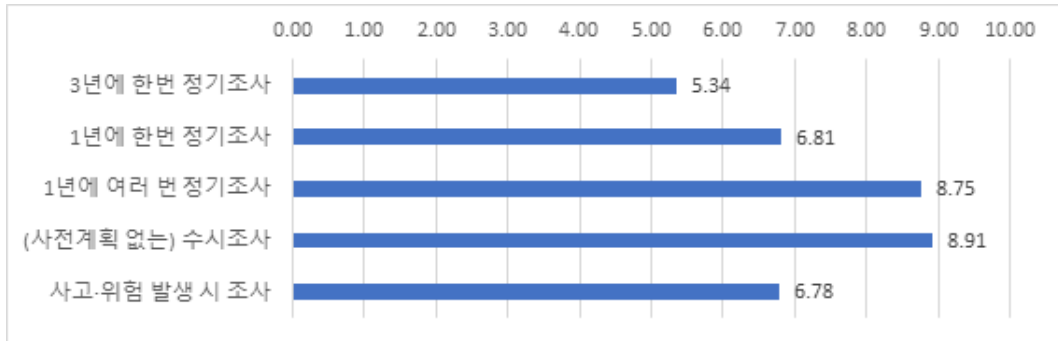
두 번째로 기업들이 행정조사의 주기나 빈도에 따라 느끼는 부담 수준이 다른지 살펴보았다. 설문 응답자에게 5가지 다른 주기 및 빈도의 행정조사 목록을 보여주고 각 조사 형태에 관한 부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11점 척도(0점 = 전혀 부담없음, 5점 = 보통, 10점 = 매우 부담)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5가지 조사 형태는 (1) 3년에 한번 정기조사, (2) 1년에 한번 정기조사, (3) 1년에 여러 번 정기조사, (4) (사전계획 없는) 수시조사 및 (5) 사고·위험 발생 시 조사로 제시하였다.

조사 결과, 기업이 '1년에 여러 번 정기조사(8.91점)'하거나 '사전계획 없는 수시조사(8.75점)'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년에 한 번 정기조사(6.81점)', '사고·위험 발생 시 조사(6.78점)' 및 '3년에 한 번 정기조사(5.34점)' 순으로 부담을 느끼는 기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행정조사 주기 및 빈도에 대한 부담을 묻는 질문은 앞서 행정조사 유형별 부담 수준에 대한 응답과는 다른 질문이므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울 수도 있으나, 행정조사 유형 중 가장 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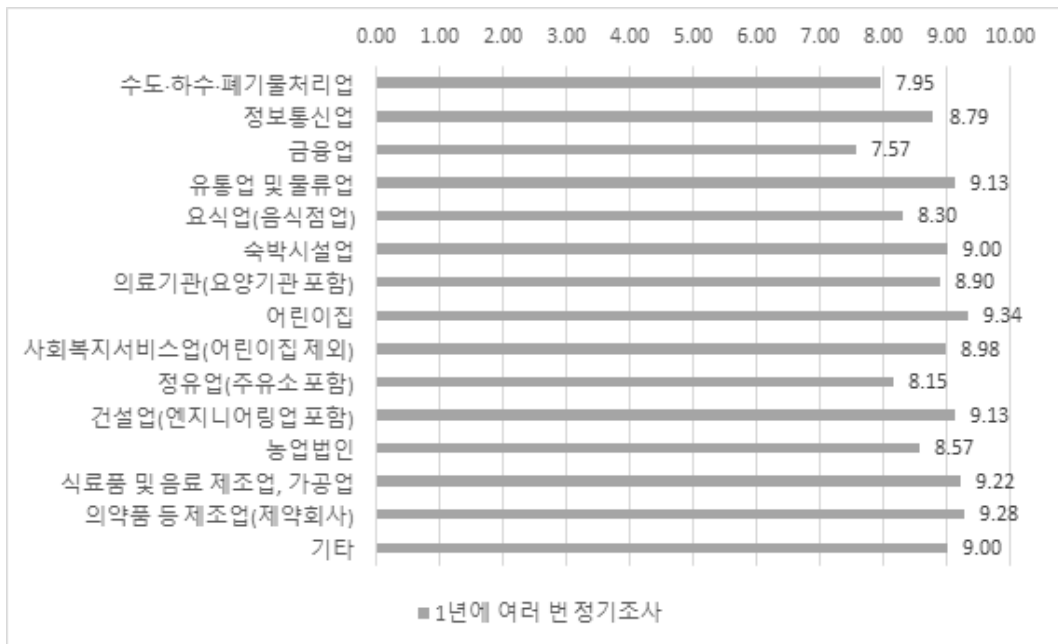
을 느낀 출석·진술요구 유형의 평균점수가 7.64점이었다는 점을 참고할 경우 자주 이루어지는 정기조사나 계획없는 수시조사가 기업 입장에서 무척 부담이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18〉 행정조사 주기·빈도별 부담 정도 (11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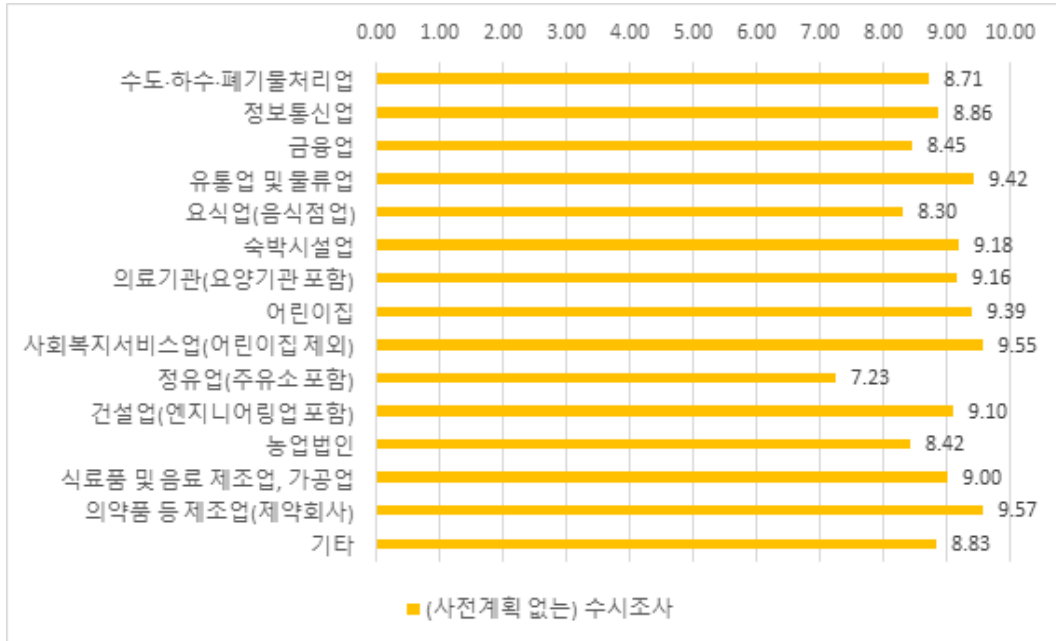


기업들이 행정조사의 주거나 빈도에 따라 느끼는 부담 수준을 업종별로 살펴볼 경우에도 ‘1년에 여러 번 정기조사’하거나 ‘사전계획 없는 수시조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19〉 행정조사 부담 정도 : 1년에 여러 번 정기조사 유형 (11점 척도)



〈그림 5-20〉 행정조사 부담 정도 : 수시조사 유형 (11점 척도)



그 다음으로 대다수 업종의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는 행정조사의 주기 및 빈도로 '1년에 한 번 정기조사'와 '사고·위험 발생 시 조사'가 비슷하게 높은 수준(대부분 6-7점대)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3년에 한 번 정기조사'는 업종마다 대체로 5점 전후인 것으로 나타나서 부담 수준이 보통인 것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업종별로 부담수준을 비교할 경우 어린이집(6.57~9.39점)과 의약품 등 제조업(5.96~9.57점) 기업들이 느끼는 부담 수준이 가장 높은 반면, 요식업(4.55~8.30점), 정유업(3.65~8.15점) 및 농업법인(4.32~8.57점) 기업들이 느끼는 부담 수준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8〉 행정조사 주기·빈도별 부담 정도 (업종별, %)

	업종	표본수	3년에 한번 정기조사	1년에 한번 정기조사	1년에 여러 번 정기조사	(사전계획 없는) 수시조사	사고·위험 발생 시 조사
1	수도·하수·폐기물처리업	(80)	4.40	6.04	7.95	8.71	6.11
2	정보통신업	(80)	5.35	6.84	8.79	8.86	6.18
3	금융업	(69)	5.61	6.19	7.57	8.45	6.57
4	유통업 및 물류업	(89)	5.54	7.44	9.13	9.42	7.26
5	요식업(음식점업)	(73)	4.55	5.48	8.30	8.30	5.84
6	숙박시설업	(68)	5.40	6.93	9.00	9.18	7.26
7	의료기관(요양기관 포함)	(81)	5.81	7.17	8.90	9.16	6.72
8	어린이집	(70)	6.57	8.04	9.34	9.39	7.94
9	사회복지서비스업 (어린이집 제외)	(56)	5.98	7.32	8.98	9.55	7.39
10	정유업(주유소 포함)	(60)	3.65	5.25	8.15	7.23	6.38
11	건설업(엔지니어링업 포함)	(69)	5.67	7.07	9.13	9.10	6.81
12	농업법인	(53)	4.32	6.49	8.57	8.42	6.38
13	식품품 및 음료 제조업, 가공업	(74)	5.61	7.32	9.22	9.00	6.99
14	의약품 등 제조업(제약회사)	(72)	5.96	7.36	9.28	9.57	7.25
15	기타	(12)	5.42	7.25	9.00	8.83	6.33
	전체	(1,006)	5.34	6.81	8.75	8.91	6.78

기업 특성별로 행정조사 주기 및 빈도별 부담 수준을 살펴본 결과 기업 특성과 무관하게 공통적으로 '1년에 여러 번 정기조사'하거나 '사전계획 없는 수시조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부담(8-9점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년에 한 번 정기조사'하거나 '사고·위험 발생 시 조사'에 대해서도 제법 부담을 느끼는 것(대부분 6-7점대)으로 나타났다.

〈표 5-9〉 행정조사 주기·빈도별 부담 정도 (기업 특성별, %)

구분	항목	사례수	3년에 한번 정기조사	1년에 한번 정기조사	1년에 여러 번 정기조사	(사전계획 없는) 수시조사	사고·위험 발생 시 조사
설립연도	1989년 이전	(156)	5.22	6.45	8.19	8.51	6.87
	1990~1999년	(164)	5.13	6.88	9.02	9.14	6.57
	2000~2009년	(351)	5.80	7.08	8.79	9.01	7.12
	2010~2019년	(304)	4.97	6.58	8.86	8.88	6.39
	2020년 이후	(31)	5.52	7.39	8.55	8.74	7.55
기업 형태	법인	(837)	5.31	6.79	8.72	8.90	6.77
	개인	(169)	5.49	6.91	8.89	8.94	6.83
소재지	수도권	(470)	5.47	6.84	8.80	9.00	6.82
	충청권	(124)	5.45	6.72	8.56	8.73	6.63
	호남권	(126)	5.18	7.07	9.11	9.24	6.64
	영남권	(224)	5.19	6.79	8.65	8.86	6.96
	강원제주	(62)	4.98	6.32	8.37	8.03	6.42
고용 규모	50인 미만	(655)	5.09	6.55	8.65	8.76	6.65
	50~300인 미만	(295)	5.78	7.28	8.92	9.19	7.05
	300인 이상	(56)	6.02	7.32	8.98	9.16	6.88
	전체	(1,006)	5.34	6.81	8.75	8.91	6.78

순위형 로짓(ordered logit) 모형을 적용하여 기업 특성 및 개인(응답자) 특성을 통제할 경우, 실태조사 경험여부는 행정조사 주기·빈도별 부담 정도와 대체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자료 제출 요구, 자료 등의 영치 및 현장조사 경험 여부가 일부 행정조사 주기·빈도별 부담 정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 계수를 보이고 있으나 의미있는 관계성을 도출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마찬가지로 연간 요청받은 행정조사 횟수와 중복조사 경험 여부도 행정조사 주기·빈도별 부담 정도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업의 행정조사 경험은 행정조사 주기·빈도별 부담 정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표 5-10〉 행정조사 주기·빈도별 부담 정도 (순위형 로짓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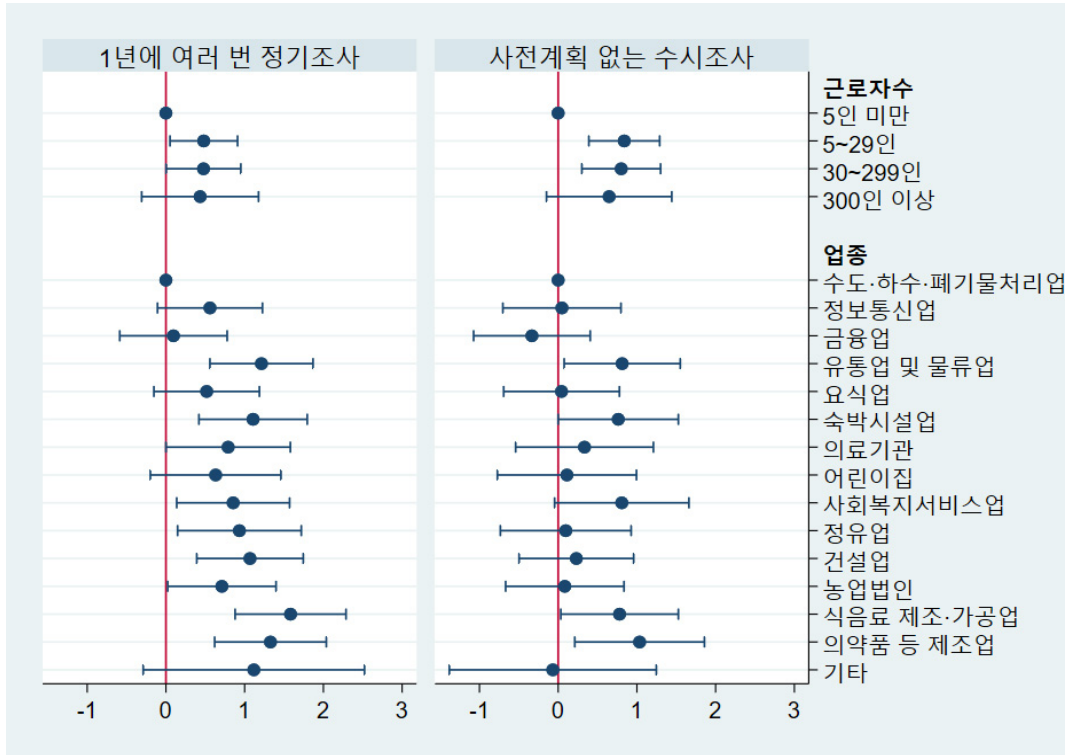
주기·빈도별 부담정도	3년에 한번 정기조사	1년에 한번 정기조사	1년에 여러 번 정기조사	(사전계획 없는) 수시조사	사고·위험 발생 시 조사
[경험1] 실태조사	0.0525 (0.1634)	0.2336 (0.1611)	0.1657 (0.1781)	0.2145 (0.1907)	0.1426 (0.1590)
[경험2] 보고·자료 제출 요구	-0.0819 (0.1342)	0.1388 (0.1358)	-0.0874 (0.1562)	0.0222 (0.1674)	-0.1221 (0.1361)
[경험3] 문서열람	0.3868** (0.1527)	0.2526 (0.1549)	0.1004 (0.1781)	0.2002 (0.1948)	-0.3171** (0.1524)
[경험4] 자료 등의 영치	0.3714* (0.2096)	0.1255 (0.2138)	-0.1354 (0.2432)	0.0934 (0.2685)	0.1520 (0.2185)
[경험5] 시료채취	-0.1458 (0.1993)	-0.2617 (0.2003)	-0.1697 (0.2320)	-0.3346 (0.2458)	-0.0478 (0.2015)
[경험6] 현장조사	-0.0204 (0.1339)	-0.3094** (0.1342)	-0.2457 (0.1527)	-0.3649** (0.1667)	0.0400 (0.1347)
[경험7] 출석·진술 요구	0.1806 (0.3441)	0.1327 (0.3544)	0.1871 (0.4294)	-0.4533 (0.4239)	0.1624 (0.3619)
행정조사 요청횟수	0.0659 (0.0419)	0.0673 (0.0419)	-0.0024 (0.0476)	-0.0081 (0.0520)	0.0260 (0.0417)
중복조사 경험여부	-0.1503 (0.1478)	0.0730 (0.1496)	0.2078 (0.1750)	0.2466 (0.1953)	0.2099 (0.1518)

\*\*\* p&lt;0.01, \*\* p&lt;0.05, \* p&lt;0.1

주: 순위형 로짓 모형 적용 (N=1,006). 표준오차는 괄호 안에 표기. 행정조사 경험(유형별 행정조사 경험 여부, 행정조사 연간 요청횟수, 중복조사 경험 여부) 결과는 표에 제시. 기업 특성(기업 연령, 기업 형태, 기업 규모, 업종) 및 응답자 특성(성별, 직급, 연령)을 통제하였음(표 미제시).

기업 특성과 행정조사 유형별 부담 정도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기업 연령은 부담 정도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기업규모가 5인 미만인 영세 기업 외에는 모두 비슷한 수준의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5-29인 및 30-299인 규모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느끼는 부담 수준이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아래 그림 참고). 또한 업종 간에도 차이가 존재하였는데, 수도·하수·폐기물 처리업(취급, 처리, 수집, 운반 포함)에 비해서 유통업 및 물류업, 숙박시설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식료품 및 음료 제조업·가공업, 의약품 등 제조업(제약회사) 업종의 기업들이 더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기조사, 수시조사, 또는 사고·위험 발생시 조사 등 행정조사 주기·빈도와 무관하게 일관된 결과를 확인하였다.

〈그림 5-21〉 행정조사 주기·빈도별 부담 정도 : 주요 유형 비교 (순위형 로짓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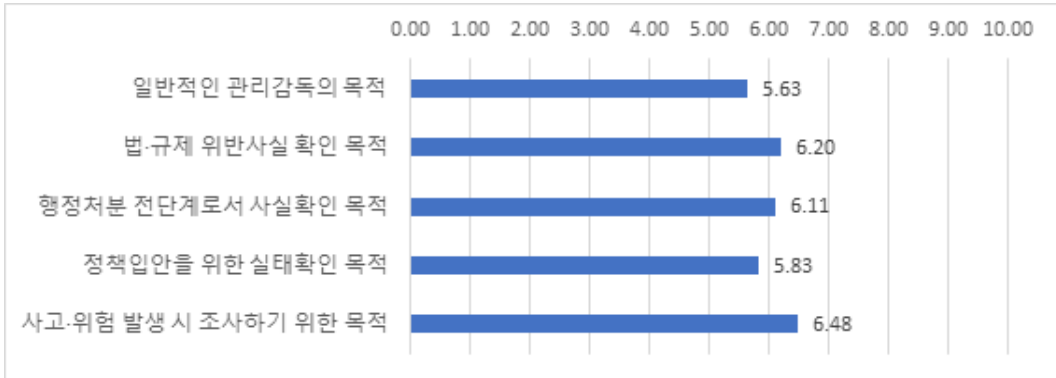


#### 다. 행정조사 목적의 동의 여부

세 번째로 기업들이 행정조사의 목적과 필요성에 얼마나 공감하는지 살펴보았다. 설문 응답자에게 5가지 행정조사 목적을 제시하고 각 목적에 대한 동의 정도를 11점 척도(0점 = 매우 부동의, 5점 = 보통, 10점 = 매우 동의)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5가지 목적으로는 (1) 일반적인 관리감독의 목적, (2) 법·규제 위반사실 확인 목적, (3) 행정처분 전단계로서 사실확인 목적, (4) 정책입안을 위한 실태확인 목적 및 (5) 사고·위험 발생 시 조사하기 위한 목적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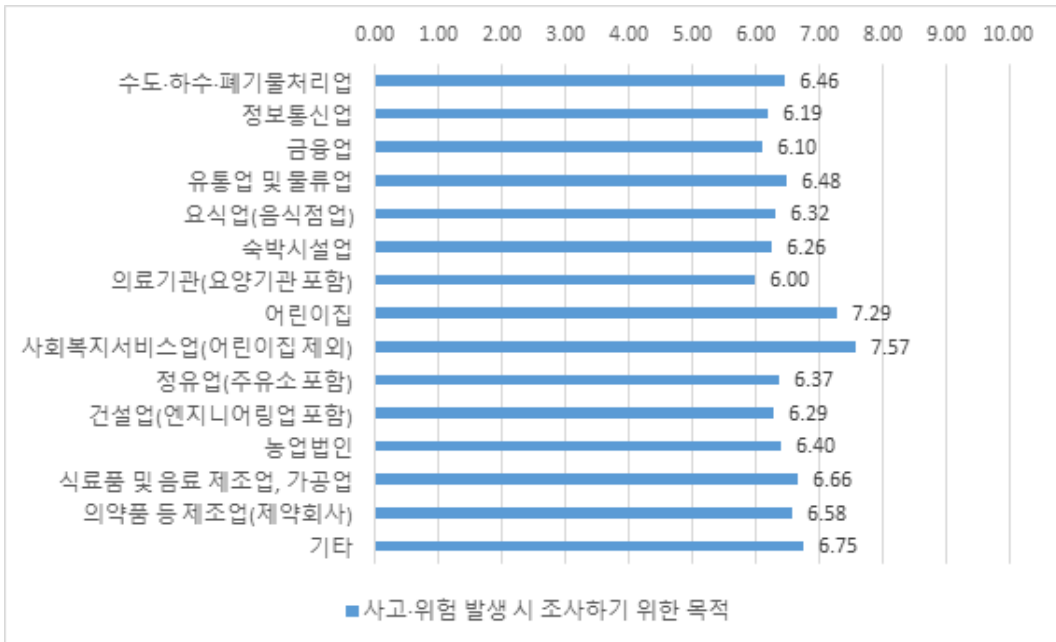
조사 결과, 기업이 행정조사의 목적에 동의하는 수준은 5.63~6.48점으로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위험 발생 시 조사하기 위한 목적’이 6.48점으로 가장 높은 동의 수준을 보였으며, ‘법·규제 위반사실 확인 목적(6.20점)’, ‘행정처분 전단계로서 사실확인 목적(6.11점)’, ‘정책입안을 위한 실태확인 목적(5.83점)’ 및 ‘일반적인 관리감독의 목적(5.63점)’ 순으로 동의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5-22〉 행정조사 목적의 동의 정도 (11점 척도)



이중 ‘사고·위험 발생 시 조사하기 위한 목적’에 대한 업종별 동의 수준을 살펴보면 업종별로도 비슷하게 높은 수준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특히 어린이집과 사회복지서비스업이 높은 동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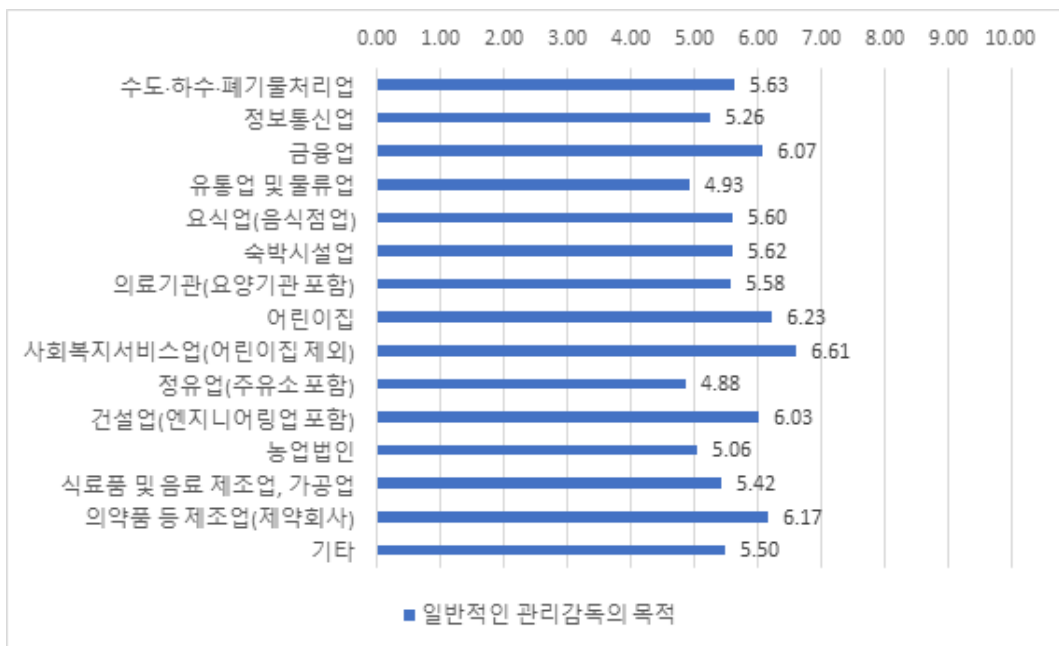
〈그림 5-23〉 행정조사 목적의 동의 정도 : 사고·위험 발생 시 조사 유형 (11점 척도)





기업들이 가장 낮은 동의 수준을 보인 목적인 ‘일반적인 관리감독의 목적’의 경우에도 어린이집과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동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일반적인 관리감독의 목적’에 가장 낮은 동의수준을 보여주는 업종으로는 정유업(4.88점)과 유통업 및 물류업(4.93점)이 있는데 모두 평균 5점 미만으로 목적에 동의하지 못하는 의견이 동의하는 의견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24〉 행정조사 목적의 동의 정도 : 일반적인 관리감독의 목적 유형 (11점 척도)



그 외 세 목적에 대한 동의 수준을 업종별로 살펴볼 때에도 어린이집과 사회복지서비스업 응답자들의 동의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이러한 업종의 특성상 기업 및 종사자들이 행정 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에 가장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나머지 업종 간에는 눈에 띄는 만큼 큰 편차나 주목할 패턴이 관찰되지는 않았다.

〈표 5-11〉 행정조사 목적의 동의 정도 (업종별, %)

	업종	표본수	일반적인 관리감독의 목적	법·규제 위반사실 확인 목적	행정처분 전단계로서 사실확인 목적	정책입안을 위한 실태 확인 목적	사고·위험 발생 시 조사하기 위한 목적
1	수도·하수·폐기물처리업	(80)	5.63	5.66	5.55	5.58	6.46
2	정보통신업	(80)	5.26	6.19	6.14	5.58	6.19
3	금융업	(69)	6.07	6.35	6.09	5.94	6.10
4	유통업 및 물류업	(89)	4.93	6.03	6.07	5.78	6.48
5	요식업(음식점업)	(73)	5.60	5.81	5.55	5.48	6.32
6	숙박시설업	(68)	5.62	6.32	6.19	5.78	6.26
7	의료기관(요양기관 포함)	(81)	5.58	6.11	6.10	5.65	6.00
8	어린이집	(70)	6.23	6.91	6.97	6.73	7.29
9	사회복지서비스업(어린이집 제외)	(56)	6.61	7.50	7.34	6.61	7.57
10	정유업(주유소 포함)	(60)	4.88	5.95	5.63	5.60	6.37
11	건설업(엔지니어링업 포함)	(69)	6.03	6.19	6.07	5.54	6.29
12	농업법인	(53)	5.06	5.47	5.66	5.85	6.40
13	식료품 및 음료 제조업, 가공업	(74)	5.42	6.15	5.96	5.74	6.66
14	의약품 등 제조업(제약회사)	(72)	6.17	6.33	6.50	6.04	6.58
15	기타	(12)	5.50	6.50	5.83	5.50	6.75
	전체	(1,006)	5.63	6.20	6.11	5.83	6.48

기업 특성별로 행정조사 목적의 동의 수준을 살펴볼 때 주목할 점은 '사고·위험 발생 시 조사하기 위한 목적'에 가장 높은 동의 수준을 보인다는 점이다. 또한 2020년 이후 설립된 신생기업의 경우 제시된 행정조사의 목적들에 대해 가장 높은 동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점, 300인 이상 고용하는 대기업에서도 높은 동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전반적인 동의 수준이 높지는 않지만 모두 5점을 초과하여 동의 의견이 부동의 의견보다 많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표 5-12〉 행정조사 목적의 동의 정도 (기업 특성별, %)

구분	항목	사례수	일반적인 관리감독의 목적	법·규제 위반사실 확인 목적	행정처분 전단계로서 사실확인 목적	정책입안을 위한 실태 확인 목적	사고·위험 발생 시 조사하기 위한 목적
설립연도	1989년 이전	(156)	5.46	6.04	5.66	5.77	6.12
	1990~1999년	(164)	5.60	6.16	6.13	5.93	6.41
	2000~2009년	(351)	5.64	6.23	6.26	5.82	6.58
	2010~2019년	(304)	5.68	6.18	6.03	5.69	6.50
	2020년 이후	(31)	6.13	7.10	7.39	7.00	7.39
기업 형태	법인	(837)	5.68	6.19	6.11	5.81	6.49
	개인	(169)	5.42	6.24	6.11	5.89	6.43
소재지	수도권	(470)	5.57	6.13	6.04	5.72	6.38
	충청권	(124)	5.60	6.50	6.35	6.19	6.81
	호남권	(126)	5.78	6.17	5.89	5.79	6.43
	영남권	(224)	5.62	6.02	6.04	5.72	6.32
	강원제주	(62)	5.90	6.85	6.94	6.35	7.27
고용 규모	50인 미만	(655)	5.60	6.13	6.12	5.83	6.54
	50~300인 미만	(295)	5.62	6.17	6.03	5.73	6.24
	300인 이상	(56)	6.02	7.21	6.52	6.29	7.09
	전체	(1,006)	5.63	6.20	6.11	5.83	6.48

순위형 로짓(ordered logit) 모형을 적용하여 기업 특성 및 개인(응답자) 특성을 통제할 경우, 보고·자료제출 및 현장조사 경험 여부는 행정조사 목적과 대체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행정조사 요청횟수가 많을수록 행정조사 목적에 동의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중복조사를 경험한 경우에 일반적인 관리 감독의 목적의 동의하는 정도가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나는 등 중복조사 경험 여부가 행정조사 목적의 동의 정도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거나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기업의 행정조사 경험이 많을수록 행정조사 목적에 동의하는 경향이 대체로 발견되었으나 중복조사 경험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5-13〉 행정조사 목적의 동의 정도 (순위형 로짓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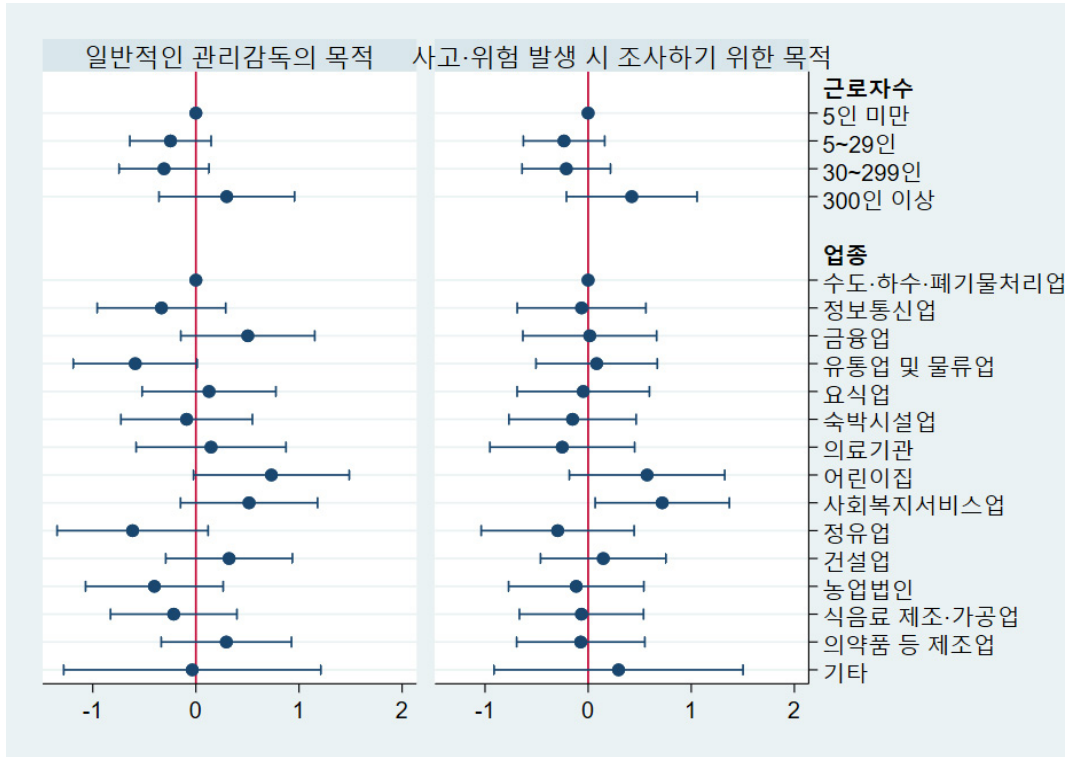
행정조사 목적의 동의 정도	일반적인 관리 감독의 목적	법·규제 위반 사실 확인 목적	행정처분 전단계로서 사실확인 목적	정책입안을 위한 실태확인 목적	사고·위험 발생 시 조사하기 위한 목적
[경험1] 실태조사	0.0403 (0.1597)	-0.1033 (0.1598)	0.0835 (0.1603)	-0.0929 (0.1616)	0.0227 (0.1611)
[경험2] 보고·자료 제출 요구	0.4469*** (0.1390)	0.3561*** (0.1373)	0.4258*** (0.1380)	0.3472** (0.1380)	0.3942*** (0.1365)
[경험3] 문서열람	-0.1329 (0.1558)	-0.1741 (0.1548)	-0.1398 (0.1556)	-0.2612* (0.1548)	-0.2118 (0.1552)
[경험4] 자료 등의 영치	-0.1989 (0.2188)	-0.0057 (0.2159)	-0.2957 (0.2198)	-0.2829 (0.2207)	-0.2050 (0.2142)
[경험5] 시료채취	-0.1001 (0.2070)	0.1048 (0.2072)	0.0440 (0.2108)	0.1061 (0.2137)	0.0882 (0.2079)
[경험6] 현장조사	0.3416** (0.1376)	0.2122 (0.1359)	0.2471* (0.1370)	0.3179** (0.1368)	0.2398* (0.1369)
[경험7] 출석·진술 요구	0.1510 (0.3396)	0.2411 (0.3369)	0.3643 (0.3500)	0.2227 (0.3565)	0.2756 (0.3376)
행정조사 요청횟수	0.0692 (0.0425)	0.0662 (0.0419)	0.0756* (0.0421)	0.0975** (0.0421)	0.1090*** (0.0419)
중복조사 경험여부	-0.2842* (0.1540)	-0.0093 (0.1524)	-0.1143 (0.1546)	-0.0897 (0.1547)	0.1596 (0.1505)

\*\*\* p<0.01, \*\* p<0.05, \* p<0.1

주: 순위형 로짓 모형 적용 (N=1,006). 표준오차는 괄호 안에 표기. 행정조사 경험(유형별 행정조사 경험 여부, 행정조사 연간 요청횟수, 중복조사 경험 여부) 결과는 표에 제시. 기업 특성(기업 연령, 기업 형태, 기업 규모, 업종) 및 응답자 특성(성별, 직급, 연령)을 통제하였음(표 미제시).

기업 특성과 행정조사 목적의 동의 정도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기업 연령과 기업 규모는 행정조사 목적의 동의 정도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업종 간에도 차이가 미미하였는데, 어린이집과 사회복지서비스업이 행정조사 목적에 동의하는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는 표준오차 범위 내에 들어가는 등 대체로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아래 그림 참고).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인 관리 감독의 목적, 법·규제 위반사실 확인 목적 등 각종 행정조사 목적과 관련하여 일관된 결과를 확인하였다.

〈그림 5-25〉 행정조사 목적의 동의 정도 : 주요 유형 비교 (순위형 로짓 모형)



#### 라. 행정조사 과정의 원칙준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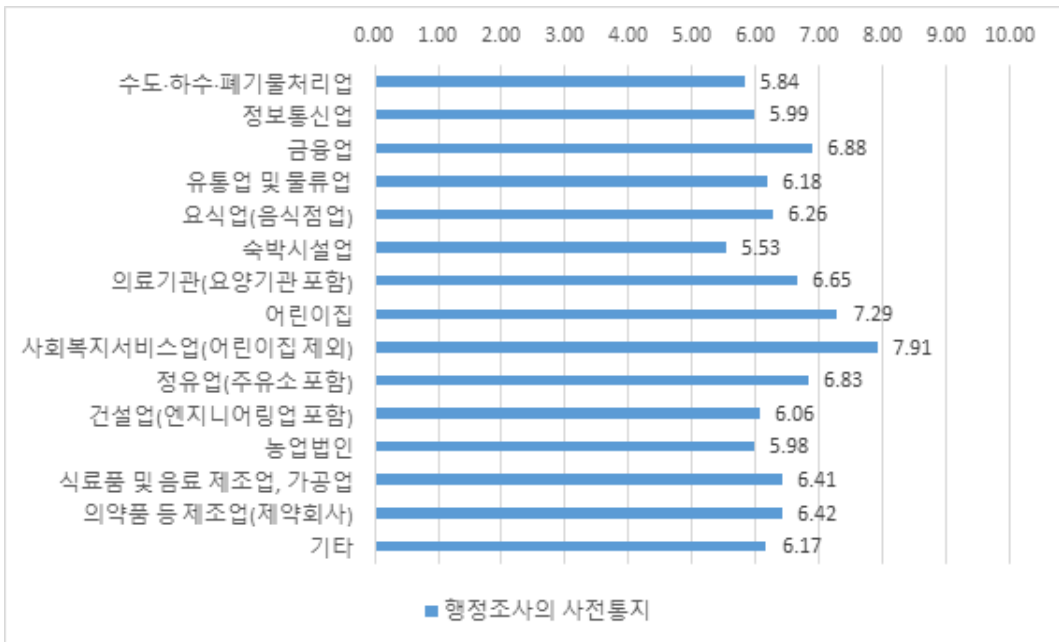
네 번째로 기업들이 행정조사 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원칙이 얼마나 준수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알아보았다. 설문 응답자에게 6가지 행정조사 원칙을 보여주고 각 기업이 경험한 행정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적절하게 준수되었는지 물어보았다(리커트 11점 척도로 응답. 0점 = 매우 불만족, 5점 = 보통, 10점 = 매우 만족). 6가지 원칙으로는 (1) 행정조사의 목적 및 법적 근거 고지, (2)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조사, (3) 조사목적에 적합한 조사대상자 선정, (4) 유사·동일사안에 대한 공동조사(중복조사 지양), (5) 행정조사의 사전통지 및 (6) 조사대상자의 의견반영이 제시되었다.

〈그림 5-26〉 행정조사 과정의 원칙준수 정도 (11점 척도)



조사 결과, 기업의 행정조사 과정에서의 원칙준수에 대한 만족도 점수는 5.72~6.41점으로 비교적 낮은 만족 수준으로 나타났다. ‘행정조사의 사전통지’가 6.41점으로 가장 높은 동의 수준을 보였으며, ‘행정조사의 목적 및 법적 근거 고지(6.38점)’,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조사(6.19점)’, ‘조사목적에 적합한 조사대상자 선정(5.91점)’, ‘조사대상자의 의견반영(5.87점)’ 및 ‘유사·동일사안에 대한 공동조사(5.72점)’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림 5-27〉 행정조사 과정의 원칙준수 정도 : 행정조사의 사전통지 (11점 척도)



다음으로 6가지 행정조사 원칙 중 평균 6점을 초과한 3개의 원칙에 대한 업종별 응답을 살펴보았다. 3가지 원칙준수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업종은 사회복지서비스업(7.11~7.91점)과 어린이집(6.94~7.29점)이었으며,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업종은 숙박시설업(5.53~5.94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4〉 행정조사 과정의 원칙준수 정도 (업종별, %)

	업종	사례수	행정조사의 목적 및 법적 근거 고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조사	행정조사의 사전통지
1	수도·하수·폐기물처리업	(80)	6.18	6.00	5.84
2	정보통신업	(80)	6.18	5.89	5.99
3	금융업	(69)	6.87	6.71	6.88
4	유통업 및 물류업	(89)	6.13	5.87	6.18
5	요식업(음식점업)	(73)	6.22	5.86	6.26
6	숙박시설업	(68)	5.94	5.78	5.53
7	의료기관(요양기관 포함)	(81)	6.38	6.35	6.65
8	어린이집	(70)	6.97	6.94	7.29
9	사회복지서비스업(어린이집 제외)	(56)	7.52	7.11	7.91
10	정유업(주유소 포함)	(60)	5.85	5.85	6.83
11	건설업(엔지니어링업 포함)	(69)	6.55	6.32	6.06
12	농업법인	(53)	6.26	6.09	5.98
13	식료품 및 음료 제조업, 가공업	(74)	6.08	5.88	6.41
14	의약품 등 제조업(제약회사)	(72)	6.39	6.29	6.42
15	기타	(12)	6.67	6.25	6.17
	전체	(1,006)	6.38	6.19	6.41

기업 특성별로 행정조사 과정의 원칙준수 만족도를 살펴볼 때 흥미로운 점은 설립연도가 오래 될수록 만족도가 낮고, 신생기업일수록 만족도가 높다는 점이다. 다만 그 외에는 눈에 띄는 패턴이나 평균값 간 편차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업 특성에 따른 행정조사 원칙준수 만족도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가지 원칙에 대한 만족도가 대체로 6점 대 이상으로 나타나 기업들이 행정조사 과정의 원칙준수에 대해 만족한다는 의견이 불만족한다는 의견보다 조금 더 많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15〉 행정조사 과정의 원칙준수 정도 (기업 특성별, %)

구분	항목	사례수	행정조사의 목적 및 법적 근거 고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조사	행정조사의 사전통지
설립연도	1989년 이전	(156)	6.29	5.91	6.17
	1990~1999년	(164)	6.23	6.04	6.13
	2000~2009년	(351)	6.31	6.20	6.50
	2010~2019년	(304)	6.49	6.34	6.48
	2020년 이후	(31)	7.26	6.90	7.39
기업 형태	법인	(837)	6.40	6.17	6.35
	개인	(169)	6.27	6.29	6.70
소재지	수도권	(470)	6.30	6.08	6.25
	충청권	(124)	6.60	6.71	6.65
	호남권	(126)	6.42	6.12	6.40
	영남권	(224)	6.37	6.16	6.58
	강원제주	(62)	6.48	6.26	6.63
고용 규모	50인 미만	(655)	6.34	6.12	6.42
	50~300인 미만	(295)	6.50	6.35	6.43
	300인 이상	(56)	6.21	6.25	6.23
	전체	(1,006)	6.38	6.19	6.41

순위형 로짓(ordered logit) 모형을 적용하여 기업 특성 및 개인(응답자) 특성을 통제할 경우, 보고·자료제출 경험 여부는 행정조사 과정의 원칙준수 정도와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중복조사를 경험한 경우에는 행정조사 과정의 원칙준수 정도에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행정조사 요청횟수는 행정조사 과정의 원칙준수 정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고·자료제출 경험이 있는 기업의 경우 행정조사 과정에서 원칙이 잘 준수되었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었던 반면 중복조사의 경험이 있는 기업은 행정조사 과정에서 원칙이 준수되지 않았다고 느끼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표 5-16〉 행정조사 과정의 원칙준수 정도 (순위형 로짓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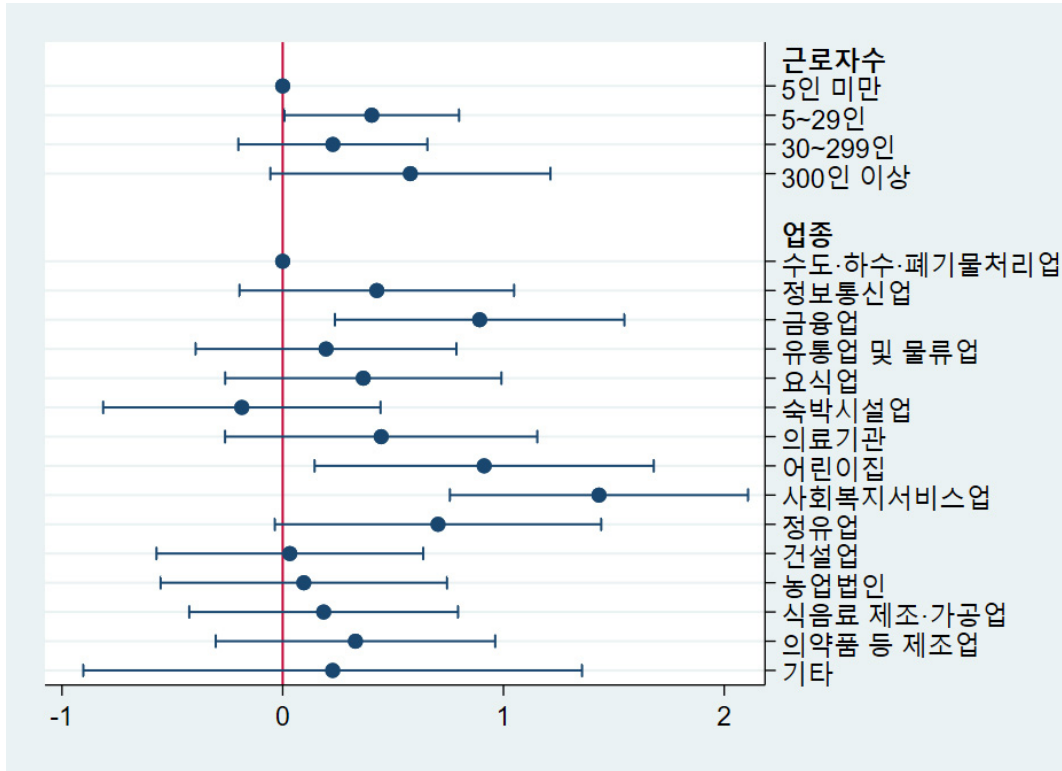
과정의 원칙준수 정도	행정조사의 목적 및 법적 근거 고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조사	조사목적에 적합한 조사 대상자 선정	유사·동일 사안에 대한 공동조사	행정조사의 사전통지	조사대상자의 의견반영
[경험1] 실태조사	0.0970 (0.1601)	0.1145 (0.1615)	0.2391 (0.1627)	0.1965 (0.1627)	0.1018 (0.1614)	0.1385 (0.1625)
[경험2] 보고·자료 제출	0.4409*** (0.1376)	0.4376*** (0.1405)	0.4653*** (0.1406)	0.3687*** (0.1397)	0.2914** (0.1391)	0.4295*** (0.1407)
[경험3] 문서열람	-0.1813 (0.1547)	-0.1745 (0.1577)	-0.1110 (0.1594)	-0.2583 (0.1607)	0.0490 (0.1570)	-0.1349 (0.1616)
[경험4] 자료 등의 영치	0.0474 (0.2135)	-0.0011 (0.2137)	-0.3181 (0.2187)	-0.1133 (0.2223)	-0.1384 (0.2148)	0.0168 (0.2183)
[경험5] 시료채취	0.1087 (0.2082)	-0.0799 (0.2123)	-0.0051 (0.2146)	-0.1184 (0.2133)	-0.2451 (0.2115)	-0.5686*** (0.2155)
[경험6] 현장조사	0.1384 (0.1359)	0.0793 (0.1374)	0.0862 (0.1386)	0.1675 (0.1368)	0.1136 (0.1356)	-0.0448 (0.1375)
[경험7] 출석·진술 요구	-0.0996 (0.3416)	0.0267 (0.3420)	0.3300 (0.3468)	-0.0362 (0.3622)	-0.1753 (0.3571)	0.2204 (0.3419)
행정조사 요청횟수	0.0767* (0.0418)	0.0509 (0.0424)	0.0370 (0.0429)	0.0780* (0.0428)	0.0159 (0.0420)	-0.0052 (0.0427)
중복조사 경험여부	-0.5938*** (0.1546)	-0.7569*** (0.1600)	-0.6396*** (0.1613)	-0.9989*** (0.1616)	-0.5837*** (0.1551)	-0.7593*** (0.1591)

\*\*\* p&lt;0.01, \*\* p&lt;0.05, \* p&lt;0.1

주: 순위형 로짓 모형 적용 (N=1,006). 표준오차는 괄호 안에 표기. 행정조사 경험(유형별 행정조사 경험 여부, 행정조사 연간 요청횟수, 중복조사 경험 여부) 결과는 표에 제시. 기업 특성(기업 연령, 기업 형태, 기업 규모, 업종) 및 응답자 특성(성별, 직급, 연령)을 통제하였음(표 미제시).

기업 특성과 행정조사 과정의 원칙준수 정도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기업 연령이 높을수록 행정조사 과정의 원칙준수 정도가 낮게 나타난 반면, 기업 규모가 300인 이상의 대기업 외에는 모두 비슷하게 낮은 수준으로 원칙이 준수되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아래 그림 참고). 또한 업종 간에도 차이가 존재하였는데, 금융업, 어린이집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기업들이 행정조사 과정에서 원칙이 비교적 잘 준수되었다고 느낀 반면 나머지 업종은 대체로 서로 표준오차 범위 내에 들어가는 등 비슷한 수준으로 준수되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28〉 행정조사 과정의 원칙준수 정도 : 조사대상자의 의견반영 (순위형 로짓 모형)



## 제3절

## 행정부담 개선방안 조사



앞선 2절에서 행정조사 경험과 행정조사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기업의 입장에서 행정조사가 어떤 측면에서 기업에게 부담이 되는지, 또 어떤 인식의 개선이 필요한지 확인하였다. 3절에서는 행정조사 개선안에 대한 동의 여부와 기타 의견을 차례대로 살펴봄으로써 행정조사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먼저 기업들이 행정조사 개선안에 대해서 얼마나 동의하는지 알아보았다. 설문 응답자에게 5가지 행정조사 개선안을 보여주고 각 개선의견에 얼마나 동의하는지 물어보았다(리커트 11점 척도로 응답. 0점 = 매우 부동의, 5점 = 보통, 10점 = 매우 동의). 5가지 개선안으로는 (1) 일반적인 실태조사는 정해진 주기에만 실시, (2) 연간 행정조사의 횟수 제한, (3) 유사·동일 사안에 대한 중복조사 개선, (4) 조사대상자의 이의신청 등 의견수렴 창구 마련 및 (5) 전체 행정조사에 대한 관리체계 마련을 제시하였다.

〈그림 5-29〉 행정조사 개선방안 동의 수준 (11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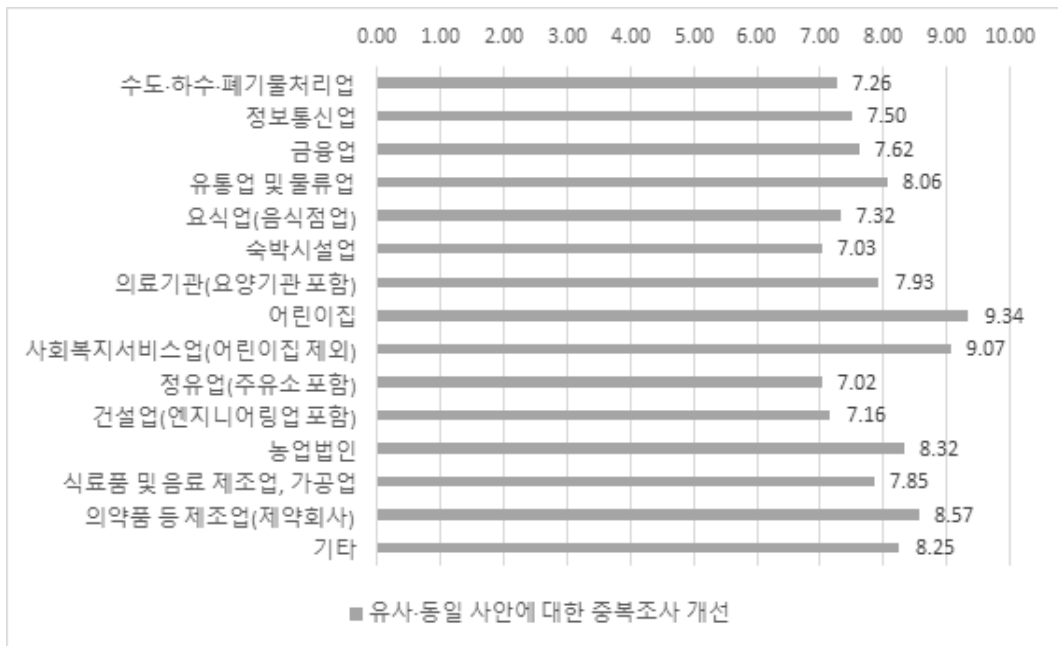


조사 결과, 응답한 기업들이 제시된 개선안에 동의하는 수준은 7.54~7.85점으로 어느 정도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동일 사안에 대한 중복조사 개선’이 7.85점으로 가장 높은 동의 수준을 보였으나, 가장 낮은 동의 수준을 보인 ‘일반적인 실태조사는 정해진 주기에만 실시(7.54

점)하는 안과의 차이가 0.31점에 불과하여, 기업들이 모든 개선안에 대해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특별히 더 선호하거나 덜 선호하는 개선안이 있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중 ‘유사·동일 사안에 대한 중복조사 개선’에 대한 업종별 동의 수준을 살펴보면 업종별로도 비슷하게 높은 수준(7점 이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특히 어린이집(9.34점)과 사회복지서비스업(9.07점)이 높은 동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림 5-30〉 행정조사 개선방안 동의 수준 : 유사·동일 사안에 대한 중복조사 개선 (11점 척도)



5가지 개선안에 대한 업종별 동의 수준을 보더라도 어린이집(8.87~9.34점)과 사회복지서비스업(8.54~9.07점)이 모든 개선안에 대해 가장 높은 동의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모든 개선안에 대해 개별 업종의 동의수준이 6점 후반대를 초과하는 등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5-17〉 행정조사 개선방안 동의 수준 (업종별, %)

	업종	사례수	일반적인 실태조사는 정해진 주기에만 실시	연간 행정 조사의 횟수 제한	유사·동일 사안에 대한 중복조사 개선	조사대상자의 이의신청 등 의견수렴 창구 마련	전체 행정 조사에 대한 관리 체계 마련
1	수도·하수·폐기물처리업	(80)	7.41	7.28	7.26	7.40	7.18
2	정보통신업	(80)	7.05	7.31	7.50	6.99	6.76
3	금융업	(69)	7.30	7.55	7.62	7.71	7.59
4	유통업 및 물류업	(89)	7.19	7.76	8.06	7.58	7.72
5	요식업(음식점업)	(73)	7.23	7.21	7.32	7.23	7.38
6	숙박시설업	(68)	7.26	7.41	7.03	6.79	6.90
7	의료기관(요양기관 포함)	(81)	7.85	7.83	7.93	7.69	8.11
8	어린이집	(70)	8.93	8.87	9.34	9.13	9.10
9	사회복지서비스업 (어린이집 제외)	(56)	8.54	8.66	9.07	8.89	8.86
10	정유업(주유소 포함)	(60)	7.17	6.85	7.02	6.92	6.80
11	건설업(엔지니어링업 포함)	(69)	7.28	7.14	7.16	7.25	7.41
12	농업법인	(53)	7.87	7.96	8.32	8.17	7.87
13	식료품 및 음료 제조업, 가공업	(74)	7.28	7.42	7.85	7.65	7.66
14	의약품 등 제조업(제약회사)	(72)	7.56	8.31	8.57	7.89	7.88
15	기타	(12)	7.42	8.17	8.25	8.00	8.00
	전체	(1,006)	7.54	7.67	7.85	7.64	7.64

기업 특성별로 행정조사 개선안 동의 정도를 살펴볼 때 흥미로운 점은 기업 특성에 무관하게 '유사·동일 사안에 대한 중복조사 개선'안이 가장 높은 동의 수준을 보인다는 점과 설립연도가 오래될수록 동의 수준이 낮고, 신생기업일수록 동의 수준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또한 모든 개선안에 대한 동의수준이 모두 7점대 이상으로 나타나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sup>19)</sup>

〈표 5-18〉 행정조사 개선방안 동의 수준 (기업 특성별, %)

구분	항목	사례수	일반적인 실태조사는 정해진 주기 에만 실시	연간 행정 조사의 횟수 제한	유사·동일 사안에 대한 중복 조사 개선	조사대상자의 이의신청 등 의견수렴 창구 마련	전체 행정 조사에 대한 관리 체계 마련
설립연도	1989년 이전	(156)	6.91	7.46	7.79	7.58	7.49
	1990~1999년	(164)	7.61	7.60	7.90	7.62	7.80
	2000~2009년	(351)	7.44	7.52	7.64	7.51	7.45
	2010~2019년	(304)	7.89	7.92	8.06	7.79	7.84
	2020년 이후	(31)	7.97	8.52	8.03	8.03	7.87
기업 형태	법인	(837)	7.51	7.66	7.83	7.59	7.56
	개인	(169)	7.69	7.72	7.95	7.90	8.05
소재지	수도권	(470)	7.49	7.71	7.91	7.61	7.58
	충청권	(124)	7.79	7.76	7.91	7.85	7.71
	호남권	(126)	7.77	7.59	7.73	7.75	7.78
	영남권	(224)	7.36	7.72	7.85	7.56	7.71
	강원제주	(62)	7.55	7.26	7.45	7.48	7.50
고용 규모	50인 미만	(655)	7.63	7.66	7.84	7.71	7.69
	50~300인 미만	(295)	7.38	7.67	7.83	7.43	7.54
	300인 이상	(56)	7.32	7.82	8.07	7.89	7.61
	전체	(1,006)	7.54	7.67	7.85	7.64	7.64

19) 유일한 예외는 1989년 이전 설립된 기업들이 '일반적인 실태조사는 정해진 주기에만 실시'하겠다는 개선안에 평균 6.91점 부여한 것임

순위형 로짓(ordered logit) 모형을 적용하여 기업 특성 및 개인(응답자) 특성을 통제할 경우, 실태조사, 보고·자료제출 및 출석·진술 요구 경험 여부는 행정조사 개선방안 동의 수준과 대체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자료 등의 영치 경험은 행정조사 개선방안 동의 수준과 일부 유의미한 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행정조사 요청횟수가 많을수록 행정조사 개선방안에 동의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복조사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경우 유사·동일 사안에 대한 중복조사 개선에 대한 동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9〉 행정조사 개선방안 동의 수준 (순위형 로짓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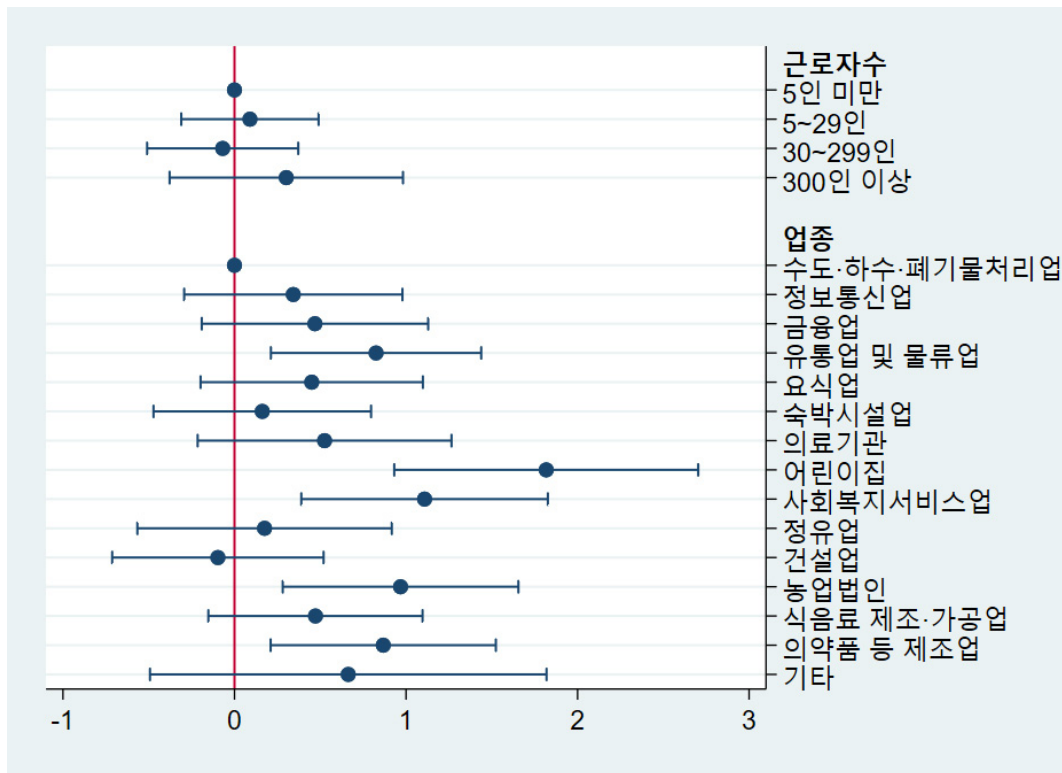
행정조사 목적의 동의 정도	일반적인 실태 조사는 정해진 주기에만 실시	연간 행정 조사의 횟수 제한	유사·동일 사안에 대한 중복조사 개선	조사대상자의 이의신청 등 의견수렴 창구 마련	전체 행정 조사에 대한 관리체계 마련
[경험1] 실태조사	0.4727***	0.6645***	0.6128***	0.4895***	0.5639***
	(0.1597)	(0.1631)	(0.1660)	(0.1643)	(0.1627)
[경험2] 보고·자료 제출 요구	0.5086***	0.5302***	0.5972***	0.5995***	0.5765***
	(0.1376)	(0.1391)	(0.1428)	(0.1397)	(0.1380)
[경험3] 문서열람	0.1324	0.0375	0.2466	0.3014*	0.0451
	(0.1586)	(0.1622)	(0.1716)	(0.1649)	(0.1650)
[경험4] 자료 등의 영치	-0.4211*	-0.5345**	-0.4933**	-0.3514	-0.2960
	(0.2173)	(0.2217)	(0.2282)	(0.2271)	(0.2255)
[경험5] 시료채취	-0.0130	0.0544	-0.1660	-0.4306**	-0.0454
	(0.2148)	(0.2134)	(0.2240)	(0.2166)	(0.2167)
[경험6] 현장조사	0.1343	0.0693	0.0717	0.0967	0.0645
	(0.1357)	(0.1382)	(0.1428)	(0.1391)	(0.1376)
[경험7] 출석·진술 요구	-0.2656	0.7251*	0.6843*	0.5957	0.2969
	(0.3583)	(0.3838)	(0.4143)	(0.3903)	(0.3846)
행정조사 요청횟수	0.0690	0.0380	0.0754*	0.0774*	0.0841*
	(0.0423)	(0.0428)	(0.0444)	(0.0433)	(0.0430)
중복조사 경험여부	0.0195	0.2425	0.4082**	0.0430	0.1682
	(0.1554)	(0.1594)	(0.1676)	(0.1593)	(0.1589)

\*\*\* p<0.01, \*\* p<0.05, \* p<0.1

주: 순위형 로짓 모형 적용 (N=1,006). 표준오차는 괄호 안에 표기. 행정조사 경험(유형별 행정조사 경험 여부, 행정조사 연간 요청횟수, 중복조사 경험 여부) 결과는 표에 제시. 기업 특성(기업 연령, 기업 형태, 기업 규모, 업종) 및 응답자 특성(성별, 직급, 연령)을 통제하였음(표 미제시).

기업 특성과 행정조사 목적의 동의 정도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기업 연령과 기업 규모는 행정조사 목적의 동의 정도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업종 간에도 차이가 존재하였는데, 수도·하수·폐기물 처리업(취급, 처리, 수집, 운반 포함)에 비해서 유통업 및 물류업, 어린이집, 사회복지서비스업, 농업법인 및 의약품 등 제조업의 기업들이 더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아래 그림 참고).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인 실태조사는 정해진 주기에만 실시하고, 연간 행정조사의 횟수를 제한하는 등 각종 행정조사 개선방안들과 관련하여 일관된 결과를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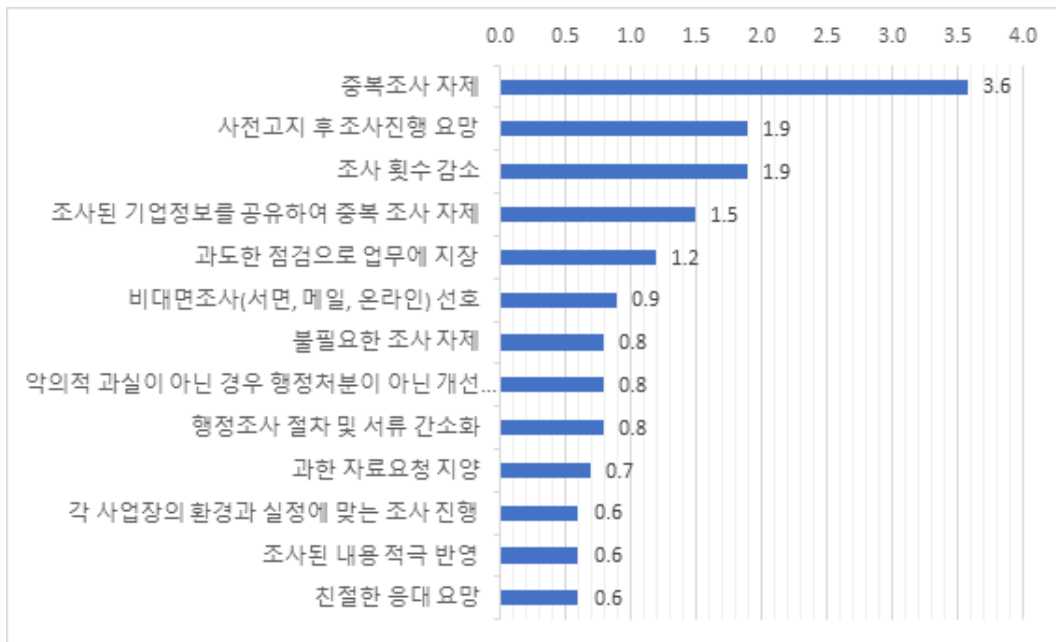
〈그림 5-31〉 행정조사 개선방안 동의 수준 : 유사·동일 사안에 대한 중복조사 개선 (순위형 로짓 모형)





마지막으로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개선 또는 건의하실 내용에 대해서 자유롭게 서술하도록 하여 의견을 취합하였다. 설문 응답자 중 80.4%가 의견이 없거나, 모른다고 하거나, 응답하지 않았다. 20% 가량의 응답자들이 낸 기타의견으로는 중복조사 자제, 조사 횟수 감소, 사전 고지 후 조사 진행, 행정조사 간소화/효율화, 행정조사 결과의 반영, 친절한 응대 등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나 앞서 살펴본 내용들과 확연히 차별화될 만한 추가 의견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5-32〉 행정조사 관련 기타 의견 (%)



## 제4절

## 소결



먼저, 기업들의 행정조사 경험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해 기업들이 받았던 행정조사 요청 유형, 행정조사 요청 빈도, 중복요청 여부 및 중복요청 내용을 살펴보았다. 각 기업이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던 행정조사 중 실태조사(82.0%), 보고·자료제출 요구(61.9%) 및 현장조사(55.4%) 유형이 가장 많았으며, 응답한 기업 열에 셋은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연평균 5회 이상 요청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요청받은 행정조사 중에서 동일한 내용을 중복적으로 조사한 사례가 있었는지 물어본 결과 21.1%가 중복되는 행정조사를 요청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행정조사 중복 여부는 업종 간에도 큰 편차가 존재하여 숙박시설업(33.8%), 정보통신업(32.5%) 및 수도·하수·폐기물처리업(31.3%) 기업들이 비교적 중복조사를 많이 경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복조사 요청을 경험한 212개 기업을 대상으로 중복조사의 내용을 물어본 결과 고용/인력에 대한 중복조사를 지적하는 답변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기업들의 행정조사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기업들이 받았던 행정조사가 유형별로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행정조사 주기나 빈도에 따라 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기업은 행정조사의 목적에 얼마나 동의하는지, 그리고 행정조사 과정에서 관련 원칙이 적절하게 준수되었다고 평가하는지 물어보았다.

첫 번째, 행정조사 유형별로 느끼는 기업의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본 결과 7가지 유형 모두 대체로 약간 부담되는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출석·진술요구(7.64점), 현장조사(6.96점), 보고·자료제출 요구(6.60점), 자료 등의 영치(6.57점) 순으로 부담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순위형 로짓 모형을 적용하여 기업 특성 및 개인(응답자) 특성을 통제할 경우, 요청받은 행정조사 횟수가 많을수록 유형별 행정조사 부담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복조사를 경험한 경우에도 행정조사 부담 정도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실태조사 경험여부가 행정조사 유형별 부담 정도와 대체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보고·자료제출 경험 여부 및 현장조사 경험 여부는 행정조사 유형별 부담 정도와 대체로 유의미한 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행정조사의 주기나 빈도에 따라 느끼는 기업의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한 결과 '1년에 여러 번 정기조사(8.91점)'하거나 '사전계획 없는 수시조사(8.75점)'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

서 매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년에 한 번 정기조사(6.81점)', '사고·위험 발생 시 조사(6.78점)' 및 '3년에 한 번 정기조사(5.34점)' 순으로 부담을 느끼는 기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순위형 로짓 모형을 적용하여 기업 특성 및 개인(응답자) 특성을 통제할 경우, 연간 요청받은 행정조사 횟수와 중복조사 경험 여부도 행정조사 주기·빈도별 부담 정도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태조사 경험여부도 행정조사 주기·빈도별 부담 정도와 대체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기업이 행정조사의 목적과 필요성에 얼마나 공감하는지 살펴본 결과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사고·위험 발생 시 조사하기 위한 목적(6.48점)', '법·규제 위반사실 확인 목적(6.20점)', '행정처분 전단계로서 사실확인 목적(6.11점)'에 대한 동의수준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순위형 로짓 모형을 적용하여 기업 특성 및 개인(응답자) 특성을 통제할 경우, 중복조사를 경험한 경우에 일반적인 관리 감독의 목적의 동의하는 정도가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나는 등 중복조사 경험 여부가 행정조사 목적의 동의 정도에 부정적 영향을 주거나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면에 보고·자료제출 및 현장조사 경험 여부는 행정조사 목적과 대체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행정조사 요청횟수가 많을수록 행정조사 목적에 동의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네 번째, 기업들이 행정조사 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원칙이 얼마나 준수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알아본 결과 비교적 낮은 만족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행정조사의 사전통지(6.41점)', '행정조사의 목적 및 법적 근거 고지(6.38점)', '목적은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조사(6.19점)'에 대한 만족수준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순위형 로짓 모형을 적용하여 기업 특성 및 개인(응답자) 특성을 통제할 경우, 중복조사를 경험한 경우에는 행정조사 과정의 원칙준수 정도에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행정조사 요청횟수는 행정조사 과정의 원칙준수 정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보고·자료제출 경험 여부는 행정조사 과정의 원칙준수 정도와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기업인식 조사결과를 정리해보면 기업들이 행정조사 유형 및 주기·빈도별로 느끼는 부담 수준은 행정조사 유형 및 행정조사 주기·빈도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1년에 수차례 진행되는 정기조사나 사전계획 없는 수시조사 등 과다하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행정조사에 대해 느끼는 부담감이 가장 크며, 출석·진술요구나 현장조사와 같이 사람이 대면하는 행정조사 유형에 대한 부담도 많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다양한 행정조사 유형별로 느끼는 부담은 행정조사 횟수와 중복조사 경험과 비례하는 반면에 다양한 행정조사 주기·빈도에 대한 부담은 행정조사 경험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대조적으로 기업이 행정조사의 목적과 필요성에 공감하는 정도나 기업이 판단하는 행정조사 과정에서의 원칙준수 수준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로 나타났다. 특히 중복조사 경험이 있는 기업은 행정조사 목적에 동의하는 수준이 유의미하게 낮았으며 행정조사 과정에서의 원칙준수 수준도 낮다고 인식하였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행정조사 개선안에 대해서 얼마나 동의하는지 알아본 결과 어느 정도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10점 만점 중 7.54~7.85점), 가장 높은 동의 수준을 보인 대안과 가장 낮은 동의 수준을 보인 대안 간 차이가 0.31점에 불과하였다. 순위형 로짓 모형을 적용하여 기업 특성 및 개인(응답자) 특성을 통제할 경우, 행정조사 요청횟수가 많을수록 행정조사 개선방안에 동의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복조사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경우 유사·동일 사안에 대한 중복조사 개선에 대한 동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태조사, 보고·자료제출 및 출석·진술 요구 경험 여부는 행정조사 개선방안 동의 수준과 대체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자료 등의 영치 경험은 행정조사 개선방안 동의 수준과 일부 유의미한 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응답한 기업들은 모든 개선안에 대해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행정조사 요청횟수가 많거나 중복조사를 경험한 기업일수록 개선안에 동의하고 있으나, 기업들이 특별히 선호하는 대안은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



---

## 주요국가의 행정조사





## 제1절

# 미국의 행정조사 제도



### 1. 행정조사의 개념

미국에서 우리나라의 행정조사기본법 상의 행정조사 개념에 대응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로는 administrative investigation을 살펴볼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inspection, search, examination, audit 등의 용어가 유사 또는 하위 개념의 일부로 혼용되고 있다. 이 가운데 inspection은 보통 주택이나 영업소에 현장 출입하여 조사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현장(출입)검사를 뜻하는 용어로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김영조, 2004).<sup>20)</sup>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행정기관(government agencies)은 사법제도와 별개로 법령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적절한 행정방침을 결정하거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보 수집을 위한 행정조사(administrative investigation)를 실시할 수 있다. 행정조사의 기본적인 목적은 사건(incident)의 발생 여부나 문제(problem)의 확인을 위하여 데이터, 증거, 사실, 진술 등을 수집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처럼 기본법 또는 단일 법령에 의해 “행정조사”가 개념 정의되고 포괄적으로 규율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판례와 학설에 의해 그 범위, 유형, 법적 해석, 원칙과 절차 등이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행정기관이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는데,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된 법적 권한은 개별 법령에 근거를 둔다. 그리고 이러한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된 절차나 원칙 등은 문서감축법(Paperwork Reduction Act)나 수정헌법 제4조 및 제5조 등이 적용되는 식이다. 또, 우리나라의 현장(출입)검사에 해당하는 inspection의 경우 원래는 형사법의 수색(search)을 위한 법적 근거인 수정헌법 제4조 및 제5조의 요건이 판례를 통해 변형되어 적용되고 있다(안상현, 2009: 35, 4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행정조사 관련 법제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행정조사(administrative investigation)를 비롯하여,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수집, 규제집행을 위한 현장/출입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 등을 포괄하여 문헌자료를 검토하고자 한다.

20) 김영조. 2004. 미국 행정법상 행정조사의 법리에 관한 고찰. 토지공법연구, 21집.

## 2. 행정조사의 유형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조사기본법 제2조에서 행정조사의 유형을 현장조사, 문서열람, 시료채취를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 자료제출요구 및 출석 및 진술요구를 행하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행정기관이 행정조사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고, 각 유형마다 다시 세부적인 행정조사의 하위 유형을 나누어볼 수 있다.<sup>21)</sup>

우선 행정기관이 법적 강제력에 기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은 크게 1) 기록과 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는 보고 요구(reporting requirements/compel filing of reports), 2)주택 및 영업소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현장(출입)검사(inspection), 3) 증인 구술(출석) 또는 문서 제출을 강제하는 소환장 발부(subpoena)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김영조, 2004; 안상현, 2009).

### 가. 보고서(자료) 제출 요구(reporting requirements)

행정기관은 행정조사의 대상자에게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 또는 강제할 수 있다. 이를 보고서(제출)요구권이라고 하며, 문서의 형태로 정보를 구하는 것으로 주로 현존기록의 제출을 요구한다. 행정기관은 개인, 단체, 회사에게 그 조직이나 사업 활동, 관행, 경영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특정 질문에 대한 답변서, 연차보고서, 특별보고서 등 소정의 양식으로 요구하는 권한을 갖는다(김영조, 2004: 164). 현장조사(inspection)를 통한 정보의 수집은 행정기관이 직접 주택이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데에 반해, 보고서(자료) 제출 요구의 경우 행정기관이 대상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 압박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활동으로 볼 수 있다. (안상현, 2009).

행정기관의 보고서(자료) 제출 요구 권한은 개별 법률에 의해 직접 부여되기도 하고, 행정기관의 규제(regulation)나 명령(order)에 근거를 두기도 한다. 학설과 판례는 행정기관이 대상자에게 (개인)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반드시 상위법에 근거가 명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포괄적으로 위임된 행정기관의 규제 제정권(rule-making authority)의 일부로서 행정기관의 보고서(자료) 제출 요구권이 허용된다고 본다(안상현, 2009: 41). 행정조사 대상자가 행정기관의 보고서 제출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강제 여부와 그 방법은 개별 근거 법령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일률적인 기준은 부재하다(김영조, 2004: 164). 한편,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고소인들은 상대 당사자가 관련 문제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강요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분쟁의 당사자가 필요

21) The Basics of Administrative Law, <https://www.stimmel-law.com/en/articles/basics-administrative-law>. 접속일: 2023.1.15.; Main Ways to Obtain Information, <https://administrativelaw.uslegal.com/three-main-ways-to-obtain-information-subpoena-compel-filing-of-reports-inspection/>. 접속일: 2023.1.30.



한 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특정한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행정기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행정기관은 보고서 제출을 강제할 수 있다(Law Offices of Stimmels, Stimmel 7 Roeser).

행정기관의 보고서(자료) 제출 요구를 행정기관의 정보 수집 활동에 따라 개인과 기업에 부과되는 행정부담(paperwork burden), 즉 규제부담의 경감 측면에서 접근하면 행정기관의 활동에 대한 제한과 필요한 절차에 대한 일반법인 문서감축법(Paperwork Reduction Act)과 수정헌법 제4조 및 제5조의 원칙이 간접적으로 적용된다(안상현, 2009: 41; Digitalinfo.gov).<sup>22)</sup>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근로자 25인 미만의 소기업에 대해서는 연방정부의 문서 제출요구(paperwork requirement)에 따른 정보수집부담(information collection burden)을 감축하고자 소기업문서경감법(Small Business Paperwork Relief Act of 2002, Public Law 107-198)을 제정하였다.<sup>23)</sup> 행정조사 방법 가운데 하나인 보고서(자료) 제출 요구에 관한 주요 법제도에 대해서는 다음 세션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조사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조사방법 가운데 법 제10조의 보고요구와 자료제출의 요구가 미국의 보고서(자료) 제출 요구와 유사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사대상자에서 조사사항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때 보고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 나. 현장(출입)검사(inspection)

행정조사로서 검사(inspection)는 정보취득을 위해 사업체나 기타 시설에 대한 행정기관(규제기관)의 검사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출입검사는 일반적으로 행정법규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기관의 직원이 사업장, 영업장, 사업소, 공장, 주거의 장소(주택 등)에 출입하여 사무 등에 관해 질문을 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는 것을 말하며<sup>24)</sup>, 행정조사기본법 상 제11조 현장조사가 미국의 (administrative) inspection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이를 출입검사, 행정조사(administrative inspection) 등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행정조사기본법 상 용어인 현장검사 또는 현장(출입)검사로 번역하였다.

22) 문서감축법 1995(Paperwork Reduction Act of 1995), <https://www.govinfo.gov/content/pkg/PLAW-104publ13/html/PLAW-104publ13.htm>. 접속일: 2023.1.31.

23) 소기업문서  
<https://www.sba.gov/document/policy-guidance--small-business-paperwork-relief-act-2002>. 접속일: 2023.1.31.; OMB, The Small Business Paperwork Relief Act. [https://obamawhitehouse.archives.gov/omb/inforeg\\_sbpra102803/#:~:text=On%20June%2028%2C%202002%2C%20the%20Small%20Business%20Paperwork,Management%20and%20Budget%20%28OMB%29%20and%20on%20Federal%20agencies](https://obamawhitehouse.archives.gov/omb/inforeg_sbpra102803/#:~:text=On%20June%2028%2C%202002%2C%20the%20Small%20Business%20Paperwork,Management%20and%20Budget%20%28OMB%29%20and%20on%20Federal%20agencies.). 접속일: 2023.1.31.

24) 정부입법지원센터, <https://www.lawmaking.go.kr/lmKnlng/jdgStd/info?astSeq=2268&astClsCd=CF0101>. 접속일: 2023.1.31.

연방정부 차원에서 현장(출입)검사는 기준에 따라 다시 하위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규제목적에 따라 구분하면 1) 건물의 물리적 요건을 규제하기 위한 검사와 2) 특정 영업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검사로 구분할 수 있다. 다음으로 조사권 발동의 원천에 따라 1) 고충검사(complaint inspection)와 2) 정기검사(periodic inspection) 또는 지역적 검사(area inspection)로 구분할 수 있다(김영조, 2004: 163). 고충검사는 제3자의 행정기관에 대한 고충 신청에 의해 조사권이 발동되는 경우를 말하고, 일정기간의 경과에 따라 법률이 정한 특정 영업이나 일정 지역의 검사대상을 일제히 검사하는 경우 정기검사 또는 지역적 검사로 구분한다. 이러한 지역적 검사나 정기검사는 면허절차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정형적 검사(routine inspection)로 볼 수 있고, 고충에 의한 검사 등은 비정형적 검사(nonroutine inspection)로 볼 수 있다. 이때, 행정조사(inspection)는 법령위반의 여부와 관계없이 적절한 법시행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현장(출입)검사의 대상 건물에 따라 1) 거주용(주택용) 건물인 경우 주택검사(residential inspection), 2) 영업용 건물의 경우 영업소검사(business inspection)로 구분할 수 있다(김영조, 2004: 163).

한편, 현장검사(inspection)는 원칙적으로 연방 공무원만이 기획하고 수행하도록 한다. 그러나 분쟁(dispute)이 있는 경우 당사자가 그와 관련된 정보를 찾기 위해 해당 행정기관에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은 검사를 통해서만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검사를 실시한다(Law Offices of Stimmels, Stimmel 7 Roeser).

행정기관의 현장검사(administrative inspection)에는 행정절차법의 Section 555(c) 조항과 프라이버시법 상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수집 방법 등 일반적 규정이 적용되며, 그 외에 미국 수정헌법 제4조의 법리가 적용된다(안상현, 2009: 34-35). 수정헌법 제4조는 불합리한 수색과 압류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사 및 소추기관이 형사법 상 범죄혐의를 파악하고자 수색을 하고자 할 때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급받도록 하며, 수색을 통해 범죄의 증거가 발견될 수 있다고 믿을 상당한 사유(probable cause)가 있을 경우에만 영장을 발급한다는 원칙이 규정되어 있다. 현재는 판례를 통해 행정기관의 현장검사에 대하여도 수정헌법 제4조의 영장 요건과 상당한 사유 요건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며, 경우에 따라 두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현장검사 방식의 행정조사가 가능하다고 보는 사례도 있다(안상현, 2009: 35; Law Offices of Stimmels, Stimmel 7 Roeser).

#### 다. 소환장(subpoena) 발부

미국의 경우 개별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법원의 허락 없이 증인의 출두나 각종 문서나 기록의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할 권한을 부여한다. 이는 행정소환장(administrative subpoenas)으로 법원이 발부하는 소환장인 사법적 소환영장과 구별된다. 행정기관이 발부하는 소환장은 개인 또는 법인이 행정기관의 문서 또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공식 명령이다. 연방대법원의 판례는 행정기관의 소환장 발급권한을 넓게 해석하여, 수정헌법 제4조의 상당한 가능성(probable cause)에 미치지 않더라도 행정소환장 발급권을 인정한다(김민배, : 63-64; 최환용·장민선, 2016: 65-66).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조사기본법 제9조에서 행정기관이 조사대상자의 출석·진술을 요구하는 경우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소환장은 크게 증인의 출석을 통해 구두 증언을 청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1)증인소환장(subpoena ad testificandum)과 증언과 함께 회계장부와 같은 문서의 입수에 중점을 두는 문서지참증인소환장(subpoena duces tecum)으로 구분할 수 있다(김영조, 2004: 162; 김민배, : 63-64).

한편, 미국의 경우 행정기관은 소환장을 발부할 수는 있으나 집행할 권한이 없어서 피조사자가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다만, 법원에 제소하여 이행명령을 받을 수 있다. 즉, 행정소환장은 집행 권한을 갖는 법원에 의해 집행되기 전까지는 법적 효력이 없는 일종의 통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행정조사의 대상/피조사자는 소환에 응할 수도 있고 불응할 수도 있다. 때에 따라서 피조사자가 행정기관이 발부한 소환장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집행에 반하여 소송을 제기하기도 한다. 행정기관은 미국 내에서도 주(州)에 따라 행정적 소환장에의 불응에 대한 처벌이 상이하다. 행정기관의 소환장 발부를 허용하는 일부 주에서는 소환장에의 불응을 경범죄로 규정하나, 일부 주에서는 이를 지방법원에 대한 모욕으로 처벌한다. 한편, 소환권을 부여한 근거 법령에서 불응에 대한 처벌 규정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법정 소환장을 위반하는 것은 법정 모욕이며 위반자는 사법처벌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 규칙이다(김영조, 2004: 162; Law Offices of Stimmels, Stimmel 7 Roeser).

### 3. 행정조사 관련 법·제도 현황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절차법」에서 행정조사의 절차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별도의 「행정조사기본법」에서 행정조사의 기본원칙과 절차에 대하여 규정한다.<sup>25)</sup> 행정조사기본법은 행정조사의 기본원칙을 제시하는데, 조사권 남용금지(제1항), 조사목적에 적합한 대상자 선정(제2항), 중복조사금지(제3항), 처벌보다 법령준수유도(제4항), 조사내용 공표금지 및 비밀 누설금지(제5항), 목적 외 조사내용 사용금지(제6항) 원칙 등이 있으며, 행정조사의 실체법적 한계를 규정한다. 한편, 행정조사의 절차에 관하여 조사의 사전통지(법 제17조), 의견제출(법 제21조), 조사결과 통지(법 제24조)를 규정하고, 현장조사는 원칙적으로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 할 수 없고(법 제11조), 조사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조사 대상자에게 내보여야 함(법 제11조 제3항)을 규정한다. 그 외에 행정법의 행정법의 비례원칙, 평등원칙, 부당결부금지원칙 등 일반원칙이 적용된다.

한편,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의 행정조사기본법과 같은 기본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기관이 행정조사를 통해 민간, 즉 개인과 기업, 단체 등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대상자에게 행정부담을 부과하고 개인정보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연방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sup>26)</sup>과 프라이버시법(Privacy Act), 문서감축법(Paperwork Reduction Act)<sup>27)</sup> 등의 일반법의 적용을 받는다(안상현, 2009).<sup>28)</sup> 또한, 현장검사(inspection)의 경우 미국의 경우 학설과 판례에 따라 수정헌법 제4조<sup>29)</sup>와 제5조의 범리가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김영조, 2004; 안상현 2009). 수정헌법 제4조는 원래 형사법에 적용되던 원칙으로 영장(warrant) 요건과 상당한 사유(probable cause) 요건이 주요 원칙인데, 연방 대법원에서 이를 변형하여 행정목적의 조사, 즉 행정조사에도 적용하게 되었다(안상현, 2009).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가 시민과 민간기업에 부과하는 문서작성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예산관리국(OMB,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내의 OIRA(Office of Information and Regulatory Affairs)에 연방 행정기관의 공공정보 수집(information collection from the public) 활동을 감독(oversee)하고 정보정책(information policy)을 수집할 권한을 부여하였

25) 이동식, 전훈, 김성배, 손윤석. 행정법 총론. 제11판. 2022. p.517.

26) 5 U.S.C. §551~§559; 미국 행정절차법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lInfoReadPage.do?CTS\\_SEQ=2853&AST\\_SEQ=1061&nationReadYn=Y&ETC=1&searchNtnl=US](https://world.moleg.go.kr/web/wli/lgsllInfoReadPage.do?CTS_SEQ=2853&AST_SEQ=1061&nationReadYn=Y&ETC=1&searchNtnl=US)

27) 44 U.S.C. §3501~§3520

28) 안상현, 2009. 미국에서의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수집 관련 법제. 월간법제 2009권 10호.

29) 수정헌법 제4조는 원래 형사법에 적용되던 원칙으로 정부가 수색(search)을 위해 법원으로부터 영장 발급을 받고자 할 때 수색으로써 범죄의 증거가 발견될 수 있다는 상당한 사유가 있어야

다. OIRA는 문서감축법(Paperwork Reduction Act, 44 U.S.C. Chapter 35), 프라이버시법(Privacy Act, 5 U.S.C.§ 552a)과 규제부담 식별 및 감축 규정(Identifying and Reducing Regulatory Burdens, Executive Order 13610)<sup>30)</sup> 등을 관할한다(White House).<sup>31)</sup>

#### 가.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PA)

미국은 행정조사에 대한 별도의 기본법이 부재하며, 일반법인 행정절차법(APA)에 행정조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행정절차법 제555조(c)<sup>32)</sup>는 행정조사에 대하여 “프로세스, 보고서 제출 요구, 검사(inspection) 또는 기타 조사행위나 그에 대한 요구는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발부, 작성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행정조사의 법률주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555조(c)는 자료나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구받은 사람은 법적으로 규정된 비용을 지불하여 사본을 조달하거나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동법 동조(d)는 소환장(subpoena) 발부 및 집행에 대하여 규정하는데, 법률에 근거한 소환장은 절차규정의 요구나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발부(issue)되어야 하고, 집행 과정에서 법원은 증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합리적 기간 내에 증거(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한다. 그리고, 조사대상자가 이에 불응할 경우 모욕죄를 처벌한다고 규정한다(김영조, 2004: 163;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 나. 문서감축법(Paperwork Reduction Act: PRA)

문서감축법은 1980년에 법률로 제정되고, 1995년에 재승인되었는데, 연방 행정기관이 개인, 기업 및 지방정부에 부과하는 대부분의 자료제출 및 기록유지 의무에 적용되는 법적 틀을 제고한다. 이는 연방정부의 규제로 인한 각종 보고 등 문서작성 부담을 경감하고자 제정된 것으로 관리예산처(OMB) 내의 정보규제국(OIRA)<sup>33)</sup>을 설치하여 각 행정기관의 보고서 제출 요구(reporting

30)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12/05/14/2012-11798/identifying-and-reducing-regulatory-burdens>, 접속일: 2023.1.31.

31) OIRA Governing Authorities, <https://www.whitehouse.gov/omb/information-regulatory-affairs/>. 접속일: 2023.1.31.

32) APA §555(c) Process, requirement of a report, inspection, or other investigative act or demand may not be issued, made, or enforced except as authorized by law. A person compelled to submit data or evidence is entitled to retain or, on payment of lawfully prescribed costs, procure a copy or transcript thereof, except that in a nonpublic investigatory proceeding the witness may for good cause be limited to inspection of the official transcript of his testimony.

33) 정보규제국(OIRA)은 관리예산국(OMB)의 한 부분으로 행정기관의 규제 심사, 정부의 정보수집의 승인, 정부 통계관행의 확립, 연방 프라이버시 정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https://www.whitehouse.gov/omb/information-regulatory-affairs/>. 접속일: 2023.1.31.

requirement) 등 모든 정보수집을 심사(review)·승인하도록 한다. 즉, 행정조사 가운데 보고서 제출 요구(reporting requirement)의 방법으로 공공(개인, 기업 등)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는데 따르는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연방정부의 효율적인 정보수집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정보 수집을 통제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절차와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sup>34)</sup>

문서감축법은 독립 행정기관을 포함한 대부분의 연방 행정기관<sup>35)</sup>에 적용되며(44. U.S.C. §3502(1)) 정보 수집행위(collection of information)에 적용된다. 이때 정보수집행위는 형식이나 양식에 관계없이 기관이 제3자나 대중에게 사실이나 의견을 공개하도록 하거나, 취득, 요청하게 하거나, 공개를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서감축법 상 정보수집 행위에 해당하는 정보는 “숫자, 그래픽 또는 서술 형태인지, 구두 또는 서류, 전자 또는 기타 매체의 방식인지에 관계없이 모든 사실, 의견, 진술, 추정”을 포함한다(OIRA FAQ).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양식(예: 소득세신고양식), 서면 보고서(예: 수혜자 성과보고서), 설문조사(인구조사)와 같이 기관에 제출할 정보 요청, 2) 기록유지(예: 고용주가 작업장의 사고기록을 유지해야 하는 OSHA 요건), 3) 제3자 또는 대중 공개(예: 식품 영양표시 요구) 정보 등을 포함한다. 연방 행정기관이 1) 10인 이상의 개인에게 동일한 질문 또는 동일한 보고 및 기록 유지 요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경우나, 2) 일반 통계 목적으로 기관, 기구, 직원에 제기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을 정보의 수집으로 본다(44. U.S.C. §3502; OIRA FAQ).

문서감축법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한 보다 상세한 절차나 기준 등은 CFR Part 1320 “공공 서류작업 부담 통제”에서 정한다. 이는 연방행정기관에서 생성, 수집, 공개, 유지, 사용, 공유 및 보존하는 정보의 효용과 공공의 이익을 최대화하고, 서류작업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계되었다.<sup>36)</sup> 이때 “부담(burden)”은 연방행정기관에 정보를 제공(생성, 유지, 공개 등)하기 위해 개인이 지출하는 총 시간, 노력 또는 재정 자원을 의미한다.<sup>37)</sup>

문서감축법은 연방행정기관이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여러 절차를 이행하도록 규정한다. 행정기관은 OMB 승인을 받기 전에 정보 수집을 수행하거나 또는 금전지원(sponsoring)을 할 수 없다. 절차는 크게 제안된 정보수집에 대하여 공개 의견을 구하는 단계와 정보수집 제안에 대하여

34) Paperwork Reduction Act(44 U.S.C. Chapter 35)

<https://www.govinfo.gov/content/pkg/USCODE-2011-title44/pdf/USCODE-2011-title44-chap35.pdf>, 접속일: 2023.1.31.

35) 감사원(GAO), 연방선거위원회(Federal Election Commission), 체신국(USPS)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36) CFR Part 1320 Controlling Paperwork Burdens on the Public.

<https://www.ecfr.gov/current/title-5/chapter-III/subchapter-B/part-1320>. 접속일: 2023.3.11.

37) 일반인의 서류작업 부담은 1) 지시의 검토, 2) 정보 수집, 검증 및 이를 위한 기술과 시스템의 개발, 취득, 설치 및 활용, 3) 정보처리 및 유지를 위한 기술 및 시스템의 개발, 취득, 석치 및 활용, 4) 정보 공개 및 제공을 위한 기술과 시스템의 개발, 취득, 설치 및 활용, 5) 기존의 지시 및 요건에 따르도록 기존의 방법을 조정하는 것, 6) 정보 수집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을 하는 것, 7) 데이터 원천의 검색, 8) 정보의 수집을 완료하고 검토하는 것, 9) 송신 및 기타 공개 등을 포함한다. (CFR Part 1320.3 (b)(1))

OMB의 검토 및 승인 절차를 거치는 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우선, 각 행정기관은 정보책임관(Chief Information Officer, CIO)을 임명하고, CIO는 해당 정보수집행위가 문서감축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요건을 검토, 평가한다. 정보수집행위의 요건은 1) 정보수집의 필요성 평가, 2) 수집될 정부의 기능에 대한 기술, 3) 정보수집 계획, 4) 행정기관의 정보수집행위가 일반 국민에 부과하는 부담의 객관적(정량적) 분석, 5) 파일럿 프로그램을 활용한 정보수집 사전테스트, 6) 효율적·효과적 정보수집 및 사후관리를 위한 계획 등이다. 이상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각 행정기관은 정보수집 계획을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60일간 고시하며 일반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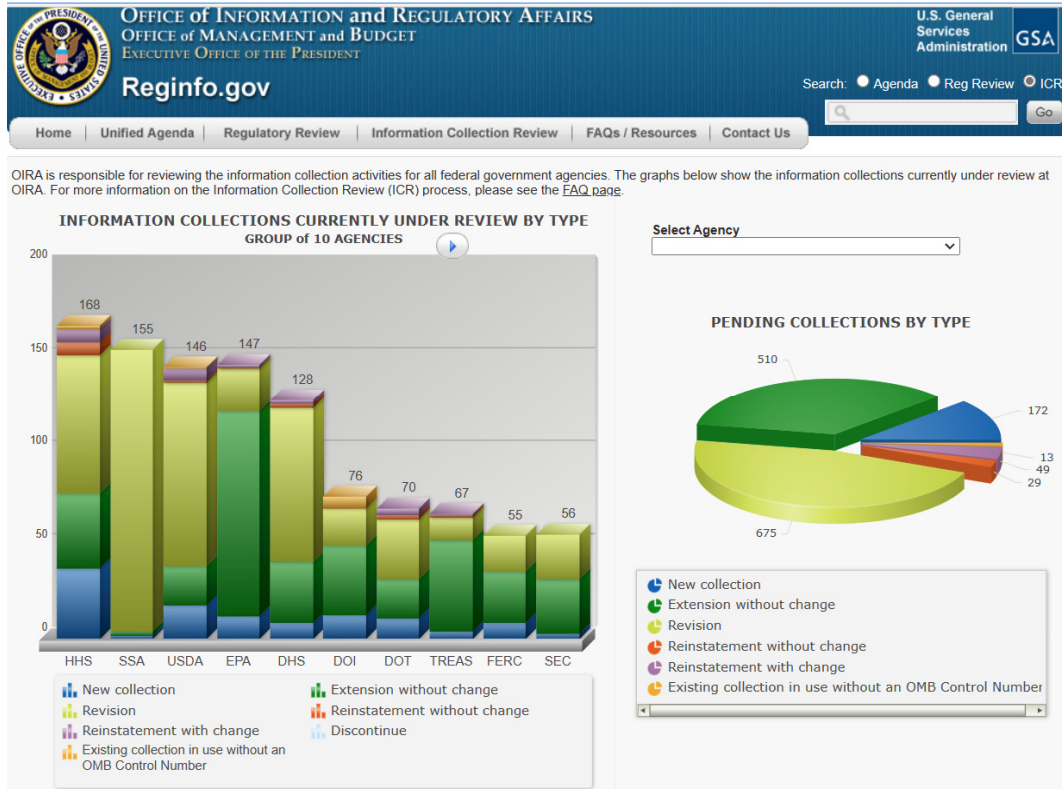
한편, 행정기관은 정보수집에 대하여 OMB의 승인을 요청(Information Collection Request, ICR)하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 정보수집행위에 대한 정의서(description)와 조사 양식, 방법을 포함한 근거자료(supporting documents) 등 해당 정보수집에 문서감축법(PRA)의 요건을 충족하는 증빙자료를 OMB에 제출하고 이를 연방관보에 고시한다. OIRA는 제출된 정보수집 계획을 심사(review)한다. 이 과정에서 30일 동안 일반국민이 OIRA에 의견을 제출(comments)할 수 있다. OIRA는 정보수집행위에 대한 계획이 접수된지 60일 이내에 정보수집행위가 행정기관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지, 수집된 정보가 실질적 유용성이 있는지 결정하여 승인 여부(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 등)를 판단한다. 승인된 각 행정기관의 정보수집행위에 대하여 OMB 통제번호(OMB Control Number)<sup>38)</sup>가 부여되며, 행정기관이 정보수집을 할 때 이를 적시하여야 한다. 조사대상(응답자)은 OMB 통제번호를 확인할 수 있고, 통제번호에 따라 정보수집행위에 대한 연혁(history)을 확인할 수도 있다(Paper Reduction Act, 44 U.S.C. Chapter 35; OIRA<sup>39)</sup>; 안상현, 2009: 43-46).

한편, OIRA는 홈페이지에서 행정기관의 정보수집 계획에 대한 심사(Information Collection Review, ICR)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아래와 같이 대쉬보드에서는 어느 연방행정기관의 어떤 자료수집행위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지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건수를 그래프로 제시한다.

38) OMB 통제번호(OMB Control Number)는 네 자리 숫자가 하이픈으로 두 번 연결된 형태(0000-0000)의 고유번호로 일반대중이 Reginfo.gov 웹페이지에서 이 고유번호를 검색하여 현재 승인된 정보수집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OIRA FAQ).

39) OIRA FAQ, <https://www.reginfo.gov/public/jsp/Utilities/faq.jsp>. 접속일: 2023.2.10.

〈그림 6-1〉 OIRA의 정보수집심사(ICR) 현황 대쉬보드



OIRA는 OMB의 사전 승인을 받은 연방 행정기관의 공공 정보수집 목록/인벤토리<sup>40</sup>를 제공하며, 연방 행정기관별 정보수집(information collection from the public) 현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한다. 여기에는 해당 정보수집행위의 소관 행정기관, OMB 통제번호(OMB Control Number), 명칭(Title), 행정조사 양식(forms)과 접수 날짜(Received Date)와 종료날짜(Expiration Date)가 포함되며, 뿐만 아니라 해당 정보수집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간 행정부담(Annual Burdens to the Public)을 연간 응답수(total annual responses), 시간(total annual burden hours), 비용(total annual burden dollars)으로 측정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는 누구나 OIRA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다.

40) <https://www.reginfo.gov/public/do/PRAMain>, 접속일: 2023.1.31.



〈그림 6-2〉 연방 행정기관의 정보수집행위 인벤토리 - 노동부 예시

Office of Information and Regulatory Affairs (OIRA) Inventory of Currently Approved Information Collections January 31, 2023					
Department of Labor					
AGENCY: DOL-BLS		OMB CONTROL NUMBER: 1220-0008			
EXPIRATION DATE: 06/30/2024		ICR REFERENCE NUMBER: 202007-1220-001			
TITLE: Producer Price Index Survey		TOTAL ANNUAL BURDEN HOURS:		TOTAL ANNUAL BURDEN DOLLARS:	
739,645		69,945		0	
ASSOCIATED INFORMATION COLLECTIONS:					
TITLE	RESPONSES	TIME (HOURS)	COST (DOLLARS)	FORM NAME	FORM NUMBER
Producer Price Index Survey - Initiation Private Sector	4,645	8,695		Cluster Form, PPI Industry Specific Disaggregation Worksheet, Item Information Continuation Sheet, PPI Facsheet, PPI Product Checklist, Disaggregation Worksheet	BLS 1810B, BLS 1810C1, 1810A1, BLS 1810A, BLS 1810E, BLS 1810C
Producer Price Index - Repricing - Private Sector	735,000	61,250		Web Repricing	IDCF

출처: <https://www.reginfo.gov/public/do/PRAMain>

앞서 문서감축법은 OIRA가 연방 행정기관의 정보수집행위에 대한 계획을 심사하는 동안 일반 국민이 OIRA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OIRA 웹사이트는 아래와 같이 심사 중인 정보수집행위(행정조사)별로 온라인 상에서 의견(comments)을 제출할 수 있게끔 하였다. 이때 해당 정보수집행위 및 계획은 과거 및 계획상 응답수, 시간부담 및 비용부담의 환산값에 대한 정보를 함께 제시하여 일반국민의 의사결정에 대한 근거를 제공한다.

〈그림 6-3〉 OIRA 심사기간 중 온라인 의견수렴 페이지 예시

Office of Information and Regulatory Affairs (OIRA) Information Collections under Review January 31, 2023			
Note: "*" denotes recently received			
Department of Agriculture			
AGENCY: USDA-APHIS		OMB CONTROL NUMBER: 0579-0228	
** RECEIVED DATE: 01/30/2023		ICR REFERENCE NUMBER: 202301-0579-011	
TITLE: Importation of Live Poultry, Poultry meat, and other Poultry Products from Specified Regions			
ANNUAL BURDENS TO THE PUBLIC:			
	RESPONSES	HOURS	COST (DOLLARS)
PREVIOUS	56	57	0
REQUESTED	4,721	4,722	265,956

출처: <https://www.reginfo.gov/public/do/PRAMain>

한편, 일반대중은 ICR 검색창에서 행정기관의 정보수집행위에 대한 OIRA 심사 현황을 개별적으로 검색해볼 수 있다. OMB 통제 번호, 행정기관, 행정조사 명칭, 심사 단계, 접수시기 및 부담

발생원인, 행정부담 영향 집단 등을 선택할 수 있다. 이때, 부담 발생 원인은 보고서(자료) 제출, 자료보관, 제3자 제공과 이들 간 조합으로 구분되고, 정보수집행위에 따른 행정부담의 영향을 받는 대중(affected public)은 민간 영리기업, 농장, 연방정부, 개인 또는 가구, 비영리 기관, 사적 영역, 주정부·지방정부·부족정부로 구분된다.<sup>41)</sup>

〈그림 6-4〉 OIRA 정보수집행위 심사(ICR) 현황 검색창

The screenshot shows the 'Search of Information Collection Review' page on Reginfo.gov. The form includes the following sections:

- Search Fields:** OMB Control Number, ICR/RCF Reference Number, Agency Tracking Number, Agency, Sub Agency, Text (Majority of Text Boxes), RIN, Type of Request, Date Type, Date Range (From/To), ICR Status (Active, Received in OIRA, Historical Inactive, Historical Active), Type of Review, ICR Ended Due To.
- Conclusion Action:** Certification (a) It is necessary for the proper performance of agency functions, (b) It avoids unnecessary duplication.
- Burden Range:** Hours, Dollars, Responses, Respondents, Respondents-Small Entities (all with 'Between' and 'and' input fields).
- Obligation to Respond:** Burden Due To, Affected Public, Form Number, Form Name, Line of Business.
- ICRs That:** A list of checkboxes for filtering results, including 'Are generic', 'Are preapproved', 'Received public comments', 'Employ statistical methods', 'Sponsor common form(s)', 'Include collections available electronically', 'Include collections that can be submitted electronically', 'Relate to other documents for OIRA review', 'Relate to the Affordable Care Act', 'Relate to the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Relate to the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 (ARRA)', 'Request any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Include a form that requires a Privacy Act Statement', and 'Relate to the Pandemic Response'.
- 30-day Notice:** Federal Register, Citation Date, FR, and other input fields.

출처: <https://www.reginfo.gov/public/do/PRASearch>

41) OIRA ICR, <https://www.reginfo.gov/public/do/PRASearch>. 접속일: 2023.1.31.

#### 다. 프라이버시법(Privacy Act)

미국의 연방 프라이버시법 역시 OIRA 소관으로 이는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기록의 공개와 활용 과정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 절차, 구제수단을 광범위하게 규정한 법률이다. 동법 5 U.S.C. §552a(e)는 행정기관의 정보수집, 공개, 활용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 개인 정보보호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 라. 현장검사(inspection) 관련 법제도 및 판례

미국의 경우 현장검사(administrative inspection) 방법의 행정조사의 원칙이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형성되었다. Camara 판결(Camara v. Municipal Court, 387 U.S. 523)은 행정기관의 일상적 업무 수행을 위한 행정조사(administrative inspection)의 요건과 한계에 관한 원칙을 정립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에 따르면 행정조사, 즉 현장검사를 위해서는 영장(warrant)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영장발부를 위해 근거법에서 제시하는 합당한 기준(reasonable standards)에 비추어 적정하다면 “상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조사대상자의 범위 반 증거가 뚜렷하지 않더라도 행정기관에서 영장을 갖추어 일상적인 행정조사(administrative inspection)를 실시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이후 See 판결(See v. City of Seattle, 387 U.S. 541)에서 일반 사업장까지 적용이 확대되었다. 이후 연방대법원은 Colonnade Catering Corp 판결(United States, 397 U.S. 72)에서 강한 행정규제를 적용받는 업종, 예를 들어 주류판매업, 총기판매업자, 광산회사, 차량해체업자 의 경우 일반 영업에 비해 프라이버시 보호의 기대수준이 낮기 때문에 영장이 없더라도 상당한 정도의 정부이익에 비추어 행정조사(administrative inspection)가 정당화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았으며, 이후 New Yo가 v. Berger(482 U.S. 691) 판결에서 강한 규제를 받는 업종에 대해 영장없이 행정조사를 받을 수 있는 적절한 대체수단으로 사전 고지(notice)와 공무원 재량의 제한 원칙이 제시되었다(안상현, 2009: 36-37).

행정기관의 현장검사(administrative inspection)의 경우 상기한 일상적 업무 수행을 위한 검사 외에 개별 법령(statutes or regulation) 차원에서 생명, 건강, 재산의 보호를 위해 즉각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에서 실시하는 ‘긴급 행정조사(emergency administrative inspection)’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앞서 언급한 강한 규제를 받는 사업자(pervasively regulated business)가 아니더라도 영장 없이 사업장에 출입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나, 해당 긴급 상황을 조사 목적에 국한하여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안상현, 2009: 38).

다음으로 사업자의 법령 위반에 대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행정기관은 영장을 발부받아 특

별 행정조사(special inspection)를 실시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행정기관은 수정헌법 제4조의 “상당한 사유”의 범위 내에서 법령 위반 사실을 발견하는 데에 그쳐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실시된 행정조사(administrative inspection)를 통해 수집된 정보의 형사법 상 증거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안상현, 2009: 38-39). 그 외에 각 연방 행정기관별로 CFR에서 해당 업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행정기관의 현장검사(administrative inspection)의 절차와 방식 등에 대하여 보다 상세하게 제정하여 적용하고 있다.<sup>42)</sup>

#### 4. 개별법 상 행정조사 사례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처럼 행정조사기본법이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행정절차법, 문서감축법, 프라이버시법 등에서 행정조사와 관련한 일반적인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개별 법령에 근거를 두어야 하며, 각 연방 행정기관의 업무에 대한 규정(Code of Federal Regulations, C.F.R)을 통해 행정조사의 절차나 방식 등이 구체화된다(최환용·장민선, 2016: 63-64).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고용노동부 소관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이, 미국은 직업안전위생관리국에서 작업장안전위생법(OSHA)에 근거하여 고용주가 직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제공하도록 규정한다. 이때 OSHA 검사관은 안전규정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작업장에 대한 검사를 수행한다(U.S. DOL).<sup>43)</sup>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은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의 제조, 가공, 포장 및 보관하는 시설에 대한 검사 권한을 가지고 있고, 약물 및 의료기기 관련 부작용에 대한 보고 요구를 할 수 있다.<sup>44)</sup>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은 위험물질 및 오염 물질 취급 시설에 대한 검사를 수행할 권한이 있으며, 독성물질관리법(Toxic Substances Control Act, TSCA)에 근거하여 화학물질 및 혼합물과 관련된 보고, 기록 보관 및 시험 요구사항과 제한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독성물질관리법(TSCA) 섹션 8(a)에 따라 특정 화학물질에 대하여 나노크기로 물질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사람이 생산량, 제조

42) 예) Title 21 (Food and Drugs) / Chapter II / Part 1316 / Subpart A – Administrative Inspections  
<https://www.ecfr.gov/current/title-21/chapter-II/part-1316/subpart-A>. 접속일: 2023.1.31.

43) U.S. Department of Lab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OSHA of 1970.  
<https://www.osha.gov/laws-regs/oshact/completeoshact>. 접속일: 2023.2.10.

44) U.S. Food & Drug Administration. Mandatory Reporting Requirements: Manufactureres, Importers and Device User Facilities.  
<https://www.fda.gov/medical-devices/postmarket-requirements-devices/mandatory-reporting-requirements-manufacturers-importers-and-device-user-facilities>. 접속일: 2023.2.10.

및 가공 방법, 노출 및 방출 정보, 사용시 건강 및 안전 정보 등을 포함하는 특정 정보를 EPA에 보고하도록 규정하며(15 U.S.C. Section 2607), 이 행정조사(정보수집, 보고 요건)에 해당하는 OMB 통제번호는 2070-0194로서 최근 2021년 9월 22일에 조사 연장이 승인되었다. 해당 조사의 경우 조사대상이 285명이고 시간 부담이 70,090 시간으로 추정된다.<sup>45)</sup>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IRS)은 개인과 기업에 대한 감사 및 수행 권한이 있는 대표적인 자료 제출 요구 기관으로 볼 수 있으며, 특정 유형의 금융 거래에 대한 보고를 요구한다. 증권거래위원회(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는 증권 중개인, 딜러, 투자 고문을 검사하고 조사할 권한이 있으며, 공기업 및 특정 기업에 대하여 보고 요구 권한을 갖는다.<sup>46)</sup>

#### 가. 산업안전보건국(OSHA)의 기록 및 보고 요구(recording and reporting requirement)<sup>47)</sup>와 현장조사(inspection)

미국의 산업안전보건국은 직원 10명 이상의 고용주 대부분에게 업무와 관련된 상해와 질병에 대한 기록(injury and illness recordkeeping)을 유지하도록 요구한다.<sup>48)</sup> 이 경우 전년도 종업원이 10명 미만인 경우 OSHA나 노동통계국(BLS)이 기록을 보유해야 한다고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기록을 보유할 필요가 없으나, 10명 이상의 직원이 있었던 경우 면제 산업으로 분류되지 않는 한 상해 및 질병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1904.1). 다만 상해·질병의 발생률이 낮은 일부 업종에 대하여 기록유지 요건이 일부 면제된다.<sup>49)</sup> 산업안전보건국은 고용주가 업무와 관련된 부상 및 질병을 기록하는 데에 특정한 양식(OSHA 300 Log, OSHA 300-A 요약 및 OSHA 301 사고 보고서 등)을 사용하도록 하며, 특정 부상이나 질병의 경우 OSHA에 보고하도록 한다. 기록(recording)의 경우 휴가나 제한된 작업 활동, 응급 처치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작업 관련 부상이나 질병의 경우 기록하여야 한다. 업무 관련 사망자의 경우 8시간 이내에, 업무 관련 입원, 절단 또는 시력 손실의 경우 24시간 이내 보고(reporting)할 의무(29 CFR 1904.39)가 있다.<sup>50)</sup> OSHA 규제, 29 CFR 1904.39는 사업주가 사망자 및 심각한 부상자를 보고할 때 사업장 이름,

45) Reginfo.gov. [https://www.reginfo.gov/public/do/PRAViewICR?ref\\_nbr=202007-2070-003](https://www.reginfo.gov/public/do/PRAViewICR?ref_nbr=202007-2070-003). 접속일: 2023.3.11.

46)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Forms List. <https://www.sec.gov/forms>. 접속일: 2023.3.09.

47) U.S. Department of Labor. Regulations (Standards – 29 CFR), <https://www.osha.gov/laws-regs/regulations/standardnumber/1904>. 접속일: 2023.2.28.

48) 29 CFR 1904.41은 저위험 산업 및 직원 10명 이하의 고용주에 대하여 보고요건을 면제한다.

49) 면제 산업 목록은 북미산업분류시스템(NAICS)을 기반으로 함

50) U.S. Department of Labor. OSHA's Recordkeeping Rule. <https://www.osha.gov/recordkeeping/2014>. 접속일: 2023.3.11.

사건의 위치, 시간, 사건의 유형, 사망자/부상자 이름, 사건에 대한 간략한 설명 등을 포함할 것을 규정한다.

한편, OSHA 규제(29 CFR)는 업무상 상해 및 질병에 대한 기록과 보고에 대한 문서감축법 하에서 승인·발급된 OMB 통제번호를 적시하고 있다.

〈표 6-1〉 산업안전보건국의 업무상 상해 및 질병 기록 및 보고 규제에 대한 OMB 통제 번호

29 CFR citation	OMB Control No.
1904.4-35	1218-0176
1904.39-41	1218-0176
1904.42	1220-0045
1904.43-44	1218-0176

출처: U.S. Department of Labor.

<https://www.osha.gov/laws-regs/regulations/standardnumber/1904/1904.45>. 접속일: 2023.3.10.

OIRA에서 운영하는 Reginfo.gov 사이트 위의 업무상 상해 및 질병에 대한 기록과 보고에 해당하는 OMB 통제 번호(1218-0176)를 검색하여 정보수집 심사 결과(ICR)를 확인하였다. 정보수집의 제목(title)은 “Recordkeeping and Reporting Occupational Injuries and Illnesses (29 CFR Part 1904)”로 근거가 되는 규제와 함께 제시된다. 근거법은 직업안전보건법(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으로 본 행정조사는 주기적으로 심사를 받으며 이전과 변동사항이 없고, 최근 심사는 2022년 4월 26일에 결과가 발표되어 3년간 유효하다. 정보수집 심사(ICR) 결과 응답자(조사대상) 규모 5,113,141, 소요 시간 2,048,626 시간의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ICR을 검색하면 해당 정보수집 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보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이퍼링크를 해두었는데, 이 경우 29 USC 657(c)<sup>51)</sup> 내용을 바로 확인할 수 있었다.

51) 29 U.S.C.

<https://www.govinfo.gov/content/pkg/USCODE-2018-title29/html/USCODE-2018-title29-chap15-sec657.htm>. 접속일: 2023.3.11.

〈그림 6-5〉 업무상 상해 및 질병 기록과 보고' 정보수집심사(ICR) 결과

**View ICR - OIRA Conclusion**

<b>OMB Control No:</b> 1218-0176	<b>ICR Reference No:</b> 202201-1218-008
<b>Status:</b> Active	<b>Previous ICR Reference No:</b> 201905-1218-002
<b>Agency/Subagency:</b> DOL/OSHA	<b>Agency Tracking No:</b> 1218-0176(2022)
<b>Title:</b> Recordkeeping and Reporting Occupational Injuries and Illnesses (29 CFR Part 1904)	<b>Common Form ICR:</b> No
<b>Type of Information Collection:</b> Revision of a currently approved collection	<b>Conclusion Date:</b> 04/26/2022
<b>Type of Review Request:</b> Regular	<b>Date Received in OIRA:</b> 03/15/2022
<b>OIRA Conclusion Action:</b> Approved without change	
<b>Retrieve Notice of Action (NOA)</b>	
<b>Terms of Clearance:</b>	

	Inventory as of this Action	Requested	Previously Approved
<b>Expiration Date</b>	04/30/2025	36 Months From Approved	04/30/2022
<b>Responses</b>	5,113,141	0	5,904,031
<b>Time Burden (Hours)</b>	2,048,626	0	2,140,861
<b>Cost Burden (Dollars)</b>	0	0	0

**Abstract:** The OSH Act and 29 CFR Part 1904 prescribe that certain employers maintain records of job related injuries and illnesses. The data are needed by OSHA to carry out intervention and enforcement activities to guarantee workers safe and healthful workplaces. The data are also needed by BLS to produce national statistics on occupational injuries and illnesses.

**Authorizing Statute(s):** US Code: [29 USC 657\(c\)](#). Name of Law: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US Code: [29 USC 673](#). Name of Law: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Citations for New Statutory Requirements:** US Code: 29 USC 673 Name of Law: Section 24. Statistics  
US Code: 29 USC 651 Name of Law: Section 2 Congressional Finding and Purpose

출처: OIRA 정보수집심사(ICR),

[https://www.reginfo.gov/public/do/PRAViewICR?ref\\_nbr=202201-1218-008](https://www.reginfo.gov/public/do/PRAViewICR?ref_nbr=202201-1218-008). 접속일: 2023.3.11.

산업안전보건국(OSAH)은 기업이 보고 요건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작업장에 대한 검사(inspection)를 수행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우선 OSHA는 긴급한 위험, 사망 및 손해와 같은 특정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사업주에게 검사에 대하여 사전 통지(notification of inspection)를 해야 한다. OSHA의 규제집행관(compliance officers)은 검사를 수행하고 규정을 집행할 책임이 있는데, 검사 시작에 앞서 자격증을 제시해야 하며 영장이나 동의 없이는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 OSHA 규제집행관은 OSHA 300 Log, OSHA 301 사고 보고서 등을 포함한 보고 요건에 관한 기록을 검토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요청에 따라 OSHA가 이 기록을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검사과정에서 규제집행관(compliance officers)은 고용주와 직원을 인터뷰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인터뷰 동안 대리인을 참석시킬 수 있다. 고용주가 보고요건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OSHA가 처벌을 내릴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고용노동부 소관 산업안전법에서 산업재해 발생시 보고 의무(법 제57조)를 두고 있다. 법 제57(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제1항은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사업주가 이를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규정하고, 제2항은 산업재해의 발생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도록 하며, 상세한 내용은 동법 시행규칙 제72조(산업재해 기록 등) 및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에서 규정한다. 산업재해 발생시 사업장 개요, 근로자 인적사항, 재해 발생 일시 및 장소, 원인 및 과정, 재발방지 계획을 포함한 사항을 기록, 보존하도록 한다(동법 시행규

칙 제72조). 단, 사망자 또는 3일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이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별지 제30호 서식)을 작성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산업재해 발생 보고(동법 시행규칙 제73조) 의무를 규정한다.

한편, 미국의 경우 OSHA에서 규제집행관을 투입하여 사업주가 작업장 상해 및 질병에 대한 기록·보고 요건을 준수하였는지 현장 조사(inspection)를 실시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상 근로감독관이 이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55조는 근로감독관의 권한에 대하여 규정하는데, 근로감독관은 사업장이나 사무소에 출입하여 질문하고, 장부, 서류, 물건의 검사와 안전보건 점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법 제155조제1항). 근로감독관은 검사에 필요한 한도에서 무상으로 제품이나 원재료, 기구를 수고할 수 있고,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동법 제155조제2항). 한편, 근로감독관이 법이나 법에 따른 명령을 시행하기 위해 관계인에게 보고 및 출석을 명할 수 있으며(법 제155조제3항), 근로감독관은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고, 출입시 성명, 시간, 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한다(법 제155조제4항).

#### 나. 의료기기 보고 규제(Medical Device Reporting Regulation)<sup>52)53)</sup>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연방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법(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FD&C Act)에 근거하여 의료기기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사용자 시설로부터 전자 또는 종이 서류 보고서의 형태로 의료기기 관련 정보를 수집한다. 수집된 정보는 의료기기와 관련한 위험을 평가하고, 공중 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FDA의 규제 조치를 취하는 데 사용된다. U.S.C. Title 21, Sec. 360i는 의료기기에 대한 기록 및 보고 의무에 대해 규정한다. 의료기기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시판되는 장치가 1) 사망 또는 중상해의 원인이거나 기여했을 수 있거나, 2) 오작동이 발생했거나, 유사한 장치에 오작동이 재발하여 사망이나 심각한 부상을 야기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하여 기록, 유지하고 보고서를 작성, FDA에 제공해야 한다. 장관은 필요한 경우 기타 의료기기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을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장치 제조업자

52) FDA.

<https://www.fda.gov/medical-devices/postmarket-requirements-devices/mandatory-reporting-requirements-manufacturers-importers-and-device-user-facilities#1>. 접속일: 2023.3.10.

53) Federal Register.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15/02/27/2015-03943/medical-device-reporting-electronic-submission-requirements-correcting-amendments#:~:text=The%20collections%20of%20information%20in%20part%20803%20have,have%20been%20approved%20under%20OMB%20control%20number%200910-0720>. 접속일: 2023.3.10.



나 수입업자가 보고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비용과 공중 보건 보호를 고려하여 지나치게 부담스러운 요건을 부과해서는 아니된다(§360i.(a)(4)).

의료기기 사용시설에서는 기기 사용자가 환자의 사망을 야기하거나 그 합리적 관련성을 시사하는 정보를 수신 또는 인지하였을 경우, 10 영업일 이내에 가능한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의료기기의 제조업자가 알려진 경우 제조업자에게 통지, 그렇지 않을 경우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한편, 각 기기사용시설은 이에 따른 보고서의 요약본을 매년 FDA에 제출해야 하며(사용자 설비 연차보고서, FDA 양식 3419), 시설 식별 정보, 해당 제품명 및 일련번호, 해당 장치의 제조자의 성명과 주소, 제조업자에 보고한 사건의 개요 등을 포함한다. 한편, 이때 프로젝트를 통해 수집된 건강정보의 개인을 식별가능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아야 한다.<sup>54)</sup>

전자 및 종이 의료기기 보고서(MDR)은 식품의약국(FDA)의 정보수집 활동으로 OMB 승인 대상(OMB 통제번호 0910-0437)에 해당한다. 최근 2022년 3월 29일에 변경 없이 승인되었으며 2025년 3월 31일까지 유효하다. 보고 의무 대상은 2,130,295명(개소)이고, 시간 부담은 223,368 시간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의료기기법 제31조(부작용 관리)에서 의료기기취급자가 사용 도중 사망 또는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인지한 경우 식약처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기록을 유지하도록 한다(법 제31조제1항, 등록규제). 이는 동법 시행규칙 제51조(부작용 보고 등)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데, 의료기기의 부작용에 관한 사항을 보고를 하려는 자는 사망이나 생명에 위협을 주는 부작용을 초래한 경우 7일 이내, 상세한 내용을 최초 보고일부터 8일 이내 추가로 보고하여야 하며, 관련 자료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한편 식약처고시 제2022-34호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은 관련 정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집, 분석, 평가하기 위하여 수집대상 정보, 보고 서식(별지 제1호), 보고 방법(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 이후 이상사례의 검토 및 평가, 후속조치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식약처는 민원인을 위해 「의료기기 이상사례 보고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를 발간하여 관련 법령과 행정규칙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한편, 법령 및 고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피규제자별 보고 의무(제조 및 수입업자, 의료인, 환자 또는 소비자), 보고 대상 이상사례 코드, 이상사례 유형별 보고 기한, 수집대상 정보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조사 대상자의 규모의 식별이나 행정부담의 산정, 서류작업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원칙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54) govinfo. gov.

<https://www.govinfo.gov/content/pkg/USCODE-2018-title21/html/USCODE-2018-title21-chap9-subchapV-partA-sec360i.htm>. 접속일: 2023.3.11.

## 5. 정책적 시사점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행정조사기본법」의 ‘행정조사’ 범위에 해당하는 미국 연방정부의 법제도 및 적용 사례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처럼 단일 기본법에 의해 ‘행정조사’가 정의되거나 규정되지는 않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선행연구나 실무 사례에서 연방행정기관의 보고 요구(reporting requirement)를 통한 정보수집(information collection), 현장출입검사(inspection), 증인 출석 및 문서 제출을 강제하는 행정적 소환장(subpoena) 발부의 형태로 행정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연방행정기관의 정보수집에 따른 대중(the public)의 서류작성 부담을 줄이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행정절차법, 문서감축법, 프라이버시법 등 일반법에서 일반적으로 적용가능한 원칙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에서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고, 미국은 여러 일반법에서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는 있지만 주요 원칙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또한 우리나라와 미국 모두 각 행정기관이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개별 법령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점에서 법적 근거는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 운용에 있어서 미국과 우리나라 행정조사 간 상이한 부분이 발견된다. 우선, 우리나라의 행정조사기본법에서는 각 행정기관의 장이 차년도 행정조사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하고(제6조제1항), 국무조정실장은 이를 검토한 후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동법 제6조 제4항)한다. 조사방법별로는 출석·진술 요구시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도록하고(동법 제9조), 보고나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각각 보고요구서와 자료제출요구서를 발송하도록 한다(동법 제10조). 한편, 현장조사의 경우 현장출입조사서의 제시 및 발송, 조사원의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의 지참 등에 대하여 규정(동법 제11조)하고 있으나 그 절차, 기간, 방식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는 않는다.

미국의 경우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문서감축법(PRA)에 근거하여 연방행정기관이 기업, 일반인, NGO 등에 부과하는 자료제출 및 기록·유지 의무 규제에 따른 피규제자, 즉 행정조사 대상자의 문서작성 부담(burden)을 경감하고자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하여 연방행정기관이 대중으로부터 수집하는 모든 정보에 대하여 개별 자료수집 제안(proposed information collection)을 작성하여 관리예산처(OMB)에 제출하고, OMB 내의 정보규제국(OIRA)이 이를 심사하여 승인을 하도록 한다. 이때 자료수집의 목적과 근거 법령 뿐만 아니라 조사대상자 규모와 이들의 서류작성 부담(시간, 인력 등)을 정량화하여 산출하고, 3년 주기로 이를 심사하여 점차 감축하도록 유도한다. 따라서 연방행정기관에서 대중(the public)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자료수집 활동의 목록(inventory)이 작성되고, 실

시간으로 심사 진행상황과 변동사항, 조사대상자 규모와 그에 따른 행정부담 정보에 대하여 일반인이 접근하여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우리나라의 경우와 차별성을 갖는다.

연방행정기관이 개별법과 규제(C.F.R.)에 근거하여 일반인과 기업을 대상을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의무를 부과하는 일종의 규제로 볼 수 있고, 그에 따라 규제부담 감축 차원에서 서류준비, 보관, 제출 등에 투입되는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이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규제조정실 및 규제개혁위원회의 기능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정보규제국(OIRA)에서 연방행정기관의 자료수집에 따른 대중의 행정부담을 통제하기 위한 정보수집 심사 및 승인 업무를 관할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 갖는 함의가 크다. 하는 기관으로 접근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규제조정실 및 규제개혁위원회의 역할을 하는 정보규제국(OIRA)에서 이를 관할한다는 점에서 함의가 분명해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 제1항에서 기본원칙으로 “행정조사는 조사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적용을 위한 작동기제가 설계되어있지는 않다. 각 행정기관의 행정조사운영계획을 국무조정실장이 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나, 행정조사 전수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2017년 전수점검을 실시하여 27개 부처, 608건의 행정조사가 실시되고 있다고 실태가 파악되었으나, 이후에 후속적인 관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주로 개별 행정조사에 대하여 피규제 집단의 민원이나 애로사항이 접수되면 주기를 조정하거나 자료제출 방식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규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규제를 합리화하고 규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규제개혁 수단의 일환으로 현재 규제영향분석서(RIA) 작성 및 규제심사, 규제 일몰제, 규제비용감축제(구 규제비용관리제) 등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물론 이들 제도의 경우도 실제 운영 상 한계로 인해 도입 의도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확대 개편하고자 한다. 행정조사에 있어서도 이를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으로서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미국의 문서감축법의 내용과 관리체계를 참고하여 행정조사 전수에 대한 목록화, 각 행정조사의 대상(피규제자) 규모와 서류 작성 등 준수 비용(규제부담)을 산정하고, 각각의 행정조사에 대한 일몰제 적용, 심사제 운영 등의 적용을 고려해볼 수 있겠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규제개혁 추진 체계를 적극활용, 기능을 추가하는 형태로 설계함으로써 관리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제2절

## 영국의 행정조사



## 1. 행정조사의 개념

행정조사의 경우 국제적으로 확립되어 통용되는 개념은 아니므로, 영국의 정치 행정체계 하에서 우리나라의 행정조사와 동일한 개념을 가진 제도를 찾기는 어렵다. 다만 영국의 경우 다양한 기관에서 필요한 경우 행정부에서 직접 행정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주로 government inspection이라는 이름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은 부재하며,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법도 존재하지 않는다. 개별적인 기관과 개별적인 법에 의해서 규율되고 있으므로,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의 행정조사에 해당하는 영국의 제도별 시행기관, 법적 근거 등에 대해서 논의하고 최근에 행정조사에서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를 개혁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논하도록 한다.

영국에서 행정기관이 실제적인 조사행위를 하는 것은 세부적인 법률로 인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주로 현황이나 문제상황을 점검하여 개선점을 도출하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데이터의 수집, 문서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대표적인 분야로는 교육, 의료 및 돌봄서비스, 식품규제 등이 있다. 교육의 경우 Office for Standards in Education, Children's service and Skills (Ofsted)에서 관리하고, 의료 및 돌봄서비스의 경우 Care Quality Commission (CQC)에서, 식품관리의 경우 Food Standard Agency(FSA)에서 관리한다. 그리고 도시 혹은 공간계획에 대한 조사의 경우 Planning inspectorate (PINS)에서 따로 시행한다. 각 기관별로 시행하는 행정조사는 각 기관별로 규정하는 법률안이 따로 존재하는데, Ofsted의 경우 교육법 1996 (Education act 1996)에 각종 학교 및 교육제공기관을 평가하고 조사하는 권한 및 책임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으며, CQC는 보건 및 사회돌봄법 2008 (Health and Social Care Act 2008)에 의료서비스 및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규정해 놓았으며, 더불어 돌봄법 2014(Care Act 2014)를 통해서 CQC가 요양원 (Nursing Home)을 비롯한 기타 서비스 제공자들까지도 다 규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해 놓았다. FSA의 경우 식품기준법 1999 (Food Standard Act 1999)를 통해서 식품의 안전과 기준을 규제하는 권위를 FSA에 부여하고 있다. Inspection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현장조사를 의미하지만, 여기

에는 정보를 수집하거나 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행위 등이 다 포함이 된다. 각 세부 법령에 해당 행정청의 권한, 조사 방법 등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다. 한편으로는 영국의 행정기관의 조사행위를 규정하는 법률도 존재하고 있어서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행정조사의 권한을 살펴볼 수 있다.

## 2. 행정조사의 유형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식품기준청, Ofsted, CQC 등의 개별 기관을 규정하는 법률에서 조사를 시행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일반적인 행정법상의 규정으로 조사를 시행할 수도 있다.

### 가. 행정법상 규정에 따른 행정조사 유형

**공공기록물 사용:** 정부는 필요에 따라 공공기록물을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주로 정부의 공적 서류에 대한 것이며, 토지등록부, 법원기록 등의 공공기록물을 의미한다. 특정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른 조사를 시행할 때 다른 행정청 소관의 기록이나 법원의 기록 등을 요청할 수 있고 다른 행정기관은 이에 협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적 기록물 (Private record)의 사용:** 정부는 필요한 경우 금융거래기록, 통화기록, 의료기록 등을 열람할 수 있다. 물론 이런 기록물들은 데이터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기 하지만, 정부가 조사를 요청할 시에는 협조를 해야한다. 물론 이러한 정보공개 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영장이나 허가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영장이나 허가를 받은 후에는 사적기록물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감시 (Suveillance):** 정부는 필요한 경우 법원의 동의 혹은 영장을 받아 CCTV 자료, 통화자료, 문자 내역 등을 수집할 수 있다. 물론 영장없이 불가능하며, 이는 주로 범죄행위라던가 경찰 수사에 필요한 경우에 많이 쓰이고 있으나, 그 외의 경우에도 필요하다면 인정될 수 있다.

**인터뷰(Interview)** 필요한 경우 정부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자에 대한 면담을 통해서 필요한 정보를 도출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으나 강제적으로 면담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법원의 동의를 필요한 부분이다.

## 나. 식품·교육·돌봄 영역에 있어서의 행정조사

### 1) 식품 관련 행정조사

FSA의 경우에는 식품기준법이 1999년 통과되면서 설립되었고, 해당 법에는 식품기준청이 행할 수 있는 행정조사에 대한 기능 및 권한이 규정되어 있다. 특징적인 것은 지방정부의 식품안전 규제에 대한 평가도 FSA의 권한이라는 점이다(김신, 2013).

1999년 광우병 이전에는 식품안전에 대한 책임은 농림어업식품부, 보건부, 지방정부 등에 분산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육류위생에 대한 책임은 농림어업식품부 관할이지만 실제로 시장에서 소비되는 식품 위생에 대한 점검은 지방정부의 책임하에 있었다. 광우병 사태 이후 식품의 안전에 대한 불신이 커지게 되고 이러한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 각 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기능들을 한데로 통합하여 FSA를 창설하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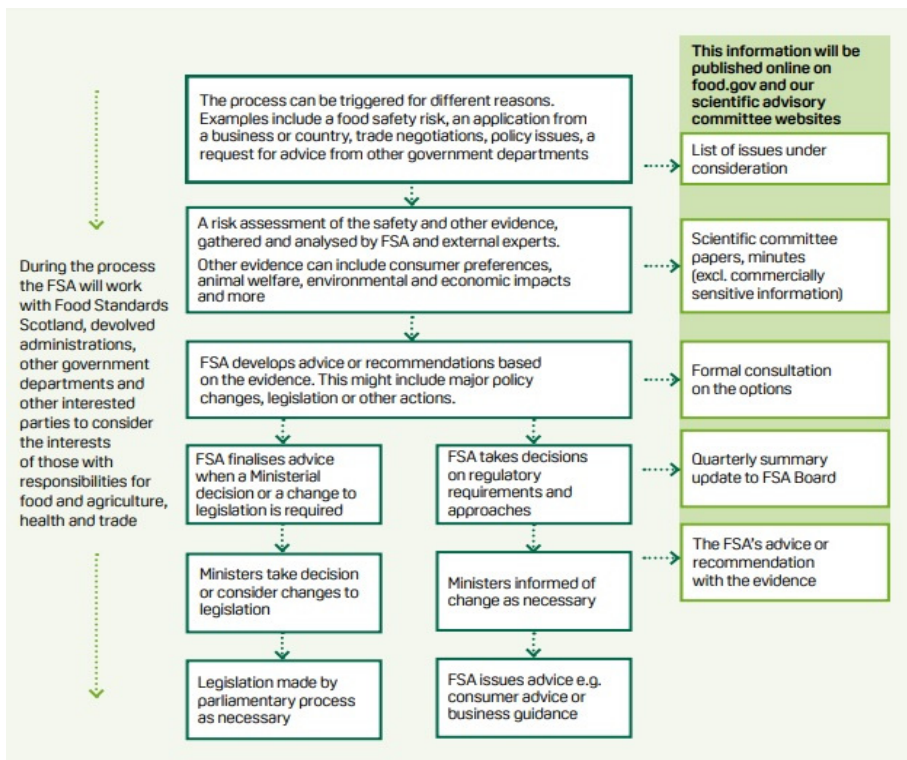
FSA는 위험기반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한다. 즉 행정조사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험 평가를 기반으로 해야 하며, 위험 평가(Risk Assessment)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진다<sup>55)</sup>.

- ① 위험평가는 다양한 이유로 시작된다. 국가제도의 변화일 수도 있고, 무역협상의 조건일 수도 있으며, 다른 정부기관으로부터 요청이 들어오거나 정책적 이슈로 발생하거나 등등의 이유로 시작된다.
- ② FSA 내부의 전문가들과 위촉된 외부의 전문가들을 통해 여러 증거자료들을 수집한다. 식품의 안전관리와 위생에 대한 부분 뿐 아니라 동물복지, 소비자 선호, 환경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까지 포함해서 증거를 수집한다. 외부 전문가들의 경우 독립적인 과학자 자문위원회 (Independent Scientific Advisory)가 있어서 이 곳에서 결정을 하며, 또한 내·외부 전문가들의 협력 전문가 그룹(Joint Expert Group)을 통해서도 논의한다.
- ③ 증거에 기반해서 FSA는 정책대안이나 자문을 개발한다. 정책적 변화, 입법화, 별개의 새로운 정책 추진 등의 여러 대안들을 제시할 수 있다.
- ④ 부처의 정책적 결정이나 입법이 필요한 경우 FSA는 정책의견 (Advice)을 정리하여 해당 부서에 통보하며, 아니면 정책적 변경이 필요하다고 FSA가 직접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 ⑤ Advic의 경우 해당 부처에서 받아들일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고 받아들이기로 했다면 의회에서 입법을 시작한다. FSA가 직접 결정을 내린 경우 해당부서에 통보하게 되고 FSA에서 바뀐 내용에 대한 소비자/기업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게 된다.

55) <https://www.food.gov.uk/sites/default/files/media/document/fsa-risk-analysis-flowchart.pdf>

- ⑥ 이 모든 과정에서 FSA는 스코틀랜드 식품기준청, 스코틀랜드/웨일즈/아일랜드 자치정부, 그리고 식품, 농업, 보건, 무역에 관련된 모든 정부기관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진행한다. 위험 평가의 절차는 기본적으로 4국가 접근 (Four nations approach)법을 따른다. 영국의 경우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북아일랜드, 웨일즈 4개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4개국간의 협력체계를 통해서 이루진다는 의미이다.

〈그림 6-6〉 FSA 행정조사 프로세스



## 2) Ofsted의 학교에 대한 조사

Ofsted는 각급 학교에 대한 교육의 내용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학교'에는 조지교육기관 (Early years provision) 국/공립, 사립학교, 계속교육기관 (Further education)을 포함하고 있다. 학교의 감독에 대한 내용은 교육 및 조사법 2006 (Education and Inspection Act 2006)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독립적이고 외부적인 평가를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되어 있다.

Ofsted의 조사 절차는 2019년을 기점으로 조금 변화를 했다. Ofsted는 조사를 효율화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고, 2019년에 새로운 조사 전략을 제시하였다.<sup>56)</sup> 기존의 시험 결과를 검토하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실제로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직접 살펴보도록 하였다. 따라서 시험 성적이 좋으면 잘 가르치고 있다고 판단하던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서, 실제적으로 교육과 커리큘럼이 학습의 과정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검토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검토의 결과에 따라 총 4가지의 조사 프레임을 잡았는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다<sup>57)</sup>. 가장 우선적으로는 교육의 질 (quality of education)이다. 교육의 질을 평가하는데는 크게 3가지 부분으로 나눈다 첫 번째는 교육의 의도 (intent)이다. 여기서는 커리큘럼이 모든 학생들을 위해서 잘 짜여졌는지, 특히 장애학생이나 특별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을 잘 고려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커리큘럼이 미래의 취업을 위해서 충분한 기술과 지식을 전수하고 있는지, 그리고 커리큘럼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다 가르치고 있는지, 교사는 이를 다 가르칠 역량이 있는지를 검토한다. 두 번째는 교육의 실행 (implementation)이다. 이는 교사들이 해당 과목과 과정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있는지, 그리고 학교관리층은 효율적인 교육을 위한 지원을 충분히 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교사들은 가르칠 때 해당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해야 하고 적절한 토론을 이끌어내야 하며, 학습자들이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한다. 그리고 교육은 학습자들이 장기적으로 기억하며 새로운 지식에 통합하고 응용해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내재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사들은 교육자료와 교재를 선택함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이고 적절한 자료들을 선택해야 한다. 교육의 실행 분야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평가를 시행한다. 교육의 질 중 세 번째 부분은 교육의 영향 (Impact)에 대한 부분이다. 학습자들이 커리큘럼을 통해서 세부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정부에서 규정한 자격을 맞출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검증하는 것이다. 이는 각종 국가 시험을 통해서 확인해볼 수 있다. 또한 학습자들이 상위 교육기관이나 훈련기관에 진학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중심으로 확인한다.

교육의 질과 더불어 서비스 질 측정에서 중요한 부분은 행동과 태도 (Behaviour and Attitude)에 대한 부분이다. 이는 학습자의 행동이 교육의도에 맞게 변화하고 있는지, 학습자가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지, 학습자의 출석율이 얼마나 높은지, 그리고 학습자와 교사간의 관계는 긍정적이고 상호존중하는 관계인지, 그리고 왕따 등의 문제는 없는지 있다면 교사가 얼마나 빨리 개입하는지 등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다.

세 번째는 개인적 발전 (Personal development)에 대한 내용이다. 커리큘럼의 내용이 단순

56) <https://www.gov.uk/government/news/ofsted-is-changing-how-it-inspects-schools>

57)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education-inspection-framework/education-inspection-framework#what-inspectors-will-consider-when-making-judgements>



하 아카데미와 직업교육을 넘어서서 학습자의 폭넓은 발전에 기여하는지, 학습자의 흥미와 재능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다. 그리고 커리큘럼이 내용이 학습자의 회복력, 자신감, 독립성을 키워주고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 학습자들이 현대 영국의 시민으로 영국의 전통적 가치,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는 지 등의 내용을 가지고 평가한다.

네 번째는 리더십과 관리능력에 대한 평가이다. 이는 학교들의 리더들(학교 관리자)이 수준 높은 교육, 포괄적 교육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비전을 직원들과 함께 공유를 하는지를 검토하며, 또한 리더들이 교사들의 교육방법과 해당 분야 지식에 조언을 줄 수 있을만큼의 역량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그리고 학교 관리자가 지역사회, 부모, 고용주들과 적절한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는지, 현재 교사들이 괴롭힘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는지, 그리고 학습자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규정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한다.

이러한 4가지 측면을 검토하여 총 4개의 등급으로 판정한다. Grade 1은 우수 (Outstanding), Grade 2는 양호 (good), Grade 3는 개선필요 (Requires improvement), Grade 4는 부적절 (inadequate)을 의미한다. 모든 기관들은 기본적으로 4년에 한 번씩 조사를 받게 한다.<sup>58)</sup> 그러나 신설학교의 경우 신설 시점에서 3년째 되는 해에 조사를 시행한다. 특별한 경우라면 학교는 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쉽지 않다. 우수 (Outstanding), 양호 (Good)를 받은 학교들의 경우 4년 동안 그 결과가 유효하고 4년 후에 평가에서는 새로운 등급을 매기지는 않는다. 이는 그 학교가 해당 등급을 유지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평가 중심으로 진행이 된다. 이것을 무등급 평가 (ungrade judgement)라고 한다. 다만 해당 학교가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 혹은 이전보다 질이 더 높아졌다라는 증거를 확보했을 때는 다시 등급평가로 (grade judgement) 전환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무등급평가 이후 1-2년 후에 등급평가를 시행하는 것이 보통이다.

2012년 5월 15일에서 2020년 11월 13일까지는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에서 우수(outstanding) 등급을 받은 학교의 경우 정기적인 조사에서 면제되었으나, 이후로는 다시 정기조사에 적용을 받게 되었다. 이전에 면제받은 모든 학교들은 2025년 8월 1일 전까지는 등급평가 혹은 무등급평가를 받아야하며, 만약 무등급평가에서 우수 등급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등급평가로 이어지게 된다.

개선필요 (Requires improvement)의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30개월 내에 등급평가를 받게 된다. 만약 2연속으로 개선필요 등급을 받는 경우에는 조사관이 직접 개선진행상황을 일일이 모니터링하게 되며, 30개월 후 다시 등급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되어있다. 부적합(Inadequate)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학교는 Ofsted의 '우려' 학교 목록에 포함되게 된다. 이것인 해당 학교가

58) <https://cascaid.co.uk/ofsted-inspection-framework/process/>

매우 취약한 약점을 가지고 있거나 특별한 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려학교의 목록은 교육부 장관이 직접 관리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 목록에 포함되게 된다. 그리고 30개월 이후에 다시 등급평가를 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조사는 조사 전날 오전 10시30분에서 오후 2시 사이에 공지가 된다. 가끔은 공지가 없이 불시에 조사를 나갈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도착 15분전에 공지가 된다. 조사가 시작되면 일반적으로 2일 (2 full days) 동안 진행된다. 우수 혹은 양호 등급이 유지되는 학교이거나, 아동수가 150명 미만의 학교의 경우 1일간 진행될 수도 있다. 조사팀의 인원은 학교의 성격과 크기에 따라 다양하게 배치가 된다. 조사관들은 수업과정을 관찰하며 등급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해서 증거를 수집한다. 조사관들은 학교에 대해서 학생들과 학교 스태프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며, 학교의 객관적·외부적 성적에 대한 자료 역시 고려한다. 수석조사관 (The lead inspector)는 조사기간동안 교장과의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교사들과 스태프들이 조사의 과정을 이해하고 평가를 내리는 기준과 자료를 합당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조사관들은 수석조사관의 동의하에 교장 및 주요 간부들을 수업에 참관하도록 초청할 수 있다. 그리고 조사관들은 조사의 최종단계에서의 미팅에 교장이 참여하도록 초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조사관들은 교사 및 기타 스태프들에게 적절한 피드백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최종회의에서 수석조사관은 1) 각 항목에 대한 등급 공개, 2) 등급은 추후에 이의신청에 따라 바뀔 수도 있으니 일단 비밀유지 공지 3) 보고서가 어떻게 공개될 것인지, 4)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 절차에 대한 소개 등을 공지하여야 한다.

Ofsted는 조사완료 30일안에 전자형식의 결과지를 각 학교에 보내주어야 하며, 38일안에 정식보고서를 출판하도록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그리고 발간된 보고서는 교장, 지방정부 등으로 바로 발송하도록 하였다.

### 3) 돌봄서비스관리 위원회 (Care Quality Commission: CQC)

영국의 경우 사회적 돌봄 (Social care)와 의료서비스 (Health care)를 모두 정부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으나, 70년대 경제위기 이후 돌봄서비스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형태로 변해가기 시작했고, 현재는 돌봄시장에서 민간행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상태이다. 2013년 재가서비스의 경우 제공시간 기준 민간영리기관의 비중이 89%이며, 기관의 숫자해보면 2014년 민간의 영리와 비영리 제공기관의 수는 전체 92%를 차지하고 있으며, 요양 시설 역시 2014년 기준 86%가 영리기관이 차지하고 있다 (전용호, 2018). 정부는 돌봄서비스를 위탁으로 운영하며 민간의 비중이 커지는 대신에 돌봄서비스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돌봄서비스의 질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을 정부에 남겨두었다. 이러한 정부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 바로 CQC이다.

사회돌봄의 경우 CSCI (Commission for social care inspection)이 담당하고 있었고 CQC는 주로 보건의료분야 서비스의 질 관리를 담당하던 기관이었으나 후에 CQC로 통합되었다. 이는 2014년 돌봄법 (Care act 2014)에서 규정되었는데, 그간 성인돌봄과 관련된 여러 법들을 통합하고 지방정부의 관리를 강화하며 동시에 통일된 돌봄 서비스의 질 관리 기구를 일원화시킨 것이다. 지방정부의 경우 서비스의 질 관리보다는 지역의 서비스 제공기관들과의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통해서 도산이 발생하거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지 못할 상황에 처하는 등의 기관의 위험요소들을 미리 관리하고 대비책을 마련해 놓는 것을 주요 책임으로 삼고 있다. 이는 서비스 제공기관이 갑자기 서비스를 그만두거나 도산을 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던 일반 돌봄수요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여된 책임이다.

CQC의 조사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진다<sup>59)</sup>. 1단계는 우선 누구를 조사할지 공급 기관을 선정하는 것이다.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는 않으며, 영국 전역에서 거주시설과 비거주시설로 나누어 검사대상기관을 확정한다. 거주시설의 경우 잉글랜드 전역에서 최소 2,000개의 침상을 가지고 있거나, 16개 이상의 지자체에서 1000-2000개 사이의 침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 3개 이상의 지자체에서 지역의 총공급량의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시에 1000-2000개 사이의 침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 CQC의 조사대상이 된다. 비거주시설의 경우 잉글랜드 전체적으로 30,000시간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혹은 2,00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그리고 주당 800시간, 개별적으로 30시간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조사대상이 된다. 즉 주거시설의 경우 시장지배력을 중심으로 조사 대상 기관을 선정하고 있으며 비주거시설의 경우 서비스 제공 시간과 대상자 수를 기준으로 집중도 높은 기관을 선정하는 것이다 (전용호,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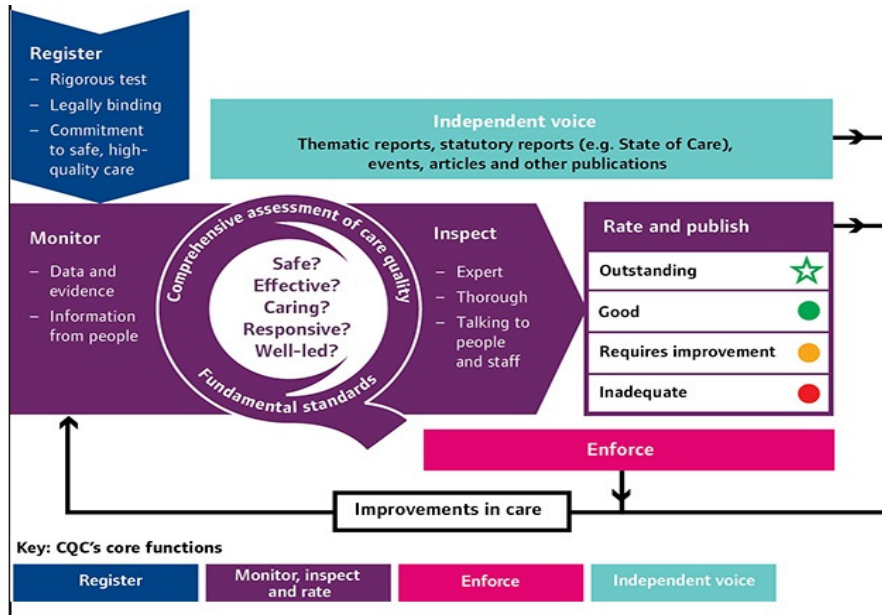
2단계는 모니터링 단계인데, 이는 대상이 되는 기관들의 재정 상태와 서비스 질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이다. 이어 3단계는 이 중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기관에 대한 추가 점검 단계이다. 이 때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기본자료 이외에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CQC는 우선적으로 기관의 사업적 측면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관의 재정과 소유구조에 대한 정보를 요청한다. 특히 지난 12개월간 분기별 재정 실적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질 지수 (Quality indicator), 거래지수 (Trading indicator), 부채지수 (Debt indicator), 질적인 위험 요인 (Qualitative risk question) 등 5가지에 대한 표준화된 위험지수를 점진하게 된다.

4단계의 경우 3단계를 거친 기관들 중 파산의 위험이 높거나 안정적인 운영이 불확실한 기관에 대한 추가점검을 시행하는 단계이다. CQC는 이 단계에서 재정상태, 자본구조의 변화, 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들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만약

59) 이하에서는 Care Quality Commission Market Oversight of 'difficult to replace' providers of adult social care: Guidance for providers, London, 2015.의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 정리함

이러한 대응방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파산의 위기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5단계로 이동하게 된다. 5단계는 CQC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단계이다. CQC는 주주나 대출기관으로부터 자금이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약속을 받고, 서비스의 지속적인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한다. 이때 CQC는 두 가지의 규제를 시행하는데, 우선은 독립적인 사업심사 (Independent Business review:IBR)를 시행할 수 있다. 이는 그룹의 구조, 재정여건, 미래의 계획 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법적 재정적 구조, 현재 재무상황, 구조조정 계획 등에 대해서 평가한다. 두 번째는 위험감소 계획서 (Risk Mitigation Plan)의 제출 요구이다. 이 계획서는 당면 위험 과제에 대한 감소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해당 기관의 자구계획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어야 한다. 이어지는 6단계는 CQC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호전되지 않아 서비스 제공의 연속성이 위협받는 경우, 소비자들의 보호를 위해서 해당 지자체에 조기통보하는 단계이다. 이는 1) 기관의 파산, 2)기관이 규제대로 자신의 의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3) 이 두 가지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될 때 시행된다. 파산과 서비스제공의 중단 등 예상 가능한 여러 사항에 대해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향후 계획을 제시한다. 이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했을 때 관할지방자치단체에서 미리 시간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림 6-7〉 CQC 조사 절차 요약



출처: <https://www.cqc.org.uk/guidance-providers/regulations-enforcement/how-guidance-fits-cqcs-operating-model>

CQC는 정부의 서비스 제공기능이 민영화되었지만 서비스의 질을 정부가 관리해야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성립된 기관이다. 즉 정부가 더 이상 서비스의 제공을 책임지지 않고, 서비스 제공-민간기관, 감독관리-정부 라는 틀 안에서 나온 것이다. 이러한 경우 서비스 직접 제공 기능을 포기함으로써 정부의 역량을 서비스 제공자 감독에 더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서는 이러한 서비스 제공 감독 기능을 통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많은 규제 비용과 노력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CQC의 경우 1차적으로 시장경쟁을 통해 자율적인 서비스의 질 관리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며, 두 번째는 시장경쟁에서 선택받지 못해 어려워진 기관들에 대해서 이용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시장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관리의 장점은 서비스의 질이 낮은 기관의 경우 소비자들의 선택을 못받게 되어 자율적으로 시장에서 퇴출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돌봄서비스의 경우 경험재로서 경험해보기 전에는 품질에 대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선택의 경로의존이 강하다. 따라서 서비스의 한번 입소하거나 서비스를 받게 되면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쉽게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장에서 퇴출되는 기관의 경우에도 서비스 이용자에게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 CQC의 조사는 이러한 이용자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시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3. 행정조사 관련 법·제도 현황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서 행정조사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영국은 그러한 기본법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행정청의 기본적인 정보수집에 대한 절차와 권한을 다룬 행정절차법상의 규정들이 존재하고, 식품/교육/돌봄 등 각 세부 분야별로 조사 절차, 권한,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세부 분야의 각 법률들을 제외하고 행정청이 조사를 시행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절차를 규정한 법률들 중 대표적인 것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Regulation of Investigatory Powers Act 2000 (RIPA)<sup>60</sup>): 본 법은 공공기관이 감시와 관련된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는 정보부서와 경찰 등에서 사용하는 것이나 다른 기관들에게도 동일한 절차가 적용된다. 주로 커뮤니케이션 관련 정보를 습득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으며, 전산화된 개인정보, CCTV를 통한 감시자료 등에 접근할 수 있는 상황, 상황별 절차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 (PACE): 본 법은 범죄사건에 있어서 경찰이 수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로 불시검문 및 수색에 대한 절차, 체포절차,

60)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00/23/introduction>

조사 및 자백절차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sup>61)</sup> (FSMA): 본 법은 금융시장에서 제공되는 금융서비스를 규제하는 법이다. 영국에서는 금융감독위원회 (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가 금융 규제를 통해 여러 금융서비스 제공자들을 감독하고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즉 금융서비스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제공되며 경쟁을 통해서 소비자가 적절하게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FSMA 하에서 영국정부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우선은 무인가 금융서비스에 대한 조사이다. 정부는 개인이나 회사가 정부의 인가를 받지 않은 금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조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정부는 투자자들에게 거짓 정보를 흘리거나 의도적으로 금융시장을 조작하는 사안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금융당국은 또한 소비자가 잘못된 조언을 바탕으로 잘못된 금융상품을 소비했을 때 관련된 상품판매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그리고 금융회사들이 정해진 공시를 시행하지 않거나 적절한 기록물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조사를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금융 범죄에 대해서도 직접 조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모든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 정부는 정보요청, 감사 실시, 금융회사나 개인에 대한 제재 부여 등의 방식을 활용한다.

Health and Safety at Work Act 1974: 이 법은 고용주와 노동자간의 관계에서 작업장에서의 개인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고용주가 노동자들의 복지와 건강,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떠한 의무를 수행해야하는지를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 법에 따라서 작업장에서 일어난 산재사고 등에 대해서 조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산재사고에서의 원인에 대한 파악, 미래 사고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정도를 평가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한 부적절한 환기시설, 유독물질 노출, 장비 관리 부실 등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여러 작업조건에 대한 조사권한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작업 위험 분석이 잘 되었는지, 안전에 대한 노동자들에 대한 고지는 잘 되었는지를 조사할 권한을 가지며, 안전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검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서 해당 행정청은 다양한 수단을 동원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작업장에 대한 감사 (Inspection), 정보 요청 및 문서 요청, 그리고 안전 규제를 지키지 못한 고용주들에 대한 고발권 역시 가지고 있다.

Data Protection Act 2018 (DPA): 이 법은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에서 개인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정부는 정보위원회사무처 (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 ICO)를 두고 ICO에 다양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해당 법 아래 정부는 조직에 의한 개인정보 데이터 처리에 대한 여러 활동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우선적으로 데이터 누출이 일어날 시에는 그 원인에 대한 분석과 미래 재발방지를 위한 다양한

61)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00/8/introduction>

정책방안들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할 책임을 진다. 그리고 해킹과 같은 사이버 공격으로 개인정보가 누출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 조사할 책임을 진다. 그리고 데이터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위반사항들, 예를 들면 적절한 동의없이 개인정보에 접근한다던가 동의 없이 개인의 정보를 누출하려한다던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조사할 권한을 가진다. 그리고 적절한 동의없이 개인정보가 누출되거나 외부에 팔릴 경우 이에 대해서도 조사할 권한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보호법 이후 데이터에 대한 본인의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 발생하는 민원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

#### 4. 행정조사 및 행정부담관리기관

앞서 본 바와 같이 영국의 경우 행정조사 전체를 총괄하는 기관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세부 사항에 따라 식품 관련된 사항은 FSA, 교육에 관련된 조사는 Ofsted, 돌봄서비스의 질에 관련된 부분은 CQC에서 각각 맡아서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즉 개별기관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행정조사를 시행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행정부담과 관련해서는 영국에 가장 대표적인 기관은 비즈니스에 있어서 행정부담을 관리하는 규제정책위원회(Regulatory Policy Committee: RPC)가 있다. RPC는 독립된 위원회로서 증거와 분석에 기반하여 정부 부처에 자문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RPC의 역할은 우선 새로운 규제가 들어올 때 규제의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행정부담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제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RPC는 정부부처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 RPC는 또한 정부의 규제 개혁이 펼쳐질 때 이것의 집행을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새로운 규제 개혁이 새로운 행정부담으로 이어질까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RPC 외에도, 영국에서는 더 나은 규제위원회(Better regulation Executive: BRE)와 비즈니스 규제개혁 그룹(BRRG) 등이 있다. 이러한 정부기관들은 RPC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정부의 규제가 더 정부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방안을 고안하고자 하였다. 규제들에 대한 영향평가, 규제 축소 등을 통해서 정부의 행정 부담을 덜고 동시에 민간이 좀 더 시장친화적으로 자연성장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 5. 영국 사례의 시사점

결론적으로 볼 때, 영국은 우리 나라의 행정조사와 같이 단일화된 법 체계로서 관리하고 있지 않다. 교육, 돌봄, 식품 안전 등에서 개별법률로서 해당 관청의 행정조사 권한과 기능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영국의 행정조사분야의 개혁을 보면 다음과 같이 간략히 정리해볼 수 있다.

우선 볼 수 있는 것은 권한의 통합과 관련된 부분이다. 식품기준청의 경우에서나 CQC의 기능에서 볼 수 있듯이, 기존의 흩어져 있는 권한을 하나로 통합하고 중복적인 기능을 제거하였다. 식품기준청의 경우에는 다양한 조사기능을 통합하여 하나의 신규 기관으로 창설한 케이스이고, CQC의 경우는 분리되어 있던 기관 2개가 하나가 다른 하나를 흡수하는 형태로 만들어진 것이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중복기능의 제거를 통해 비용을 최소화하고 권한의 통합을 통해 보다 효율화된 조사체계를 확립하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두 번째 변화의 흐름은 Ofsted의 조사에서 볼 수 있는데, 조사의 기간과 내용에 대한 유연성의 확보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Ofsted의 조사는 4년에 한번, 신규 학교의 경우는 3년에 한번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우수/양호의 등급을 받은 경우 full inspection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무등급평가로서 현재의 수준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하는 수준의 조사만 시행하고, 서비스의 질이 떨어졌거나 향상되었다는 증거 혹은 자료가 있을 경우에만 다시 full inspection을 시행한다. 그리고 개선요구/부적절 등급을 받은 학교의 경우에는 1-2년 사이에 다시 평가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적극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즉, 4년이라는 기간에 얽매이지 않고 우수한 기관에는 현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금은 느슨하게 관리하고, 부적절한 기관에 대해서는 좀 더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경우 감독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는 좀 더 역량을 집중해서 부족한 기관들을 관리할 수 있게 되므로 업무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조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제3절

# 일본의 행정조사



## 1. 행정조사의 개요

### 가. 행정조사의 개념

일본에서 행정조사의 정의나 체계에 대해서 다양한 학설이 존재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행정조사를 “행정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조사(정보수집) 활동”으로 보아 “정보의 수집·가공·이용·관리·개시라고 하는 정보관리행정의 제1단계”로 정의하는 학설이 유력하다.<sup>62)</sup> 종래에는 행정조사를 즉시강제의 수단으로 인식해왔으나, 세무조사의 법적 성격에 관한 논의를 바탕으로 행정조사를 즉시강제에서 분리하여 비권력수단에 의한 정보수집활동으로 보는 관점이 강조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sup>63)</sup>

행정기관의 정보수집 활동은 첫째, 출입검사나 보고 징수 등 적극적·능동적인 성격의 것과 당사자의 신고나 신청에 의한 소극적·수동적인 성격의 것, 둘째, 통계조사와 같이 일반적인 조사와 구체적인 처분의 집행을 위한 것과 같이 개별적인 것, 셋째, 수집자체의 유형으로서 임의적인 것과 강제적인 것 등으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행정조사는 적극적·능동적 정보수집 활동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sup>64)</sup>

### 나. 행정조사의 절차

일본에는 우리나라의 「행정조사기본법」과 같이 행정조사의 기본원칙, 절차와 방법 등을 규율하는 일반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행정절차법 제정 당시에는 행정조사의 법적 통제 필요성이 논의되긴 했었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한 채 행정조사에 해당하는 ‘보고 또는 물건의 제출을 명하는 처분, 그 밖에 그 직무의 수행상 필요한 정보의 수집을 직접 목적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처분 및 행정

62) 芝池義一、行政法総論講義, 有斐閣, 2006, pp.267-268 - 최환용·장민선, 국민 중심의 행정조사 관련 법제 개선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6, 81면에서 재인용.

63) 최환용·장민선, 앞의 보고서, 82면.

64) 藤原静雄、行政調査論の現状と課題—行政情報管理の視点を踏まえて—, 筑波ロー・ジャーナル5号, 2009, pp.178-179.

지도'를 적용 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제3조제1항제14호).<sup>65)</sup>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의 범위 내에서 정확한 의사결정을 위해서 행정조사가 필요한 경우 허용되어야 하지만, 행정기관이 강제적인 수단에 의해서 정보를 수집할 경우 조사 상대방의 재산권이 나 사생활의 비밀과 보호 등이 제한 또는 침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인 통제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sup>66)</sup> 일반적으로 행정조사에 응할 의무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강제력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가 필요하고, 임의조사에서는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법령에 그 요건이나 절차, 한계가 규정되어 있다면 그것을 따라야 할 것이다. 경찰관의 직무질문에 대해서도 임의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상 강제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고 형사범죄 수사로 이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률상 요건 및 한계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행정조사의 절차는 일반적으로 출입검사의 경우에는 해당 권한을 증명하기 증표로서 해당 공무원의 신분증의 휴대 및 제시가 필요하고, 이는 개별 법령에 다수 규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사전통지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전통지를 하게 되면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통지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다수이다. 개별 법령에 따라서는 시간적·장소적 제한을 두고 있는 경우도 있다.<sup>67)</sup>

## 2. 행정조사의 유형

### 가. 대상에 따른 구분

행정조사는 조사대상에 따라서 각종 통계조사와 같이 다수를 상대방으로 하는 일반적 조사와 자료 제출 명령이나 출입검사와 같이 상대방이 특정되는 개별적 조사로 구분된다.<sup>68)</sup> 일반적 조사는 조사대상자의 임의적 협력을 얻어서 실시되므로 조사에 응하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가 가해지지 않는 반면에, 개별적 조사는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조사 대상에게 일정한 사항의 보고나 자료제출을 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출입검사나 질문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한 제재 조치가 함께 규정되어 있다.<sup>69)</sup>

65) 최환용·장민선, 국민 중심의 행정조사 관련 법제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6, 81-82면.

66) 최환용·장민선, 앞의 보고서, 87면.

67) 소방법§4①단서(개인의 주거 출입 제한), 건축기준법 § 12⑥단서(주거에 출입할 때에는 거주자의 승낙을 요함), 도시계획법 § 25④ 등 (일출 전·일몰 후 토지 출입 제한), 국세징수법§ 143(야간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 등

68) 최환용·장민선, 앞의 보고서, 82면

## 나. 임의조사와 강제조사

일본에서는 행정조사의 강제성 유무에 따라, 특히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얻어서 이루어지는 임의조사, 상대방의 저항을 배제하더라도 행할 수 있는 실력 강제조사, 벌칙에 의하여 담보되는 간접 강제조사로 분류하는 것과, 상대방에게 작위의 의무를 부과하는 의무부과형의 조사, 행정기관의 실행행위를 수반하는 사실행위로서의 조사라고 하는 분류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sup>70)</sup>

여기에서 임의조사는 조사에 대응 여부가 상대방의 재량에 달려있는 것으로서 조사에 응하지 않아도 처벌되지 않는다. 반면에, 간접 강제조사는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고 실력을 행사하여 조사할 수 없다.<sup>71)</sup> 예컨대,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은 “후생노동대신이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장기조정기관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게 하거나 그 직원을 장기조정기관의 사무실에 들어가게 하여 장부, 서류 및 기타 재산을 검사하거나 관련자에게 심문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검사나 심문에 대해 강제력이 인정되지는 않더라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사람에게는 동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최대 50만엔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득세법 제234조제1항의 직원의 질문검사권과, 식품위생법 제28조제1항의 보고, 출입검사, 수거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강제조사는 강제력에 의해 저항의 제거가 허용된 조사로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 또는 국제징수법상 조사대상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sup>72)</sup> 독점금지법 제102조제1항은 “형사사건의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 임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약식법원의 판사가 사전에 발급한 허가에 의하여 조사, 수색 또는 압수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107조제1항은 “위원회 직원은 검사, 수색 또는 압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자물쇠를 제거하거나 봉인을 열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법칙단속법 제2조,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규정된 조사도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밖에도 상대방의 수사 수락의무가 있지만 강제적 수단이 규정되지 않은 것(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제2항)도 있고, 급부 관리 분야에서 관련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급부금이 거절되는 것(생활보호법 제28조제1항 및 제5항)<sup>73)</sup>과 같이 처벌이 아니라 행정상 제재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다.<sup>74)</sup>

69) 최환용·장민선, 앞의 보고서, 82면.

70) 深澤龍一郎, 行政調査の分類と手続, JURIST 増刊 新・法律学の争点シリーズ (行政法の争点) 8号, 2014, p.56 - 최환용·장민선, 앞의 보고서, 82면에서 재인용.

71) 宇賀克也, 行政法概説Ⅰ, 有斐閣, 2020, p.148

72) 宇賀克也, 行政法概説Ⅰ, 有斐閣, 2020, pp.149-150

73) 생활보호법 제28조 ⑤ 보호실시기관은 보호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하거나 입입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하거나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검진을 받으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에는 보호의 개

## 다. 조사수단에 따른 분류

행정조사는 조사수단에 따라 질문, 출입검사, 보고 징수, 자료제출 명령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러한 조사들은 간접강제에 수반하는 사실행위의 성격을 가지지만, 보고의 징수나 자료 제출 요구는 상대방에게 작위의무를 부과하는 입법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의무부과형 조사 또는 행정행위 형식의 조사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sup>75)</sup> 절차적인 측면에서는 자료 제출 요구는 제출해야 할 자료의 범위 등이 사전에 특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전통지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는 반면, 출입 검사는 대부분 증거인멸의 우려 때문에 불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에 사전통지 절차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할 것이다.<sup>76)</sup> 조사수단별 행정조사 근거 규정의 예시에 대해서는 3.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 3. 개별 법령상의 행정조사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별 법령에 규정된 행정조사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며, 보고 징수, 출입검사, 질문, 수거, 자료제출 요구 등이 있다. 주요 규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식품위생법상 행정조사

식품위생법 제28조에는 보고와 출입검사, 수거 등의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행정조사가 범죄수사를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같은 법 제85조에서는 제28조제1항(제68조제1항 및 제3항에 있어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직원의 임검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28조제1항(제68조제1항 및 제3항에 있어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에 대해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시 또는 변경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보호의 변경, 정지 또는 폐지를 할 수 있다.

74) 宇賀克也, 行政法概說 I, 有斐閣, 2020, pp.150-151.

75) 芝池義一, 行政法總論講義, 有斐閣, 2006, p.269 - 최환용·장민선, 앞의 보고서, 84면에서 재인용

76) 최환용·장민선, 앞의 보고서, 84면.

**식품위생법 제28조** ①후생노동대신, 내각총리대신 또는 도도부현 지사 등은,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영업자 그 외의 관계자로부터 필요한 보고를 요구하고, 당해 직원에게 영업의 장소, 사무소, 창고 그 외의 장소에 임검해, 판매용으로 제공하거나 영업상 사용하는 식품, 첨가물, 기구 혹은 용기 포장, 영업의 시설, 장부 서류 그 외의 물건을 검사 시키거나 시험의 용도로 제공하는데 필요한 한도에서 판매 용도로 제공하거나 영업상 사용하는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을 무료로 수거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직원에게 임검검사 또는 수거를 시키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에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휴대시키고, 또한 관계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시시켜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은 범죄수사를 위하여 인정된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④후생노동대신, 내각총리대신 또는 도도부현지사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거한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의 시험에 관한 사무를 등록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출처 : 일본 전자정부 법령정보 검색사이트(<https://elaws.e-gov.jp/>)에서 검색한 결과를 번역한 것임>

## 2) 대기오염방지법상 행정조사

대기오염방지법에서는 행정조사의 근거로 볼 수 있는 규정은 제26조(보고 및 검사)이다. 이에 따르면 환경대신 또는 도도부현지사는 이 법률 시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관련 사업자 등에게 일정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하고,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 시설 등에 출입하여 법 준수 여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보고 및 출입검사는 대기오염으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 또는 생활환경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러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고 하여 그 한계를 제시하고 있으며, 출입검사시 공무원의 신분증 휴대 및 제시, 그리고 범죄수사의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조사 위반행위(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출입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35조에서 3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기오염방지법 제26조(보고 및 검사)** ① 환경부장관 또는 도도부현지사는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政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연발생시설을 설치한 자, 특정시설을 공장 또는 사업장에 설치한 자,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을 설치한 자, 일반분진발생시설을 설치한 자, 특정시설을 있는 자, 특정시설을 공장 또는 사업장에 설치한 자,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 일반 분진발생시설을 설치한 자, 특정분진배출자, 해체 등 공사의 발주자, 원청업체, 철거 등 공사를 하는 자, 특정 분진 배출자, 해체 등 공사의 발주자, 원도급자, 자체시공자 또는 하도급자 또는 수은배출시설을 설치한 자에 대하여 매연발생시설 현황, 특정시설 사고현황,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현황, 일반 분진 발생시설 현황, 특정 분진발생시설 현황, 해체 등 공사 발주자, 원도급자 또는 하도급자, 수은배출시설을 설치한 자에게 생시설의 상황, 해체 등 공사에 관한 건축물 등의 상황, 특정먼지 배출 등 작업의 상황, 수은 배출시설의 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또는 그 직원에게 매연발생시설을 설치한 자, 특정시설을 공장 또는 사업장에 설치한 자,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 일반 분진 발생시설을 설치한 자, 특정 분진 발생시설을 설치한 자,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 일반 분진 발생시설의 일반 분진 발생시설을 설치한 자, 일반 분진 발생시설을 설치한 자 또는 특정 분진 배출자의 공장 또는 사업장, 철거 등 공사에 관한 건축물 등, 해체 등 공사현장, 철거 등 공사의 현장 해체 등 공사의 현장, 해체 등 공사의 원도급자, 자율시공자 또는 하도급자의 영업소, 사무실 기타 사업장 또는 수은배출시설을 설치한 자의 공장 또는 사업장에 수은배출시설을 설치한 자의 공장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매연발생시설, 매연처리시설, 특정시설,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 일반분진발생시설, 특정분진발생시설, 일반분진발생시설, 특정분진발생시설, 특정분진배출시설, 일반분진발생시설, 특정분진발생시설 시설, 특정분진발생시설, 해체 등 공사에 관한 건축물 등, 수은배출시설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보고의 징수 또는 그 직원의 출입검사는 대기오염으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 또는 생활환경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기오염으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 또는 생활환경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의 권한은 범죄수사를 위하여 인정된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 

〈출처 : 일본 전자정부 법령정보 검색사이트(<https://elaws.e-gov.go.jp/>)에서 검색한 결과를 번역한 것임〉

### 3) 청정목재법상 행정조사

일본 임야청 소관의 합법벌채 목재 등의 유통 및 축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는 보고 및 출입검사의 근거가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주무대신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목재 관련 사업자에게 합법 벌채 목재 등의 이용 확보 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직원에게 목재 관련 사업자의 사무소, 공장, 사업장 혹은 창고에 들어가 장부 서류 그 외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등록 실시 기관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직원에게 등록 실시 기관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업무 상황이나 장부, 서류, 그밖의 물건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검사를 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신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휴대하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도록 하는 규정과 함께, 그러한 출입검사의 권한은 범죄수사를 위해서 인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여 범죄수사를 위해서는 별도의 영장 발부 등이 필요할 것으로 해석된다.

---

**합법벌채목재 등의 유통 및 축진에 관한 법률 제33조(보고 및 출입검사)** ①주무대신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한도에 있어서, 목재 관련 사업자에게, 합법 벌채 목재 등의 이용의 확보의 상황에 관해 보고를 시키거나, 또는 그 직원에게, 목재 관련 사업자의 사무소, 공장, 사업장 혹은 창고에 들어가, 장부, 서류 그 외의 물건을 검사시킬 수 있다.  
 ② 주무 대신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한도에 있어서, 등록 실시 기관에, 그 업무에 관해 보고를 시키거나, 또는 그 직원에게, 등록 실시 기관의 사무소에 들어가, 업무의 상황 혹은 장부, 서류 그 외의 물건을 검사시킬 수 있다.  
 ③전2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직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휴대하여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의 권한은 범죄수사를 위하여 인정된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

〈출처 : 일본 전자정부 법령정보 검색사이트(<https://elaws.e-gov.go.jp/>)에서 검색한 결과를 번역한 것임〉

### 4) 소방법상 행정조사

소방법 제4조에서는 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관계자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명하고 보고를 요구하거나, 소방공무원에게 모든 작업장이나 공중이 출입하는 장소 등에 출입하여 소방대상물의 관리상태에 대한 검사 및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일 개인의 주거지를 출입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승낙을 받거나, 화재발생의 우려가 현저하게 커서 특별히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관계 장소에 출입함으로써 관계인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되고, 검사 또는 질문을 통하여 알게된 사실에 대한 비밀누설

금지 조항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 제44조에서는 제4조 위반행위(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출입검사나 질문을 거부, 방해, 기피한 경우)에 대해서 30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소방법 제4조**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소방공무원(소방본부를 두지 아니한 시·읍·면·동에서는 해당 시·읍·면의 소방사무에 종사하는 직원 또는 상근하는 소방대원을 말한다. 제5조의3제2항을 제외한다.)에게 모든 작업장, 공장 또는 공중이 출입하는 장소 그 밖의 관계 장소에 출입하여 소방대상물의 위치, 구조, 설비 및 관리상태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주거지는 관계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 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현저하게 커서 특별히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외에는 출입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소방공무원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장소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소방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장소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업무를 함부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소방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장소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한 경우에 알게 된 관계인의 비밀을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출처 : 일본 전자정부 법령정보 검색사이트(<https://elaws.e-gov.go.jp/>)에서 검색한 결과를 번역한 것임〉

## 4. 일본 사례의 시사점

일본에서 행정조사는 행정법학계에서 학설상, 판례상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이 행정조사를 규율하는 일반법은 존재하지 않지만 개별법상 행정조사의 근거 및 한계가 상세히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계에서는 행정조사가 행정행위, 정책 결정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이라는 점에 대해 견해가 모아지고 있으며, 과거에는 일종의 즉시 강제로 취급되었지만 이제는 강제성의 유무에 따라서 강제력이 없는 임의조사와 강제력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 간접 강제조사와 실력행사를 수반할 수 있는 강제조사로 나누어지고 있다. 행정조사는 그 유형과 정도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어려워 행정절차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법적·절차적 통제의 필요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각 개별 법령에 근거 및 절차, 한계 등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었고, 특히 행정조사의 기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일정한 행정조사는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된다든지, 타인의 주거에 출입할 경우에 당사자의 승낙을 받도록 한다든지하는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행정조사와 범죄조사는 명확히 구분된다는 전제 하에 행정조사가 범죄수사의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규정도 다수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금지법 위반행위 조사, 국세청의 국세 등 징수를 위한 조사 및 수사행위 등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일본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금지법 위반혐의와 관련된 조사 또는 국세청의 체납자에 대한 조사가 행정조사의 예로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의 행정조사는 강제성 유무에 따라 임의조사, 간접강제조사와 강제조사로 나누어지는데, 이 중에서 처벌 규정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조사를 강제하는 간접강제조사가 우리나라 개별 법령에서 벌칙 규정을 수반하는 행정조사와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간접강제조사는 강제조사와 함께 반드시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고, 비례원칙,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조사목적에 반하지 않는 한 사전 통지 등 조사의 이유 및 계획을 공표하는 등 절차적인 원칙이 적용됨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벌칙을 통해 조사를 강제하는 것 외에도 생활보호법 제28조제1항과 마찬가지로 급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에 있어서 조사를 거부하게 되면 급부 제공을 거절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사례를 살펴볼 때 벌칙이나 과태료와 같은 행정벌 외에 다양한 행정제재를 발굴함으로써 조사의 목적을 실현하는 방안도 다각도로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

## 행정조사 합리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





# 제1절

## 종합분석



### 1. 행정조사 이슈분석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에서는 행정조사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기본원칙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조사는 조사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둘째 행정기관은 조사목적에 적합하도록 조사대상을 선정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셋째 행정기관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는 공동조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행정조사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행정조사는 법령 등의 위반에 대한 처벌보다는 법령 등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다섯째 다른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행정조사의 대상자 또는 행정조사의 내용을 공표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섯째 행정기관은 행정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다른 법률에 따라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래의 조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6가지 기본원칙 외에 행정조사를 수행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기준으로서 행정조사는 법령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 실시할 것(동법 제4조), 조사의 주기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정기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할 것(동법 제7조) 등을 규율하고 있다.

행정조사는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자료 제출요구 및 출석·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을 의미하며(행정조사기본법 제2조), 행정조사의 필요성에 대한 인정과는 별개로 피조사자에게 부담을 초래하는 행위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합리적인 정책결정과 집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행정조사라 하더라도 피조사자에게 과도한 부담 또는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하지 않도록 행정조사를 시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기본원칙을 제시

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법에서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이러한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행정조사의 기본 원칙으로서 유사·중복조사, 법적 근거, 행정조사 제재수단과 수준 등을 분석하였다.

### 1) 유사·중복조사 분석결과

행정조사기본법 제15조에서는 ‘정기조사 또는 수시조사를 실시한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를 재조사’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중복조사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중복조사란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동일한 사안을 조사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동일한 중앙행정기관 내에서 중복조사를 금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제2항에서는 행정조사를 실시할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른 행정기관에서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서로 다른 행정기관에 의한 중복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반면 동일한 조사대상자와 동일한 사안은 아니지만 조사내용이 매우 유사한 경우, 조사대상자가 다수 중복되는 행정조사 등은 조사대상자들이 중복조사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가정폭력, 성희롱, 성폭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의 내용은 가정폭력, 성희롱, 성폭력 등으로 행정조사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중복조사로 보기는 어렵지만, 실제로 조사의 내용은 상당히 유사할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 밖에 다른 중앙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이지만, 해당 부처에서는 갖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추가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행위, 부처간 업무영역이 유사하여 중복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등 명확하게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조사대상자 및 조사의 내용 등에서 상당한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통합조사, 공동조사 등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는 유사·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유사·중복조사는 피조사자의 부담을 중복적으로 초래하기 때문에 조사기관의 협업 및 공동조사 등 제도개선을 통해 피조사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는 대표적인 유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31개 장·차관급 행정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행정조사 874건의 근거법령과 조사내용을 전체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전체 행정조사중에서 중복조사 및 유사조사를 1차적으로 분류하고, 1차 분류된 유사한 행정조사에 대해서 담당자와의 개별 인터뷰를 통해서 각 행정조사의 유사·중복성을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조사대상자와 조사내용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사성이 높은 행정조사로 볼 수 있는 행정조사는 19건이 있었다.

〈표 7-1〉 행정조사 유사·중복조사 현황

번호	행정조사명	부처명	내용
1	전기통신 사업 금지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	방통위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제1항은 사실조사의 전제조건으로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으로 명시되어 있음 * 이에 따라 사실조사를 착수하기 전 위반행위 인정에 이르기까지 실태점검 등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유사조사를 통합하여 행정조사 실시 가능
2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제출	국토부	대중교통기본계획수립을 위하여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5년 단위로 제출하고있으나, 대중교통현황 조사로 통합 가능
3	고령자 고용현황 및 정년현황 제출	고용부	사업주*에게 매년 1월말까지 고령자 고용현황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미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 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므로 추가 제출 불필요
4	직접생산 확인 조사	중기부	중기부와 조달청이 각각 다른 기준으로 직접생산 위반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양 기관의 중복조사를 방지하기 위한 현장점검 개선 필요
5	여성폭력 실태조사	여가부	개별법에 따라 성희롱실태조사, 성폭력실태조사, 가정폭력실태조사, 여성폭력실태조사 각각 실시하고 있으나, 통합방안 필요
6	사행산업 현장확인 및 지도감독	문체부	체육진흥투표권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상 사행산업으로, 현장 확인 및 지도감독의 대상이나 지자체에서도 체육진흥투표권 판매 관련 위반행위를 조사하고 있어, 유사·중복조사에 해당
7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교원의 근무환경 실태조사	교육부	교육시설의 안전관리 현황과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근무환경 실태조사 시 교육시설통합정보망 구축을 통해 기초 정보(건물규모, 위치)는 공유하는 방식 필요
8	법규수행능력 평가를 통합법규 준수도평가와 통합	관세청	수출입물류업체는 통합법규준수도과 법규수행능력평가 등 유사한 두 가지의 평가를 각각 받고 있으나, 통합 가능
9	선박용품 등 재고조사, 항공기용품 등 재고조사	관세청	선박용품 공급업자와 항공기용품 공급업자에 대한 재고조사를 각각 시행하고 있으나, 동일업자가 선박용품 공급업과 항공기용품 공급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경우 관할 세관장이 통합하여 재고조사를 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10	중장기 제대군인 방위산업체 채용현황 실태조사	보훈처	제대군인 방위산업체 채용현황 실태조사의 조사대상인 방위산업체 직종의 취업실시기관은 국가보훈대상자 취업지원실시시기관 실태조사 조사대상과 중복되고 조사내용이 유사하여 통합 필요
11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관련 보고 및 자료 제출	국토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및 융자금 행정조사 시 운수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대중교통법을 동시에 적용 받고 있으나, 보조금 및 융자금 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하도록 개선 필요
1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부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재활용의무를 개별 이행하는 경우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 결과보고서' 제출을 통해 해당 제품 및 포장재에 대한 출고량을 확인 가능하므로 조사 통합

번호	행정조사명	부처명	내용
13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위해성평가	환경부	어린이용품에 함유된 환경유해인자가 어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하기 위해 환경유해인자 노출과 환경유해인자의 독성정보를 체계적으로 검토·평가하였으나,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위해성평가 조사 대상 용품군 및 물질 선정 시 산업부(국가기술표준원) 등 관계 부처 의견을 반영하여 자료 공동 활용 모색
14	가정폭력 실태조사	여가부	개별적으로 실시되던 여성폭력관련 실태조사를 가구 조사 방식 통합 등 개선 필요
15	성희롱 실태조사	여가부	
16	성폭력 실태조사	여가부	
17	가족친화 사회환경 실태조사	여가부	매 3년마다 226개 시·군·구 단위에서 가족친화 시설환경 등 표준화된 행정조사 자료를 통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었으나, 자체 행정조사 활용으로 대체 가능
18	기업 및 공공기관의 가족친화 수준조사	여가부	가족친화 인증심사와 대상 및 조사 내용이 유사하며 인증심사 결과로 대체 가능한 등 조사 폐지
19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점검	해경청	수상구조사 사전 교육기관 지정을 위해 지방청에서 현장 실사 후 본청에 그 결과를 보고하고 본청은 지방청의 검토결과를 다시 서면심사를 거쳐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본청에서의 서면심사는 이중행정으로 행정비효율 초래하므로 폐지

다만 본 연구에서 분석한 유사·중복조사 현황의 한계는 유사조사를 판단하기 위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중복조사란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동일한 사안을 조사하는 것이지만, 행정조사는 불특정다수의 그룹중에서 일부를 선택하여 조사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므로 현실적으로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동일한 사안을 중복적으로 조사하는 사례는 없다. 다만 완전하게 동일하지는 않지만 매우 유사한 항목을 유사한 그룹에게 조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피조사자들은 중복조사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유사한 대상에게 유사한 조사를 중복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명확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해당 조사의 목적과 효과성을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행정조사의 유형중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유형으로 정책입안을 위한 실태조사가 있는데, 대부분 특정 분야의 기업 및 일반국민에게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 실태조사는 다른 행정조사들과 달리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각 설문조사의 내용을 비교하여야 실태조사간의 유사·중복성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행정조사중에서 실태조사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의 내용을 추가로 비교·분석하였다.

유사·중복성 검토를 위하여 통계청에 등록되어 있는 664개 실태조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1차적으로 실태조사의 제목과 조사 분야를 검토하였고, 제목과 조사분야가 유사하여 설문조사의 내용을 심층적으로 비교·분석할 필요성이 있는 실태조사로서 94개를 선정하였다. 비교분석을 위해 하나의 실태조사를 ‘본조사’라고 명칭하고, 그 본조사와 비교를 할 ‘비교 조사’를 선정하였다. 비교 조사 대상을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본조사의 분야와 주체를 중심으로 고려하였다. 유사한 문항이라고 하더라도 분야가 다른 조사에서 활용된 경우에 중복 또는 유사성을 인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조사의 중복(예를 들어 A를 본조사로 하고 B를 비교조사로 선정하여 비교한 후, 다시 B를 본조사로 하고 A를 비교조사로 선정하여 비교하는 경우)을 피하면서 조사를 본조사와 비교조사 대상을 선정할 결과 총 45개의 실태조사를 본조사로 하고 각 본조사에 매칭하여 최소 1개에서 최대 6개의 실태조사가 비교조사로 선정되었다. 그 결과 문항의 중복 및 유사 여부 점검을 위해 82회의 비교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비교 작업에 투입된 본조사는 45개 조사 2,781개 문항이었으며, 비교조사에는 82개 조사 3,137개 문항이 활용되었다.

비교결과 본조사인 45개 조사를 기준으로 유사·중복성 검토결과 총 34개의 실태조사가 비교 조사와 유사·중복 문항을 가지고 있었다. 유사·중복 문항이 가장 많은 본조사는 ‘주거실태조사’였으며, 그 조사와 유사·중복되는 조사는 ‘주택이외의거처주거실태조사’였다. 15개 문항이 유사·중복되었는데, 총 문항 수가 78개로서 비율은 19.2%였다. 유사·중복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항노화제조산업실태조사’로서 비교조사에서의 ‘고령친화용품제조업실태조사’와 7개의 문항이 유사·중복이었다. 총 문항 수가 11개였으므로, 유사·중복의 비율은 63.6%였다. 한편 대부분의 본조사는 비교조사의 일 대 일 형식으로 유사·중복이 있으나, 일부의 경우에는 복수의 비교 조사와 유사·중복이 발생하고 있었다. ‘기업체노동비용조사’, ‘사업체노동력조사’ 등이 그러한데, 최대 3개의 비교 조사와 유사·중복이 있었다. 다만 복수의 비교 조사와 유사·중복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유사중복 문항 수와는 관련성은 없었다.

실태조사의 문항을 대상으로 유사·중복성을 검토해본 결과, 유사·중복 문항의 비율이 10% 이상인 실태조사는 15개에 불과하였고, 실태조사의 내용과 대상이 중복적이어서 통합조사가 필요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2〉 본조사에서의 유사·중복 현황

번호	행 레이블	문항수	유사·중복 문항수	유사·중복 비율	유사·중복 비교 조사 수	유사·중복 비교 조사 문항수(합계)
1	1인창조기업실태조사	64	11	17.2%	1	6
2	ICT전문인력수급실태조사	74	13	17.6%	1	20
3	ICT중소기업실태조사	59	3	5.1%	1	3
4	건설경기동향조사	29	8	27.6%	1	8
5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53	13	24.5%	1	10
6	국가교통조사	17	4	23.5%	1	4
7	국민여가활동조사	64	3	4.7%	1	2
8	기업무역활동통계	54	4	7.4%	1	2
9	기업체노동비용조사	34	3	8.8%	3	9
10	무역통계	55	4	7.3%	1	2
11	문화예술활동현황조사	9	1	11.1%	1	1
12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66	4	6.1%	1	4
13	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	13	3	23.1%	1	2
14	사업체노동력조사	9	2	22.2%	3	7
15	상가건물임대차실태조사	42	2	4.8%	1	1
16	생활시간조사	27	1	3.7%	1	1
17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58	4	6.9%	1	4
18	에너지기술기업실태조사	26	5	19.2%	1	7
19	에너지총조사	99	6	6.1%	1	9
20	여성기업실태조사	86	3	3.5%	1	3
21	일가정양립실태조사	72	6	8.3%	2	6
22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118	4	3.4%	1	3
23	전국폐기물통계조사	24	2	8.3%	1	2
24	전통시장·상점가 및 점포경영실태조사	45	2	4.4%	1	2
25	주거실태조사	78	15	19.2%	1	12
26	주택소유통계	41	3	7.3%	2	4
27	주택총조사	152	11	7.2%	2	17
28	중소기업실태조사	72	7	9.7%	1	12
29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19	2	10.5%	3	5
30	창업기업실태조사	61	9	14.8%	1	8
31	콘텐츠산업조사	31	12	38.7%	1	10
32	항노화제조산업실태조사	11	7	63.6%	1	7
33	화학물질배출량조사	26	4	15.4%	1	4
34	환경산업통계조사	93	1	1.1%	1	3



## 2) 행정조사 법적 근거 검토결과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에서는 행정기관은 법령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행정조사의 실시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법령등에서 조사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여야 한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법령등에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이의 실시는 지방자치단체나 기타 공공기관 등을 통해 수행하는 경우에는 행정조사의 위임·위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전체 행정조사를 전수조사한 결과 법적 근거가 미흡하거나 위임·위탁 규정이 미흡한 행정조사는 15건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본 조사에서 발굴한 사례가 전부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실제로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도 행정조사리스트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 발견이 어렵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실제로 행정조사에 대한 이번 전수조사과정에서 나타난 대표적인 문제점은 법적 근거를 두고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행정조사의 방법을 활용하는 행정조사임에도 등록하지 않아서 행정조사리스트에서 누락된 행정조사가 다수 발견되었다는 점이다. 현재 행정조사를 등록하고 있긴 하지만, 행정규제와 달리 별도로 행정조사인지 여부를 심사하는 전담조직이 없기 때문에 행정조사의 등록은 각 행정기관이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행 시스템으로 인하여 행정조사의 경우 등록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누락된 행정조사가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 3) 제재 수단 및 수준 분석결과

행정조사는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이 어떠한 정책 결정을 하거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다른 행정행위나 법령 위반에 대한 처벌 등 제재를 가하게 되는 일종의 보조적 수단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행정목적의 실현을 위해서 조사는 어느 정도 강제성을 띠게 되고 이러한 행정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불응한 경우에 일정한 제재(행정벌)를 가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행정조사는 조사 상대방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의 권리를 제한하게 되므로 행정조사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본래 행정벌은 행정법상 의무위반행위에 대해 일반 통치권에 기하여 일반 사인에게 과하는 제재로서, 처벌 내용을 기준으로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과태료)로 크게 구별된다. 행정벌이 과해지는 의무 위반은 행위의 성질 자체는 반윤리성, 반사회성을 띠지 않으나, 특정한 행정목적의 실현을 위해 국가의 제정법에 의한 명령, 금지를 위반했기 때문에 비로소 가벌성이 인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가벌성의 정도는 국민의 법감정과 사회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변할 수 있고, 비형벌화 정책이 강조되는 경우에는 형벌 조항이 과태료로 전환되고 이행강제금과 같은 전혀 다른 성질의 제재로 바뀔 수도 있다.<sup>77)</sup>

행정조사에 대한 제재는 행정조사기본법에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각 개별 법령에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제재 규정은 위반행위(구성요건)와 제재(형벌 또는 과태료) 부분으로 나누어볼 수 있으며, 그 유형은 매우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행정조사에 대한 위반행위는 행정조사의 유형에 따라 대략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분류해볼 수 있다.

첫째, 보고 의무나 보고 명령을 위반한 경우로서, 구체적으로는 일정한 사항에 대한 보고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보고 명령을 받은 경우에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둘째, 자료 제출 요구나 자료제출 명령을 위반한 경우로서, 일정한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받은 경우에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셋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나 질문, 수거 등을 방해하는 경우로서, 개별 법령에서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나 질문, 수거 등을 거부, 방해, 기피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다.

넷째, 점검이나 검사에 대해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로서, 주로 안전 관리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각종 점검이나 검사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음으로, 행정조사에 대한 제재 규정은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 형벌을 규정하는 경우로서, 벌칙 규정에서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부과하거나 이를 병과하는 것을 말한다. 형벌을 규정하는 것은 그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범죄와 같이 보는 것이므로 그 위반의 정도가 과태료에 비해 중요한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여야 할 것이다. 법령에 따라서는 위반행위 유형에 따라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부과하면서 동시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존재하기도 한다.

둘째, 형벌을 규정하지 않고, 과태료만 규정하는 것이다. 과태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정상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sup>78)</sup>로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에 의하면, 과태료의 부과대상인 ‘질서위반행위’는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포함)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질서위반행위는 법률이나 조례에 규정되는 행위라는 것 외에 구체적으로 질서위반행위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지 않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행정형벌처럼 행정 목적을 직접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라, 신고·등록·장부비치 의무 등을 태만히 하는 경우처럼 간접적으로 행정 목적의 달성에 장애를 미칠 위험성이 있는 정도의 단순한 의무태만의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보편적이었으나, 행정목적을 직접 침해하는 것과 간접적으로 침

77) 법제처(2022), 법령입안심사기준, 563쪽.

78) 강문수·김현희·나채준, 과태료 제도의 합리적인 정비를 위한 입법모델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7, 31면.

해하는 것의 구별 기준이 모호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등록 취소, 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이다. 입법례를 살펴보면, 행정조사에 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 형벌을 부과하면서도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 개선명령, 시설 폐쇄 등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 형벌의 보충성 원칙에 따라 행정처분을 우선 부과하고, 그러한 행위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서 형벌을 부과해야 한다.

행정조사로 등록된 총 874건의 행정조사 중 107건의 행정조사에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이 중에서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과 관련된 행정조사, 중대한 경제적, 환경적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사로서 행정목적 실현에 어느 정도 협조를 강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형벌 부과가 허용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행정조사 위반행위에 대해 형벌이 부과되어 있다면 과태료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 검토결과 형벌에서 과태료로 완화가 필요한 행정조사 40건,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형벌 등의 형량을 감경할 필요가 있는 행정조사 9건으로 나타났고, 제재 규정의 명확화 등 정비 필요성이 있는 행정조사 5건을 제안하였다.

## 2. 행정조사 필요성 검토결과

행정조사는 합리적 정책결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지만,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조사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절차와 방법 등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반드시 필요한 행정조사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추진하고, 불필요한 행정조사는 폐지하는 것이 행정조사의 목적은 달성하면서 동시에 비용을 줄이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일 것이다.

문제는 반드시 필요한 행정조사와 불필요한 행정조사의 구분 기준인데, 불필요한 행정조사의 정의와 범위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이들을 구분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유사·중복조사의 경우 하나의 행정조사로 통합하거나 또는 공동조사로 대체가 필요한 행정조사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법적 근거가 미흡한 행정조사나 과도한 제재를 포함하는 행정조사의 경우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이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제시하는 행정조사의 원칙을 모두 다 적정하게 준수하는 행정조사에 대해서는 개선의 필요성이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검토가 미흡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행정조사 원칙의 준수여부에 대한 검토 외에 현재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행정조사의 필요성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각각의 행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한 평가를 위한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제시하기는 어려우며, 필요성에 대한 검토는 주관적인 인식에 근거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행

정조사의 필요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서 2가지를 제시하였는데, 첫째는 행정조사의 목적에 따른 기준이며 둘째는 정책전문가에 의한 평가이다.

첫 번째 기준은 행정조사의 목적에 따라서 필요수준을 구분하는 것인데, 행정조사의 목적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가능한데 첫째 법·규제 위반확인, 둘째 행정처분 전단계 사실확인, 셋째 정책입안을 위한 실태조사, 넷째 일반적 관리·감독 등이다. 이 중에서 법·규제 위반확인 및 행정처분 전단계로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는 국민이나 기업에 대한 침익적 행위를 처분하기 이전에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반드시 필요한 조사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조사행위가 피조사자인 국민과 기업에게 부담을 초래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사전 조사없이 잘못된 결정이 내려졌을 때 이를 되돌리기 위한 부담이 더 큰 것을 고려한다면 이는 조사로 인한 부담여부로 인해 불필요성을 판단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정책입안을 위한 실태조사 또는 일반적 관리·감독을 위한 조사 등은 내용에 대한 검토이후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874개 행정조사의 목적을 분류하여 1번과 2번 목적에 해당하는 행정조사는 필요성이 입증되었다고 보았으며, 검토결과 행정조사 874건 중에서 법·규제 위반확인을 위한 조사는 364건(41.6%), 행정처분 전단계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는 30건(3%)이었다. 이는 결국 전체 행정조사중에서 약 45%에 달하는 394건은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행정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기준은 각 행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각 부처에서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행정조사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이다. 행정규제의 경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이므로 해당 행정규제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각 부처에서 소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불충분하다고 해서 해당 행정규제가 필요없다고 판단하거나 혹은 기존의 행정규제를 폐지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니다. 다만 반드시 필요한 행정규제가 아님에도 무분별하게 신설되는 행정규제를 제한하기 위하여 규제영향 분석을 통해 규제의 필요성, 적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이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심사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행정규제의 합리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행정조사 역시도 해당 행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행정조사임을 주관부처에서 소명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874건의 행정조사중에서 20개 이상의 행정조사를 운영하고 있는 부처의 행정조사 698건을 대상으로 해당 조사의 필요성 정도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실시해보았다. 이는 현행 행정조사중에서 반드시 필요한 행정조사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보고자 시범적으로 평가를 진행한 것이며, 향후 행정조사가 신설될 때에는 각 부처에서 행정조사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설명을 추가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전문가 평가결과 698개 사무중에서 필요성이 높은 사무(7점이상)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

고 있었는데, 485개(69.5%)가 필요한 행정조사로 분류되었다. 이 밖에 필요성이 적은 것으로 분류된 행정조사는 20건에 불과하였으며, 필요성 정도가 보통으로 나타난 행정조사는 193개(27.7%)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포 현황은 필요성 평가점수 평균값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전체 필요성평가 점수의 평균값은 7.4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대다수의 정책전문가들은 현행 행정조사가 필요한 행위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3. 행정조사 관련 기업인식 설문조사 결과

본 연구에서는 행정조사로 인한 기업부담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행정조사 방안을 도출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14개 주요 업종을 구분하여 각 업종별로 최소 50개 이상의 유의미한 응답 데이터가 수집될 수 있도록 표본을 구성하여, 전국 1,006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먼저 행정조사 요청 유형과 관련하여 각 기업이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던 행정조사 중 실태조사(82.0%), 보고·자료제출 요구(61.9%) 및 현장조사(55.4%) 유형이 가장 많았으며, 응답한 기업의 약 30%는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연평균 5회 이상 요청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요청받은 행정조사 중에서 동일한 내용을 중복적으로 조사한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21.1%가 중복되는 행정조사를 요청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행정조사 중복 여부는 업종 간에도 큰 편차가 존재하여 숙박시설업(33.8%), 정보통신업(32.5%) 및 수도·하수·폐기물처리업(31.3%) 기업들이 비교적 중복조사를 많이 경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복조사 요청을 경험한 212개 기업을 대상으로 중복조사의 내용을 물어본 결과 고용/인력에 대한 중복조사를 지적하는 답변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기업들이 받았던 행정조사가 유형별로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행정조사 주거나 빈도에 따라 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기업은 행정조사의 목적에 얼마나 동의하는지, 그리고 행정조사 과정에서 관련 원칙이 적절하게 준수되었다고 평가하는가에 대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조사 유형별로 느끼는 기업의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본 결과 7가지 유형 모두 대체로 약간 부담되는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출석·진술요구(7.64점), 현장조사(6.96점), 보고·자료제출 요구(6.60점), 자료 등의 영치(6.57점) 순으로 부담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순위형 로짓 모형을 적용하여 기업 특성 및 개인(응답자) 특성을 통제할 경우, 요청받은 행정조사 횟수가 많을수록 유형별 행정조사 부담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복조사를 경험한 경우에도 행정조사 부담 정도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실태조사 경험여부가 행정조사 유

형별 부담 정도와 대체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보고·자료제출 경험 여부 및 현장조사 경험 여부는 행정조사 유형별 부담 정도와 대체로 유의미한 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행정조사의 주기나 빈도에 따라 느끼는 기업의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한 결과 '1년에 여러 번 정기조사(8.91점)'하거나 '사전계획 없는 수시조사(8.75점)'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년에 한 번 정기조사(6.81점)', '사고·위험 발생 시 조사(6.78점)' 및 '3년에 한 번 정기조사(5.34점)' 순으로 부담을 느끼는 기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순위형 로짓 모형을 적용하여 기업 특성 및 개인(응답자) 특성을 통제할 경우, 연간 요청받은 행정조사 횟수와 중복조사 경험 여부도 행정조사 주기·빈도별 부담 정도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태조사 경험여부도 행정조사 주기·빈도별 부담 정도와 대체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업이 행정조사의 목적과 필요성에 얼마나 공감하는지 살펴본 결과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사고·위험 발생 시 조사하기 위한 목적(6.48점)', '법·규제 위반사실 확인 목적(6.20점)', '행정처분 전단계로서 사실확인 목적(6.11점)'에 대한 동의수준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순위형 로짓 모형을 적용하여 기업 특성 및 개인(응답자) 특성을 통제할 경우, 중복조사를 경험한 경우에 일반적인 관리 감독의 목적에 동의하는 정도가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나는 등 중복조사 경험 여부가 행정조사 목적의 동의 정도에 부정적 영향을 주거나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면에 보고·자료제출 및 현장조사 경험 여부는 행정조사 목적과 대체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행정조사 요청횟수가 많을 수록 행정조사 목적에 동의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기업들이 행정조사 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원칙이 얼마나 준수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알아본 결과 비교적 낮은 만족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행정조사의 사전통지(6.41점)', '행정조사의 목적 및 법적 근거 고지(6.38점)', '목적에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조사(6.19점)'에 대한 만족수준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순위형 로짓 모형을 적용하여 기업 특성 및 개인(응답자) 특성을 통제할 경우, 중복조사를 경험한 경우에는 행정조사 과정의 원칙준수 정도에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행정조사 요청횟수는 행정조사 과정의 원칙준수 정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보고·자료제출 경험 여부는 행정조사 과정의 원칙준수 정도와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기업인식 조사결과를 정리해보면 기업들이 행정조사 유형 및 주기·빈도별로 느끼는 부담 수준은 행정조사 유형 및 행정조사 주기·빈도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었는데, 1년에 수차례 진행되는 정기조사나 사전계획 없는 수시조사 등 과다하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행정조사에 대해 느

끼는 부담감이 가장 크며, 출석·진술요구나 현장조사와 같이 사람이 대면하는 행정조사 유형에 대한 부담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양한 행정조사 유형별로 느끼는 부담은 행정조사 횟수와 중복조사 경험과 비례하는 반면에 다양한 행정조사 주기·빈도에 대한 부담은 행정조사 경험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대조적으로 기업이 행정조사의 목적과 필요성에 공감하는 정도나 기업이 판단하는 행정조사 과정에서의 원칙준수 수준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복조사 경험이 있는 기업은 행정조사 목적에 동의하는 수준이 유의미하게 낮았으며 행정조사 과정에서의 원칙준수 수준도 낮다고 인식하였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행정조사 개선안에 대해서 얼마나 동의하는지 알아본 결과 어느 정도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10점 만점 중 7.54~7.85점), 가장 높은 동의 수준을 보인 대안과 가장 낮은 동의 수준을 보인 대안 간 차이가 0.31점에 불과하였다. 순위형 로짓 모형을 적용하여 기업 특성 및 개인(응답자) 특성을 통제할 경우, 행정조사 요청횟수가 많을수록 행정조사 개선방안에 동의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복조사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경우 유사·동일 사안에 대한 중복조사 개선에 대한 동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태조사, 보고·자료제출 및 출석·진술 요구 경험 여부는 행정조사 개선방안 동의 수준과 대체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자료 등의 영치 경험은 행정조사 개선방안 동의 수준과 일부 유의미한 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응답한 기업들은 모든 개선안에 대해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행정조사 요청횟수가 많거나 중복조사를 경험한 기업일수록 개선안에 동의하고 있으나, 기업들이 특별히 선호하는 대안은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

#### 4. 행정조사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중앙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행정조사제도의 문제점은 행정조사의 내용적인 측면과 행정조사제도의 운영적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행정조사의 내용적 측면에서의 첫 번째 이슈는 현재 행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조사인지 여부인데, 행정조사의 목적을 고려하였을 때 반드시 행정조사를 통해서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만약 각 중앙행정기관별로 행정조사가 불가피한 수단이 아니라면 행정조사를 폐지하거나 또는 유사한 다른 행정조사와 통합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내용적 측면의 두 번째 이슈는 해당 행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조사라고 할 지라도 피조사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조사기본법에서는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원칙들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조사기본법에서는 조사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 조사목적에 적합하도록 조사대상자 선정,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은 공동조사 실시, 법령등의 위반에 대한 처벌보다는 법령등을 준수하도록 유도에 중점, 행정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유사·중복조사의 경우 통합·공동조사로 전환,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 보완, 행정조사 위반관련 과도한 제재 완화 등의 대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행정조사의 운영적 측면의 이슈는 행정조사의 내용적 측면에서 제시된 원칙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체계화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현재 행정조사기본법에서 행정조사 운영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는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한 기준과 조직이 부재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여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으나, 수집하는 정보나 자료가 반드시 필요한 내용인지를 확인하고, 최소한의 범위에서 반드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제2절

## 신설 행정조사의 심의·조정기능 강화



## 1. 행정조사 관리번호 부여

행정조사의 합리화 방안은 크게 신설 행정조사에 대한 합리화 방안과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행정조사에 대한 합리화 방안으로 구분이 필요하다. 먼저 새롭게 등록하여야 하는 행정조사의 합리화를 위해서는 등록과정에서 행정조사의 합리성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 행정조사의 합리성이란 꼭 필요한 행정조사를 행정조사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원칙대로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불필요한 행정조사를 방지하고, 반드시 필요한 행정조사에 대해서는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원칙을 준수하여 운영하는 것이 행정조사의 합리적 운영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모든 행정조사에 등록번호를 부여한 후 관리시스템 구축하고,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행정조사를 신설하여 등록하려고 할 때에는 행정조사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등록된 행정조사를 대상으로 이번 전수조사 결과 폐지·통합된 행정조사 등 행정조사제도의 정비가 완료되면, 모든 행정조사에 각 중앙행정기관의 고유 번호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행정조사기본법이 제정된 2007년 이후 10년이 지난 2017년에서야 등록 행정조사에 대한 첫 번째 전수조사가 이루어졌다. 행정조사기본법에서 규율하는 행정조사의 원칙은 행정조사가 합리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최소한의 원칙을 제시하는 등 합리적 운영방안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였지만, 현실적으로 등록된 행정조사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못하고 있었던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 각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체 행정조사에 대한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이미 삭제된 행정조사도 등록 목록에 존재하는 경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격과 내용적으로 행정조사기본법에서 규정하는 ‘행정조사’에 해당함에도 실제로는 행정조사로 등록되지 않은 사무들도 다수 발견되었다. 이는 현재 행정조사 등록시스템은 존재하고 있으나, 실효성있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향후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법적 근거 없이 무분별하게 행정조사를 신설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고, 기존에 운영중인 행정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제시하는 원칙을 준수하면서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관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 행정조사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어느 기관이 어떤 행정조사를 운영하고 있는지 파악이 용이하도록 중앙행정기관의 고유 번호를 부여하고, 각 부처에서 등록된 행정조사에 대하여 1번부터 등록번호를 부여함으로써 행정조사의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 2. 행정조사 필요성 검토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행정조사는 정책결정이나 직무수행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며, 이러한 조사는 여러 가지 기본원칙을 준수하면서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운영중인 모든 행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행정조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행정조사가 신설될 때 행정조사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과정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행정조사 전수조사과정에서 일부 불필요한 행정조사가 실제로 수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불필요한 행정조사를 정리하는 문제는 행정조사 합리화를 위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점이다. 즉, 행정조사 합리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행정조사만 이루어지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필수적인 행정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제시하는 원칙을 제대로 준수하면서 운영되고 있는지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불필요한 행정조사는 신설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행정조사 합리화를 위한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불필요한 행정조사가 더 이상 신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행정조사의 내용과 수단 등을 확인하고, 해당 행정조사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행정조사인지를 평가하는 절차의 마련 등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신설되는 행정조사의 등록과정에서는 해당 행정조사가 왜 필요한지, 행정조사가 없다면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는 지 등 행정조사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와 자료를 제시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행정규제 관리체계에서도 신설·강화되는 행정규제에 대해서는 '행정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자료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의 문제점, 문제해결을 위해서 반드시 규제를 통한 정부에 의한 개입이 필요한 이유 등을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와 유사하게 향후 행정조사가 신설될 때에 해당 조사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자료를 추가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 3. 행정조사 원칙 준수여부 등록

신설 행정조사에 대한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행정조사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제시하는 것 외에 신규 행정조사의 경우 행정조사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감독도 필요하다. 신규 행정조사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행정조사 등록카드에 내용을 기입하는 방식을 유지하지만, 해당 행정조사의 필요성과 더불어 행정조사의 목적, 법적 근거, 제재 수단과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입하도록 하며, 이렇게 등록과정에서 기입한 내용을 검토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예컨대 현재 등록과정에서도 행정조사의 목적이나 법적 근거 등을 작성하여야 하지만, 해당 행정조사의 목적이 적절한지, 법적 근거가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미흡하다보니 잘못된 법적 근거가 등록되어 있거나 또는 행정조사의 목적이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현행 행정조사 등록카드에 조사목적은 체크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4가지 유형 중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체크하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해당 행정조사의 내용이 4가지 유형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내용이 아닌 경우 임의로 한가지유형을 체크하는 경우도 있어, 행정조사의 실질적인 목적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행정조사의 실질적인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기입하도록 추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행정조사에 대한 필요성, 목적, 유형, 내용 등을 정확하게 기입한 등록카드를 기반으로 3년 또는 5년에 한번씩 중앙행정기관 행정조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되면 전체 행정조사의 규모와 내용을 파악하기 용이해질 것이며, 나아가 신설되는 행정조사의 규모나 특징 등을 파악하기도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 제3절

## 기존 행정조사 개선방안



## 1. '심층점검 행정조사'에 대한 주기적 검토

행정조사 합리화를 위해서는 향후 신설되는 행정조사에 대해서는 행정조사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조사가 신설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제도와 더불어 기존 행정조사에 대한 필요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제도도 필요하다. 즉, 이미 등록되어 운영되고 있는 행정조사중에서 불필요한 행정조사가 있는지 그리고 환경의 변화로 인해 또는 실효성을 잃어서 폐지가 필요한 행정조사에 대한 주기적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조사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

다만 31개 중앙행정기관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874건의 행정조사를 모두가 동일한 기준으로 검토하고 관리하는 것은 시간적 및 인력적 한계를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행정조사중에서 주기적으로 행정조사의 필요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행정조사만을 분류하여, 재검토가 필요한 행정조사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현행 행정조사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모든 행정조사를 '필수 행정조사'와 '심층점검 행정조사'로 분류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필수 행정조사'란 정책결정을 위해서 또는 직무 수행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인 행정조사를 의미하며, 피조사자에게 부담을 초래할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피조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행정조사로 분류할 수 있다. 반면 '심층점검 행정조사'는 불필요한 행정조사라기 보다는 반드시 필요한 행정조사인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조사를 의미한다. 이렇게 행정조사를 크게 두 그룹으로 구분하고, 필수 행정조사에 대해서는 행정조사 원칙의 준수여부만을 검토하고, 심층점검 행정조사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해당 행정조사의 필요성여부를 재검토하는 관리체계를 운영함으로써, 관리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동시에 불필요한 행정조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필수 행정조사'와 '심층점검 행정조사'로 구분하여 불필요한 행정조사를 효과적으로 걸러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두 그룹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데 첫째는 행정조사의 목적에 따른 기준이며 둘째는 행정규제

여부이다.

현재 운영중인 행정조사의 목적은 크게 법·규제 위반확인, 행정처분 전단계 사실확인, 정책입안을 위한 실태조사, 일반적인 관리·감독을 위한 조사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법·규제 위반확인 및 행정처분 전단계 사실확인을 위한 행정조사는 ‘필수 행정조사’로 구분할 수 있다. 만약 법·규제 위반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가질서의 혼란을 초래할 위험이 있으며, 사실확인 없이 잘못된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경우 선량한 국민의 침해가 우려되며, 이를 되돌리기 위한 비용이 사전적인 행정조사에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법·규제위반확인 및 행정처분 전단계 사실확인을 위한 행정조사는 원칙적으로 필요성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한 행정조사로 구분할 수 있다. 반면 정책입안을 위한 실태조사와 일반적인 관리·감독을 위한 조사 등도 반드시 필요한 조사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지만, 그 목적만으로는 해당 행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조사인지 여부를 구분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을 지닌 행정조사의 경우 행정조사의 내용을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행정조사의 필요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심층점검 행정조사’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둘째 행정조사중에는 행정규제로 등록되어 관리되는 사무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행정규제는 사전에 법령 제정단계에서부터 엄격한 심사체계를 거쳐서 해당 사무의 필요성, 타당성, 적정성, 실효성 등을 검증받아야하고, 신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기존 규제관리체계 내에서 폐지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렇게 행정규제 관리체계를 통해 관리되고 있는 사무에 대하여 행정조사관리체계에서 다수의 인력과 비용을 투입하여 중복적으로 검토할 실익이 부족하다. 따라서 행정조사중에서 행정규제로 관리되고 있는 사무는 행정규제 관리체계에서 주기적인 재검토를 이미 수행하고 있으므로, 행정조사 관리체계에서 중복적으로 재검토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에서 ‘필수 행정조사’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필수 행정조사’로 분류된 사무의 경우 근본적으로 해당 행정조사의 필요성에는 모두가 공감하는 사무이며, 다만 해당 행정조사가 다른 조사와 유사·중복성의 문제가 있는지 여부, 과도한 조사인지 여부 등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제시하는 행정조사의 원칙을 준수하는 지 여부까지 검증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필수 행정조사’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유사·중복성 체크와 행정조사 원칙 준수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반면 ‘심층점검 행정조사’는 ‘필수 행정조사’를 제외한 나머지 행정조사로 구성되는데, 심층점검 행정조사가 모두 다 불필요한 행정조사는 아니다. 다만 행정조사의 필요성 측면에서 정당성이 아직 확보되지 않은 행정조사로 분류할 수 있다. 따라서 ‘심층점검 행정조사’의 경우 첫 번째 행정조사의 필요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며, 필요성 평가결과 실효성이 없는 조사로 분류되면 해당 행정조사는 폐지의 수순을 밟는 것이 필요하다. 반면 필요성 평가 결과 현재는 행정조사기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면, 이러한 행정조사에 대해서는 ‘필수 행정조사’와 동일하게 주기적으로 유사·중복성 체크와 행정조사 원칙 준수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재 운영중인 행정조사 874건에 대해서 행정조사의 목적과 행정규제여부로 ‘필수 행정조사’와 ‘심층점검 행정조사’로 구분하고, ‘심층점검 행정조사’에 대해서 행정조사의 필요성에 대한 전수 검토를 수행하고, 향후에는 3~5년 정도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는 해당 조사와 연계된 정책 전문가 및 담당자 등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한계는 존재한다. 따라서 해당 행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면 외부 전문가의 의견, 과학적 통계자료 등을 활용하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

모든 행정조사가 폐지되어야 하는 조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부 유사·중복조사나 과도한 행정조사로 인하여 전체 행정조사에 대하여 기업 및 국민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면서, 오히려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그 피해는 결국 국민이 감당하게 될 수 있다. 이에 불합리한 행정조사를 선별하여 개선함으로써 인력적 및 시간적 투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 2. ‘필수 행정조사’의 기본원칙 준수여부 검토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행정조사라고 할지라도 피조사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조사 기본법에서 제시하는 기본원칙들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 행정조사 기본법에서는 조사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 조사목적에 적합하도록 조사대상자 선정,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은 공동조사 실시, 법령등의 위반에 대한 처벌보다는 법령등을 준수하도록 유도에 중점, 행정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유사·중복조사의 경우 통합·공동조사로 전환,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 보완, 행정조사 위반관련 과도한 제재 완화 등의 대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 가. 유사·중복조사 검토 및 개선

모든 행정조사가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것은 아니며, 원칙적으로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조사기본법에서도 행정조사는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 원칙이 현실속에서 언제나 지켜지는 것은 아닐 뿐만 아

나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업무가 구분되어 있고 정책과정에서 부처간 협업이 미흡한 현실적인 상황에서 각 중앙행정기관은 관련 정책의 결정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행정조사를 통해서 수집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 상황은 결국 행정조사의 유사·중복성 문제로 귀결되고 있다.

행정조사기본법 제15조에서는 이러한 문제 예방을 위해 중복조사 제한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15조의 내용을 근거로 중복조사를 정의하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를 조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행정조사의 범위는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조사대상자 그룹을 대상으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므로, 각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영역이 일부 중첩되더라도 완전하게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완전하게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동일한 내용을 조사하는 사례는 없다고 볼 수 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를 조사’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조사대상 그룹의 구성원이 유사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유사한 조사는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본 연구에서 편의상 ‘유사조사’로 분류한다면,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 중복조사는 아니지만, 조사대상자들은 중복조사로 인식할 수 있는 행정조사가 실제로 다수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조사대상자 그룹의 구성원이 몇% 중복되었을 때 유사조사로 볼 것인지, 조사 내용이 어느 정도 유사할 때 유사조사로 볼 것인지 등 유사조사를 판단하는 기준은 현재 부재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조사기본법 제14조에서는 공동조사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당해 행정기관 내의 2 이상의 부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분야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서로 다른 행정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 공동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완전히 중복되는 행정조사는 아니지만, 조사대상자에게 중복적인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행정조사의 경우 부담완화를 위해 공동조사를 우선적으로 적용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공동조사 원칙은 궁극적으로 유사조사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공동조사 원칙에서도 ‘유사한’ 업무 분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동일한 조사대상자’라는 표현으로 인해 조사대상 그룹 전부가 동일한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 모호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각 중앙행정기관이 행정조사로 등록한 사무와 행정조사로 등록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행정조사로 분류되어야 할 조사들을 발굴하여 총 874개의 행정조사를 전수조사하였고, 이러한 행정조사중에서 유사·중복조사로 분류할 필요가 있는 행정조사의 유형을 도출하였는데 첫째는 조사대상자의 범위가 상당부분 일치하는 조사, 둘째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조사하는 사례, 셋째 사전조사 및 본 조사 등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조사하는 사례, 넷째 이미 존재하는 다른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조사하는 사례 등을 유사·중복사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행정조사는 특정한 그룹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조사를 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조사대상자가 완전하게 일치하는 경우는 없지만, ICT전문인력수 급실태조사와 ICT인력동향실태조사, ICT중소기업 실태조사와 중소기업 정보화수준조사, 종합건설업조사와 전문건설업통계조사, 국가교통조사와 대중교통현황조사 등 유사한 조사대상자에게 유사한 내용을 조사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따라서 조사대상자의 범위가 유사하고 조사 내용도 유사한 경우 기관간 협업을 통해 공동조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이렇게 제 3자의 입장에서 유사·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는 행정조사가 다수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행정조사 관리체계에서는 유사·중복조사의 판단기준이나 처리방안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나 실제로 이러한 유사·중복조사를 통합하거나 공동조사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유사·중복조사의 최소화를 위해서는 유사·중복조사에 대한 판단기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유사·중복조사의 판단기준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합의하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 행정조사를 운영하는 각 행정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유사·중복조사의 기준을 마련하여야, 향후 유사·중복조사를 유형화를 통해 각 기관별 개선방안을 마련할 때 부처의 저항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유사·중복조사의 판단기준을 마련하게 되면, 유사·중복조사의 경우 공동조사 및 공동자료를 활용하는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행정조사기본법에서는 필요한 경우 공동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어떤 경우에 공동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없다. 따라서 유사·중복조사 기준에 따라 분류되면, 이 중에서 공동조사로 전환되어야 하는 조사를 분류할 수 있어야 하며, 더불어 각 기관이 독자적으로 조사할 필요 없이 공동플랫폼에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플랫폼을 마련한다면, 유사·중복조사의 증가를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조사대신 공동자료를 활용하는 방안이 더욱 용이하여야 각 기관에서는 행정조사 대신 공동자료를 선호하게 될 것이므로, 데이터플랫폼 구축시 접근 및 활용이 용이하도록 개발할 필요가 있다.

#### 나. 법적 근거 검토 및 개선

행정조사에 대한 전수결과 법적 근거가 미미한 행정조사 등이 다수 발견되었다. 행정조사의 실시 근거가 미흡한 사례와 다른 기관에게 위임·위탁하여 조사하는 사례의 경우 위임·위탁근거가 미흡한 사례도 다수 존재하였다. 이러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행정조사의 문제는 행정조사에 대한 관리가 어렵다는 점이다. 행정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법적 근거를 두도록 한 이유는 조사대상자가 어떤 조사를 받는지 예측할 수 있고, 해당 조사의 타당성 및 필요성을 인식함으로써 순응도를 높



일 수 있으며, 나아가 행정조사 주체 역시 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행정조사와 관련된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법적 근거가 없는 행정조사가 증가할수록 조사대상자의 부담을 파악하기 어렵고, 행정조사의 합리성을 판단할 기준이 미흡하며, 무엇보다 정부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는 행정조사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행정조사를 등록할 때에는 법적근거를 명확히 표기하도록 관리체계를 개선하여야 하며, 행정조사의 폐지 또는 신설에 대한 업데이트를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주기적 검토를 통해 행정조사 관리체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 다. 제재수준 검토 및 개선

총 874건의 등록 행정조사의 근거 및 제재 규정을 전수조사한 결과, 위반행위의 유형은 보고나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거짓 보고나 거짓 자료제출을 한 경우,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 수거, 질문 등을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안전 확보 등을 위한) 점검이나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등으로 나누어볼 수 있었고, 이에 대해서는 형벌(징역 또는 벌금), 과태료, 행정처분 등이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행정조사는 원칙적으로 행정기관이 정책 결정이나 다른 행정행위를 하기 위한 정보 수집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보조적 수단이지만, 행정목적은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강제성을 수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위반행위에 대해 처벌 규정을 두어서 행정조사에의 협력을 강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행정조사에 대한 제재는 행정형벌보다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조사의 성격상 적절하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 현재 형벌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입법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 보이나, 행정조사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예외적으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를 위해서 형벌의 부과가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기준을 되도록 마련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행정조사를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법령 위반행위 또는 동종·유사한 위반행위에 비해 형량이 과도하지 않도록 정비해야 할 것이다.

이에 현재 행정조사 위반행위에 대해서 형벌을 부과하고 있는 총 107건의 행정조사를 검토한 결과, 첫째 형벌을 과태료로 완화할 필요성이 있는 조사, 둘째 형벌 부과하는 경우에도 형량 감경이 필요한 조사, 셋째 그 밖에 제재 규정의 정비가 필요한 조사로 나누어 정비가 필요하다. 예컨대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정조사, 중대한 경제상의 손해나 환경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들은 위반시 형벌을 유지하도록 하면서도 필요한 경우 형량을 감경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형벌을 부과하고 있는 경우에도 행정조사 위반행위 중에 보고

나 자료제출 위반의 경우와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 등을 거부, 방해, 기피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적어도 전자의 경우에는 과태료로 완화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이다.

행정조사 관련 규정을 검토하면서, 행정조사 위반행위에 대해 형벌과 과태료 외에도 다양한 행정처분 규정들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업무 정지, 시정명령, 지정 취소 등 다양한 행정처분이 규정되어 있는데, 형벌의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되도록 이러한 행정처분을 우선 활용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행정처분도 영업자의 영업 수행에는 상당한 타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조사에 대한 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행정적 제재를 발굴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예컨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제7항에서는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 61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이에 응할 때까지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행정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다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제도 도입이 가능한 법률에서는 행정벌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활용해볼 수 있을 것이다.

## 제4절

## 행정조사 운영적 측면의 개선방안



## 1. 행정조사 관리 전담조직 설립

전술하였던 신규 행정조사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한다고 해서 '행정규제'와 같이 실질적인 심사기능을 적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신설 행정조사에 대한 심사·조정기능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담조직과 인력의 배치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신규 행정조사에 대한 심사기능을 추가하기 위해서 등록카드의 작성내용을 추가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심사하는 담당조직이 없이 각 행정조사를 운영하는 부처의 자율에 맡기게 되면, 일정 기간 이후 다시금 유명무실하게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등록번호 부여 및 신규 행정조사에 대한 심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행정조사의 신설을 허용해주는 심의기능은 아니더라도, 신규 행정조사에 대한 검토를 담당할 조직과 인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뿐만 아니라 신규 행정조사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해당 행정조사의 정당성 및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행정조사를 신설하는 조직에서 지금보다 더 많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동시에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해당 행정조사의 신설에 대한 심의기능을 수행할 전문위원회 등이 구성되어야 할 수도 있다. 예컨대 현재 '행정규제' 심사체계와 유사하게 구성하기 위해서는 행정조사 담당부처에서도 전담 인력이 구성되어야 하며, 이를 관리하는 현 국무조정실에도 별도의 조직이 구성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심사체계는 장기적으로 행정조사의 폐해가 단순히 조사대상자의 부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경제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므로 행정규제와 같이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도출된다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국무조정실에 행정조사의 관리·감독을 전담할 조직을 구성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각 행정조사 담당부처의 자체심사체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차선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각 중앙행정기관에는 행정규제에 대한 자체심사위원회 및 적극행정위원회 등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위원회에서 각 중앙행정기관 소관 법령에 근거를 두고 신설되는 행정조사에 대해서도 심사를 수행하도록 권고하고, 중앙행정기관 자체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각 행정기관에 의해 자율적으로 관리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 이를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에서는 행정조사에 대한 등록번호를 부여함으로써 현황을 주기적으로 관

리하고, 나아가 신규 행정조사에 대한 등록요건으로서 행정조사 신설의 필요성 및 구체적인 목적 등을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각 행정조사 담당부처의 자체심의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판단된다.

## 2. 행정조사기본법 개정

현행 행정조사기본법 제6조에는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행정조사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조사운영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4조에 따른 행정조사의 기본원칙에 따라야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조사운영계획은 신설되는 행정조사에 대한 심의·조정기능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조사의 상시적인 관리·감독을 위한 근거로서도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다.

향후 신설되는 행정조사에 대한 심의·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기존 행정조사에 대한 주기적인 재검토를 위해서는 행정조사기본법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업무가 행정조사기본법에 근거를 둔다면, 향후 이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감독기능을 수행하는 전담 조직을 설립하기 위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3. 행정기관 공동 자료시스템 구축

행정조사 운영현황 분석결과 이미 다른 시스템이나 다른 부처에서 확보하고 있는 자료임에도 또 다시 행정조사를 통해서 수집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하였다. 이는 부처간 협업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우리나라 정부시스템의 문제와도 연계가 깊다. 다만 이의 해법으로 부처간의 협업을 강화하기 위한 대안은 지난 몇 년간 크게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히 자료를 공유해야하는 부처간의 개별적 협업을 강조하는 것보다 자료공유가 용이하도록 공동자료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수많은 데이터가 쏟아지고 있고, 지능정보사회라고 지칭해도 문제가 없는 현재의 사회는 결국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어떻게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해법은 다양한 분야에서 나오고 있으며, 공공분야의 데이터 확보 및 이용 역시 새로운 주제는 아니다. 행정조사 현황분석 및 기업의 인식조사 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유사·중복문제가 우리나라 행정조사시스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고 해결가능한 문제가 바로 유사·중복문제라고 볼 수 있다. 공동조사나 협업을 통해서 확보가 가능한 자료를 각 중앙행정기관이 개별적으로 수집하는 현재의 행태는 단순히 현재 행정조사에서 유사·중복문제가 차지하는 비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중앙행정기관이 지속적으로 개별적 정보·자료 수집을 유지한다면 결국 부처간의 협업 측면에서도 부정적 영향이 확대될 뿐만 아니라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 자산인 지능정보사회에서 데이터 이용의 효율을 저하시키며 궁극적으로는 정책의 효과성도 저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공동으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내부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통계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료가 상당히 존재하고 있으나, 각 중앙행정기관은 정책결정을 위해 개인정보에 가까운 민감한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으므로 통계청과 같이 모든 사람의 열람이 가능한 시스템이 아닌 정책결정기관의 권한이 있는 경우에만 접근가능한 공동자료이용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공동 자료시스템이 구축된다고 해도 단기간동안은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행정조사가 줄어들 가능성은 적다.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고 자료를 이용하기까지 적응기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공동자료시스템이 구축된다고 해서 정책결정을 위한 모든 자료를 포함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결국 정책입안시 또는 직무과정에서 필요한 정보의 일부만 자료시스템에 포함되어 있다면, 초기에는 자료시스템에 포함된 자료임에도 어차피 다른 정보를 위해 행정조사가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자료시스템에 있는 자료는 제외하고 조사할 유인이 적을 수 밖에 없다. 다만 공동자료이용시스템을 구축하고 일정 기간 사용 이후에는 점차 시스템의 자료를 먼저 확인하는데 적응되면, 향후 행정조사를 통한 자료수집의 감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문헌



- 강문수·김현희·나채준, 과태료 제도의 합리적인 정비를 위한 입법모델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7  
국회사무처, 법제이론과 실제, 2019
- 김민배, 2019, 미국의 행정조사제도와 연방거래위원회의 조사절차, 한국산업보안연구, 제9권 제2호,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pp. 55-85.
- 김신, 2013. 행정부담 감축을 위한 행정조사의 개선에 관한 연구. KIPA 연구보고서 2013-10.
- 김영조, 2004, 미국 행정법상 행정조사의 법리에 관한 고찰. 토지공법연구, 제21권, 한국토지공법학회, pp159-184.
- 김철용, 행정법, 고시계사, 2017
-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2022
- 안상현, 2009, 미국에서의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수집 관련 법제. 월간법제, 2009권 10호. 법제처.
- 이동식, 전훈, 김성배, 손운석, 2022, 행정법 총론. 제11판. 준커뮤니케이션즈.
- 장민선, 박훈민, 2017, 불합리한 행정조사 정비방안 연구, 국무조정실 연구용역. 한국법제연구원.
- 최환용, 장민선, 2016, 국민 중심의 행정조사 관련 법제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 2016-08.
- 김신. (2013). 행정부담 감축을 위한 행정조사의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2013, 1-238.
- 전용호. (2018). 영국 성인돌봄서비스 시장에 대한 감독 개혁과 한국 장기요양의 시사점.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9(4), 203-210.
- Care Quality Commission Market Oversight of 'difficult to replace' providers of adult social care: Guidance for providers, London, 2015.
- OECD, Regulatory Enforcement and inspections, 2014.
- 芝池義一、行政法總論講義, 有斐閣, 2006
- 藤原静雄、行政調査論の現状と課題—行政情報管理の視点を踏まえて—、筑波ロー・ジャーナル5号, 2009
- 深澤龍一郎, 行政調査の分類と手続, JURIST 増刊 新・法律学の争点シリーズ (行政法の争点) 8号, 2014

宇賀克也, 行政法概說 I, 有斐閣, 2020

### 〈인터넷 홈페이지 등〉

<https://cascaid.co.uk/ofsted-inspection-framework/process/>

<https://www.gov.uk/government/news/ofsted-is-changing-how-it-inspects-schools>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education-inspection-framework/education-inspection-framework#what-inspectors-will-consider-when-making-judgements>

<https://www.food.gov.uk/sites/default/files/media/document/fsa-risk-analysis-flowchart.pdf>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regulatory-policy-committee>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00/23/introduction>

그리스 경제사회위원회(OKE) 홈페이지 [www.oke.gr](http://www.oke.gr)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접속일: 2023.3.11.

정부입법지원센터, <https://www.lawmaking.go.kr>. 접속일: 2023.1.31.

세계법제정보센터,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

[https://world.moleg.go.kr/web/wli/lgsInfoReadPage.do?CTS\\_SEQ=2853&AST\\_SEQ=1061&nationReadYn=Y&ETC=1&searchNtnl=US](https://world.moleg.go.kr/web/wli/lgsInfoReadPage.do?CTS_SEQ=2853&AST_SEQ=1061&nationReadYn=Y&ETC=1&searchNtnl=US). 접속일: 2023.1.31.

e-CFR. <https://www.ecfr.gov/>. 접속일: 2023.3.11.

FDA. <https://www.fda.gov/>. 접속일: 2023.3.11.

Federal Register. <https://www.federalregister.gov>. 접속일: 2023.1.31.

Govinfo.gov. <https://www.govinfo.gov>. 접속일: 2023.3.11.

Paper Reduction Act of 1995.

<https://www.govinfo.gov/content/pkg/PLAW-104publ13/html/PLAW-104publ13.htm>. 접속일: 2023.1.31.

Law Offices of Stimmel, Stimmel & Roeser, The Basics of Administrative Law.

<https://www.stimmel-law.com/en/articles/basics-administrative-law>. 접속일: 2023.1.31.

OIRA FAQ, <https://www.reginfo.gov/public/jsp/Utilities/faq.jsp>. 접속일: 2023.2.10.

OIRA Governing Authorities,

<https://www.whitehouse.gov/omb/information-regulatory-affairs/>. 접속일:

2023.1.31.

Paperwork Reduction Act(44 U.S.C. Chapter 35)

<https://www.govinfo.gov/content/pkg/USCODE-2011-title44/pdf/USCODE-2011-title44-chap35.pdf>, 접속일: 2023.1.31.

Reginfo.gov. <https://reginfo.gov/public/>. 접속일: 2023.3.11.

U.S. Department of Labor. Regulations (Standards – 29 CFR),

<https://www.osha.gov/laws-regs/regulations/standardnumber/1904>. 접속일: 2023.1.31.

USLegal.com, Main Ways to Obtain Information. 접속일: 2023.1.31.

The White House, Information and Regulatory Affairs.

<https://www.whitehouse.gov/omb/information-regulatory-affairs/>. 접속일: 2023.1.31.

#### 〈보도자료〉

법무부. “민간중심 역동경제 실현을 위한 경제형별 합리화” - 경제 형별규정 개선 추진계획 및 1차 개선 과제 발표 -, 2022. 8. 26. 법무부 보도자료



## 부 록



### 행정조사로 인한 기업부담 실태조사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한국행정연구원이 수행하는 '행정조사로 인한 기업부담 실태조사'의 설문조사 참여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행정연구원에서는 행정조사로 인한 기업부담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행정조사 방안을 위한 연구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자료제출요구 및 출석·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행정조사는 법률에 근거하여 최대한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키지 않도록 운영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기업 등 국민에게 큰 행정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사에서는 행정조사 유형별 문제점과 기업의 부담을 파악함으로써 행정조사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향후 행정조사 개선을 위한 효과적이고 실천적인 자료를 마련하는데 초석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바쁘시더라도 각 질문에 대한 귀하의 솔직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본 연구의 수행에 관련된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통계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개인정보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익명화되어 연구보고서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2월



※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자료제출요구 및 출석·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행정조사기본법 제2조)

〈행정조사 예시〉

구 분	소관부처	실태기관	조사방법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지도 점검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현장조사
작업환경측정제도(작업환경측정결과의 제출)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	자료제출·보고요구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제출·보고요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제출·보고요구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지도, 감독	교육부	교육장	현장조사
승강기 제조, 수입, 관리, 검사 실태 및 현황 조사	국민안전처	국민안전처, 지방자치단체	현장조사
특정옥외탱크 저장소에 대한 정기검사	국민안전처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현장조사, 자료제출·보고요구
건설업의 등록	국토교통부	시도/시군구	자료제출·보고요구
친환경인증농산물 생산유통실태조사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현장조사
동물용의약품 등 생산, 수출입 및 판매실적 보고자료 제출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동물약품협회	자료제출·보고요구
국민건강보험 사업장 지도 점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장조사
중요생산업자조사	산림청	산림청 및 시·도	현장조사, 자료제출·보고요구
공산품 안전관리 실태조사(품질경영 실태조사)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제품안전협회	현장조사
산업환경통계조사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현장조사
액화석유가스 거래상항기록 제출	산업통상자원부	LPG산업협회, 가스판매협회 중앙회	자료제출·보고요구
화장품 제조·제조판매 업체 출입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식약처, 지방식약청	현장조사
의료기기 재평가 신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제출·보고요구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	중소기업청	벤처기업협회	현장조사
기업활동조사	통계청	통계청	현장조사
공유수면 매립 관련 보고 및 검사	해양수산부	매립면허관청	현장조사, 자료제출·보고요구
선박소유자 등에 대한 보고 및 자료제출	해양수산부	지방해양항만청	자료제출·보고요구
자동차 전문정비업자 관리감독 보고 및 검사	환경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현장조사
폐기물관련 사업자 지도점검	환경부	지방청/시 군 구	현장조사
대기배출시설 지도 점검	환경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현장조사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자료제출·보고요구

다음은 행정조사 경험에 대한 질문입니다

1. 귀하께서는 정부(지자체 포함)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행정조사 요청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 1) 예 ☞ 2번 이동                      2) 아니오(조사중단)

2. 귀하께서는 정부(지자체 포함)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던 행정조사의 유형을 선택해주시요(요청받았던 행정조사의 유형을 모두 선택해주세요)

문2-1.	실태조사	
문2-2.	보고·자료제출 요구	
문2-3.	문서열람	
문2-4.	자료 등의 영치	
문2-5.	시료채취	
문2-6.	현장조사	
문2-7.	출석·진술요구	
문2-8.	기타	

(2-8 선택 시) 기타 유형을 선택하셨다면 어떤 행정조사였는지 적어주세요.

---



---

3. 귀하께서는 정부(지자체 포함)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평균적으로 연간 몇 번의 행정조사 요청을 받으십니까?

1회	2회	3회	4회	5회 이상
①	②	③	④	⑤

4. 귀하께서 정부(지자체 포함)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요청받은 행정조사 중에서 동일한 내용을 중복적으로 조사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1) 예 ☞ 5번 이등

2) 아니오 ☞ 6번 이등

5. 만약 중복조사를 경험하셨다면, 중복적으로 요청한 행정조사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적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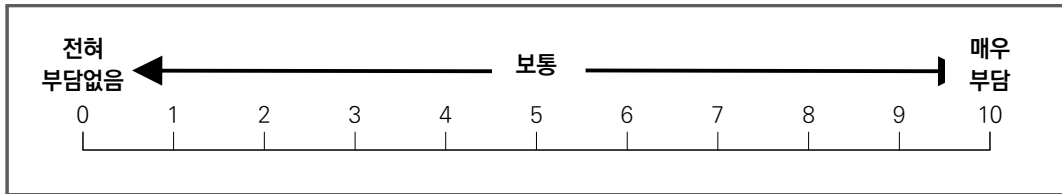
예시1) 우리 기업 근로자현황에 대하여 고용부, 중기부, 지자체 등이 중복적으로 실태조사, 자료제출 및 보고 등 요구하였음

예시2) 시설현황에 대하여 00부처, 00부처 등이 중복적으로 현장점검 및 자료제출 요구하였음

다음은 행정조사에 대한 인식관련 질문입니다

6. 다음은 행정조사의 다양한 유형입니다. 귀하께서 각각의 행정조사 유형별로 느끼는 부담의 정도는 어느 수준입니까?

'0점에서 10점까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0점은 전혀 부담없음, 5점은 보통, 10점은 매우 부담'입니다.



문6-1.	실태조사	
문6-2.	보고·자료제출 요구	
문6-3.	문서열람	
문6-4.	자료 등의 영치	
문6-5.	시료채취	
문6-6.	현장조사	
문6-7.	출석·진술요구	
문6-8.	기타: _____ (문2-8에서 답변한 행정조사 유형)	

7. 다음에서 제시하는 내용은 현재 수행하고 있는 행정조사의 주기입니다.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각각의 행정조사 주기·빈도에 따른 부담은 어느 정도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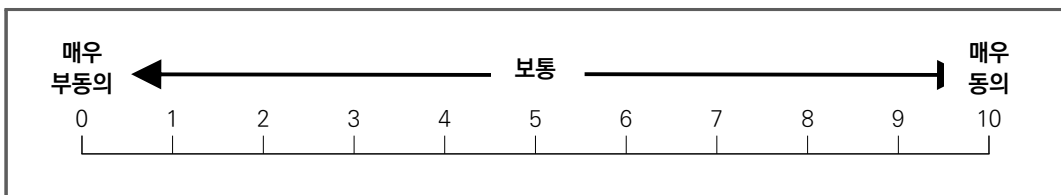
'0점에서 10점까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0점은 전혀 부담없음, 5점은 보통, 10점은 매우 부담'입니다.



문7-1.	3년에 한번 정기조사	
문7-2.	1년에 한번 정기조사	
문7-3.	1년에 여러 번 정기조사	
문7-4.	(사전계획 없는) 수시조사	
문7-5.	사고·위험 발생 시 조사	

8. 다음에서 제시하는 내용은 행정조사의 목적입니다.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지닌 행정조사의 필요성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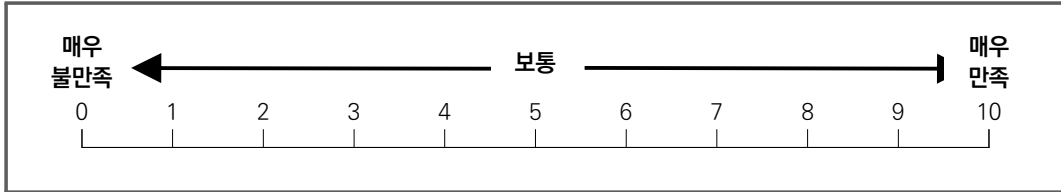
'0점에서 10점까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0점은 매우 부동의, 5점은 보통, 10점은 매우 동의'입니다.



문8-1.	일반적인 관리감독의 목적	
문8-2.	법·규제 위반사실 확인 목적	
문8-3.	행정처분 전단계로서 사실확인 목적	
문8-4.	정책입안을 위한 실태확인 목적	
문8-5.	사고·위험 발생 시 조사하기 위한 목적	

9. 다음은 행정조사 수행시 지켜야 하는 원칙입니다. 귀하께서는 행정조사 과정에서 다음의 원칙이 적절히 준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께서 경험한 행정조사를 토대로 응답해주세요.

'0점에서 10점까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0점은 매우 불만족, 5점은 보통, 10점은 매우 만족'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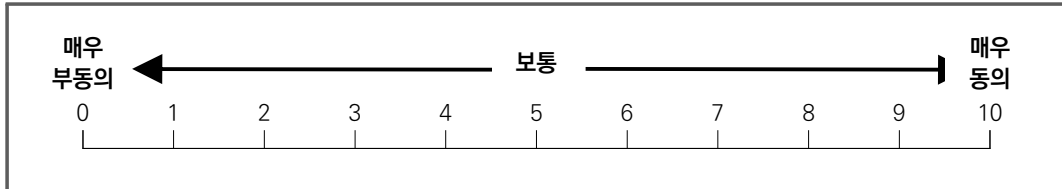


문9-1.	행정조사의 목적 및 법적 근거 고지	
문9-2.	조사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조사	
문9-3.	조사목적에 적합한 조사대상자 선정	
문9-4.	유사·동일사안에 대한 공동조사(중복조사 지양)	
문9-5.	행정조사의 사전통지	
문9-6.	조사대상자의 의견반영	



10. 귀하께서는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다음의 개선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0점에서 10점까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0점은 매우 부동의, 5점은 보통, 10점은 매우 동의'입니다.



문10-1.	일반적인 실태조사는 정해진 주기에만 실시	
문10-2.	연간 행정조사의 횟수 제한	
문10-3.	유사·동일 사안에 대한 중복조사 개선	
문10-4.	조사대상자의 이의신청 등 의견수렴 창구 마련	
문10-5.	전체 행정조사에 대한 관리체계 마련	

11. 그 밖에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개선 또는 건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



---

## □ 응답자 정보

전화 번호	(     )                      -
응답자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직급	① 사원/대리                      ② 과장급                      ③ 차장/부장급 ④ 임원급                      ⑤ 대표이사
응답자 연령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연구보고서 23-16-01

## 행정조사 합리화 방안

발행처 2023년 4월  
발행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연구지원동 909호  
전화 044) 211-1000  
홈페이지 [www.nrc.re.kr](http://www.nrc.re.kr)  
ISBN 979-11-5567-623-3

\* 연구회의 허락 없이 보고서 내용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사하거나 전재하는 행위를 금합니다.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

# 행정조사 합리화방안

Improving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System of Korea

---

